

최 종  
연구보고서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The Countermeasure against the Free Trade Agreement  
in the Fisheries Sector

2003. 3

연구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 양 수 산 부



#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  
문 대응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3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연구책임자 : 주 문 배  
연구원 : 안 재 현  
연구원 : 정 수 영  
연구원 : 김 현  
위탁연구기관명 : 부 경 대 학 교  
위탁연구책임자 : 고 종 환

<분야별 연구책임자>

- 주문배 : 제1장~제4장, 제5장 제2절, 제7장, 제8장
- 고종환 : 제5장 제1절, 제6장

# 요 약 문

## I . 제 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II .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세계의 무역질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추세에 따라 지금까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그 동안 FTA 확산에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ASEAN+3(한·중·일) 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 FTA 추진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일본이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데 이어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ASEAN과 경제동반자관계(EPA)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10년 안에 양자간 FTA를 체결키로 했다. 중국은 지난 11월 4일 ASEAN+3회의에서 ASEAN과 2010~2015년까지 FTA를 맺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중·일은 FTA 체결을 목표로 2003년

도 3국 공동 연구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창설, 즉 EU나 NAFTA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10월 24일 남미의 수산대국 칠레와의 FTA 체결에 가서명하였으며, 한·일 FTA 추진을 위해 양국 간 공동연구회를 추진하고 있고, 이 외에도 한·싱가포르, 한·멕시코, 한·아세안 등과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당사국의 모든 산업에 반드시 긍정적인 이익을 파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라 당사국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일본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 수산업에게 있어서 단기적으로 좋은 기회이나 장기적으로는 경합과 분업의 논리에 의해 수산업의 생산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여러 업종이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을 생산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FTA 체결은 기술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일부 업종에게는 큰 변화를 강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또는 한·미 FTA 체결이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산 부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통상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한·미 FTA 및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수산분야에 대한 사례, 한·미·일의 국가별 수산업 현황, 교역구조, 경쟁관계, 시장개방 실태 등과 한·미,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FTA의 추진배경과 의의, 형태 그리고 WTO 등 기존 국제규범과의 관계 등을 통해 FTA의 추진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NAFTA 등 주요 FTA의 수산부문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교역구조를 비교·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국가별 관세, 비관세제도 등을 통해 국가별 시장개방 실태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우선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IITI) 등을 이용하여 한·미·일의 국별 수산물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불변시장점유율(CMS) 모형 등을 이용하여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및 미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품목별 경합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수산업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국가·다산업 CGE 모형(Multi-country, multi-secto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과 GTAP 모형을 이용하여 한·일 FTA 및 한·미 FTA 경제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한·일 FTA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품목별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1국가 CGE모형(A one-country CGE model)과 GTAP 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FTA 체결 효과를 품목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7장에서는 한·일,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수산

부문의 대응방안으로 한국, 일본, 미국의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의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의 추진방향 및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8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였고, 추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IV-1 연구개발결과

#### IV-1-1 FTA의 추진배경과 의의

FTA는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나라 이상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철폐하는 경제통합의 초기단계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역내국간 상품교역이 늘어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수입 상대국이 역외국에서 역내국으로 바뀌는 '무역전환효과'와 역내국 내에서 생산요소가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여 역내경제 전체의 생산이 늘어난 데 따른 '무역창출효과' 등 정태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의 확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 경합분업에 의한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 동태적인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지역주의 경향을 축적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FTA는 단순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하는 측면보다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보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무역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FTA는 역내국가간 별도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적용되어 역내국가간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간의 특혜적인 교역을 허용함으로써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조치(MFN)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WTO에서도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WTO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자간 또는 소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 IV-1-2 주요 FTA의 수산부문 사례분석

##### 1.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하기 위해,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1992년 12월 17일 체결하였으며(14개월 간 협상),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NAFTA는 15년 내 3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단계적 철폐, 원산지 규정의 강화, 노동·환경 관련 보완조치 실시,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에서는 WTO 협상에서의 논의 그룹형성과 마찬가지로 수산분야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상품 전체적인 관세철폐

폐 프로그램에 속하여 있고,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도 전체 원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수산업이 각국에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에 대한 반영 뿐 아니라 동 협정에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관세부문의 경우 관세의 단계적 인하 원칙이 제시되어 적용되어 있고, 「A, B, C, D」 네 부분(Category)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수산부문의 예외사항으로서 캐나다의 미가공된 수산물, 멕시코 정어리 캔 제품 및 참치 캔 등에 대해서는 NAFTA 협정문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 2. EU-칠레간 FTA

EU-칠레간의 FTA는 2년이 넘는 협상을 통해 2002년 5월 마드리드에서 EU-칠레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동년 11월 18일 EU-칠레간 FTA 협정이 서명되었다. EU는 섬유제품 등 칠레산 공산품의 90%는 협정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0%의 품목은 3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칠레는 EU산 공산품에 대해 협정발효 즉시, 5년 후, 그리고 7년 후의 3 단계로 구분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공산품 분야에서 예외품목은 설정하지 않았다.

농산물의 경우, EU는 칠레산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협정발효즉시, 4년 후, 7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쿼터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칠레는 EU산 농산물에 대해 협정발효 즉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산물 교역 부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부문의 경우 단계적 무세화를 추진하고, 관세할당 범위내에서 10년 간 균등인하방식을 채용하였다. 이때, 기준세율은 협정 발효시점의 실행관세로 합의하였고, 특혜관세는 협정발효 시점

에 적용되는 MFN 관세의 1/3 수준의 특혜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내국민 대우의 경우, 칠레에서는 EU측의 수산기업 설립에 상호주의 원칙준수를 전제로 「수산기업에 관한 프로토콜」을 마련함으로써 EU측의 대 칠레 수산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위생 및 검역의 경우, WTO SPS 협정의 목적을 수행함과 동시에 위생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동물의 복지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 3. 일-싱가포르간 FTA

JESPA는 양국간의 국경을 넘는 물품, 사람, 서비스, 자본, 정보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1999년 12월 일본과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에서 산·학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를 설립키로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 1월 양국간 JESPA에 서명하였으며, 2002년 5월 8일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 동년 11월 30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무역량의 98%이상(2000년도 금액 기준)에 상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부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중 약 9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일본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 2,277개 품목 중에서 무세인 품목(WTO 무세 양허품목 및 실행관세율 0%로 관세할당 등을 제외한 품목)에 한정하여 486개 품목만을 양허하였다. 그리고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의 선어(鮮魚)를 포함한 1,791개 품목은 양허하지 않았으며 HS 03 류 중에서 송어, 뱀장어, 잉어 등의, 양식용 치어는 발효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하였다.

#### 4. 한-칠레간 FTA

1998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약 4년 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2년 10월 20일 타결되었다.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이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 검역조치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이다.

수산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양허 내용으로는 단계적으로 무세화를 추진하되 발효 즉시, 5년, 10년 기간을 거쳐 무세화하는 품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반면에 칠레는 200개 수산물 중 200개 품목에 대해 체결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협정문 제4장에서 칠레산 수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칠레 수역에서 칠레 국적선으로 완전 생산한(wholly obtained)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부여하여 제3국에 의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IV-1-3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시장개방 실태

#### 1. 국가간 정치·경제적 관계

일본은 우리의 2대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일본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 한·일 수산물 교역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일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1999년 10억 달러에서 2001년 7.9억 달러로 감소).

한국과 일본은 고대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경제적인 종속관계 이외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다.

미국은 우리나라 교역의 18.4%를 차지하며, 우리는 미국의 10대 교역국이다. 2001년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비중은 일본에 이어 제2위(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6.5%), 수입비중은 중국에 이어 제2위(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1950년대 한·미간의 정치·경제적 관계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일방적인 관계였으며,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쌍무적인 정치·경제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 2. 각국의 수산업 현황 및 교역구조

한국, 일본, 미국 3국 모두 수산물 적자국으로 수산물 수입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수산물 무역수지는 한국 > 일본, 한국 < 미국이며, 수산물 생산은 한국이 급격한 감소 추세이고, 일본, 미국은 정체 또는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

2000년 기준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기준 380만 톤 증가한 1억 3천만 톤으로 이중 한국은 12위(215만 톤), 일본은 3위(575만 톤), 미국은 5위(517만 톤)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산물 생산량중에서는 양식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여 총 수산물 생산량의 27.3% 차지하고 있다.

세계 수산물 수입액 및 수출액은 각각 600억 달러 및 552억 달러이다.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스페인 순이며, 한국은 12위에 해당하고, 주요 수출국은 태국, 중국,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순이며, 한국은 14위, 일본은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 ○ 한국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수산물 생산은 199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수산물 자급률 역시 2000년도 기준 94%로 100% 이하로 하락하였다. 총공급 대비 수산물 수입 비중은 1997년 25%, 1999 29%, 2000년 31%이며, 수산물 무역수지는 2001년도부터 적

자를 기록하였으며(3억 7천만 달러 적자),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시장인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 일본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일본의 어업생산량은 1984년 1,281만6천 톤(세계 제1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4% 감소한 639만 톤을 기록하였다. 수산물 자급률은 2000년도 기준 53%이며, 총공급 대비 수산물 수입 비중은 1997년 47%, 1999 49%, 2000년 51%로 나타났다. 수산물 무역수지는 1961년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1년부터는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2000년 기준 145억 달러 적자).

○ 미국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수산물 생산은 1995년부터 약간 감소 추세이며, 2000년 현재 520만 톤에 이르렀다. 2001년도 상업용 어업생산량은 430만 톤으로 이 중에서 식용으로 330만 톤, 산업용으로 1백만 톤을 소비하였다. 수산물 수입은 1995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2000년 10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산물 무역수지 매년 적자가 약간씩 증가하여 1995년 39억 달러, 2000년 76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 3. 각국의 수산물 시장개방 실태

○ 한국의 수산물 시장개방 실태

한국의 수산물 관세는 증가세 중심의 관세체계를 가지며, 수산물 HS품목은 2002년 기준 총 403개로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 평균은 17.7%, 실행관세율 평균은 18.6%이다. 실행관세율이 20% 이상인 고관세 품목은 전체의 69.5%인 280개 품목으로 0302(신선냉장 어류), 0305(건조염수장, 훈제 어류,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 품목의 대부분은 20%의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한국 20대 수출품목의 실행관세율 평균은 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정관세 제도는 수입관리 및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목적으로 활용되며 2002년 현재 1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4개 품목에 대해 종가종량선택세 부과).

비관세 제도는 원산지표시제 및 수산물 검사검역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국내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 산지유통 및 도매시장은 미양허(WTO 서비스 협정)상태이다.

○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 실태

일본 수산물 HS품목은 2002년 기준 총 328개 품목(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포함)으로 03류가 238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49개, 12류 11개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체 328개 품목의 기본관세는 0%에서 40%까지 19단계이며, 기본관세율 평균은 7.9%이다. 이중 고관세로 분류되는 15% 이상 품목은 44개 품목(기본관세 기준), 5%는 103개, 10%는 74개, 15%는 39개로 나타났다.

실행관세율 평균은 6.0%(한국산 수산물 상위 14개 품목 수입관세 : 5.7%)이며 이중 3.5%는 98개, 10%는 38개, 7%와 9.6%는 각각 25개로 10% 이상의 품목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 제도로는 「식품위생법」, 「JAS법」 및 「계량법」 등에 의거한 식품검사 및 표기제도가 있으며, 수입할당(Import Quarter)제도는 일본 정부가 자원관리 및 생산자 보호의 수단으로 중점을 두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수입금액 및 물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결정한다.

○ 미국의 수산물 시장개방 실태

미국은 수산물 수입국이지만 수입품목은 단순하여 냉동참치, 참치통조림, 새

우, 대구필렛이 주종을 이루며, 소비가 많은 참치통조림, 철갑 상어알, 정어리 통조림 등 일부 수산가공품 이외에는 모두 무세 내지 극히 낮은 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수산물 HS 품목은 2002년 기준 총 467개 품목(종량세 15개 품목 포함)이고 이중 03류가 339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106개로 2개 부류가 전체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기본관세율 구조는 0%에서 35%까지 21단계(종량세 15개 품목 제외)로 이루어지며 기본관세율(2002년 기준, 종량세 15개 품목 제외) 평균은 1.15%이다. 이중 15% 이상 고관세 품목은 6개, 무관세 379개, 5% 18개, 6% 11개로 이루어져 있다. 비관세 제도에는 잠정적 장애요소, 구조적 장애요소, 문서 요건, 영양분석표, HACCP 식품위생기준, 항만안전조치 등에 의한 추가세 및 추가비용 등이 있다.

#### IV-1-4 한·일·미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해보면(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법 활용),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으나, 최근에는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품목에서 한국의 수산업 경쟁력이 일본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035류는 한국에 비해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으며, 034, 036, 037류는 한국이 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수산업 국제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무역특화지수는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전반적으로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우리나라도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



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일본시장에서 수입점유율이 높은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한국의 경쟁도를 비교한 결과(비교품목은 일본의 HS품목 기준에 따른 4단위 10개 품목과 9단위 10개 품목), HS 4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중국과 가장 경쟁이 치열하였고 다음으로 미국과 경쟁도가 높았으며,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의 경쟁도는 낮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경쟁도가 높은 국가를 살펴보면, 0301류는 중국, 0302류는 중국, 인도네시아, 0303류는 미국, 러시아, 0304류는 중국, 미국, 태국, 0305류는 미국, 중국, 0306류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0307류는 중국, 미국, 태국, 1212류와 1604류는 중국, 1605류는 중국, 태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시장에서 수입점유율이 높은 캐나다, 멕시코, 칠레, 에쿠아도르, 태국, 중국 등 6개국과 한국의 경쟁도를 비교한 결과(비교품목은 미국의 HS품목 기준에 따른 4단위 10개 품목과 10단위 8개 품목), HS 4단위의 경우, 1997년부터 2002년(1월~10월)까지의 평균 경쟁도는 0.14이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캐나다 및 태국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비교국가와의 경쟁도는 낮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경쟁도가 높은 국가는 0301류는 태국, 0302류는 캐나다, 0303류는 중국, 캐나다, 0304류는 중국, 칠레, 캐나다, 0305류는 캐나다, 중국, 0306류는 캐나다, 태국, 0307류와 1212류는 중국, 캐나다, 1604류는 태국, 에쿠아도르, 캐나다, 1605류는 캐나다, 태국으로 나타났다.

#### IV-1-5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

라 일국의 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산업 입장에서 영향분석을 통하여 대응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일 FTA 및 한·미 FTA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수산정책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향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었다.

먼저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CGEM형 활용), 수산부문 생산, 부가가치, 수입,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 증가(평균 26%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수출 증가(평균 14%)에 미치는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수산부문의 무역수지관리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비관세 조치 유지를 전제). 비관세 조치 철폐효과는 양자간 폐쇄경제하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이 중국 등 다른 경쟁국과 FTA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품목별 영향을 분석해보면, 활돔, 활농어, 냉동꽂치, 냉동명태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을 생산하는 업종은 저비용 구조, 부가가치 증대 등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구조개선이 사전에 추진되지 않으면 곤란한 업종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GTAP모형 활용), 한국측 수산어획과 기타식품 분야의 국내생산은 미미하게 감소하고, 미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태효과). 또한 수입효과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무역수지는 한국이 더욱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세 조치의 경우, 양국 모두 수산물 자유무역을 크게 방해하는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미국이 제도화한 항만 안전장치는 통관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영향을 살펴

보면, 냉동홍어, 냉동명태 등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IV-1-6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1. 수산업 부문 FTA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우리나라 수산업 자체가 취약산업이면서, 산업 세력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산업이므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면서 수산업 입장에서 바람직한 FTA 상대국을 선정하기는 곤란하다.

대일관계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활선어, 고차가공품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미관계에서는 미국은 원거리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소비자의 선호품과 차이가 있어 수출, 수입품이 제한적이다. 역외국인 중국은 냉동·냉장·활어수송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과 일본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일 FTA에 의한 관세철폐 효과는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산업 부문 FTA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적정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선어업 및 양식업에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수산물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측면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차별화 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FTA 추진에 있어서 수산업 부문 기본전략으로 우선 자생력 및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을 위한 물리적 여유가 필요하고, 둘째, 각 국가별로 어종별·품목별 특화를 통한 시장개방 협상안을 구성하며, 셋째, 주요 FTA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산부문은 별도 논의방안을 검토하고, 넷째, 10년~15년 정도 기간 및 민감순위에 따라 단계별 시장개방 합의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선 일반론적으로 몇 가지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산업 경쟁력이 강한 국가와의 FTA 협상, 둘째, 품질경쟁력의 우위를 가진 국가와 FTA 협상, 셋째, 수산부문의 경쟁력은 강하지만 이 국가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대상국가와의 FTA 협상, 넷째, 수산업 경쟁력이 약한 국가와의 FTA 협상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 협정 대상국 선정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적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를 택하고, 산업전반에 걸쳐 이익을 점할 수 있으나 수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관세정책과 비관세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주요 논의사항과 연계한 협상의 진행으로 최대한 국내 수산업의 대응방안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수산업의 발빠른 구조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만약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수산물 수입의 급증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상정하여 도입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 2.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 한·일 FTA 체결 대비 시사점과 대응방안

한·일 양국의 FTA 협상에 있어서 수산부문의 쟁점은 결국 일본의 비관세장벽의 철폐문제와 우리나라의 관세장벽의 철폐문제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본이 FTA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자국 수산업이 입을 피해를 가장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관세율 정책으로 수산

물 수입을 관리하고 영세 수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FTA로 인한 여타 산업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부문이 수산업이며 이를 위해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가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협상시 동등성 원칙에 입각하여 양자간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역내 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아시아적 표준을 형성하여 국제적 표준에 관한 협상에서 지역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FTA가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첫 걸음으로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블록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이러한 한·일 FTA 체결에 있어서 수산업 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규모면에서 축소과정에 있는 산업이며 수출에 있어서는 대일 의존형이므로, 예상되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및 어업경영의 체질개선을 고려하여 FTA 체결 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의 IQ제도의 철폐에 대한 반대를 협상과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IQ 수량제한을 관세화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장기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가와의 FTA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협상상대인 일

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향후 소비패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입수요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에 지나친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관세인하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비 증대 및 어류 생산 위축으로 상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우리의 대일 수출 증가는 일본과의 경쟁보다 역외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따른 무역이전 효과가 더 크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수입선이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일 FTA 체결은 두 개의 수산물 수입국가의 경제통합이므로 장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수출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공급 부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3국산 수산물 수입 증가는 필연적일 것이며, 그 결과 자원량 및 적정수요에 따른 수산업의 적정규모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기조, 생산자 보호라는 수입억제중심의 정책기조에서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수급안정)이라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협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향후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우리는 일본의 전략과 방법 등을 면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입장은 향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은 한·일 협상에서의 일본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한·일간 FTA 체결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업생산 분야(동일어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 수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수산업 협력을 통한 단기적인 경제효과 보다는 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의 공유 및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호혜적 협력모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 체결 대비 시사점과 대응방안

미국의 FTA정책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은 남미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주요대상지역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칠레, 싱가포르보다 시장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을 인식하여 아직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가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나 역으로 미국의 수산업이 얻을 수 있는 편익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수산업은 양국 모두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적자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양국 모두에게 수산정책의 주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협상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국의 수산업 및 수출입 구조,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 역시 매우 상이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활용한 협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분업과 경쟁의 논리에 따라 양국의 수산업이 가지는 각각의 특수성을 인정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산품목과 우리나라 소비자의 선호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 및 수입품목은 주로 가공품 및 냉동품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선호도에 맞는 새로운 수산제품의 개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FTA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 수산업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미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며, 미국 EEZ 내의 입어에 대한 조건도 고려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실명제, HACCP, Traceability System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통시스템 및 유통시설의 획기적인 개선과 병행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상응하여 최근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항만안전장치 및 바이오 테러 대응장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다국가 다산업 CGE 모형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산업에 관한 보다 세분화된 자료가 없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비록 한·일 FTA 체결의 효과가 산업분류 상 생산, 부가가치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보다 업종을 보다 세분하여 영향을 분석한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시적 차원의 업종별·어종별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주요한 수입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입할당(import quota) 등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한·일 FTA 체결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수입할당(import quota) 등 비관세장벽 제거의 효과 및 업종별 파급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산업종별 또는 품목별 산업연관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가 수산정책적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SUMMARY

(영문요약)

## I . Title

The Countermeasure against the Free Trade Agreement in the Fisheries Sector

## II .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Recently the tendency of world trade magnifies the regional FTA along with multilateral trade of WTO which integrates world economy.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regional FT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is also increased after ASEAN+3 conference in 2002.

This study considers the effects of the FTA on fisheries supply and demand and securing export markets.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existing researches have been analyzed, and trade structures, competitiveness of fishery items of each country and economic impacts in fisheries are estimated and calculated within the CGE and other econometrics models.

## III. Results of the Research

Economic impacts of FTA'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Korea and the U.S.A. are summarized such that it is difficult to select a proper country

which will give positive effects on fisheries as well as on national economy as a whole, because fisheries of Korea cuts down its size and is very vulnerable. Korea would, however, basically gain relative advantages over Japan even if imports of raw and fresh fish and highly processed fishery products would be increased. The impact of FTA with the U.S.A. would be very limited when the long transportation distance and the difference of preferences are regarded.

The tariff elimination of Korea and Japan resulting from the FTA would only have short run effects, since China will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its shares of both fishery markets.

The premises of fisheries in driving FTA's are such that the industry should raise competitiveness by going through optimal structural reform, should convert catching and culturing fisheries into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should compete fishery products for quality rather than price, and should make an effort to discriminate its products from foreigners.

The basic strategies of fisheries are suggested in promotion of FTA's that firstly, the industry needs to have physical resources to raise its competitiven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suggestions in detail on products by items and by kinds, thirdly, the direction of discussion should be examined based on exhaustive case studies, fourthly, the negative impacts should be minimized by prolonging execution period up to 10 to 15 years and by opening market stepwise based on the sensitivity of each product.

In driving FTA's it is necessary to devise various plans for domestic countermeasures as well as negotiations by classifying partners into strong or weak competitiveness in fisheries.

For the FTA with Japan, proper schemes should be prepared to cope with Japanese attempt of exclus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o attract Japanese companies which have the finest technology of processing fishery products, and to share advanced technology for development of fishing communities, and to design long run cooperative models for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s and resource management. Finally it is required to use these schemes for FTA's benchmarks.

In addition to the short run effects structural reform and improvement of fishery management should be examined, and it is necessary to have market access negotiation schemes which reflects contents of tariff concession of FTA between Japan and Singapore. It is also required to set up bilateral criteria based on equal treatment principle, and to adjust tariff rate or to utilize flexible Customs Duties or Safeguards for the sensitive item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imports.

For the FTA with the U.S.A. since trade deficit is dominant and basic average tariff rate is about 1.1% in fisheries, effects of the agreement would be very little.

Strategies against continuous trade deficit is required, however, and an alternative negotiation scheme regarding the entry into fishing grounds of the U.S. EEZ should be achieved. Defining freezing thorn back and pollack as sensitive items we need to protect them from concession, to adjust Customs Duties, to utilize flexible Customs Duties or Safeguards, and to device various plans. If the sanitary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integrated domestic sanitar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repared or advanced systems of the U.S. or other European countries may be adopted.

# CONTENTS

<b>SUMMARY .....</b>	<b>i</b>
<b>Chapter I Introduction .....</b>	<b>1</b>
section 1. Necessity and objective of study .....	1
section 2. Literature review .....	5
section 3. Scope and method of study .....	8
<b>Chapter II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Driving the FTA .....</b>	<b>11</b>
section 1. Implications and formation of the FTA .....	11
1. Implications of the FTA .....	11
2. Formation of the FTA .....	12
3. Political and economic effects of the FTA .....	15
section 2. Relation between the FTA and international agreement .....	18
<b>Chapter III The Case Study for Fisheries Sector in the FTA .....</b>	<b>21</b>
section 1.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21
1. Background and main issues of driving NAFTA .....	21
2. Cases in relation to market access for fishery products .....	31
3. Summary and politic suggestions .....	40

section 2. The FTA between EU and Chile .....	41
1. Background and main issues of driving NAFTA .....	41
2. Cases in relation to market access for fishery products .....	45
3. Summary and politic suggestions .....	50
section 3. The FTA between Japan and Singapore .....	51
section 4.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le .....	53
1. Background and main issues of driving NAFTA .....	53
2. Cases in relation to market access for fishery products .....	60
3. Summary and politic suggestions .....	64

**Chapter IV The Present Status and the Realities  
of Opening Market by Countries ..... 67**

section 1.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of inter-state .....	67
1.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	67
2.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USA .....	75
section 2. Fisheries status and trade system by countries .....	83
1. Fisheries status and trade system in the world .....	83
2. Fisheries status and trade system in Korea .....	87
3. Fisheries status and trade system in Japan .....	100
4. Fisheries status and trade system in USA .....	106
section 3. The realities of fisheries opening market by countries .....	117
1. The realities of fisheries opening market in Korea .....	117
2. The realities of fisheries opening market in Japan .....	129
3. The realities of fisheries opening market in USA .....	144

<b>Chapter V Comparison of Competitiveness between Countries in Fisheries Sector</b> .....	<b>155</b>
section 1. Comparison of competitiveness between countries in fisheries sector .....	155
1. Analytical method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155
2. The import-export trend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Japan and USA .....	159
3. Analysi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fisheries in Korea, Japan and USA .....	163
section 2. Competitiveness relation of fisheries items by countries in the market of Japan and USA .....	167
1. Analysis on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products in Japanese markets .....	167
2. Analysis on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products in Japanese markets .....	182
<b>Chapter VI Analysis on Economic Effect of the FTA in fisheries sector</b> .....	<b>199</b>
section 1.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fisheries sector .....	200
1. The structure of a multi-country, multi-sector CGE model .....	200
2. The Industry classification of Korea and Japan economy .....	218
3. Economic effects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fisheries sector .....	220

section 2.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USA on fisheries sector .....	224
section 3. Effects of the FTA on fisheries items .....	229
1. Analytical method(a one-country CGE model) .....	229
2. Effects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fisheries items .....	244
3. Effects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USA on fisheries items .....	248
<b>Chapter VII Countermeasures against the FTA in Fisheries Sector .....</b>	<b>253</b>
section 1. Basic stance of the FTA in fisheries sector by countries .....	253
section 2.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driving countermeasures .....	257
1. Directions of driv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 FTA between Korea and Japan in fisheries sector .....	257
2. Directions of driv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 FTA between Korea and USA in fisheries sector .....	263
section 3. The standard of concession of tariff and the plans of safeguard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FTA .....	267
1. The standard of concession of tariff by fisheries items against the FTA negotiation .....	267
2. Examination of safeguard application in fisheries sector .....	268
<b>Chapter VIII Conclusion .....</b>	<b>279</b>
<b>Literature .....</b>	<b>283</b>
<b>Appendix .....</b>	<b>287</b>

# 목 차

요 약 문 .....	i
<b>제1장 서 론 .....</b>	<b>1</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선행연구 .....	5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8
<b>제2장 FTA의 추진배경과 의의 .....</b>	<b>11</b>
제1절 FTA의 의미 및 형태 .....	11
1. FTA의 의의 .....	11
2. FTA의 형태 .....	12
3.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	15
제2절 WTO 협정과 FTA와의 관계 .....	18
<b>제3장 주요 FTA의 수산부문 사례분석 .....</b>	<b>21</b>
제1절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21
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	21
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 .....	31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40



제2절 EU-칠레간 FTA .....	41
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	41
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 .....	45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0
제3절 일-싱가포르간 FTA .....	51
제4절 한-칠레간 FTA .....	53
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	53
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 .....	60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4
<b>제4장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시장개방실태 .....</b>	<b>67</b>
제1절 국가간 정치·경제적 관계 .....	67
1. 한·일간 정치·경제적 관계 .....	67
2. 한·미간 정치·경제적 관계 .....	75
제2절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교역구조 .....	83
1. 세계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	83
2. 한국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	87
3. 일본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	100
4. 미국의 수산업 현황과 수산물 교역구조 .....	106
제3절 각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	117
1. 한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	117
2.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	129
3. 미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	144

<b>제5장</b>	<b>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b> .....	<b>155</b>
제1절	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	155
1.	국제경쟁력 분석방법 .....	155
2.	한·일·미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	159
3.	한·미·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	163
제2절	일본 및 미국시장에서 수산물 품목별 경합관계 .....	167
1.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치 및 경쟁력 분석 .....	167
2.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치 및 경쟁력 분석 .....	182
<b>제6장</b>	<b>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b> .....	<b>199</b>
제1절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	200
1.	다국가·다산업 CGE모형의 구조 .....	200
2.	한국·일본 경제의 산업분류 .....	218
3.	한·일 FTA체결의 수산부문 경제효과 .....	220
제2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	224
제3절	한·일 FTA 및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 .....	229
1.	분석방법(1국가 CGE 모형의 구조) .....	229
2.	한·일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 .....	244
3.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 .....	248
<b>제7장</b>	<b>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b> .....	<b>253</b>
제1절	FTA 추진에 있어서 수산부문 기본입장 .....	253

제2절 FTA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257
1. 한·일 FTA 체결 대비 수산업 부문 추진방향과 협상전략 .....	257
2. 한·미 FTA 체결 대비 수산업 부문 추진방향과 협상전략 .....	263
제3절 FTA 체결에 따른 관세양허기준과 Safeguard 활용방안 .....	267
1. FTA 협상 대비 수산물 품목별 관세양허기준 .....	267
2. 수산부문 Safeguard 활용검토 .....	268
<b>제8장 결 론 .....</b>	<b>279</b>
<b>참고문헌 .....</b>	<b>283</b>
<b>부 록 .....</b>	<b>287</b>

## 표 목 차

<표 2-1> 지역무역협정 체결수 .....	13
<표 2-2> 주요 지역무역협정 .....	14
<표 3-1> NAFTA 3국 주요 경제 지표(1991년 기준) .....	22
<표 3-2> 관세철폐시기 및 대상품목 구분 .....	23
<표 3-3> 03류의 관세철폐시기 및 대상품목의 수 .....	32
<표 3-4> 미국 수산물의 관세율 구조와 기본관세율(2002년 현재) .....	33
<표 3-5> 미국 수산물의 NAFTA 협정 회원국에 대한 실행관세율(2002년 현재) ..	34
<표 3-6> 캐나다 수산물의 관세율 구조와 기본관세율(2002년 현재) .....	35
<표 3-7> 멕시코의 수산물의 관세율 구조와 기본관세율(2002년 현재) .....	36
<표 3-8> EU의 칠레 농산물 양허사항 .....	43
<표 3-9> 연차별 관세 인하의 비율 .....	45
<표 3-10> 수산물에 있어서 관세할당 .....	46
<표 3-11> 수산물에 있어서 특혜관세 .....	46
<표 3-12> EU의 수산물에 있어서 관세할당 .....	47
<표 3-13> 칠레의 수산물에 있어서 특혜관세 .....	48
<표 3-14> 부속서 X 부록 「수산기업에 관한 프로토콜」 내용 .....	49
<표 3-15>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	55
<표 3-16> 칠레 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	56
<표 3-17> 한·칠레 FTA 체결의 우리경제에 대한 예상 효과 .....	60
<표 3-18>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관세양허 내용 .....	61

<표 3-19> 수산부문 5년 내 관세철폐 품목 .....	61
<표 3-20> 수산부문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 .....	63
<표 4-1> 한국과 일본의 교역현황 .....	68
<표 4-2> 한국과 일본의 투자실적 .....	69
<표 4-3> 한·일간 상대국 방문객수 .....	69
<표 4-4> 한·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	72
<표 4-5> 2000년도 한·일의 어업종사자 수 .....	72
<표 4-6> 한·일의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량 비교 .....	73
<표 4-7>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무역수지 .....	74
<표 4-8> 대일본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1) .....	74
<표 4-9> 한·미 교역현황 .....	77
<표 4-10> 한·미 투자현황 .....	78
<표 4-11> 대미 수산물 교역수지 .....	79
<표 4-12> 대미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1) .....	80
<표 4-13> 주요국별 수산물 생산추이 .....	84
<표 4-14> 어업형태별 세계 수산물 생산현황 .....	85
<표 4-15> 세계 수산물 교역구조 및 규모 .....	86
<표 4-16> 세계 어획물의 용도별 이용비중 .....	87
<표 4-17>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구조 .....	88
<표 4-18> 한국의 어업별 수산물 생산현황 .....	89
<표 4-19> 어가구원 및 어업종사자 .....	90
<표 4-20> 어가, 농가, 도시가계의 소득비교 .....	91
<표 4-21> 동물성 단백질 공급실태 .....	92
<표 4-22> 한국의 수산물 소비량 연도별 추이 .....	92

<표 4-23>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무역수지 .....	94
<표 4-24>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수산물 점유율 .....	95
<표 4-25> 한국의 대일 10대 수입 수산물 .....	97
<표 4-26> 한국의 대미 수산물 수출액 순위 30개 품목(1999년~2001년 평균) .....	98
<표 4-27> 한국의 대미 수산물 수입액 순위 30개 품목(1999년~2001년 평균) .....	99
<표 4-28> 일본 어업 종사자 수 추이 .....	100
<표 4-29> 일본의 수산물 어업별 생산현황과 생산목표 .....	101
<표 4-30> 일본의 수산물 수급현황 .....	102
<표 4-31> 일본의 수산물 총공급 대비 수입수산물 비중 .....	103
<표 4-32> 일본의 주요국별 수산물 수입현황 .....	105
<표 4-33> 일본시장에서의 주요국별 품목별 수입구조(1999년 기준) .....	106
<표 4-34> 미국의 어업형태별 어획량 추이 .....	107
<표 4-35> 미국의 상업용 어업생산 규모 .....	108
<표 4-36> 미국 상업용 어획물의 최종소비, 1992-2001 .....	108
<표 4-37> 미국 해양레저에 의한 어류 어획량 및 방류량 .....	109
<표 4-38> 미국 수산물 가공생산 현황 .....	110
<표 4-39> 미국 수산물 교역현황 .....	111
<표 4-40> 미국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실적, 1992-2001 .....	113
<표 4-41> 미국 주요 품목별 수출입실적 .....	114
<표 4-42> 미국 주요 국가별 수출입실적 .....	116
<표 4-43>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기본관세율 구조(2002년도) .....	118
<표 4-44> 수산식품 품목분류별(03류) 기본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	119
<표 4-45>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	120
<표 4-46>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실적관세율 구조(2000년 기준) .....	121

<표 4-47> 연도별 수산식품 조정관세 부과 현황 .....	124
<표 4-48> 일본의 대한국 수출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실적관세(2001년) .....	127
<표 4-49> 일본의 대한국 상위 20대 수출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 .....	128
<표 4-50> 일본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2002년도 기본관세 기준) .....	134
<표 4-51> 일본의 수산물 03류 관세율 구조(2002년 기본관세 기준) .....	136
<표 4-52> 일본의 어종별 수입현황과 관세율 .....	137
<표 4-53>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 관세율 .....	139
<표 4-54> 식품수입관리에 관한 주요 법령 .....	140
<표 4-55>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 현황 .....	142
<표 4-56> 일본의 대한국 어패류에 대한 수입할당 현황 .....	143
<표 4-57> 어패류에 대한 일본의 수입할당량 .....	144
<표 4-58> 미국 수산물의 기본 관세율 구조(HS 2단위) .....	147
<표 4-59> 미국 HS 03류 수산물의 기본 관세율 구조 .....	149
<표 5-1>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	159
<표 5-2> 일본의 수산부문 무역수지 추이 .....	161
<표 5-3> 미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	162
<표 5-4> 한·일·미 수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163
<표 5-5> 한·일·미 수산업의 무역특화지수 .....	166
<표 5-6> 주요국의 일본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168
<표 5-7> 국가별 HS 4단위 분류별 일본시장 점유율(1999년) .....	169
<표 5-8> 일본에서의 한국수산물 수입점유율(HS 4단위분류별) .....	170
<표 5-9>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전체에서 한국수산물이 차지하는 류별 점유율 .....	171
<표 5-10> 수산물 수입점유율 분석방법 .....	173
<표 5-11>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 품목별(4단위) 국별 경쟁도 .....	174

<표 5-12>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 주요 품목별(9단위) 국별 경쟁도 .....	176
<표 5-13> CMS 모델 .....	177
<표 5-14> 연도별 대일수출 증감요인 추이 .....	179
<표 5-15> 품목별 수출증감요인 변동추이 .....	181
<표 5-16> 주요국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183
<표 5-17> 국가별 HS 4단위 분류별 미국시장 점유율(2001년) .....	184
<표 5-18> 미국에서의 한국수산물 수입점유율(HS 4단위분류별) .....	185
<표 5-19> 미국 수입시장 전체에서 한국수산물이 차지하는 류별 점유율 .....	186
<표 5-20> 수산물 수입점유율 분석방법 .....	187
<표 5-21> 미국시장에서의 연도별 품목별(4단위) 국별 경쟁도 .....	188
<표 5-22> 미국시장에서의 연도별 주요 품목별(10단위) 국별 경쟁도 .....	191
<표 5-23> 연도별 대미수출 증감요인 추이 .....	194
<표 5-24> 품목별 수출증감요인 변동추이 .....	195
<표 6-1> 한·일 산업분류표 .....	219
<표 6-2> 한·일 FTA 체결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 .....	220
<표 6-3> 한·일 FTA 체결의 수출입 효과(%) .....	221
<표 6-4>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	225
<표 6-5>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	226
<표 6-6>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227
<표 6-7>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백만 US\$) .....	227
<표 6-8> 대 일본 20대 주요 수입수산물 및 한국의 관세율(%) .....	244
<표 6-9>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	245
<표 6-10> 대 미국 20대 주요 수입수산물 및 한국의 관세율(%) .....	249
<표 6-11>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 .....	250
<표 7-1> 금년부터 3년내 중국산마늘 도입규모 .....	273



## 그림목차

<그림 4-1>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93
<그림 4-2> 일본의 수산부문 무역수지 추이 .....	104
<그림 4-3> 일본의 식품수입 관리체계 .....	141
<그림 5-1> 연도별 대일수출 증감요인 추이 .....	180
<그림 5-2> 연도별 대미수출 증감요인 추이 .....	194
<그림 7-1> 우리나라의 셰이프가드조치 발동절차 .....	275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은 1989년 GATT/BOP 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단계별로 수입자유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1997년 7월 1일자로 수산물 전 품목이 '수입자동화 승인품목화'하여 개방되었고, 현재 수산물 수입은 내수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상품의 종류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산물과 차별화되지 않는 중국산 수산물은 대부분 내수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수산물 시장의 수급과 가격은 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국제수산물 시장의 가격변동과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내 수산업 정책도 각종 보조금의 감축의무와 더불어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에 합치시켜 나가야 하며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더욱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및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상실과 출어포기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외신어장개척, 해외개발수입, 바다목장화 등 연근해 자원 조성사업, 그리고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등을 통하여 수산물의 국내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어적인 시각에 입각한 수산물 수입억제방안이나 열위품목

의 수입확대 우려론으로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곤란하다. 물론 수입수산물의 급격한 증대는 국내 수산업에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 자유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방어적 시각은 동물성 단백질의 안정적 수급과 어업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무역질서에 대응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의 추진방침에 수산부문도 한·칠레 FTA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멕시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상정하여 그 영향과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FTA는 경제통합의 일종으로 완전경제통합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간 협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세계 무역질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추세에 따라 지금까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지역간 또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그 동안 FTA 확산에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ASEAN+3(한·중·일) 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 FTA 추진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일본이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데 이어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ASEAN과 경제동반자관계(EPA)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10년 안에 양자간 FTA를 체결키로 했다. 중국은 지난 11월 4일 ASEAN+3회의에서 ASEAN과 2010~2015년까

지 FTA를 맺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중·일은 FTA 체결을 목표로 2003년도 3국 공동 연구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창설, 즉 EU나 NAFTA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나라<sup>1)</sup>도 지난 2002년 10월 24일 남미의 수산대국 칠레와의 FTA 체결에 가서명하였으며, 한·일 FTA 추진을 위해 양국간 공동연구회를 추진하고 있고, 이 외에도 한·싱가포르, 한·멕시코, 한·아세안 등과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보다 긴밀한 경제 파트너쉽 형성을 위해 FTA를 추진하기로 하고,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금년 7월 9일~10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차 회의를 10월 1일~2일 동경에서 개최하였으며, 3차 회의를 지난 12월 2일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나 수산업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2003년 1월 현재).

그런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상호국 또는 모든 산업에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는 당사국 중 다른 한 국가의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 수산업에게 있어서 단기적으로 좋은 기회이며, 장기적으로는 경합과 분업의 논리에 의해 수산업의 생산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여러 업종이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을 생산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FTA 체결은 기술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일부

1)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주재 대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칠레, 터키, 이스라엘 및 남아공 등 주요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되,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게 되었음.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업종에게는 큰 변화를 강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세계 최대 수산물 시장인 일본 및 미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수출 입구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한·일 FTA 및 한·미 FTA 체결이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수산물 수출시장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또 대상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관세율 제거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제통상협상에 있어서 예외적 특수산업으로 취급되어온 수산업 특유의 (우리나라 수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추진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선행연구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주요거점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칠레와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한 이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관련연구는 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외교통상부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또 각 부처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산업별로 연구·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전략, FTA 체결(Post-FTA) 이후 정책방향 등은 FTA 체결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구조 및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국에 따라 차별되는 지속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한·칠레 FTA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도 부분균형 모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산부문의 연구에서 주문배(1999)는 한·칠레 FTA 체결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칠레 FTA 체결이 국내수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단계별 관세인하 또는 별도협정의 체결, 세이프가드, 원산지 등 무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강구, 수산업에 있어서의 분업과 협력관계 모색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는 수산분야의 FTA에 대한 최초연구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문배(1999)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 전체의 손익과 개별산업의 손익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한·칠레 FTA 체결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또 농림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가치이외에 비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검토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성쾌, 주문배, 심기섭(1999)의 연구는 수산부문에 있어서 거대경제권(한·중·일·미)과의 FTA 추진에 따른 영향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수산부문 거대경제권과의 FTA 도입전략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무역장벽에 대한 자료의 제약상 관세의 철폐를 자유화조치로 간주하여 국내(해외) 수입가격의 변화가 수입(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산부문 이외의 FTA 관련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김도형 외(1999)의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FTA의 추진이 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합시장의 규모만이 아니라 여하히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경쟁촉진과 절도있는 자본, 기술, 서비스 무역, 선진형 제도, 상관행에 기초한 양국산업, 무역구조의 장기 동태적 효율성확보에 의해 단기적인 국내외 피해를 극소화하고 협정의 편익을 역외국과 균점할 수 있는 이른바 선진형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는 산업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수산업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조류에 동승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무역 자유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EU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기업문화가 유사한 일본과 쌍무적 FTA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실추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BIT, FTA에 따라 우리 업계는 물론 일본 업계 (예컨대 대한 투자확대로 한국의 자본스톡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일본의 자본스톡은 감소함으로써 국내투자-고용 등의 감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양국간 산업구조와 기업간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조기에 추진하는 것 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일

FTA 추진시 민간품목·사안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제외시키거나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노동과 환경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정인교(1998)는 미국의 FTA 정책 전개과정과 정책목표를 고찰하여 보고, 미국의 향후 FTA 정책방향을 분석하였는데, FTA 체결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추진되어야 하고,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무역블록의 창설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대상국가를 선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완화효과, 투자자유화의 효과 및 FTA 형성에 따른 역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효과, 기타 정치·외교·안보의 측면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농산물,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FTA 체결에 따른 연구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산업 분야에서 한·일 FTA 및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 시장확보와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추진방침에 부응하여, 한·미,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의 주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수산분야에 대한 사례, 한·미·일의 국가별 수산업 현황, 교역구조, 경쟁관계, 시장개방 실태 등과 한·미, 한·일 FTA 추진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연구범위 및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FTA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적 논리적 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법·제도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문헌조사법에 의한 국별 수산업 현황과 수산물 교역구조를 살펴 본 후, 각국의 수산물 시장개방(관세율 구조, 수량규제, 비관세 장벽, 법·제도·관행 등) 실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지수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 등을 이용하여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하고, 또 일본의 수산물 시장 및 미국의 수산물 시장에서 수입점유율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이용하여 품목별 경합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수산업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국가·다산업 CGE 모형(Multi-country, multi-secto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과 1국가 CGE모형(A one-country CGE model)과 GTAP 모형을 활용하여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과제의 추진에 있어 미국 및 일본의 수산업과 수산물 시장개방 현황자료 수집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하여 연구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FTA의 추진배경과 의의, 형태 그리고 WTO 등 기존 국제규범과의 관계 등을 통해 FTA의 추진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NAFTA 등 주요 FTA의 수산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교역구조를 비교·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국가별 관세, 비관세제도 등을 통해 국가별 시장개방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우선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ITI) 등을 이용하여 한·미·일의 국별 수산물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불변시장점유율(CMS) 모형 등을 이용하여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및 미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품목별 경합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수산업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국가·다산업 CGE 모형(Multi-country, multi-secto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과 GTAP 모형을 이용하여 한·일 FTA 및 한·미 FTA 경제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한·일 FTA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품목별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1국가 CGE모형(A one-country CGE model)과 GTAP 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FTA 체결 효과를 품목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7장에서는 한·일,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의 대응방안으로 한국, 일본, 미국의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의 기본 입장을 검토하였으며,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의 추진방향 및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였고, 추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2장 FTA의 추진배경과 의의

### 제1절 FTA의 의미 및 형태

#### 1. FTA의 의의

최근 세계 무역질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FTA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일종으로 완전경제통합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간 협정을 의미한다.

FTA에서 무역 자유화란 WTO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의 단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관세의 완전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이후 양자간 및 지역내 각국간 FTA를 체결,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더욱이 투자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여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이 현저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하는 측면보다

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보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무역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 2. FTA의 형태

자유무역협정을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역경제통합이란 일정한 지역내에 위치한 국가들간에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시장의 경제적, 기술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국가간 경제협력의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통합의 정도에 따라 부문별 특혜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의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부문별 특혜협정 : 특정상품의 교역에 대해서만 무역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적용되는 협정
- ②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반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므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문제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무역굴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을 강화하고 있음. 1994년에 출범한 북미자유협정(NAFTA)이 그 사례임.
- ③ 관세동맹(Customs Union) :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동시에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동의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경제통합임. 따라서 무역굴절 문제가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음.
- ④ 공동시장(Common Market) :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유럽연합의 전 단계인 유럽공동시장(EEC)이 여기에 속함.

- ⑤ 경제동맹(Economic Union) : 회원국간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뿐만 아니라 화폐금융, 물가 및 세입세출 등 거시정책과 노동 등 사회정책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장 진전된 형태의 협정

**【경제통합수준에 따른 발전단계】**

자유무역협정(NAFTA) → 관세동맹(EC) → 공동시장(MERCOSUR)  
 → 경제통합(EU가 지향 : 공동의 경제정책과 화폐통합 단계).

최근,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WTO 사무국에 통보된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수는 250여개이며, 그 중에서 168여개가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협정 체결 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 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 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은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지역의 FTA는 <표 2-1>, <표 2-2>와 같다. 그 내용을 보면, 관세 철폐만이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과학기술협력, 인재 육성 등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게 체결되고 있다.

**<표 2-1> 지역무역협정 체결수**

연도별	1960	1990	2001	2002
체결수	2	30	156	168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2-2> 주요 지역무역협정

지역	지역무역협정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유럽연합) &lt;관세동맹 : 15개국&gt;</li> <li>○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lt;FTA :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gt;</li> <li>○ CEFTA(중구자유무역협정) &lt;폴란드, 체코 등 6개국&gt;</li> <li>○ EU와 EFTA, EU와 중동구, EU와 지중해제국과의 FTA</li> </ul>
C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국가공동체(CIS)경제동맹 &lt;FTA : 구소련제국&gt;</li> </ul>
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lt;미국, 캐나다, 멕시코&gt;</li> </ul>
중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CM(중미공동시장) &lt;관세동맹 : 과테말라, 본둘라스 등 5개국&gt;</li> <li>○ CARICOM(카리브공동체) &lt;관세동맹 : 자마이카, 가이아나 등 13개국 1지역&gt;</li> <li>○ 안데스공동체 &lt;관세동맹 :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5개국&gt;</li> <li>○ MERCOSUR(남미공동시장) &lt;관세동맹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gt;</li> </ul>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FTA(아세안자유무역지역) &lt;FTA : ASEAN가맹 10개국&gt;</li> <li>○ SAPTA(남아시아특혜무역지역)</li> <li>&lt;관세상호인하협정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gt;</li> </ul>
오세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R(경제협력긴밀화협정) &lt;FTA : 호주, 뉴질랜드&gt;</li> </ul>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CC(중동협력회의) &lt;관세동맹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수장국연방 등 6개국&gt;</li> </ul>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 &lt;관세동맹 :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8개국&gt;</li> <li>○ UDEAC(중부아프리카관세경제동맹) &lt;카메룬, 콩고 등 6개국&gt;</li> <li>○ COMESA(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lt;상호관세인하 : 이집트, 케냐 등 22개국&gt;</li> <li>○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lt;FTA : 남아프리카, 짐바브 등 14개국&gt;</li> </ul>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그 동안 지역주의에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sup>2)</sup> 그러나 일본은 2002년에 싱가포르와 자유무

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칠레와 2002년 하반기에 가서명하였다. 또한 중국도 2000년 11월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양지역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중국과 ASEAN은 FTA 체결을 위한 협의를 2004년 6월 말까지 종료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21세기 개방주의 기치하에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가서명에 이어 싱가포르, 멕시코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3.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 ① 경제적 효과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기존의 지역무역협정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회원국간 무관세 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부문에 생산과 수출을 특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볼 때,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장기능에 의한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에 입각한 논리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부문에서 공동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권이 떨어질 수 있다.

---

2) WTO 회원국 중에서 FTA 체결의 경험이 없는 국가는 한국, 대만, 중국뿐임.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역내 교역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무역이 증대되고 분업화가 촉진되어 경제의 효율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인 효과(Static Effects)와 동태적인 효과(Dynamic Effects)로 구분할 수 있다.

- 정태적인 효과 :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 동태적인 효과 :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와 역내 시장에서 상대국의 경쟁자와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이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며 통합 상대국간의 산업 부문별 현황과 상대적인 관계, 성장 잠재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 ② 정치·외교적 효과

소수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관련국가들이 경제적 공동번영 이외에도 정치적 안정 및 민주적 제도의 정착 등 정치·외교적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 일례로 NAFTA의 체결 이후 멕시코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1997년 7월 6일 총선에서 멕시코제도혁명당(PRI)이 69년간의 장기집권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입지확보를 통하여 민주주의 토착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3)</sup>

지역무역협정 회원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 및 협력 유도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1994년 12월 멕시코의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미 대통령은 동년 1월부터 발효중이던 NAFTA의 성공적인 정착과 멕시코 폐소화

---

3) 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pp.86~93.

폭락 9일전에 열렸던 마이애미 미주정상회의에서 결의한 2005년까지 FTAA 창설목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환안정기금 2000억 달러를 멕시코에 지원한 바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행정적인 절차나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 의해 회원국간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패널 등은 회원국들간의 관계개선 및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분쟁해결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대치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업계와 의회가 한반도의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 나갈 경우 역외국들과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변화로 인하여 민감한 반응이 야기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 제2절 WTO 협정과 FTA와의 관계

WTO 출범으로 다자간 무역 질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GATT/WTO체제의 다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주의로 지칭되기도 한다.

다자주의란 GATT 및 WTO협정에 포함된 규범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정신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며,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지역주의란 소수 회원국간 상호특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도입한다.<sup>4)</sup> FTA는 역내 국가간 별도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적용되어 역내국가간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간의 특혜적인 교역을 허용함으로써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조치(MFN)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WTO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자간 또는 소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WTO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체제의 창설을 주창했던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GATT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조항을 GATT 규범(제24조)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특정 조건하에서 관세동맹과 함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WTO 협정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원칙 적용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외인정 요건으로 “협정국간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자유무역협정에서 농림수산물을 비롯한 예외품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당해 조항

---

4)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p.17.

(GATT 제24조)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정 당사국은 자국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의 예외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함에 따라(DDA Par. 29)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온 상당한 부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



## 제3장 주요 FTA의 수산부문 사례분석

### 제1절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 1) NAFTA의 추진배경 및 체결

###### (1) NAFTA의 의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으로, 1989년 캐나다-미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래 3국간 협상을 계속한 끝에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협정을 조인하고,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NAFTA는 15년간 3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단계적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로 인하여 북미지역에 인구 3억 8천만명, GDP 3조 3천억 달러의 세계최대 단일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NAFTA는 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의 경제통합 단계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 간에 체결된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NAFTA의 배경 및 체결과정

1994년 1월 1일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역내국 간의 교역증진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대 역외국 경쟁력 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 경제권 창설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멕시코의 노동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NAFTA라는 국제적인 약속을 통해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지속·발전시키고,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에의 안정적인 진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NAFTA 결성을 위한 협상은 1991년 6월 12일 제1차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정식으로 시작되어 1992년 8월 12일에 종료된 제7차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보게 되었다.

실질적인 협상과정이 1년 2개월에 불과할 만큼 조속한 타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참가 3국 모두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블록화현상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미국시장 점유율의 상대적인 하락을 우려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경쟁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미국은 멕시코로부터의 불법이민문제 해결과 중남미 제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협상을 전개해 나아갔다.

NAFTA는 권내 인구 4억 1000만명(2000), GDP 11조 2049억 달러(2000)의 대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당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였다.

<표 3-1> NAFTA 3국 주요 경제 지표(1991년 기준)

항 목	미국	캐나다	멕시코
GDP(국내총생산, 단위:10억 달러)	5,673	501	283
인구(단위:백만명)	253	27	83
1인당 국민소득(달러)	22,400	21,980	3,400
시간당 평균임금(제조업, 달러)	14.77	16.02	1.80
수출(90년 기준, 억 달러)	3,936	1,260	271
수입(90년 기준, 억 달러)	4,953	1,167	300
유아사망률(1천명 기준)	10	7	29

## (3) NAFTA의 주요내용

NAFTA는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원산지 규정의 강화, 노동·환경 관련 보완조치 실시,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발효즉시 철폐하는 품목과 5년, 10년, 15년 이내에 철폐하는 품목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lt;표 3-2&gt; 관세철폐시기 및 대상품목 구분

구분	비중	철폐시기	대상품목		
			미국	캐나다	멕시코
A	50%	1994. 1. 1.	-약 7,300개 *컴퓨터, 통신제품, 항공장비, 의료품)	-약 4,200개	-약 5,900개 *기계류, 전자, 수송기 계(단, 자동차 제외)
B	15%	1998. 1. 1. (1994년부터 5년간 동일비율로 철폐)	-약 1,200개 *섬유류, 자동차 관 련 제품	-약 1,400개	-약 2,500개
C		2003. 1. 1. (1994년부터 10년간 동일비율로 철폐)	-약 700개	-약 1,600개	-약 3,300개
C+	35%	2008. 1. 1. (1994년부터 15년간 동일비율로 철폐)	-약 60개 *세라믹타일, 유리 잔 등 저가유리품, 설탕, 고무제품	-낙농품, 가금 류	-옥수수, 식용콩, 낙농 품

자료 : NAFTA 협정문, 1992. 9.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 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할 계획이다.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



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된다. 이 협정의 체결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증대, 멕시코의 환경악화 등 미국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다. 비관세장벽의 경우 쿼터, 수입허가제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원산지규정은 원칙적으로 세번변경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컬러TV 및 컴퓨터 등 역내산업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기준을 설정하였다. 노동과 환경관련 보완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은 미국기업의 멕시코 이전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미국 내 실업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문 상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목적(협정문 제1장)

제1장에서는 GATT 제24조에 따라 NAFTA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 협정의 목적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1)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국경을 넘어선 이동을 촉진한다. (2)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촉진한다. (3) 투자기회를 개방하고 확대한다. (4) 지적소유권을 보호한다. (5) 신속한 분쟁해결 처리절차를 확립한다. (6) 협정 확대를 위한 틀을 확립한다. 목적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만, NAFTA는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역외공동관세나 공동경제정책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 ②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제3장)

제3장에서는 상품무역에서의 내국민대우, 관세철폐, 관세환급의 철폐, 수출입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세철폐 스케줄은 즉시 시행하는 것, 5년, 10년, 15년의 계획으로 실시되고, 자동차, 섬유, 의류, 농산물 등의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협정발효 예정인 1994년 1월부터 철폐된다. 관세환급제도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간에는 2001년에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 규정도 있다. 또 수출입제한도 폐지된다. 관세수수료에 대해서는 신규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현존 수수료를 정해진 시기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타 제3국 덤핑, 상품무역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③ 원산지 규정(제4장)

외국기업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하여 북미시장을 겨냥하여 거래를 행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원산지 규정이다.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북미산으로 간주되어 북미지역 내의 거래에서 관세가 경감된다. 이것은 북미에 진출해 있는 모든 외국인 기업에 적용된다. 북미산이라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려면 (1) 세번변경(관세율표상 분류의 변경), (2) 현지조달 비율의 명시, (3) 주요부품의 몇 가지가 북미산일 것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원산지 규정을 둘러싸고 대립이 있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는 초기에 60~70%라는 높은 현지조달 비율을 요구했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현지조달 비율을 인하하도록 요구하여 최종적으로는 50%로 정해졌다. 이 현지조달 비율은 4년 후에는 56%, 8년 후에는 62.5%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국 자동차 3대 메이커의 이해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

섬유제품의 원산지 규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타분야보다 엄격하게 되어 있고, 원사부터 북미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도 원사의 생산국인

미국의 의향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 ④ 세관 행정(제5장)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세관 행정에 관한 규정을 특별히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NAFTA에서는 이 분야의 절차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 가맹국은 원산지 증명제도를 확립할 것, (2) 가맹국의 세관은 수입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판정할 제반 권한을 가질 것, (3)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협정의 관세연관 규정에 관한 가맹국간의 해석을 통일시킬 것, (4) 관세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국간의 관리, 협력체제를 확립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국의 세관은 상품수입에 앞서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키고 북미산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책임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비가맹국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가맹국 내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북미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세번변경을 거쳤는지, 현지조달 비율이 북미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세관은 자국에 수입되는 상품이 북미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상품의 생산설비를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관세연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가맹국 대표로 구성되는 작업그룹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정해져 있는 자유무역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농업(제7장)

제7장에서는 농산물의 관세철폐, 수량제한, 품질, 마케팅의 기준, 국내원조, 수출보조금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관세철폐의 이행기간 중 가장 긴 것은 15년이지만, 많은 품목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수량제한은 멕시코-캐나

다 사이의 소수 특정품목을 제외하고 관세할당의 범위 설정 또는 관세로 치환된다.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간에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다른 가맹국이 비가맹국으로부터 보조금이 주어진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 그 대항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농산물의 품질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농산물에도 이 이상의 대우를 주는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의 자유화에 의해서 밀 등의 곡물과 콩, 옥수수 등의 유량종자는 미국에서 멕시코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야채와 열대과일은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와 중미제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멕시코 북부의 애그리비지니스는 혜택을 볼 것이다.

#### ⑥ 투자와 분쟁처리(제11장)

이 장은 A, B, C의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A절은 가맹국에 의한 타가맹국으로부터 투자의 취급에 대해서, B절은 투자자에 의한 클레임, 투자에 관한 분쟁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절은 용어해설에 할당하고 있다.

이 장은 가맹국간의 투자흐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각국의 장벽, 규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 요점은 (1)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의 투자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하고, (2) 투자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투자에 수출, 현지조달 등의 부대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3) 투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의 상급임원의 국적지정을 금지하고, (4) 투자에서 생기는 이익, 배당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5) 투자를 국유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유화할 경우에는 공정한 보상을 할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투자의 자유화라는 관점에서 보아 상당히 진전된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규정의 예외조항을 두어 포괄성에는 다소 문제

가 있다. 왜냐하면 (1) 멕시코가 국영기업을 갖고 있는 석유/천연가스의 발굴, 전력공급, 원자력개발 등의 11분야에 있어서 가맹국 투자라고 할지라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부속문서 III), (2) 내국민대우의 공여, 조치요구 금지 등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규정에는 가맹국에 각각 유보, 예외 조항이 많이 인정(부속문서 I, II)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이 분야의 혜택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가가 불투명하다. 즉 여기에는 이 장의 규정이 다른 장의 규정과 모순될 경우에는 다른 장의 규정을 우위에 둔다(제1112조)든지, 투자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보다 우선한다(제1114조)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⑦ 국경왕래의 서비스 거래(제12장)

이 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육상운송, 특수 항공서비스, 전문 서비스 등 각종의 국경왕래무역(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의 거래, 단 이 장에서는 금융, 에너지/기초석유화학 제품 관련, 항공수송 서비스 등은 제외)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 중 유리한 쪽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발전도상국인 멕시코에 대해서는 많은 유보가 인정되고 있지만, 버스/트럭 등 화물여객 수송과 특수환경 서비스 등의 자유화, 규제완화가 합의되어 있다. 또 협정발효 후 2년에 한번씩, 자유화와 규제철폐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권유되고 있다.

#### ⑧ 금융서비스(제14장)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각국간의 관계의 긴밀화, 거래의 활발화에 의해서 급속히 비대화하고 그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부문의 업무내용도 급속히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국제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 협정이 제시하는 모델이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닌

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협정은 금융서비스의 분야에서는 제도적으로 정비된 금융시장을 갖고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을 국가관리체제 하에 두고 있는 발전도상국인 멕시코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주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폐쇄성이 아주 높은 멕시코의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이 촉진될 것이고, 이를 통해 멕시코 금융시장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의 거대한 금융자본과 경쟁관계에 서게 될 멕시코 금융기관들은 어려운 시절을 맞게 될 것이고, 멕시코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규모의 업계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⑨ 지적소유권(제17장)

이 장은 종래 저작물에 관한 파리조약 등의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국제조약을 발효시킴과 동시에 그 규정을 넘어선 추가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관계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50년간 수입, 판매, 렌트 등의 허가와 금지의 권리를 저작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표등록 보호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적용되고 있다. 특허권의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이상, 특허 부여일로부터 17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의약, 농업관계의 미생물학적 특허, 집적회로의 디자인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권리침해에 대한 방지/구제수단, 소송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 ⑩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문제에 관한 심사 및 분쟁해결(제19장)

이 장은 어떤 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게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된 분쟁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제19장과 극히 유사하나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그것은 (1) 3개국에 가맹하는 협정이 됨에 따라 기술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진 점, (2) NAFTA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저해할 수 있는 국내법을 견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 가맹국은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에 관련된 국내법을 갖는다. (2) 어떤 가맹국이 이 법을 개정했을 때, 또는 두 조치에 관해 최종결정을 내린 경우 양국간 패널의 심사가 요구된다. (3) 패널은 소정의 심사를 하고 다수결로 재정을 한다. 이 재정에 대하여 당사의 가맹국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패널의 재정 결과가 실시됨에 있어서 가맹국의 국내법에 저해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⑪ 조직체계와 분쟁해결 절차(제20장)

이 장에서는 가맹국에 의한 협정의 이행감독,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본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검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분쟁처리는 이 협정에 기초하든지, 아니면 GATT의 메커니즘 아래서 행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관계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협의를 진행시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이 장에 정해져 있는 자유무역위원회가 알선, 조정, 해결을 행한다. 이 위원회에 의해서도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의 재정에 대하여 당사국은 상소할 수 있다. 또 재정 이행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또 본 협정에 관한 국내소송법의 규정의 금지 및 민간국제상사의 분쟁문제의 대체처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쟁문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 (2) 협정의 의무에 반하는 조치에 관한 분쟁, (3) 편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한 분쟁, (4) NAFTA, GATT, 그리고 두 협정의 관

런 협정에서 생기는 분쟁, (5) 원산지 규정 작업그룹,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전문협약, 규격관련조치-전문협약에 의해 협정이 이루어지고 요청되는 경우, (6) 가맹국들 내부의 사법, 행정수속에 있어서의 본 협정의 해석, 적용문제, (7) 민간상사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체분쟁해결을 장려하는 것 등이다.

## 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

NAFTA 협정에서는 WTO 협상에서의 논의 그룹형성과 마찬가지로 수산분야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세부문의 경우 상품 전체적인 관세철폐 프로그램에 속하여 있고,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도 전체 원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수산업이 각국에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에 대한 반영 뿐 아니라 동 협정에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산분야의 관세부문 내용에 있어서는 협정 발효 당시의 관세율표의 구성과 우리나라의 수산물 분류 체계와 조화의 어려움 때문에 03류에 한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수산부문 관세율 체계에 관해서도 살펴 보기로 한다.

### 1) 관세부문

관세부문에 관한 사항은 Part II 상품교역의 제3장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세의 단계적 인하는 A, B, C, D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산부문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제시되어 적용되어 있는 바, A, B, C, D Category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Category D의 경우는 본래 무세화 된 품목이다.

수산부문 중 03류의 경우 세 회원국의 단계적 관세철폐에 해당하는 품목 수



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03류의 관세철폐시기 및 대상품목의 수

구분	비중 (%)	철폐시기	대상품목		
			미국	캐나다	멕시코
A	36.1	1994. 1. 1.	36	9	61
B	7.1	1998. 1. 1. (1994년부터 5년간 동일비율로 철폐)	2	1	18
C	6.1	2003. 1. 1. (1994년부터 10년간 동일비율로 철폐)	2	2	14
D	50.7	협정 체결 이전부터 무세화	73	76	.

자료: <http://www-tech.mit.edu/Bulletins/Nafta> 자료 정리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본래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는 상당 부문 진척되어 있다. 멕시코의 경우는 협정의 발효와 함께 약 2/3의 품목에 대해 무세화가 이루어지나 Category C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수산업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캐나다의 경우 86.4%, 미국의 경우 64.6%가 무세화 품목이지만, 전체 회원국의 단계별 관세철폐의 관점에서 본다면 멕시코가 무세화 품목이 없는 이유로 인해 캐나다, 미국의 개별국 입장에서 볼 때보다 훨씬 낮은 50.7%가 협정 이전 무세화 품목이다. 그러나 이미 협정 이전부터 상당 부분 무세화가 진척이 되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표 3-4>와 <표 3-5>는 현재 미국의 기본 관세율 구조와 협정국내 실행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미국의 관세율은 16류의 품목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무세화된 상태이다.

&lt;표 3-4&gt; 미국 수산물의 관세율 구조와 기본관세율(2002년 현재)

(단위 : %, 개)

HS 관세율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계
0	0	311	3	1	1	3	58	0	20	379
0.5	0	1	0	0	0	0	0	0	0	1
2.3	1	0	0	0	0	0	0	0	0	1
2.5	0	0	0	0	0	1	0	0	0	1
3	0	3	1	0	0	0	1	0	0	5
3.1	0	0	0	0	0	0	1	0	0	1
3.2	0	0	0	0	0	0	0	1	0	1
4	0	2	0	0	0	0	4	0	0	6
4.7	0	0	0	0	0	0	1	0	0	1
4.9	0	0	0	0	0	0	1	0	0	1
5	0	5	0	0	0	3	13	0	0	21
6	0	3	0	0	0	0	8	0	0	11
6.4	2	0	0	0	0	0	0	1	0	3
7.5	0	3	0	0	0	0	2	0	0	5
8.5	0	0	0	0	0	0	1	0	0	1
9	0	0	0	0	0	0	1	0	0	1
10	0	0	0	0	0	0	8	0	0	8
12.5	0	0	0	0	0	0	2	0	0	2
15	0	2	0	0	0	0	2	0	0	4
20	0	0	0	0	0	0	1	0	0	1
35	0	0	0	0	0	0	1	0	0	1
중량세	0	9	0	0	0	5	1	0	0	15

기본관세율 : 1.15%

- \* HS 4단위까지 한국의 관세율표(2002)와 일치시킨 후 적합한 품목명에 따라 조화시킴.
- \* 음영부분은 중량세와 병행되는 선택세이며 총 품목수량의 계산시 제외시켜야 함.
- \* 기본 관세율 계산에 있어서 중량세 품목수는 제외함.

<표 3-5> 미국 수산물의 NAFTA 협정 회원국에 대한 실행관세율(2002년 현재)

(단위 : %, 개)

HS 관세율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계
0	3	339	4	1	1	12	96	2	2	460
0.4	0	0	0	0	0	0	1	0	0	1
0.6	0	0	0	0	0	0	1	0	0	1
1.5	0	0	0	0	0	0	1	0	0	1
2	0	0	0	0	0	0	1	0	0	1
2.4	0	0	0	0	0	0	2	0	0	2
5	0	0	0	0	0	0	2	0	0	2
14	0	0	0	0	0	0	1	0	0	1
중량세	0	0	0	0	0	0	1	0	0	1
총계 (중량세 제외)	3	339	4	1	1	12	105	2	2	469
대 멕시코 실행관세율 : 0.07%						대 캐나다 실행관세율 : 0%				

\* 음영부분은 대 멕시코 실행관세율 구조 부분임.

\* 대 캐나다 실행관세율의 경우 모두 무세화 된 상태임.

<표 3-6>은 캐나다의 기본관세율의 구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의 경우는 역외국에 대한 기본관세율이 1.5%로서 미국보다 조금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NAFTA 회원국인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무세화된 상태이다. 캐나다 미국이 원산지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두 무세화된 상태이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약 0.03%로서 무세화인 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캐나다는 수산부문 중 약 2/3 정도가 관세가 0인 상태이며, 5%를 초과한 품목의 수도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lt;표 3-6&gt; 캐나다 수산물의 관세율 구조와 기본관세율(2002년 현재)

(단위 : %, 개)

관세율 \ HS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계
0	1	169	19	2	2	4	11	0	1	209
2	0	0	0	0	0	0	9	0	0	9
3	0	7	0	0	0	0	4	0	2	13
4	0	1	0	0	0	0	9	0	0	10
4.5	0	0	0	0	0	1	1	0	0	2
5	0	9	0	0	0	2	10	0	0	21
6.5	0	0	0	0	0	1	2	0	0	3
7	0	0	0	0	0	0	14	0	0	14
8	0	0	0	0	0	0	2	2	0	4
9	0	0	0	0	0	0	2	0	0	2
11	0	0	0	0	0	0	1	0	0	1
13	0	0	0	0	0	1	0	3	0	4
총계	1	186	19	2	2	9	65	5	3	292
<b>기본관세율 : 1.5%</b>										

\* HS 4단위까지 한국의 관세율표(2002)와 일치시킨 후 적합한 품목명에 따라 조화시킴.

멕시코의 경우는 <표 3-7>에서 알 수 있듯이 NAFTA 회원국들 중 수산부문에 대한 기본 관세율이 가장 높은 19.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수산부문에 관한 국제경쟁력 뿐 아니라 수산부문이 멕시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수량적인 경제적 의미 외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부문에 있어서 무세화 된 품목의 수가 5종 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6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도 1종이 있다.

단 관세철폐에 관한 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있지만, 역내국에 대해서는 역외국에 대한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상대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철폐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멕시코의 수산물의 관세율 구조와 기본관세율(2002년 현재)

(단위 : %, 개)

관세율 \ HS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계
0	·	2	1	1	0	1	0	0	0	5
10	·	2	3	0	0	6	0	2	1	15
15	·	0	0	0	1	1	0	0	0	2
20	·	89	3	1	0	0	20	0	0	113
260	·	0	0	0	0	1	0	0	0	1
중량세	·	0	0	0	0	0	0	0	1	1
총계 (중량세 제외)	·	94	7	2	1	9	20	2	1	136

**기본관세율 : 19.9%**

\* 자료 : <http://www.apectariff.org/tdb.cgi> 정리.

\* HS 4단위까지 한국의 관세율표(2002)와 일치시킨 후 적합한 품목명에 따라 조화시킴.

\* 음영부분은 선택세이며 관세율 계산에서는 제외함.

협정문 제3장의 「내국인 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수산부문의 예외사항으로서 캐나다는 다음 법에 따라서 미가공된 수산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301조에서 제309조까지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sup>5)</sup>.

- (a) New Brunswick Fish Processing Act, R.S.N.B. c. F-18.01 (1982)와 Fisheries Development Act, S.N.B. c. F-15.1 (1977);
- (b) Newfoundland Fish Inspection Act, R.S.N. 1990, c. F-12;
- (c) Nova Scotia Fisheries Act, S.N.S. 1977, c. 9;
- (d) Prince Edward Island Fish Inspection Act, R.S.P.E.I. 1988, c. F-13;
- (e) Quebec Marine Products Processing Act, No. 38, S.Q. 1987, c. 51.

멕시코는 국내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자국 소비자들에게 한정하고, 국

5) NAFTA 협정문, 부속서 301.3.

제가격보다 국내 식료품의 가격이 낮을 경우, 자국 내에서 충분한 수량의 식료품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 식료품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sup>6)</sup>, 수산식품의 경우 정어리 캔 제품과 참치 캔 제품이 해당 품목으로 정의되어 있다.

## 2) 비관세 부문

### ① 원산지규정

원산지 규정은 제4장에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적용조항은 없다. 따라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역내에서 생산되어 교역되는 물품은 원산지 규정에 의해 관세적용에 있어서 편익을 받게 된다.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sup>7)</sup>는 다음과 같다.

- (a) 완전히 역내에서 획득 또는 제조된 물품,
- (b) 관세분류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변화를 거친 물품,
- (c) 원산지(역내산) 원료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회원국에서 완전히 제조된 물품,
- (d)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물품이나 관세 분류상 조립물품과 같은 분류로 처리된 물품과 거래비용방식에 의해 60% 이하 혹은 순비용방식에 의해 50% 이하로 물품 생산에 이용되었을 경우 세번변경을 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한 역내에서의 생산품은 역내산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a)항의 경우 수산물에 대한 적용은 NAFTA 협정문 제415조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 정의 부분의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6) NAFTA 협정문, 부속서 314.

7) NAFTA 협정문, 제4장 원산지 규정, 제401조.

- 역내에서 태어나서 길러진 생동물
- 역내에서 사냥, trapping 또는 어획을 통해 획득되어진 물품
- 역내 국적선으로 등록된 선박에 의해 해상에서 얻어진 수산물(어류, 패류, 기타 해상 생물)
- 위의 과정을 통해 획득되어진 물품으로 선상 가공을 통해 제조된 물품
- 역내국 혹은 역내국인(a Party or a person of Party)이 역외 지역의 해상(해면 혹은 해저)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는 경우 동 지역에서 얻어진 물품
- 역내국 혹은 역내국인에 의해서 획득되고 역외국에서 가공처리 되지 않은, 역외에서 얻어진 물품
- 역내지역에서 생산에 의하거나, 역내 지역에서 수집된 이용된 물품으로부터 나온 웨이스트 혹은 분획물
- 일체의 생산단계에서 이상에서 언급한 물품 또는 이의 파생물을 가지고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

또한 제405조 최소조항(De Minimis)에서는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은 물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물품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모든 원료의 비용이 FOB 조건으로 조정된 물품의 거래가격의 7%를 넘지 않는 경우와 물품의 거래가격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물품 총비용의 7%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은 물품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의 예외규정으로서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원료가 이 장에서 원산지로 결정되는 물품과 다른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HS 제1장에서 제27장에 규정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기 원료는 제405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위생 및 검역 조치

이 부분의 적용범위는 회원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회원국의 위생관련 조치에 적용<sup>8)</sup>하며, NAFTA 협정 제301조(내국인 대우)와 제

---

8) NAFTA 협정문 제710조.

309조(수출입 제한), 제2101조에 포함된 GATT 제20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sup>9)</sup>.

또한 각 회원국들은 비정부 기구가 이 부분에 있어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내린 조치들을 보장해야 한다<sup>10)</sup>.

각 회원국들의 위생관련 조치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한과 의무는 동 협정문 제712조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 회원국들은 국제표준, 지침, 권고사항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조치는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고, 위생관련 조치의 채택, 유지 혹은 적용에 있어서 자국과 타회원국의 물품 사이에 혹은 타 회원국의 물품간에 불공정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일련의 조치들이 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현실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교역에 있어 변형된 제한을 가하는 위생관련 조치를 적용 또는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국제적 기준, 권고, 타 회원국의 규정 등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허용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Codex, 국제수역사무국, 국제식물보호협약, 북미식물보호기구 등의 국제기구에 참여하여야 한다<sup>11)</sup>.

동등성 조항<sup>12)</sup>에 있어서는 인체, 동물·식물체의 보호나 건강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각 회원국간의 위생관련 조치들은 동등성을 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문 제715조에서는 위험의 평가와 적합한 보호의 수준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위험의 평가와 적합한 보호의 수준 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적 무역효과의 최소화와 다른 상황에 있어서 위생수준에 대한 전횡적이고 부정당한 차별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통제, 검사, 승인절차에 대한 규정<sup>13)</sup>과 정보에 대한 확인, 공표, 제공에

9) NAFTA 협정문 제711조

10) NAFTA 협정문 제711조.

11) NAFTA 협정문 제713조.

12) NAFTA 협정문 제714조.

13) NAFTA 협정문 제717조.



대한 사항<sup>14)</sup>, 정보제공의 제한<sup>15)</sup>, 기술협의회 구성<sup>16)</sup>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NAFTA 협정문 제7장 Section B 부분에 언급되어진 사항은 기술적 장벽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식품이나 물품에 대한 위생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 농산물 부분에서는 수산물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수산분야에 관한 적용은 위생관련 조치 부분에서 적용 사항을 찾을 수 있다.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NAFTA 협정에서는 수산부문이 별도의 협상 대상이 아닌 일반 상품과 같이 포함되어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래 타결되었던 EU·칠레간 FTA 협정이나 한국·칠레간 FTA 협정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NAFTA 협정 체결국간에 수산부문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세화가 달성되었다. 멕시코의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많은 품목 수에 있어서 관세로 인한 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외국에 대해서는 약 20%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역외국의 대부분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위생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식품에 대한 위생 규정이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까다로운 것을 감안한다면, 이 국가와의 협정체결 시 저관세로 인한 수출의 기회보다는 위생규정에 의한 국내 수출의 차단과 역으로 관세철폐와 병행한 공격적인 수출전략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위생관련 조치에 대한 정비로 수입의 급증과 수출차단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할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14) NAFTA 협정문 제718조.

15) NAFTA 협정문 제721조.

16) NAFTA 협정문 제723조.

## 제2절 EU-칠레간 FTA

### 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 1) EU-칠레간 FTA의 추진배경

EU-칠레간의 FTA 추진은 점증하는 정치·경제적 관계강화를 반영하고 있다.

EU와 칠레는 1990년 12월에 피노체트 군사정권이 등장 이후 17년간 단절되었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1995년 12월 양측간에 정치적 대화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게 되었다. 양측간의 교역도 1990년 관계개선 이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며, EU는 아시아시장에 이은 칠레 제2의 교역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대 칠레 직접투자를 보면 25% 이상이 유럽기업의 자본이며, 칠레 연기금사들의 해외투자의 상당부분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양측간 관계강화는 칠레의 국가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유럽의 전통에 뿌리를 둔 법률·제도·교육체제, 정치 및 사회기구, 유럽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구성체 등은 칠레가 유럽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바탕이 되고, 상호이해를 쉽게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EU의 대 칠레 전략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칠레는 피노체트 정부 이후 추진된 시장개방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지역경제 블록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다양하면서도 유연한 방법으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추구하고 있는데,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위한 방안으로 칠레는 다른 지역 혹은 국가와의 관계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통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칠레가 선택하고 있는 전략의 성격은 “개방적 지역주의”로 볼 수 있으며,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방적 개방, 다자간 무역협상, 1990년대 이후 추진되고 있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된 개방이라는 3가지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멕시코와의 경제보완협정(1992년 1월 발효, 1997년 1월 자유무역협정 확대협정), 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1996년 10월 1일 발효),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1997년 7월 1일 발효), EU와의 FTA 협상, 그리고 NAFTA에의 가입 추진은 “협상된 개방”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칠레간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아니며 정치·경제적 협력을 아우르는 바탕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EU-칠레간의 기본협력협정은 1996년 6월 21일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개최되는 EU정상회담에 맞추어 자유무역협정의 전(前)단계로서 1990년에 체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적 대화의 강화」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농업·제조업 등 산업간 협력 강화」가 있으며, 발효 시까지 18개월의 유예기한을 두었지만, EU 회원국들의 의회승인 절차가 늦어져 1999년 4월 24일에야 정식 발효되게 되었다.

그리고 기본협력협정의 발효 직후인 1999년 6월 EU와 칠레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EU-중남미 정상회의와 더불어 WTO 규범에 부합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를 선언하였고, 동년 11월 24일에 실질적으로 협상에 착수하였다.

2년이 넘는 협상을 통해서 2002년 5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2차 EU-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안 국가 정상회담에서 EU-칠레간의 협상이 타결되었고, 동년 7월 10일 브뤼셀에서 위원회의 승인 후 11월 18일 EU-칠레간 협력협정이 서명되었다.

## 2) EU-칠레간 FTA의 주요내용

공산품의 경우 EU 측은 섬유제품 등 칠레 공산품에 대해 협정발효 즉시 또는 3년 후 무관세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해 칠레 측은 90%가 협정발효 즉시, 10%가 3년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칠레 측은 EU 공산품에 대해 협정발효 즉시, 5년 후 또는 7년 후 무관세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공산품 분야에서 예외 설정은 하지 않았다.

농산물의 경우 EU 측은 칠레 농산물에 대해 협정발효즉시, 4년 후, 7년 후 또는 10년 후 무관세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쿼터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있으나, 동 쿼터량이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쿼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 계절적 제한이 있더라도 동제한이 현재의 실질적인 수출물량의 무관세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계절적 제한도 결국 철폐되기 때문에 EU 측은 칠레의 모든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 연중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lt;표 3-8&gt; EU의 칠레 농산물 양허사항

구분	내용	비고
사과, 배	협정 발효즉시 관세 철폐	
포도	협정 발효즉시 합의물량의 40% 관세철폐	
키위	4년 후 관세 철폐	
쇠고기	1,000 톤	- 무관세시장접근 쿼터량
돼지고기	3,500 톤	
양	2,000 톤	
가금류	7,250 톤	
과일주스 건조과일	단계별 관세철폐	- 매년 10% 증량

칠레 측은 EU 측 농산물에 대해 협정발효즉시, 5년 후 또는 10년 후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였다.

한편 EU 측은 칠레의 Price Band System 대상품목(밀, 밀가루, 설탕, 식용유) 및 극소수 낙농제품에 대해, 칠레 측도 극소수 EU 농산물에 대해 상응한 예외를 인정하여, 양측은 매 3년마다 동 품목들의 관세철폐 가능성을 협의하게 되어있다.

무관세 시장접근 쿼터량 산정근거 및 운용방식에 있어서, 먼저 산정근거는 칠레의 대 EU 또는 세계시장에의 수출물량의 일정비율에 관계없이 양측이 현실적인 물량을 고려하였고,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First Come, First Serve」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고 육류에 관해서는 수입승인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EU는 양허안상의 EP(Entry Price) 및 SP(Special Price)에 관련하여서도 언급을 하였다. EP 카테고리는 "종가세(ad valorem duty)+특별관세" 형태로서 EU-칠레 FTA 협정상 관세철폐는 "종가세(7%)" 폐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관세는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였다. Entry Price는 EU측이 결정한 기준참조가격(일종의 정치적 가격)으로서 칠레 측으로부터 수입가격이 동 Entry Price 이하로 수입될 경우 특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사과, 배, 토마토 등이 있다.

SP 카테고리는 "고정관세율+특별관세(종량세)" 형태로서 EU-칠레 FTA 협정상 관세철폐는 동 고정관세율(20%)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관세는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및 가공육류제품이다.

위생 및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칠레 측은 EU 측의 동물복지 기준 준수 요청에 대해 국제 수의검역사무국(OIE)가 제시하는 기준만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비스 등 기타 부분에서는 칠레는 EU의 칠레 내 사적연금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WTO 규정을 넘어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간 기구 설립하기로 하였다.

## 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

### 1) 관세부문

#### (1) EU측의 FTA 추진안

##### ① 단계적 무세화(10년간 균등인하)

EU는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의 90.8%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관세를 철폐하는 시기와 비율은 협정 발효 즉시 34.3%, 2007년 1월 1일 39.6%, 2010년 1월 1일 2.4%, 2012년 1월 1일 14.5%로 10년 간 진행된다.

<표 3-9> 연차별 관세 인하의 비율

카테고리	발효	04.1.1.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Year0	100%										
Year4	20%	40%	60%	80%	100%						
Year7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Year10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100%

##### ② 관세할당

수산부문에서도 관세할당이 적용되며, 부속서 I의 section 1에 설명이 되어 있다. 관세할당 범위 내에서 10년간 매년 균등 인하되며, 기준세율은 협정발효 시점의 실행관세로 합의되었다. 수산물의 실행관세는 0%~25%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실행관세 평균이 8%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세율이 된다.

<표 3-10> 수산물에 있어서 관세할당

구분	해당품목(HS 8단위)	내용
TQ(4)(a)	03026966, 03026967, 03026968	총량 5,000MT
TQ(4)(b)	03053030, 03054100	총량 40MT

관세할당의 경우는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쿼터의 물량에 대하여는 관세제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 특혜관세

특혜관세 부분은 부속서 I의 section 1에 설명이 되어 있으며,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EU가 협정발효 시점에 적용되는 MFN 관세의 1/3 수준의 특혜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표 3-11> 수산물에 있어서 특혜관세

구분	해당품목(HS 8단위)	내용
TQ(5)	16041411, 16041418, 16041939, 16042070	총량 150MT (Loins 제외)

(2) 칠레측

① 단계적 무세화(10년 간 균등인하)

칠레는 EU를 원산지로서 하는 수산품의 97.6%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EU의 관세인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칠레 역시 연차별 관세인하 품목에 대해서는 10년간 균등인하 하지만 EU와는 달리 Year 0, Year5, Year 7, Year 10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② 관세할당

칠레의 수산부문 관세할당 적용에 관한 부분은, 부속서 II의 section 1에 설명이 되어 있다. 관세할당 범위 내에서 10년간 매년 균등 인하되며, 기준세율은 협정발효시점의 실행관세로 합의되었다. 칠레의 기준세율은 모든 품목에 기본적으로 6%가 적용되어 있다.

<표 3-12> EU의 수산물에 있어서 관세할당

구분	해당품목(HS 8단위)	내용
TQ(4)(a)	0302.69.21, 0302.69.22, 0302.69.23, 0302.69.24, 0302.69.29	총량 5,000MT
TQ(4)(b)	0305.30.10, 0305.41.10, 0305.41.20, 0305.41.30, 0305.41.40, 0305.41.50, 0305.41.60, 0305.41.90	총량 40MT

관세할당의 경우는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쿼터의 물량에 대하여는 관세제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 특혜관세

특혜관세 부분은 부속서 II의 section 1에 설명이 되어 있으며,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칠레가 협정발효 시점에 적용되는 MFN 관세의 1/3 수준의 특혜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표 3-13> 칠레의 수산물에 있어서 특혜관세

구분	해당품목(HS 8단위)	내용
TQ(5)	1604.14.10, 1604.14.20, 1604.19.90, 1604.20.10, 1604.20.90	총량 150MT (Loins 제외)

2) 비관세 부문

①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합의

칠레와 EU는 부속서 X상의 양허 리스트에 나오는 부문에서 투자자의 설립 (establishment)을 위한 내국민대우를 공여에 합의하였다. 칠레와 EU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한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지만, 에너지부 문, 수산업 및 광업에서 칠레는 약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U가 체결한 쌍 무 협정 중에서 투자자의 진입에 관한 조항을 EU가 포함시킨 것은 동 협정이 처음이다.

부속서 X의 부록에 나오는 수산기업에 관한 프로토콜에서 EU 측은 칠레에 수산기업의 설립 또는 지분참여와 어획활동에 있어서 칠레 내 기업과 같은 조 건을 보장받게 되었다. 단 여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이 전제되며, 칠레에서 설 립된 EU 진출기업은 칠레 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 하게 나타내면 다음 <표 3-14>와 같다.

&lt;표 3-14&gt; 부속서 X 부록 「수산기업에 관한 프로토콜」 내용

조항	내용
1. 소유와 지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주의 전제 하에 EU의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신규 혹은 기존 수산기업의 지분 소유와 경영 권한 부여</li> <li>· EU 회원국은 자국 법률이 허용하는 한 칠레의 자연인과 법인에게 이 지역에서 신규 혹은 기존 수산기업의 지분 소유와 경영 권한 부여</li> </ul>
2. 어선의 등록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 법인의 신청·등록·선박운영에 관한 동등한 권한 부여</li> </ul>
3. 권한과 어업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당사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체는 진출국내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독점 어업 허가와 상응하는 개별쿼터를 포함하는 개별 어획에 관한 신청과 권한에 관한 자격을 주어야 함.</li> <li>· 진출기업은 진출국내 규정, 보존과 관리조치를 준수</li> </ul>
4. 선박의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의 진출 기업은 진출국내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어업권과 선박에 관한 이전의 권한을 가짐</li> </ul>
5. 호혜주의 조건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의 4개항에서 정의된 상호주의 조건의 수행을 입증·확인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협력위원회와의 정보 교환</li> </ul>
6.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tle III(분쟁해결), Chapter III(분쟁해결 절차)의 조항이 이 프로토콜 조항의 주제에 적용되어야 함.</li> </ul>

## ② 원산지 규정

EU-칠레간 협력협정문 제58조에서 이에 해당되는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Ⅲ에서 원산지 물품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행정상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나타나 있다.

### ③ 위생 및 검역관련

위생 및 검역관련 부분은 EU-칠레간 협력 협정문 제89조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부속서Ⅳ에 설명되어 있다. 동식물 위생조치는 WTO/SPS 협정의 목적의 수행과 더불어 EU-칠레간의 협정에서는 동물의 복지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협상기간 중 칠레 측은 EU 측의 동물복지 기준 준수 요청에 대해 국제 수의검역사무국(OIE)가 제시하는 기준만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었다.

협력위원회에서 위생문제를 다루기 위해 양측의 책임 있는 대표로 구성된 “동식물 위생문제에 관한 합동 관리 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 for Sanity and Phytosanitary Matters)”를 구성한다. 이 기구에 대한 기능은 부속서Ⅳ의 제16조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협정문 제184조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부속서Ⅳ의 제16조에 의해 개최되는 협의회(consultations)는 양측이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결정이 없는 한 협정문 제183조에 언급된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칠레간의 FTA 협정은 단순한 교역활성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력 협정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관세분야에 있어서는 공산품의 경우 EU와 칠레가 관세철폐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철폐대상에 있어서 예외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농산물에 있어서는 공산품과는 달리 몇몇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향후 정기적으로 이 품목들에 대한 철폐 가능성을 조율하기로 하여 자국 농업에 미

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수산물에 있어서는 단계적 무세화 일정 추진과 관세할당이 타 분야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협정에서는 수산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NAFTA 협정이나 WTO 논의와는 다른 부분이라 하겠다.

수산부문의 협정에서 기본적으로 양측의 부분별 이행과정에 대하여 품목별로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비관세 부문에서 위생 및 검역관련 사안에 동물의 복지 기준 준수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내국인 대우 부분에서는 「수산기업에 관한 프로토콜」을 두어 EU측의 대칠레 수산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의 전제조건으로서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국 산업에 미치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세철폐 일정의 마련과 위생 및 검역관련 조치에 있어서 국제적 논의 기구에서의 기준과의 조화, 관련 산업의 현지 진출과 관련한 내국민 대우와 이의 기반이 되는 상호주의 원칙의 확립 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며, 협정 전반에 걸친 착실한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활발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일-싱가포르간 FTA

일본-싱가포르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JSEPA)는 양국간의 국경을 넘은 물품, 사람, 서비스, 자본, 정보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1999년 12월 일본과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에서 산·학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를 설립키로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 1월 양국간 JSEPA에 서명하였으며, 2002년 5월 8일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 동년 11월 30일에 발효되었다.

일·싱 FTA(JSEPA)의 구성은 크게 자유화·엔활화 분야와 2국간 협력분야

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문과 전체 153조이며, 제1장 총칙, 제2장 물품무역(관세), 제3장 원산지 규칙, 제4장 세관수속, 제5장 전자상거래(무역), 제6장 상호승인(MRA), 제7장 서비스 무역, 제8장 투자, 제9장 자연인 이동, 제10장 지적재산권, 제11장 정부조달, 제12장 경쟁정책, 2국간 협력분야, 제13장 금융협력, 제14장 정보통신기술(ICT), 제15장 과학기술, 제16장 인재양성, 제17장 무역·투자의 촉진, 제18 중소기업, 제19장 방송, 제20장 관광, 제21장 분쟁의 회피 및 해결, 제22장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간 무역량의 98% 이상(2000년도 금액 기준)에 상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부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중 약 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광공업품은 6,746개 품목 중에서 석유제품 일부, 석유화학품 일부, 피혁 등 294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의 농림수산물 중의 경우에는 농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 2,277개 품목 중에서 무세인 품목(WTO 무세 양허품목 및 실행관세율 0%로 관세할당 등을 제외한 품목)에 한정하여 486개 품목만을 양허하였다.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의 선어(鮮魚)를 포함한 1,191개 품목은 양허하지 않았으며, HS 03류 중에서 송어, 뱀장어, 잉어 등의, 양식용 치어는 발효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관세 철폐 일정은 A(발효즉시 철폐), B(2006년 4월 1일부터 관세 철폐), C1(발효 즉시 2.8%로 하고, 2.8%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무세화함), C2(발효 즉시 3.1%로 하고, 3.1%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무세화함), C3(발효 즉시 3.9%로 하고, 3.9%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무세화함), D(2004년부터 관세율을 6.8%로 하고, 6.8%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무세화함)의 6단계로 구분하여(부속서 I 참조)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제4절 한-칠레간 FTA

### 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 1) 한-칠레간 FTA의 의의 및 경과과정

WTO 체제 속에서의 세계경제의 특징은 다자간 규범에 의한 시장개방과 FTA 등 지역주의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세계 도처의 대다수의 회원국이 FTA를 체결하였지만 일본과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 혹은 지역과도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였다. 하지만 일본과 싱가포르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한국과 칠레가 FTA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지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 향후 일본, 멕시코,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와 한국과 아세안, 한-중-일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시발점이며, 특히 WTO 등 다자간 협상에서의 대외 개방 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능동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 FTA를 전략적 통상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첫 결실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이 있고,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남미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 마련을, 칠레는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역동적인 동북아시아 진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부 예외 품목을 설정한 일본과 싱가포르간 FTA와는 달리 금번 체결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이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 검역조치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로서 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경쟁정책 등 WTO 플러스적인 조치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통상제도 개선의 계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의 FTA 체결의 모델케이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칠레는 1998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약 4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2년 10월 20일에 타결을 하게 되었다.

## 2)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한국과 칠레 양국은 원칙적으로 시장접근에 있어서 농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을 자유화대상으로 하고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하고, 품목별 민감도에 따른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와 쿼터물량(TRQ)을 제공하고,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 품목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lt;표 3-15&gt;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시	중우, 중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철폐	당류, 초콜렛, 면류 등
7년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철폐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주스
10년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철폐 <sup>1)</sup>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 <sup>2)</sup>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DDA 이후 논의 <sup>3)</sup>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계절관세 <sup>4)</sup>	포도
예외	쌀, 사과, 배

주 : 1) 5년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후 논의  
 3) DDA 타결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 (10년균등)  
 자료 : 외교통상부

한편,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고, 칠레는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년, 7년, 10년, 13년 등 기간에 따라 단계적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섬유·의류, 승용차·버스의 타이어,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 후 13년 내 철폐(8년 균등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표 3-16> 참조).



<표 3-16> 칠레 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철폐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세탁기 등

자료 : 외교통상부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① 개요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문 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한-칠레간 FTA에서는 양국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한다는 것에 합의하여, 우선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키로 하고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③ 무역규범의 개선

정부조달 부문에서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sup>17)</sup>,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 지적 재산권에 있어서는 한·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한국과 칠레 양국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하여, 우리의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 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게 되었다.

### ④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투자분야에서는 설립전 단계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양국 투자자의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양국간 투자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설립후 단계의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관련 사항은 FTA 발효 4년 후 재협약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 ⑤ 기타 사항

원산지규정은 제3국의 우회 수출로 인하여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취지를 변질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 칠레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이며, 칠레 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약 25~3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결정하였다.

먼저 원산지 규정의 총칙 및 품목별 규정은 NAFTA, EU-Chile FTA 등 타 FTA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양국간의 산업구조와 교역특성 등을 반영하였다. 공산품 등에 대해서는 산업의 성격상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농산물은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게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류, 전자제품 등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병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급증에 대한 보완장치에 있어서는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감축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허용하기로 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립을 위해 한·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해당사안인 경우, 양 협정상외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3) 한-칠레 FTA의 예상효과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여 칠레와의 FTA 체결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 인해 일본 등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우리 상품의 대칠레 시장확대 가능성과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에서 칠레 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300여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IEP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 전체의 대칠레 수출증가액은 6억 3,600만 달러로, 대칠레 예상수입증가액 2억500만 달러를 능가하여 제조업부문의 대칠레 무역수지는 4억3,1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의 경우 현재 한국이 일본(36%)에 이어 칠레시장 점유율 2위(26%)이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근소한 차이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번 FTA에서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인해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칠레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칠레측은 모든 농업품목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우리나라에게 가장 민감한 쌀과,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킴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였고, 반면 우리나라는 칠레측에 대해 냉장고 및 세탁기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였다. 또한 우리 농업계는 칠레에 대한 농산물 관세철폐가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시한을 늦추거나,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칠레 측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도 강구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시 한국의 후생수준은 연간 9억 6천만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3-17> 한·칠레 FTA 체결의 우리경제에 대한 예상 효과

구 분	경제적 효과
후생수준(억 달러)	9.6
수입물가(%)	-0.001
GDP	0.01%
對칠레 수출	6.6억 \$
對칠레 수입	2.6억 \$
對칠레 무역수지	4.0억 \$

자료 : 대외경제연구원

## 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

### 1) 관세부문

수산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양허 내용으로는 발효 즉시 무세화 품목을 포함하여 5년, 10년 기간을 거쳐 무세화하는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FTA 발효 즉시 무세화하는 품목의 대상은 협상 착수 직전 3년(1996~1998) 기간 중 칠레로부터 수입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들로서 틸라피아, 달팽이 등 277개 품목이고, 5년 후 무세화 품목의 대상은 5만 불이하로 수입되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로서 연어, 아귀 등 86개 품목이다. 그리고 10년 후 무세화 품목은 대 칠레 수입실적이 많거나 국내 어업인 및 관련업계에 민감한 품목으로서 홍어, 정어리 등 36개 품목이 해당된다(<표 3-18> 참조).

&lt;표 3-18&gt;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관세양허 내용

구분	내용
즉시관세철폐	협상착수 직전 3년간 칠레로부터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틸라피아, 달팽이 등 277개 품목)
5년후 무세화 품목	5만 달러 이하 수입 또는 수입 증가 예상 품목(연어, 아귀 등 86개 품목)
10년후 무세화 품목	칠레 수입 실적이 많거나 국내 어업에 민감한 품목(홍어, 정어리 등 36개 품목)

&lt;표 3-19&gt; 수산부문 5년 내 관세철폐 품목

일련 번호	H S K	품 목 명	일련 번호	H S K	품 목 명
1	0106-00-6010	갯지렁이(활)	19	0303-49-2000	참다랭이(냉동)
2	0301-99-4000	돔(활)	20	0303-60-0000	대구(냉동)
3	0301-99-9050	농어(활)	21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 (냉동)
4	0301-99-9070	미꾸라지(활)	22	0303-78-0000	민대구(냉동)
5	0301-99-9099	활어 기타(활)	23	0303-79-2000	은대구(냉동)
6	0302-12-0000	연어(신선,냉장)	24	0303-79-4010	옥돔(냉동)
7	0302-50-0000	대구(신선,냉장)	25	0303-79-4090	기타 돔(냉동)
8	0302-69-3000	갈치(신선,냉장)	26	0303-79-6000	조기(냉동)
9	0302-69-4000	돔(신선,냉장)	27	0303-79-8000	꽁치(항공치)(냉동)
10	0302-69-9020	복어(신선,냉장)	28	0303-79-9060	입연수어(냉동)
11	0302-69-9040	아귀(신선,냉장)	29	0303-79-9070	블락(적어포함)(냉동)
12	0303-10-0000	태평양연어(냉동)	30	0303-79-9091	아귀(냉동)
13	0303-22-0000	대서양 연어(냉동)	31	0303-79-9092	떡장어(냉동)
14	0303-33-0000	서대(냉동)	32	0303-79-9095	민어(냉동)
15	0303-39-0000	기타 넙치류(냉동)	33	0303-80-2010	명란(냉동)
16	0303-42-0000	황다랭이(냉동)	34	0303-80-2090	기타 어란(냉동)
17	0303-43-0000	가다랭이(냉동)	35	0304-20-2000	붕장어 피레트(냉동)
18	0303-49-1000	눈다랭이(냉동)	36	0304-20-3000	대구 피레트(냉동)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3-19> 계속

일련 번호	H S K	품 목 명	일련 번호	H S K	품 목 명
37	0304-20-5000	참다랭이 피레트(냉동)	61	0307-99-3120	바지락( " )
38	0305-20-4090	기타 어란(염장,염수장)	62	0307-99-3910	성게(염장,염수장)
39	0305-49-9000	훈제한 기타어류	63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40	0305-59-3000	복어 (건조,염장,염수장)	64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 알
41	0305-59-9000	기타어류 (건조,염장,염수장)	65	0511-91-9000	기타 동물성 생산품
42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66	1212-20-2020	염장 미역
43	0306-13-1000	새우살(냉동)	67	1212-20-3010	마른 톳
44	0306-13-9000	기타새우류(냉동)	68	1212-20-6090	기타 우뚝가사리
45	0306-14-2000	왕게(냉동)	69	1504-20-0000	어류의 유지
46	0306-14-3000	꽃게(냉동)	70	1603-00-9000	기타 엑스와 즙 (연체동물,갑각류,수생무척추 동물)
47	0306-14-9000	기타게(냉동)	71	1604-11-1000	연어 통조림
48	0306-22-0000	바다가재(냉동제외)	72	1604-15-1000	고등어 통조림
49	0306-23-3000	새우(염장, 염수장)	73	1604-16-9000	멸치 조제품
50	0307-10-1010	굴치패(산것)	74	1604-19-1010	꽁치 통조림
51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75	1604-19-1090	기타어류 통조림
52	0307-49-1020	오징어(냉동)	76	1604-19-9090	기타 어류 조제품
53	0307-49-3000	오징어와 갑오징어 (건조)	77	1604-20-9000	기타 어류 조제품
54	0307-51-0000	문어(활,신냉)	78	1604-30-2000	캐비아 대용물
55	0307-59-1020	낙지(냉동)	79	1605-20-9020	브레드한 새우
56	0307-59-1030	쭈꾸미(냉동)	80	1605-20-9090	조제한 새우
57	0307-91-1500	피조개(활,신냉)	84	1605-90-1070	콜뱅이 통조림
58	0307-91-9010	성게(활,신냉)	85	1605-90-9010	조미 오징어
59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86	1605-90-9020	조제 해삼
60	0307-99-1150	피조개(냉동)			

&lt;표 3-20&gt; 수산부문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

일련 번호	H S K	품 목 명	일련 번호	H S K	품 목 명
1	0301-10-9000	기타 관상용(활)	19	0304-90-9000	기타어류 어육
2	0303-21-0000	송어(냉동)	20	0305-59-2000	멸치(건조)
3	0303-29-0000	기타 연어류(냉동)	21	0307-10-2000	굴(냉동)
4	0303-71-0000	정어리(냉동)	22	0307-29-1000	가리비(냉동)
5	0303-74-0000	고등어(냉동)	23	0307-59-1010	문어(냉동)
6	0303-79-1000	명태(냉동)	24	0307-99-1130	바지락(냉동)
7	0303-79-3000	갈치(냉동)	25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8	0303-79-7000	전갱이(냉동)	26	1212-20-7019	기타 돌가사리
9	0303-79-9010	삼치(냉동)	27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 (냉동제외)
10	0303-79-9020	복어(냉동)	28	1212-20-9099	기타 해조류 (냉동제외)
11	0303-79-9030	보리멸치(냉동)	29	1604-13-1000	정어리 통조림
12	0303-79-9080	새꼬리민태(냉동)	30	1604-16-1000	멸치 통조림
13	0303-79-9093	홍어(냉동)	31	1604-19-1020	전갱이 통조림
14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32	1605-90-2020	훈제한 골뱅이
15	0304-20-1000	명태 피레트(냉동)	33	1605-90-9030	조제 골뱅이
16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34	1605-90-9090	기타 조제한 연체동물
17	0304-90-1010	명태 연육(냉동)	35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비식용)
18	0304-90-1090	기타어류 연육(냉동)	36	2301-20-9000	갑각류, 연체동물의 분·조분(비식용)

반면 칠레는 200개 수산물 중 200개 품목에 대해 체결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2) 비관세 부문

### (1) 원산지 규정

협정문 제4장에서 칠레산 수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 상의 원산지 규정에 의하면 칠레 수역에서 칠레 국적선으로 완전 생산



한(wholly obtained)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부여하여 제3국에 의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고 있다.

(2)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규정

협정문 제8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수입수산물의 위생 문제에 관해 엄격한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적용하여 비위생적인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있다.

(3) 시장접근 및 기타사항

협정문 3.14의 요건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상품교역 위원회'를 통하여 시장 접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또 협정문 제6장과 제7장에 의거하여 각각 Global Safeguard조항에 의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7.7조의 분쟁해결 조항에 의한 해결을 도모한다.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양식사료로 사용되는 어분, 정어리로 서 어류 양식업계에 생산비 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냉동연어의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어 국내어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0%의 조정관세를 부과 중인 홍어의 경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연간 8,124 톤 정도 수입되고 있고 국산과 수입산은 품질, 선호도, 가격 등에 차이가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FTA 체결을 계기로 칠레관세가 무세화함에 따라 향후 칠레를 교두보로 남미시장에 김과 생선묵, 통조림 등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산업의 경우 단기적·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칠레 FTA관련 신규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수산업구조조정 등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수정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타 국가 내지는 지역과의 FTA도 국가정책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대응체계 및 FTA의 추진 절차,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경쟁력제고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FTA 추진 특별법 등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FTA의 체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업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저비용·고품질 생산시설의 지원 및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칠레간 FTA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 협정으로서 향후 체결될 타국가 내지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역 전품목에 대한 자유화와 정부조달이나 서비스 부문과 같이 비교역부문에 있어서의 자유화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농산부문이나 수산부문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있어서는 관세 철폐의 유예기간이나 쿼터물량의 설정 등 국내 관련분야의 정비의 여유를 가지게 하는 예외조항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원산지 규정이나 위생 검역 관련 조항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를 근거로 하여 향후 국제기구 내에서 논의 시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다.

또한 지역협정이 WTO 등 다자간 통상 협정이나 논의의 방향에 역행함이 없이 그 큰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장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시장개방실태

### 제1절 국가간 정치·경제적 관계

#### 1. 한·일간 정치·경제적 관계

##### 가. 한·일간 정치·경제적 관계

한국과 일본은 오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왔다. 그리고 일본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한반도에서 일본에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전파된 한국 문화였다.

한·일 기본관계 조약은 한·일 국교의 기본문제를 규정한 조약으로 1965년 6월 22일 조인되어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함으로써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동시에 4개의 협정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의 서명도 이루어졌다. 아직도 한·일간에는 정신대 문제·재일동포 법적 지위문제·기술이전 문제·대일무역 적자문제·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한국인 피폭자의 원조와 보호문제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양국은 상호 다양한 인적교류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양국의 최근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현재 우리의 2대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일본의 3대교역 상대국으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간 교역은 상대국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교역 규모는 1995년을 전후하여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양국간 교역은 1998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전년대비 교역규모 31.8% 감소).<sup>18)</sup>

금융위기가 극복되면서 양국간 교역은 경기회복과 맞물려 다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한·일간 총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약 523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전반적인 세계경기 불안 및 일본 경기침체 지속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0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431억 달러로서 2000년도의 523억 달러에 비해 17.6% 감소). 이는 세계경제 둔화와 일본경제의 침체가 주된 요인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등 양국간 정치분야 경색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sup>19)</sup>

**<표 4-1> 한국과 일본의 교역현황**

(단위 : 억 US\$, 증감률%)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7
대일수출	170.5 (26.1)	157.7 (△7.5)	147.7 (△6.3)	122.4 (△17.2)	158.6 (29.6)	204.7 (29.0)	165.1 (△19.4)	84.9 (△17.4)
대일수입	326.1 (28.4)	314.5 (△3.6)	279.1 (△11.3)	168.4 (△39.7)	241.4 (43.4)	318.3 (31.8)	266.3 (△16.3)	160.8 (2.5)
대일수지	△155.6	△156.8	△131.4	△46	△82.8	△113.6	△101.3	△75.9

자료 : 외교통상부

18)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2001.

19)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kati.net/> -> 국가별정보), 2002.

1999~2000년 간 일본의 대한 투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24.5억 달러로 사상최고액을 기록하였다. 현재 비준서 교환절차를 밟고 있는 한·일 투자협정이 발효되어, 한국 내 투자환경 정비가 진전되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2> 한국과 일본의 투자실적

(단위 : 억 US\$)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7	1962~ 2002. 7
대한투자	4.2 (21.5)	2.6 (8.0)	2.7 (3.8)	5.0 (5.7)	17.5 (11.3)	24.5 (15.6)	7.7 (6.5)	3.96 (7.1)	117.08 (14.8)
건 수	169	154	134	330	389	613	591	253	7,005
대일투자	-	-	0.99 (1.7)	0.24 (0.5)	0.98 (2.2)	0.75 (2.0)	0.78 (2.6)	0.35	8.76 (1.6)
건 수	-	-	25	20	35	119	105	56	635

주 : ( )는 투자비중  
자료 : 외교통상부

<표 4-3> 한·일간 상대국 방문객수

(단위 : 만 명,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방한 일본인수	152.6 (41)	167.6 (43)	195.4 (46)	218.4 (47)	247.2 (46.5)	237.7 (46.2)
방일 한국인수	111.1 (24)	112.7 (25)	82.2 (27)	105 (24)	110.1 (20.0)	117.0 (19.2)

주 : ( ) 총 입국자중 일본인 비중과 총 출국내국인중 방일자 비중  
자료 : 외교통상부

2001년도 교민현황은 63.5만명(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9.5만명 포함)이며, 2001년도 인적교류는 방한이 237.7만명, 방일은 117만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은 1998년 10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 등 양국 정상간 합의를 토대로 무역투자산업 과학기술 IT등 전반분야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고 있다. 최근 한·일간에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협정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0)</sup>

경제관련 협정으로서 '투자협정'이 2002년 3월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3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투자실행단계부터 내국인 대우를 부여하고자 하는 협정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의 경우 1999년 3월 한·일정상회담시 표준·인증분야 협력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였고 양국 실무자간 각 분야별 설명회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협의중이며, 조기에 교섭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 전기통신, 전기용품, KS/JIS, 압력용기, 의약품·의료기기 등 5개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며 본 협정의 목표는 한·일 양국기업의 수출·입 비용 절감을 통해 무역 원활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1998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시 추진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양국 제도설명회 및 예비회담을 통해 협정체결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완료된 상태이다. 협정체결시 연금 등 사회보장부담의 2중 납부를 방지하여 양국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0년 9월 대통령 방일시 21세기 핵심 성장분야인 IT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정보기술(IT)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여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자상거래, 인재교류 등 8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

2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ko/index.mof> -> 아시아태평양양국 -> 국별개황), 2002

WTO DDA 및 ASEAN+3 등 다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양국간 무역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살펴보면<sup>21)</sup>,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시장개방책의 일환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세계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미미하게 반영하고 있고, 또한 38개 특별법에 의거, 수입할당, 수입자율규제, 사전 수입할당, 품질규격 등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무역마찰을 축소하기 위해 수입상품 발굴, 수입 촉진, 세제 창설, 정책금융, 무역보험 활용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미선진국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다. 또한 현행 관세율 구조가 이미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나 상실한 분야(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일수출 주종 상품인 섬유류 및 신발류 등)에 고관세를 유지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양국간 통상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는 성과를 얻었으나, 다른 공산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이외에도 비관세장벽 철폐를 일본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적소유권에 관하여 한국측이 미국 및 EU에 비하여 일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한국측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나. 한·일간 수산업 관계<sup>22)</sup>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인데 비하여 일본은

21) 종합무역정보서비스(KOTIS) 홈페이지(<http://www.kotis.net/> -> 국가정보), 2002.

22) 주문배, 한국과 일본의 수산업 부문 협력방안, 2002. 참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0.2%이다(2000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어업종사자 수는 2000년도 14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0.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26만 명으로 0.2%를 차지하며 양국 모두 어업종사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4> 한·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단위 : %)

국 가	연 도	1998	1999	2000
	한국		0.5	0.6
일본		0.4	0.4	0.2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2002., 日本農林水産省, 農林水産統計(각연도).

<표 4-5> 2000년도 한·일의 어업종사자 수

(단위 : 천명, %)

국가	구분	총인구	어업종사자	
			인구	비중(%)
한국		47,275	140	0.30
일본		127,020	260	0.21

자료 : 한국, 통계청., 日本, 2001年度 水産白書.

그러나 양국 모두 건강에 필수적인 동물성 단백질의 40% 내외를 수산물을 통해 섭취하고 있어 세계적인 수산물 선호국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량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여건에 따라 이 비중의 변화가 심한 반면 일본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보다 일본인이 수산물을 통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어패류 섭취량은 아직도 세계 전체 평균 16.3kg에 미치지 못하여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표 4-6> 한·일의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량 비교

(단위 : g/1일 1인당)

구 분		연 도		
		1997	1998	1999
한 국	계(A)	40.3	36.4	40.8
	축산물	24.6	23.9	25.5
	어패류(B)	15.7	12.5	15.3
	점유율(B/A, %)	38.9	34.4	37.5
일 본	계(A)	47.7	46.4	46.5
	축산물	28.3	27.8	28.1
	어패류(B)	19.4	18.6	18.4
	점유율(B/A, %)	41.0	40.0	4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각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수급표(각연도).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최근 3년 간 수산물 무역수지를 살펴보면(<표 4-7> 참조),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0% 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였고, 이 흑자로 다른 나라들과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시켜왔다. 그러나 대일 수산물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7.9억 달러에 그쳐 2년 전의 1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대일 수출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일본에서의 수입은 완만하나마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4-7>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무역수지

(단위 : 천 US\$)

연도 국가명	1999			2000			2001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일본	1,155,211	107,206	1,048,005	1,125,248	185,109	940,139	924,873	139,129	785,744
전체	1,520,534	1,178,968	341,566	1,504,470	1,410,598	93,872	1,273,619	1,648,372	-374,75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각연도).

한·일 양국간의 10대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HS 품목별로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표 4-8> 대일본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1)

(단위 : 톤, 천 US\$)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1	눈다랑어(냉동)	25,704	139,534	명태(신선·냉장)	15,147	28,368
2	황다랑어(냉동)	18,920	61,709	갈치(신선·냉장)	3,353	12,005
3	굴(활,신냉)	6,987	52,086	돔(활어)	1,882	11,453
4	캐비아대용물	2,679	48,278	꽂치(냉동)	7,794	5,811
5	피조개(활,신냉)	4,750	39,214	참다랑어피레트(냉동)	140	3,963
6	넙치(활어)	3,188	39,144	명란(냉동)	458	3,945
7	붕장어피레트(신선·냉장)	4,226	35,082	떡장어(활어)	582	3,581
8	굴(냉동)	7,002	30,571	농어(활어)	596	3,338
9	툰(건조)	5,646	30,023	명태(냉동)	4,556	3,266
10	바지락(활,신냉)	11,923	26,318	전복(활,신냉)	54	3,202
	전품목 계	179,335	924,873	전품목 계	69,679	139,12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1.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10대 품목은 명태(신냉), 갈치(신냉), 돔(활), 꽁치(냉동),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명란(냉동), 떡장어(활), 농어(활), 명태(냉동), 전복(활, 신냉) 등이었으며,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10대 품목은 눈다랑어(냉동), 황다랑어(냉동), 굴(활, 신냉), 캐비아대용물, 피조개(활, 신냉), 넙치(활), 붕장어 피레트(신냉), 굴(냉동), 툇(건조), 바지락(활, 신냉) 등으로 나타났다.

## 2. 한·미간 정치·경제적 관계

### 가. 한·미간 정치·경제적 관계<sup>23)</sup>

미국은 한국외교 50년을 통하여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온 나라이다. 대미외교는 그 자체가 한국외교 50년과 흐름을 같이 하여 왔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한국외교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수립 초기인 1950년대 한국외교의 초점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있었으며, 대미외교의 주요 목표는 신생 독립국으로서의 정통성 확립과 국가 보존을 위한 안보 협력의 강화에 있었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 및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대공산권 봉쇄정책을 추구, 안보체제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견고한 '핵 보호'를 받게 되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미군의 한국 주둔과 미국의 핵우산정책은 반세기에 걸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다.

1948년 정부수립과 1950년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 기간인 1950년대의 한·미 경제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원조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한국이 미국과 본격적으로 쌍무적인 경제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군사정부가 자립 경제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였다.

23)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embassy.org/>) -> 한·미관계, 2002) 참조.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196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집행하면서 정부는 자본 및 기술 협력, 투자 유치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에 대한 경제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정부는 또한 1965년에 한·일간에 이루어진 국교 정상화에 따른 대일 청구권 자금과 월남전 특수로 벌어들인 자금을 활용하여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수출 산업화를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1978년에 한국은 미국의 제11위 수입 시장, 제13위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총 교역이 70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한·미 경제관계는 종래의 수원국에서 탈피,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 및 한국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술핵의 완전 철수가 이루어졌으나 자주국방과 함께 한·미간의 안보 협력이야말로 남북한의 분단 상태가 계속되는 현재까지 한국외교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추진(한,미,일,중)을 공동체의하고 있다.

1990년대이래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미국은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교역의 18.4%, 전체수출의 20.8%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투자 및 기술의 주요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대만,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함께 10대 교역국에 포함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급증하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무역 마찰이 증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양국간 교역에서 한국이 무역 흑자 100억 달러를 달성한 1988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심각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93년부터 1997년에는 미국과의 교역이 100억 달러 안팎의 적자

로 역전되었다가 1998년부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시 흑자로 반전되기 시작하여,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가 1998년 24억 달러, 1999년 45억 달러, 2001년 88억 달러 수준이기는 하나, 1998년 들어 대미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미무역수지 흑자문제가 구조적인 통상마찰 요인으로는 작용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경제 악화(재정 적자 및 무역수지 악화)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개방 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 4-9> 한·미 교역현황

(단위: 억 US\$, %)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1~9
대미수출	241.3 (17.0)	216.7 (-10.0)	216.3 (-)	228.0 (5.5)	294.8 (29.2)	376.3 (27.6)	312.1 (-17.0)	237.0 (0.7)
대미수입	304.0 (41.0)	333.1 (10.0)	301.2 (-10.0)	204.0 (-32.3)	249.2 (22.1)	292.4 (17.3)	223.8 (-23.5)	170.2 (-0.7)
무역수지	-62.7	-116.3	-85.0	24.0	45.6	83.7	88.4	66.8

주 : (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KOTIS 홈페이지(<http://www.kotis.net/> -> 국가정보), 2002.

우리의 대미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고, 1996년에는 현대전자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하여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하는 등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한편, 1990년대 초반이후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저조하였으나 1997년 이후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0> 한·미 투자현황

(단위 : 백만 US\$,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9	누계
대한국 투자 (신고기준)	총외국인 투자	8,852 (27.0)	15,541 (75.6)	15,690 (1.0)	11,870 (-24.4)	7,307 (8.3)	83,914
	미국의 대한투자	2,973 (-6.7)	3,739 (25.6)	2,916 (-22.0)	3,890 (33.1)	4,107 (36.0)	25,906
	비중	33.6	24.1	18.6	32.8	56.2	30.9
대미국 투자 (총투자기준)	총해외 투자	3,894 (20.6)	2,549 (-34.5)	3,604 (41.4)	3,022 (-17.7)	1,497 (-65.5)	39,006
	한국의 대미투자	874 (19.9)	1,033 (18.2)	1,119 (8.3)	379 (-66.3)	307 (-74.7)	10,874
	비중	22.4	40.5	31.0	12.5	20.5	27.9

주 : (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통상교섭본부 -> 지역통상국), 한·미 경제·통상관계 현황, 2002.

한편, 1998년 이후부터 미국의 반덤핑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무부의 덤핑마진 판정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11월 14일 기준, 미국의 대한민국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규제품목은 21개 품목이며, 2개 품목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각종 양자협의 기회를 통해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수입규제 입법시도에 대한 사전 대응을 통해 수입규제를 예방하는 한편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과도한 경우 WTO에 제소하거나 뉴라운드에서의 WTO/반덤핑협정 개정 협상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나. 한·미간 수산업 관계<sup>24)</sup>

2001년도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비중은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6.5%으로 수출 대상국 중 일본에 이어 제2위를, 수입비중은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9.6%로 수입대상국 중 중국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산물 교역규모는 일본, 중국에 이어 제3위이며, 교역수지는 1991년부터 지속적인 적자 기록하고 있다. 적자원인은 냉동어류 및 연육블록 등의 가공원자재 및 최근 내수용 냉동어류의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수출의 경우 현지시장에서 제3국산과의 경쟁심리로 단가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lt;표 4-11&gt; 대미 수산물 교역수지

(단위 : 톤, 천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20,099	62,573	23,469	76,386	29,215	78,712	27,281	82,210
수 입	59,237	83,977	77,361	129,816	75,588	145,366	93,969	158,520
수 지	-	△21,404	-	△53,430	-	△66,654	-	△76,310

자료 : 해양수산부 정책자료.

한·미 양국간의 10대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HS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10대 품목은 명태연육(냉동), 아귀(냉동), 기타연육(냉동), 임연수어(냉동), 바다가재(호마루스중(냉동제외)), 떡장어(대서양,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피레트,어육제외), 기타넙치류(냉동), 대구(냉동),

24) 해양수산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미국 수산물 시장동향, 2001. 참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아귀(신선, 냉장) 등이다.

한편 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10대 품목은 굴(통조림), 오징어(냉동), 김(조제한 식용해초류), 생선묵(게맛), 민대구(냉동), 굴(냉동), 기타게살(통조림, 훈제 외), 기타어류(냉동), 생선묵(기타), 기타해조류(냉동 이외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2> 대미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1)

(단위 : 톤, 천 US\$)

순 위	수 출			수 입		
	품 목 명	물 량	금 액	품 목 명	물 량	금 액
1	굴(통조림)	4,357	19,305	명태연육(냉동)	38,677	53,905
2	오징어(냉동)	6,149	6,169	아귀(냉동)	7,192	31,248
3	김(조제한 식용해초류)	2,145	5,926	기타연육(냉동)	7,104	8,769
4	생선묵(게맛)	2,717	5,872	임연수어(냉동)	4,847	4,724
5	민대구(냉동)	501	3,443	바다가재(호마루스종( 냉동제외))	284	4,610
6	굴(냉동)	617	3,151	떡장어(대서양, 태평양(냉동))	2,639	4,280
7	기타게살(통조림, 훈제 외)	291	2,556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피레트,어육제외)	1,582	4,208
8	기타어류(냉동)	333	2,328	기타넙치류(냉동)	4,983	4,086
9	생선묵(기타)	904	2,240	대구(냉동)	2,606	3,715
10	기타해조류(냉동 이외 기타)	34	1,042	아귀(신선, 냉장)	478	3,305
	전품목 합계	27,281	82,210	전품목 합계	93,969	158,52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1.

최근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식품중 미국 FDA 통관시 억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억류사유는 주로 영문라벨링 및 영양분석표 오류, 캔류제품의 경우 FDA 미등록제품, 제품에 불순물 및 부패변질 제품, 금지색소 및 살충제사용 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출전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전문 수출지원기관 및 식품전문 통관사에게 자문, 미국현지에서 샘플을 송부하여 수출시 통관 및 유통상의 필요사항 및 요구사항을 검토 후 조정 및 개선하여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FDA에서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Seafood HACCP규정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수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와 업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과정이란 소비자가 구입하기 직전까지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므로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느 마켓에서 냉동된 해산품이나 통조림으로 된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할 경우 그 마켓은 Seafood HACCP에서 규정하는 생산업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만일 그 마켓에서 냉동된 수산물을 해동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마켓도 생산업체에 해당되어 HACCP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냉동수산물이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회사에서 소매상으로 배달 판매할 경우는 모든 과정이 HACCP규정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도매회사 본사에 있는 냉동창고도 냉동운송차도 모두 HACCP규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산물일 경우 거의 모든 보관시설이 HACCP규정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조개류가 물이 담긴 어항에서 판매될 경우 그 어항도 보관시설에 해당되어 HACCP규정이 적용되어 물의 염도, 온도, 청결도 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FDA에서는 몇몇 국가의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HACCP 플랜 대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개류에 대한 Molluscan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shellfish MOU를 미국 FDA와 교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조개류는 MOU규정을 잘 준수하면 따로 HACCP규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MOU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 제2절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교역구조

### 1. 세계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1990년 이후 세계 양식 생산량과 자연어획량이 모두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공 양식기술과 어선, 어법, 어구 등의 발달로 어획 기술의 전반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상업적 어획 경쟁과 산업화로 각종 수산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의 남획과 해양환경의 황폐화가 심화되어 자연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자 자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주요 해양인접국은 물론 지구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도 기준 전세계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3.0%(3.8백만 톤) 증가한 1억 3천만 톤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수산물 생산량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국별 2000년 수산물 생산량의 경우 <표 4-1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이 세계 총생산량의 31.9%인 41,568천 톤을 생산하여 제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페루가 10,665천 톤으로 2위(8.2%), 일본이 5,752천 톤으로 3위(4.4%), 인도가 5,689천 톤으로 4위(4.4%), 그 다음으로 미국, 인도네시아, 칠레 등의 순이며, 한국은 2,146천 톤을 생산하여 제12위를 차지하였다.

<표 4-13> 주요국별 수산물 생산추이

(단위 : 천 M/T)

국별	1998	1999	2000	2000/1999
중국	38,025	40,030	41,568	103.8%
페루	4,346	8,437	10,665	126.4%
일본	6,030	5,961	5,752	96.5%
인도	5,276	5,592	5,689	101.7%
미국	5,155	5,231	5,174	98.9%
인도네시아	4,595	4,736	4,929	104.1%
칠레	3,558	5,325	4,692	88.1%
러시아	4,518	4,210	4,048	96.2%
태국	3,522	3,621	3,631	100.3%
노르웨이	3,272	3,096	3,191	103.1%
필리핀	2,148	2,204	2,282	103.6%
한국	2,354	2,423	2,146	88.6%
기타	34,991	35,784	36,667	102.4%
계	117,790	126,652	130,434	103.0%

주 : 해양포유동물 및 해조류는 제외.

자료 : FAO 2000,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0 및 2001.

한편, 세계 수산물 생산량 중에서 양식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악화 등으로 자원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어획보다는 양식에 의한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4-14> 참조).

&lt;표 4-14&gt; 어업형태별 세계 수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M/T)

연도별	인공양식			자연어획			총계(A)	B/A
	내수	해양	소계(B)	내수	해양	소계		
1990	8,079	4,996	13,074	6,451	79,101	85,553	98,627	13.3%
1995	13,964	10,439	24,402	7,265	84,745	92,010	116,412	21.0%
1998	18,466	12,041	30,507	8,041	79,242	87,283	117,790	25.9%
1999	20,170	13,277	33,447	8,496	84,709	93,205	126,652	26.4%
2000	21,440	14,145	35,585	8,801	86,048	94,849	130,434	27.3%

주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로 비가공 어획원형 중량기준(단, 해양포유동물 및 해조류 제외).  
 자료 : FAO 2000,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0 및 2001.

전세계 수산물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표 4-15> 참조), 2000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일본이 15,513백만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이 10,453백만 달러로 2위, 스페인이 3,352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홍콩, 덴마크, 중국 순으로 수입이 많았고, 한국은 1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수출의 경우, 태국이 4,367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3,606백만 달러로 2위, 노르웨이가 3,533백만 달러로 3위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덴마크, 칠레, 대만, 스페인, 인도네시아의 순으로 수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14위, 일본은 23위를 차지하였다.

<표 4-15> 세계 수산물 교역구조 및 규모

(단위 : 백만 US\$)

국가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b>&lt;수입&gt;</b>						
일본	1	17,024	15,540	12,827	14,749	15,513
미국	2	7,080	8,139	8,579	9,407	10,453
스페인	3	3,135	3,070	3,546	3,287	3,352
프랑스	4	3,194	3,062	3,505	3,281	2,984
이태리	5	2,591	2,572	2,809	2,729	2,535
독일	6	2,543	2,363	2,624	2,289	2,262
영국	7	2,065	2,142	2,384	2,277	2,184
홍콩	8	1,928	2,097	1,612	1,594	1,949
덴마크	9	1,619	1,521	1,704	1,772	1,806
중국	10	1,184	1,183	991	1,127	1,796
기타		13,323	15,068	14,672	15,097	15,155
계		55,686	56,757	55,253	57,609	59,989
<b>&lt;수출&gt;</b>						
태국	1	4,118	4,330	4,031	4,110	4,367
중국	2	2,857	2,937	2,656	2,960	3,606
노르웨이	3	3,416	3,399	3,661	3,765	3,533
미국	4	3,148	2,850	2,400	2,945	3,055
캐나다	5	2,291	2,271	2,265	2,618	2,818
덴마크	6	2,699	2,649	2,898	2,884	2,756
칠레	7	1,697	1,782	1,597	1,700	1,785
대만	8	1,762	1,780	1,580	1,702	1,756
스페인	9	1,447	1,471	1,529	1,604	1,600
인도네시아	10	1,678	1,621	1,628	1,527	1,584
기타		27,684	28,291	26,918	26,993	28,356
계		52,797	53,381	51,163	52,808	55,216

주 : 해양포유동물 및 해조류 제외. 순위는 2000년도 기준임.

자료 : FAO 2000,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1

어획물의 용도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신선냉장물이 가장 높은 비율(2000년 39.8%)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어분, 어유(2000년 21.1%) 및 냉동제품(2000년 19%)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표 4-16> 세계 어획물의 용도별 이용비중**

(단위 : %)

상 품 명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냉장	36.3	38.2	41.1	39.4	39.8
냉동	20.3	20.1	20.6	19.3	19.0
통조림	8.6	8.7	8.9	8.4	8.2
저장품(cured)	8.0	7.2	8.1	7.4	7.1
어분, 어유	22.9	21.1	16.9	20.2	21.1
기타	3.9	4.7	4.4	5.3	4.8

주 : 해양포유동물 및 해조류는 제외.

자료 : FAO 2000 및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1.

## 2. 한국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 가. 한국의 수산업 현황

한국의 수산물 총 공급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 수산물의 국내소비는 1995년 3,215천 톤을 최고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국내소비량이 2,395천 톤까지 대폭 감소하였다. 국내생산면에 있어서도 자원고갈, 원양어장의 상실, IMF의 영향 등으로 1995년 3,348천 톤에서 1998년 2,835천 톤(1997년 3,244천 톤)까지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수산물 수입은 1980년 41천 톤, 1990년 380천 톤, 2000년 1,420천 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1980년의 35배, 1990년의 3.7배)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도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도 2,909천 톤에 비해 395천 톤이 감소한 2,514천 톤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표 4-17>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구조

(단위 : 천 M/T, %)

연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요	국내소비	1,746	2,583	3,215	3,202	3,187	2,394	2,746	2,668	2,960
	수출(A)	696	1,058	1,170	1,191	1,193	1,354	1,232	1,338	1,360
	이월	77	290	371	427	480	319	582	510	540
	A/C(%)	27.6	26.9	24.6	24.7	24.5	33.3	27.0	29.6	28.0
계(C)		2,519	3,931	4,756	4,820	4,860	4,067	4,560	4,516	4,860
공급	국내생산	2,410	3,275	3,348	3,244	3,244	2,834	2,909	2,514	2,900
	수입(B)	41	380	948	1,205	1,189	753	1,332	1,420	1,450
	재고	68	276	460	371	427	480	319	582	510
	B/C(%)	1.6	9.7	19.9	25.0	24.5	18.5	29.2	31.4	29.8

주 : 수출 및 수입은 원어 환산 수치이고, 2001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1, 2001.

이는 <표 4-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획비중이 큰 연근해 어업과 양식 어업, 원양어업에서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어업별로 살펴보면, 연근해어업은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 등 대중성 어종의 어획 부진에 기인한 것이며, 양식어업은 김, 다시마, 톳 등의 작황이 부진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원양어업의 경우, 오징어, 명태가 40%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sup>25)</sup>

25)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1), pp.28-39 참조.

&lt;표 4-18&gt; 한국의 어업별 수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연도 어업별	1980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2000 (%)
연근해어업	1,372	1,542	1,368	1,308	1,336	1,189	1,252	95.0
양식어업	541	773	1,015	777	765	653	656	99.6
내수면어업	39	35	32	27	18	21	18	113.5
원양어업	458	925	829	723	792	651	739	88.1
계	2,410	3,275	3,244	2,835	2,911	2,514	2,665	94.3

자료 : 수산청, 1992년도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2.,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특히, 신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에 의하여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향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원양어업 생산량도 신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어장축소 및 어장확보 곤란으로 해외어장개척 및 어업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생산량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9>는 어업인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총인구는 1991년 43,295천명에서 2000년도 47,977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어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어업종사자의 비중도 1991년 0.47%에서 2000년 0.29%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해면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1990년대에 들어와 매년 약 2~3천호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0년도의 어가호수는 81천 8백호로 전년 대비 16.3%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2000년도 어가구원 수도 251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어업종사자수는 140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어가구원 및 어업종사자

연도	가구(천호)	가구원(천명)	어업종사자 (천명)	총인구	어업종사자/ 총인구
1991	120	470	205	43,295	0.47
1992	116	425	207	44,569	0.46
1993	114	405	207	45,078	0.46
1994	110	382	198	45,512	0.44
1995	104	347	176	45,982	0.38
1996	102	330	172	46,434	0.37
1997	100	323	173	46,885	0.37
1998	98.9	322	173	47,174	0.37
1999	97.8	315	171	47,543	0.36
2000	81.8	251	140	47,977	0.29

주 : 1991년도 총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이고, 이외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총인구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각년도), 통계청, 2000 농어업 총조사,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어가소득면에 있어서는 <표 4-2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7년 20,331천 원을 정점으로 하여 2000년도 18,875천 원으로 감소하였다. 농가소득 및 도시가계소득에 비하여 어가소득은 1990년도 각각 90.9%, 88.6% 수준에서 1995년도 86.1%, 81.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81.8%, 65.9%로 감소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단편적인 결과이지만, 농가소득 및 도시가계소득에 비하여 어가소득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은 기존 수산정책의 전환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lt;표 4-20&gt; 어가, 농가, 도시가계의 소득비교

(단위: 천 원, %)

구 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평균 증감율
어가소득(A)	10,023	18,780	19,039	20,331	16,794	18,428	18,875	0.6
농가소득(B)	11,026	21,803	23,298	23,488	20,494	22,323	23,072	1.4
도시가계소득 (C)	11,319	22,933	25,832	27,448	25,597	26,696	28,643	4.7
(A/B, %)	90.9	86.1	81.7	86.6	81.9	82.6	81.8	
(A/C, %)	88.6	81.9	73.7	74.1	65.6	69.0	65.9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각연도).

해양수산부,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각연도).

한국은 반도국이며 3,300여 개의 작은 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토가 산악으로 농지가 협소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식량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소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으로서도 오래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산업·경제적 기능 이외에 한국의 수산업은 소지역의 중추산업으로서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계승하는 사회문화적 기능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3,300여 개의 도서(특히, 낙도)와 1,700여 개의 어촌계 지역에서는 어업이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핵심산업으로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어촌지역이 존재함으로써 국토의 보존과 균형 있는 발전에 공헌하고,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어업·어촌의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는 비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산물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한국형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식량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중 수산물이 약 4할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 4-21> 동물성 단백질 공급실태

(단위 : g/1일 1인당)

구분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A)	36.39	39.28	41.13	40.26	36.36	40.76
축산물	19.73	22.87	24.10	24.60	23.85	25.49
어패류(B)	16.66	16.41	17.03	15.66	12.51	15.27
점유율(B/A,%)	45.8	41.8	41.4	38.9	34.4	37.5

주 : 1998년은 IMF의 영향으로 국내소비가 전반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각연도).

<표 4-22> 한국의 수산물 소비량 연도별 추이

(단위: kg/1년 1인당)

년도	계	어패류	해조류
1980	27	22.5	4.5
1985	37.2	30.7	6.5
1990	36.2	30.5	5.7
1995	45.1	33.4	11.7
1996	43.7	34.4	9.3
1997	43.6	32	11.6
1998	34.7	27.2	7.5
1999	38.3	30.7	7.6
2000(잠정)	35.6	30.6	5.0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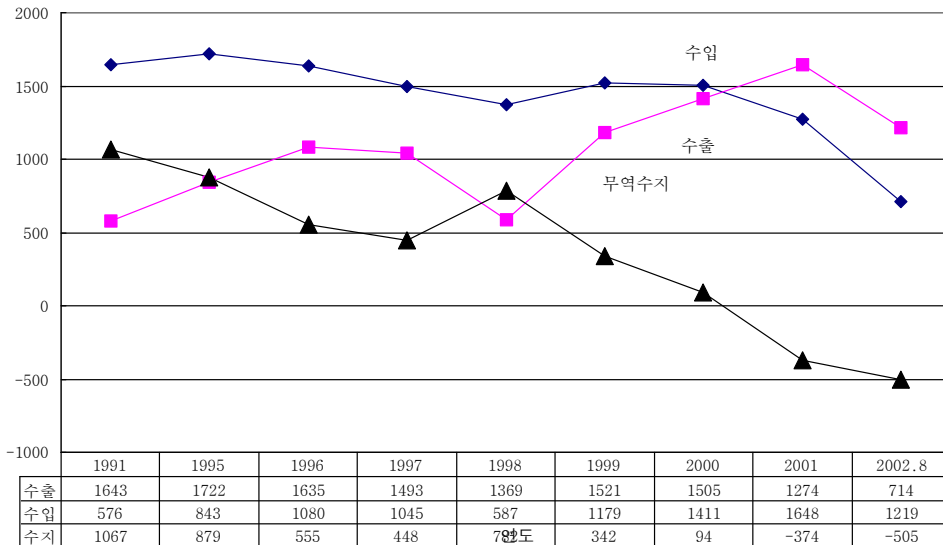
나. 한국의 수산물 교역구조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199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도에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2

년에도 8월까지 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그림 4-1> 참조).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장축소, 연근해 자원 감소 등으로 수산물의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산물 수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각연도)

우리나라와 수산물 교역관계에 있는 주요국별 최근 3년 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표 4-2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 스페인, 홍콩을 제외하고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미국, 태국 등 세계의 주요 수산물 수출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적자폭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히 대필리핀과의 수산물 교역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최근 적자로 돌아섰다.

<표 4-23>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무역수지

(단위 : 천 US\$)

연도 국가명	1999			2000			2001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일본	1,155,211	107,206	1,048,005	1,125,248	185,109	940,139	924,873	139,129	785,744
중국	58,854	413,270	-354,416	84,090	486,841	-402,751	55,709	634,449	-578,740
미국	76,386	129,816	-53,430	78,712	145,366	-66,654	82,210	158,520	-76,310
스페인	35,547	9,747	25,800	25,046	10,303	14,743	41,503	8,629	32,874
태국	28,871	43,523	-14,652	22,691	67,750	-45,059	32,864	83,288	-50,424
대만	11,259	21,073	-9,814	18,137	31,343	-13,206	16,790	45,777	-28,987
캐나다	10,933	18,871	-7,938	13,002	18,637	-5,635	10,821	24,924	-14,103
필리핀	17,866	11,054	6,812	13,059	17,245	-4,186	5,681	18,021	-12,340
홍콩	11,780	12,710	-930	13,160	9,952	3,208	9,946	3,776	6,170
인도네시아	8,762	22,962	-14,200	6,981	28,378	-21,397	4,628	25,175	-20,547
기타	105,065	388,736	-283,671	104,344	409,674	-305,330	88,594	506,684	-418,090
전체	1,520,534	1,178,968	341,566	1,504,470	1,410,598	93,872	1,273,619	1,648,372	-374,75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각연도).

총 수출금액의 72.6%(2001년)를 수출하는 일본과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태국 등의 아시아 지역과 미국 등의 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면, 향후 수산물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주요 품목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총 403개 HS 품목중에서 281개 품목(HSK 기준)을 수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참치, 굴, 오징어, 붕장어, 생선목 등 상위 5개의 품목이 45%를 차

지하였으며 물량 기준으로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주력품목인 참치는 최대 수출국인 일본(총 수출금액의 87% 차지)의 경기침체로 전년에 비하여 약 20%(물량 20%)나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 붕장어가 전년대비 18%(물량 14%), 오징어가 전년대비 26%(물량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총 403개 품목중에서 220개 품목(HSK 기준) 9억2,500만 달러이며, 이 중에서 상위 20개 품목이 73%를 차지하였는데, 눈다랑어, 캐비아 대용물, 황다랑어, 굴, 피조개, 넙치, 붕장어 피레트, 명란 등이 금액순으로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성과를 나타내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9년 7.3%를 최고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6.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4> 참조).

<표 4-24>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수산물 점유율

(단위 : 백만 US\$, %)

구 분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수산물 수출(A)	1,713	1,635	1,493	1,369	1,521	1,505	1,274
대일수출(B)	1,294	1,231	1,031	958	1,112	1,125	925
전년비 증감율(A)	-	-4.6	-8.7	-8.3	11.1	-1.1	-15.3
전년비 증감율(B)	-	-4.9	-16.2	-7.1	16.1	1.2	-17.8
비중(B/A)	75.5	75.3	69.1	70.0	73.1	74.8	72.6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	7.0	7.0	6.4	7.1	7.3	7.2	6.8
대일수입(C)	46	59	72	38	107	185	139
대일 무역수지(B-C)	1,248	1,172	959	920	1,005	940	786

자 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각연도).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한편 최근 3년간(1999~2001) 대미 수산물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약 7,890만 달러로 수산물 수출국 중 일본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상위 30개 품목이 전체 수출금액의 약 85%를 차지하였으며,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오징어(냉동), 김(조제한 식용해초류), 생선묵(게맛), 굴(냉동), 기타 게살(통조림, 훈제외), 김(마른것), 민대구(냉동), 미역(건조), 생선묵(기타), 멸치(건조),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조미오징어, 미역(염장), 오징어(건조), 기타어류(냉동), 바지락(밀폐용기에 넣은것), 명태(북어(건조)), 골뱅이(밀폐용기에 넣은 것) 등이 금액순으로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4-26> 참조).

2001년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은 305개 품목(HSK 기준)을 수입하였으며, 이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조기, 어란, 새우, 갈치, 명태 등 상위 5개 품목이 32%(물량 22%)를 차지하였다. 최대 수입품목인 조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전년 대비하여 무려 279%나 증가하여 총 수입금액의 약 10%(물량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수입되며 국내 소비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냉 갈치는 주수입국인 일본의 어획량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중국산 냉동갈치 수입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총 196개 품목(HSK 기준) 1억 3,900만 달러이며, 이 중에서 상위 20개 품목이 71%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명태, 갈치, 활돔, 꽁치, 눈다랑어, 캐비아 대용물, 황다랑어, 굴, 피조개, 넙치, 봉장어 피레트, 명란 등(중량 기준으로는 명태, 기타어류, 꽁치, 갈치, 임연수어 등)이었다. 이와 같이 한·일간 주요 수출입 품목은 일부 품목에서 겹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4-25> 참조).

&lt;표 4-25&gt; 한국의 대일 10대 수입 수산물

(단위 : kg, US\$)

품 목	중 량	금 액
명태(신선,냉장)	15,146,691	28,368,116
갈치(신선,냉장)	3,353,061	12,005,470
돔(활어)	1,882,195	11,452,785
기타어류(냉동)	11,473,678	7,740,928
꽂치(학꽂치포함(냉동))	7,794,184	5,811,009
기타어류피레트(냉동)	1,210,009	4,042,103
참다랭이피레트(냉동)	140,044	3,963,001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458,385	3,945,276
어류의유지,분획물(간유제외)	149,907	3,684,281

주 : 3년 간 평균 수출실적 순으로 정리한 것임.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각연도).

한편 최근 3년간(1999~2001) 대미 수산물 수입실적의 경우 평균금액이 약 1억 4,456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국 중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상위 30개 품목이 전체 수입금액의 약 97%를 차지하였는데, 명태연육(냉동), 아귀(냉동), 기타연육(냉동),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기타넙치류(냉동), 임연수어(냉동), 떡장어(대서양,태평양(냉동)), 아귀(신선,냉장), 대구(냉동), 바다가재(호마루스중(냉동제외)),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명태(냉동),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불낙(적어포함(냉동)), 홍어(냉동),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피레트, 어육제외), 대구(신선,냉장), 어류의웨이스트, 해삼(기타조제), 닭새우류(냉동) 등이 금액순으로 수출품목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4-27> 참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4-26> 한국의 대미 수산물 수출액 순위 30개 품목(1999년~2001년 평균)

순위	HS			품목명	평균수출량 (Kg)	평균수출액 (USD)
1	1605	90	1010	굴(밀폐용기에 넣은것)	4,278,573.3	20,129,250.7
2	0307	49	1020	오징어(냉동)	7,202,766.3	5,958,328.0
3	2106	90	4010	김(조제한 식용해초류)	1,792,621.3	5,268,922.0
4	1604	20	4010	생선묵(게맛)	2,321,178.7	5,096,235.0
5	0307	10	2000	굴(냉동)	694,239.3	3,658,973.0
6	1605	10	1090	기타게살(통조림, 훈제외)	415,105.3	3,626,736.0
7	1212	20	1010	김(마른것)	670,810.3	2,614,122.7
8	0303	78	0000	민대구(냉동)	324,467.3	2,425,254.3
9	1212	20	2010	미역(건조)	606,442.7	1,722,576.7
10	1604	20	4090	생선묵(기타)	657,797.0	1,705,779.0
11	0305	59	2000	멸치(건조)	444,409.0	1,259,531.3
12	1605	90	9090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200,535.0	1,236,036.0
13	1605	90	9010	조미오징어	181,313.3	1,232,134.7
14	1212	20	2020	미역(염장)	618,709.7	1,160,657.0
15	0307	49	3000	오징어(건조)	237,083.3	1,106,993.7
16	0303	79	9099	기타어류(냉동)	135,812.7	807,629.3
17	1605	90	1030	바지락(밀폐용기에 넣은것)	182,828.3	776,626.3
18	0305	59	3000	명태(복어(건조))	167,861.7	741,696.7
19	1605	90	1070	콜뱅이(밀폐용기에 넣은것)	137,199.0	706,555.0
20	1212	20	2090	미역(건조, 염장, 냉장, 냉동한 것 이외기타)	224,552.3	625,971.0
21	1604	20	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182,216.7	614,033.3
22	0305	20	4010	어란(명태/염장, 염수장)	74,437.7	613,521.3
23	1604	19	1010	꽂치(밀폐용기에 넣은 것)	285,798.7	590,547.0
24	0303	80	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31,254.0	545,156.7
25	0305	69	5000	고등어(염장, 염수장)	142,175.0	520,645.7
26	0305	69	9000	기타어류(염장, 염수장)	123,934.0	507,209.0
27	0304	20	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62,971.7	491,016.7
28	2106	90	4090	조제한 식용 해조류(김 이외 기타)	223,259.3	487,264.3
29	0303	41	0000	날개, 긴지느러미 다랭이(냉동)	211,433.3	483,561.3
30	1604	11	1000	연어(밀폐용기에 넣은것)	231,995.3	473,009.7
상위 30개 품목의 수출량 및 금액 평균(A)					23,063,781.5	67,185,973.4
최근 3년간 전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량 및 금액 평균(B)					26,722,374.0	78,928,694.0
A/B(%)					86.3%	85.1%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각연도).

&lt;표 4-27&gt; 한국의 대미 수산물 수입액 순위 30개 품목(1999년~2001년 평균)

순위	HS			품목명	평균수입량 (Kg)	평균수입액 (USD)
1	0304	90	1010	명태연육(냉동)	27,741,958.3	42,508,558.0
2	0303	79	9091	아귀(냉동)	7,017,530.3	30,527,908.0
3	0304	90	1090	기타연육(냉동)	8,039,978.3	11,517,165.7
4	0303	80	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769,298.3	8,364,480.7
5	0303	39	0000	기타넙치류(냉동)	6,519,439.0	4,374,075.3
6	0303	79	9060	입연수어(냉동)	6,036,071.0	4,347,672.0
7	0303	79	9092	떡장어(대서양, 태평양(냉동))	2,582,626.7	4,200,261.0
8	0302	69	9040	아귀(신선, 냉장)	528,623.0	3,653,445.7
9	0303	60	0000	대구(냉동)	2,388,718.0	3,600,521.7
10	0306	22	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제외))	192,193.3	3,021,426.3
11	0511	91	101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47,277.7	2,653,107.3
12	0303	79	1000	명태(냉동)	3,578,276.3	2,561,009.0
13	2301	20	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3,685,638.7	2,467,166.0
14	0303	79	9070	불낙(적어포함(냉동))	2,199,144.3	2,334,192.0
15	0303	79	9093	홍어(냉동)	1,398,744.0	1,918,019.7
16	0303	80	2090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피레트, 어육제외)	681,186.0	1,878,639.0
17	0302	50	0000	대구(신선, 냉장)	304,528.7	1,169,811.3
18	0511	91	2000	어류의웨이스트	603,030.3	1,081,609.3
19	1605	90	9020	해삼(기타조제)	64,771.3	941,991.7
20	0306	11	0000	닭새우류(냉동)	32,875.7	886,381.7
21	1504	20	0000	어류의유지, 분획물(간유 제외)	1,676,900.3	778,305.3
22	0303	32	0000	황다랭이(신선, 냉장)	1,061,821.7	768,566.7
23	0303	79	2000	은대구(냉동)	88,899.0	658,132.0
24	0303	79	9096	은대구(냉동)	447,643.0	634,916.3
25	1603	00	9000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동물의 엑스, 즙(어류 이외 기타)	164,190.0	625,834.3
26	0303	10	0000	태평양연어(냉동)	405,286.0	500,124.3
27	0307	49	1020	오징어(냉동)	657,194.3	481,658.7
28	0303	74	0000	고등어(냉동)	863,527.7	472,234.7
29	0303	71	0000	정어리(냉동)	686,886.3	423,010.3
30	0303	29	0000	기타연어류(냉동)	261,825.0	417,206.7
상위 30개 품목의 수입량 및 금액 평균(A)					80,726,082.5	139,767,430.7
최근 3년간 전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량 및 금액 평균(B)					82,248,401.0	144,560,015.7
A/B(%)					98.1%	96.7%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각연도).

### 3. 일본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 가. 일본의 수산업 현황

일본의 수산업은 연안지역의 기간산업으로서, 외식산업 등의 관련산업과 함께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수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산업생산액의 약 1할을 차지하는 곳도 있을 만큼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어업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1953년 약 80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 432천 명, 1995년 301천 명으로 10년 간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의 어업종사자 수는 278천 명으로 1985년에 비하여 35.6%나 감소하였으며, 특히 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종사자 수는 56.9%나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sup>26)</sup>

<표 4-28> 일본 어업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85	1995	1996	1997	1997/1985(%)
연안어업취업자	336,630	254,240	244,110	237,140	△29.6
자영	283,520	216,180	208,700	203,900	
고용	53,110	38,060	35,400	33,270	
근해·원양어업취업자	95,260	47,200	43,270	41,030	△56.9
자영	10,980	7,310	6,630	6,470	
고용	84,280	39,890	36,650	34,560	
계	431,880	301,430	287,380	278,200	△35.6

자료 : 農林水産省, 漁業センサス 및 漁業動態統計年報(각연도).

26) 日本 水産廳, 平成10年度 漁業の動向に関する年次報告(1999) 참조.

일본의 어업생산량은 1984년 1,281만 6천 톤(세계 제1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4% 감소한 574만 톤이었을 기록하였다.<sup>27)</sup> 이러한 급격한 축소 경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최근 수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수산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일본은 2012년 수산물 생산목표를 2000년보다 약 18.8% 증가한 682만 톤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1,086만 톤(식용 851만 톤, 해조류 제외)에서 약 4.5% 감소한 1,037만 톤(식용 806만 톤, 5.3% 감소)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4-29> 일본의 수산물 어업별 생산현황과 생산목표

(단위 : 만 톤, %)

구 분		연 도		
		2000	2012	증감률
전체(식용)물		574(453)	682(526)	18.8
어패류 생산내 역	원양어업	86	79	△8.0
	근해어업	259	342	32.0
	연안어업(해조류 제외)	146	170	16.4
	해면양식업(해조류 제외)	70	78	11.4
	내수면어업·양식업	13	13	0.0
해조류		65	67	3.1

자료 : 日本 水産廳, 水産基本計劃, 2002. 3.

일본의 수산업은 연안지역의 기간산업으로서 외식산업 등의 관련산업과 함께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 및 연안지역에 따라서는

27) 2000년도 어업생산량 574만 톤은 일본 어업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한 1984년 생산량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수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산업 생산액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0년의 경우 총 수산물 공급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은 50%정도에 그쳤고, 우리나라는 56%선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산물 국내소비에 대하여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59.2%에서 2000년도에는 5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4-30> 참조).

<표 4-30> 일본의 수산물 수급현황

(단위 : 천 M/T, %)

연도 구분	1997	1998	1999	2000
총 공급(a)	12,725	11,298	11,680	11,619
국내생산(b)	6,727	6,044	5,949	5,736
국내소비(c)	11,363	10,689	10,659	10,857
b/a(%)	52.9	53.5	50.9	49.4
b/c(%)	59.2	56.5	55.8	52.8

자료 : 日本農林統計協會, 2001年度 水産白書, 2002.

나. 일본의 수산물 교역구조

일본은 1961년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으며, 수입 자유화이래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64년 88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산물 수입이 1971년에는 438백만 달러로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입급증 현상은 고도성장(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나타난 수산물 소비의 급증에 대하여 국내생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된다.

한편 일본의 수산물 수급정책에서 수산물 수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표 4-3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수산물 총 공급에서 50% 이상을 수입 수산물로 충당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점유율은 완만하지만 약간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31> 일본의 수산물 총공급 대비 수입수산물 비중

(단위 : 천 M/T, %)

구 분 \ 연 도	1997	1998	1999	2000
총 공 급	12,725	11,298	11,680	11,619
수 입	5,998	5,254	5,731	5,883
수입/총공급(%)	47.1	46.5	49.1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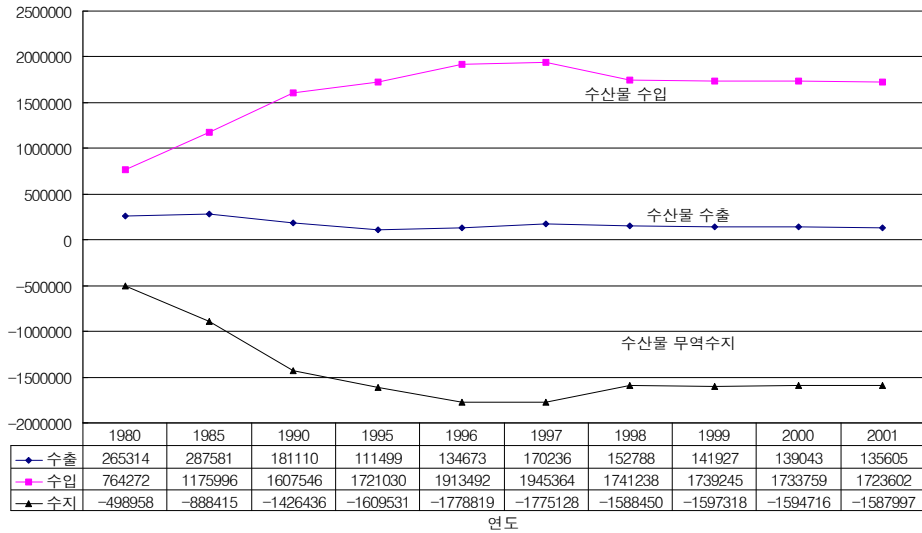
자료: 日本農林統計協會, 2001年度 水産白書, 2002.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내생산의 부족으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은 1961년 수산물 수입 자유화이래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1971년부터 일본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2001년 현재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조 5,880억 엔으로 적자규모가 가장 컸던 1996년 1조 7,788억 엔에 비하여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조 5천억 엔 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일본경제의 경기하락에 따른 수산물 소비의 둔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일본의 수산부문 무역수지 추이



자료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1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入編, 輸出編, 2002.

2001년도 현재 일본은 세계 149개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9개국으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국별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의 23억 달러(점유율 16.35%)로 1위이며, 그 다음 미국 14억 달러(10.11%), 태국 11억 달러(7.55%), 러시아 10억 달러(7.33%), 한국 10억 달러(6.7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 6개국이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4-32> 참조).<sup>28)</sup>

일본시장에서의 HS 4단위 기준 주요 수입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4-3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냉동수산물(30.0%), 연체동물(20.9%), 어류조제가공품(10.7%), 활어(8.4%) 순으로 일본시장에 많이 수출하고

28)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1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2002)을 참조.

있으며, 경쟁 상대국인 중국은 어류조제가공품, 연체동물 및 갑각류 조제품, 연체동물, 신선·냉장 수산물 순으로 나타난다.

<표 4-32> 일본의 주요국별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억 US\$)

구 분	1999	2000	2001
총수입	152.5	162.4	142.4
중 국	21.7	24.8	23.3
미 국	15.2	15.7	14.4
태 국	10.4	11.2	10.8
러시아	11.9	12.9	10.4
한 국	11.1	11.6	9.6
인도네시아	9.6	10.3	9.6

자료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1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入編, 2002.

미국은 냉동수산물, 어류 피레트, 갑각류 순이며, 러시아는 갑각류, 냉동수산물, 태국은 연체동물 및 갑각류 조제품, 갑각류, 연체동물, 어류 피레트, 인도네시아는 갑각류, 신선·냉장 수산물, 어류조제가공품 순으로 일본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물량면에서 일본이 많이 수입하는 것은 연어·송어(28만 톤), 새우(25만 톤), 고등어(17만 톤), 명태연육(15만 톤), 눈다랑어(15만 톤), 황다랑어(12만 톤), 게(11만 톤), 문어, 뱀장어조제품, 넙치, 전갱이, 청어, 오징어, 미역 등이며 (2001년 기준), 일본의 주요 수출 수산물은 연어·송어(2만9천 톤), 가다랭이(2만 6천 톤), 다랑어, 새치류, 꽁치, 오징어, 고등어, 가리비, 진주 등이다.<sup>29)</sup>

29) 상세한 내용은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1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入編 및 輸出編 (2002)을 참조.

<표 4-33> 일본시장에서의 주요국별 품목별 수입구조(1999년 기준)

(단위 : 천 US\$, %)

HS품목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계	1,111,738(100)	2,166,580(100)	1,524,617(100)	1,188,479(100)	1,037,715(100)	946,299(100)
0301	93,120( 8.4)	100,861( 4.7)	3,969( 0.3)	2( 0.0)	1,098( 0.1)	4,921( 0.5)
0302	34,424( 3.1)	171,821( 7.9)	54,295( 3.6)	8,319( 0.7)	20,597( 2.0)	130,005(13.5)
0303	333,714(30.0)	97,996( 4.5)	745,872(48.9)	472,160(39.7)	3,964( 0.4)	31,387( 3.3)
0304	109,152( 9.8)	163,590( 7.6)	272,117(17.8)	38,369( 3.2)	201,112(19.4)	9,870( 1.0)
0305	5,877( 0.5)	44,523( 2.1)	55,194( 3.6)	2,595( 0.2)	1,384( 0.1)	2,409( 0.2)
0306	18,653( 1.7)	137,929( 6.4)	161,654(10.6)	603,283(50.8)	249,007(24.0)	268,406(58.9)
0307	232,570(20.9)	265,152(12.2)	120,277( 7.9)	38,047( 3.2)	202,081(19.5)	7,519( 0.8)
1212	84,733( 7.6)	68,620( 3.2)	621(0.04)	102( 0.0)	215( 0.0)	645( 0.0)
1604	119,434(10.7)	813,375(37.5)	69,299( 4.5)	8,643( 0.7)	97,332( 9.4)	75,338( 7.8)
1605	62,710( 5.6)	266,386(12.3)	4,422( 0.3)	9,560( 0.8)	258,573(24.9)	65,179( 6.8)
기타	118,212( 1.7)	36,327( 1.7)	36,897( 2.4)	7,399( 0.6)	2,352( 0.2)	68,620( 7.1)

주 : 0301:활어, 0302:신선냉장어류, 0303:냉동어류, 0304: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305:건조·염장·염수장·훈제 어류,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 1212:해조류, 1604:어류조제가공, 1605:연체동물갑각류조제가공

자료 : 日本水産物輸入協會, 1999年度 水産物輸入統計年報, 2000.

#### 4. 미국의 수산업 현황과 수산물 교역구조

##### 가. 미국의 수산업 현황

<표 4-34>는 미국의 어업형태별 어획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수산물 총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1.8%정도 감소한 5,215천 톤을 나

타내었다. 이 중 어로어업의 경우 2000년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0.9%정도 감소한 4,787천 톤이었으며, 양식어업 역시 전년도에 비해 10.5%정도 감소한 428천 톤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표 4-34> 미국의 어업형태별 어획량 추이

(단위 : 천 톤)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어로어업	해면	5,262	5,028	5,017	4,700	4,795	4,762
	내수면	37	33	38	36	36	25
	소계	5,299	5,061	5,055	4,736	4,831	4,787
양식어업	해면	139	113	129	125	139	102
	내수면	275	280	309	320	339	326
	소계	414	393	438	445	478	428
총 계		5,713	5,454	5,493	5,181	5,309	5,215

자료 : FAO 2000.

미국의 어획은 상업용(Commercial)과 레저용(Recreational)으로 대별된다. 전국 50개 주에서의 미국 어민에 의한 상업적 생산(식용+산업용)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의 어획량은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4백30만 톤이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9% 정도 감소한 3,228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어획생산량 및 금액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5> 참조). 이중 어류(Finfish)는 전체 양육량의 87%를 차지하나 전체 생산액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30)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0 및 2001.

<표 4-35> 미국의 상업용 어업생산 규모

(단위 : 백만 M/T, 백만 US\$)

구 분	1999		2000		2001		전년대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어획생산	4.2	3,467	4.1	3,549	4.3	3,228	104.8%	91.0%

자료 :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0 및 2001.

식용으로 이용되는 어획물은 2001년도의 경우 약 73억 파운드(3,300천 톤)으로 2000년에 비해 4억 파운드(182천 톤) 증가하였고(약 5.8%)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어획물은 약 22억 파운드(998천 톤)로 2000년에 비해 1%정도 증가하였다 (<표 4-36> 참조).

<표 4-36> 미국 상업용 어획물의 최종소비, 1992-2001

연도	식용 양육량		산업용 양육량		계	
	백만 파운드	백만 달러	백만 파운드	백만 달러	백만 파운드	백만 달러
1992	7,618	3,531	2,019	147	9,637	3,678
1993	8,214	3,317	2,253	154	10,467	3,471
1994	7,936	3,714	2,525	95	10,461	3,809
1995	7,667	3,625	2,121	145	9,788	3,770
1996	7,474	3,355	2,091	132	9,565	3,487
1997	7,244	3,285	2,598	163	9,842	3,448
1998	7,173	3,009	2,021	119	9,194	3,128
1999	6,832	3,265	2,507	202	9,339	3,467
2000	6,912	3,398	2,157	152	9,069	3,550
2001	7,314	3,074	2,178	154	9,492	3,228

주 : 1) 모든 어획물은 생중량으로 표기(패류는 패각을 제외한 육질중량 사용)

2) 굴과 대합은 양식생산량이 포함됨.

자료 :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1.

<표 4-37>는 미국내 해양레저에 의해 어획되는 finfish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중 해양 레저용으로 대서양, 걸프, 태평양 연안에서 어획(포획후 살려보낸 어류포함)된 어류(finfish)는 약 84.3백만 회 낚시여행을 통해 약 440.3백만 마리 정도를 잡았고 이중 잡은 후 살려보낸 어류를 제외한 어획량은 186.7백만 마리 정도이고 중량은 약 119천 톤(262.4백만 파운드)이었다.

**<표 4-37> 미국 해양레저에 의한 어류 어획량 및 방류량**

(단위 : M/T, 천마리)

연도	1998	1999	2000	2001
어획량	90,580	90,146	119,786	119,037
어획마리수	140,371	135,681	191,979	186,702
방류마리수	182,977	193,144	252,766	253,625

자료 :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1999, 2000 및 2001.

<표 4-38>은 지난 3년 간 미국 수산물의 가공품 생산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중 식용, 비식용(산업용) 가공생산품은 전년에 비하여 약 731백만 달러가 하락한 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중 식용가공품은 약 68억 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약 741백만 달러다 감소하였고 산업용 가공품은 약 520백만 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약 9백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용가공품 중에는 신선, 냉동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산업용 가공품 중에는 미끼용 및 동물사료(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4-38> 미국 수산물 가공생산 현황

(단위 : 백만 US\$, %)

상 품 명	1999		2000		2001	
	생산액	비 중	생산액	비 중	생산액	비 중
○ 식용						
- 신선, 냉동	5,051	69	6,063	75	5,563	76
- 통조림	1,522	21	1,334	16	1,111	15
- 저장품	152	2	179	2	161	2
(소계)	6,725	92	7,576	94	6,835	93
○ 산업용(비식용)						
- 미끼용, 동물사료(캔)	340	5	292	4	291	4
- 어분, 어유	189	3	136	2	174	2
- 기타	79	1	83	1	55	1
(소 계)	608	8	511	6	520	7
총 계	7,333	100	8,087	100	7,355	100

자료 :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0 및 2001.

나. 미국의 수산물 교역구조

<표 4-39>은 미국의 수출입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이후 수입규모가 식용, 비식용 모두 매년 완만하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1년에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전체 수산물 수입액은 18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약 466백만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서 식용 수산물은 약 1.9백만 톤, 9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약 190백만 달러가 감소하였고, 비식용(산업용) 수산물은 약 8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약 933백만 달러가 증가하였다. 부류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식용은 전체 수입액의 53.2%이며 이중 신선·냉동품 89.5%, 통조림 7.8%, 저장품(cured) 1.5%, 기타 1.1%로 나타났다. 비식용은 전체 수입액의 46.8%이었고 어분·부산물(meal, scrap) 0.3%, 어유(fish oil) 0.2%, 기타 99.5% 등으로 나타났다.

&lt;표 4-39&gt; 미국 수산물 교역현황

(단위 : 천 M/T, 백만 US\$)

구 분	수 입					
	1999		2000		200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b>&lt;수입&gt;</b>						
□ 식 용	1,764	9,014	1,805	10,054	1,861	9,864
- 신선, 냉동	1,464	8,043	1,502	9,120	1,564	8,832
- 통조림	248	682	252	670	245	774
- 저장품(cured)	30	145	31	145	33	150
- 기타	22	144	20	119	19	108
□ 비식용	-	8,026	-	8,959	-	8,683
- 어분, 부산물	33	17	36	18	51	27
- 어유	12	15	12	19	11	17
- 기타	-	7,994	-	8,922	-	8,639
총 계	-	17,040	-	19,013	-	18,547
<b>&lt;수출&gt;</b>						
□ 식 용	890	2,849	982	2,952	1,163	3,195
- 신선, 냉동	748	2,175	834	2,238	1,000	2,320
- 통조림	76	256	72	218	83	240
- 저장품(cured)	12	27	6	20	10	31
- 기타	54	391	70	476	70	604
□ 비식용	-	7,158	-	7,830	-	8,639
- 어분, 부산물	87	52	95	75	108	68
- 어유	105	36	65	24	113	42
- 기타	-	7,070	-	7,731	-	8,529
총 계	-	10,007	-	10,782	-	11,834

자료 :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0 및 2001., 인터넷-<http://www.st.nmfs.gov/stl>.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수출규모 역시 1990년 이후 식용, 비식용 모두 매년 완만하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01년에는 비교적 큰 증가를 보였다.

2001년 미국 전체 수산물 총 수출액은 118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1억 달러 증가하였다. 이중 식용 수산물은 약 1.2백만 톤, 3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약 243백만 달러가 증가하였고, 비식용(산업용) 수산물은 약 86억 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약 809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부류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식용은 전체 수출액의 27.0%이며 이중 신선·냉동품 72.6%, 통조림 7.5%, 저장품(cured) 1.0%, 기타 18.9%로 나타났다. 비식용은 전체 수출액의 73.0%이었으며 어분·부산물(meal, scrap) 0.8%, 어유(fish oil) 0.5%, 기타 98.7% 등으로 나타났다.

<표 4-40>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수출입 실적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대외교역은 내수시장(수입)과 주요 대외시장(수출)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전반적으로 수출입의 증감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식용 수산물의 경우 지난 10년간 수입실적은 점진적인 증가세이나 수출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비식용(산업용) 수산물은 수출입 모두에서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역수지는 1999년 70억 달러, 2000년 82억 달러, 2001년 67억 달러 적자로 매년 적자폭이 증가추세에 있다.

&lt;표 4-40&gt; 미국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실적, 1992-2001

(단위 : M/T, 천 US\$)

구분	식용		비식용	계
	중량	금액		
<b>&lt;수입&gt;</b>				
1992	1,312,689	5,705,876	4,165,386	9,871,262
1993	1,323,215	5,848,738	4,773,649	10,622,387
1994	1,376,595	6,645,132	5,341,740	11,986,872
1995	1,390,936	6,791,690	5,659,933	12,451,623
1996	1,437,806	6,729,614	6,330,741	13,060,355
1997	1,514,492	7,754,243	6,774,083	14,528,326
1998	1,654,278	8,173,185	7,459,487	15,632,672
1999	1,763,536	9,013,886	8,025,696	17,039,582
2000	1,804,519	10,054,045	8,959,391	19,013,436
2001	1,860,652	9,864,432	8,682,738	18,547,170
<b>&lt;수출&gt;</b>				
1992	946,932	3,465,667	3,653,965	7,119,632
1993	900,856	3,076,813	3,847,911	6,924,724
1994	897,445	3,126,120	4,254,741	7,380,861
1995	928,595	3,262,242	5,005,878	8,268,120
1996	958,022	3,032,282	5,621,169	8,653,451
1997	915,762	2,713,082	6,640,533	9,353,615
1998	754,735	2,259,727	6,437,385	8,697,112
1999	889,559	2,848,548	7,158,302	10,006,850
2000	982,035	2,951,717	7,829,818	10,781,535
2001	1,163,458	3,194,500	8,639,111	11,833,611

자료 :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1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4-41>는 지난 3년 간 미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2001년 기준 1억 달러 이상 수입품목)은 새우, 참치, 랍스터, 필레트·스테이크(저어류), 연어, 캔(참치, 게살), 가리비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출품목(2001년 기준 2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은 연어, 납치, 필레트·스테이크(저어류), 연육(surimi), 랍스터, 새우, 참치캔, 어란(대구, 연어 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미국 주요 품목별 수출입실적

(단위 : M/T, 천 US\$)

품목	연도	1999		2000		2001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b>&lt;수입&gt;</b>							
<b>Fresh and frozen:</b>							
Whole or eviscerated:							
Salmon		70,653	344,991	68,647	333,059	72,047	323,476
Tuna		222,718	549,524	201,947	520,143	183,621	515,327
Fillets and steaks:							
Flatfish		21,391	93,747	26,708	124,064	21,751	103,447
Groundfish		102,034	456,662	102,039	420,673	88,308	358,316
Blocks and slabs		97,229	250,285	92,490	208,700	66,534	158,952
Shrimp		330,371	3,130,821	343,418	3,748,667	398,398	3,617,141
Crabmeat		7,963	80,357	9,648	114,604	12,914	153,862
Lobster:							
American		23,825	333,743	29,126	417,542	30,611	431,470
Spiny		12,946	294,755	13,792	354,253	10,989	295,662
Scallops (meats)		19,994	192,647	24,335	212,424	18,006	128,365
<b>Canned:</b>							
Tuna		151,745	335,830	141,961	258,531	132,542	314,105
Crabmeat		12,568	124,291	14,173	154,062	16,748	214,243
총계			17,039,582		19,013,436		18,547,170

(&lt;표 4-41&gt; 계속)

품목	연도	1999		2000		2001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b>&lt;수출&gt;</b>							
<b>Fresh and frozen:</b>							
Whole or eviscerated:							
Flatfish		54,587	121,212	66,276	125,955	61,998	113,824
Groundfish		56,628	122,914	82,446	170,953	112,204	223,893
Salmon		95,501	371,478	99,311	351,752	94,854	300,695
Fillets, and steaks:							
Groundfish		16,998	45,614	23,653	49,671	73,643	154,424
Surimi		124,246	299,300	150,040	285,292	182,486	301,503
Lobsters		25,975	262,721	28,998	290,748	27,037	260,290
Shrimp		14,907	122,760	16,032	136,698	14,756	122,162
<b>Canned:</b>							
Salmon		51,586	197,680	36,744	145,991	49,930	168,254
<b>Caviar and roe:</b>							
Pollock		11,240	109,451	13,662	165,164	25,855	350,162
Salmon		7,434	71,557	9,635	104,995	9,530	100,288
총계		-	10,006,850	-	10,781,535	-	11,833,611

자료 :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1

다음으로 미국의 주요국별 수산물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표 4-42> 참조), 2001년도 수산물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입국 중 캐나다, 이태리, 대만, 멕시코, 칠레, 인도 등으로부터는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는 수입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2001년도 주요 수입국(2001년 수입액 기준 4억 달러 이상) 11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미국 수산물 총수입액의 64.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출의 경우 지난 3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1년도의 경우 주요 수출국(2001년 수출액 기준 2억 달러 이상) 12개국 중 캐나다를 제외한 11개국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들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은 미국 수산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총수출액의 75.3%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미국 주요 국가별 수출입실적

(단위 : 천 US\$)

연도 국가	1999	2000	2001
<수입>			
Canada	2,586,894	2,857,373	2,843,797
Mexico	707,284	776,758	734,490
Chile	391,796	514,815	500,392
Ecuador	563,275	378,575	407,868
Italy	1,519,301	1,561,709	1,464,469
France	674,622	711,347	752,272
Thailand	2,053,523	2,440,850	2,260,514
China	782,182	1,086,032	1,248,461
India	718,503	926,501	898,093
Japan	610,310	535,012	224,261
Hong Kong	586,520	691,350	552,596
총계	17,039,582	19,013,436	18,547,170
<수출>			
Canada	2,120,496	2,258,746	2,256,555
Mexico	764,668	954,586	1,084,883
Brazil	173,709	217,203	230,734
United Kingdom	407,534	370,780	415,003
Germany	177,119	232,800	290,205
Netherlands	222,499	230,701	233,075
France	213,353	218,091	267,451
Switzerland	582,066	474,967	743,986
Japan	1,896,724	2,014,348	2,111,832
South Korea	323,144	390,890	512,586
Hong Kong	409,235	430,537	472,120
China	164,488	268,110	289,607
총계	10,006,850	10,781,535	11,833,611

자료 :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1999, 2000 및 2001

### 제3절 각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 1. 한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 1) 한국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

2002년도 우리나라의 수산물 HS 품목은 총 40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03개 품목에서 03류가 262개(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66개(16.4%), 12류 39개(9.7%)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65%를 차지하는 03류의 기본관세 평균은 17.6%로 전체 평균세율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0301(활어) 및 0303(냉동어류)은 10%, 0302(신선·냉장 어류) 및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은 20%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표 4-43>, <표 4-44> 참조).

전체 403개 수산물 품목(HS 분류)의 기본관세는 2%~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관세율 평균은 17.7%이고, 92%에 해당되는 370개 품목이 중 심세율인 8%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전체 수산식품의 65.0%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HS 03류, 262개 품목)는 3단계(5%, 10%, 20%)의 관세율 구조로 매우 단순하며, 그 중에서 굴치패(0307-10-1010) 1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10%(99개), 20%(162개)라는 2단계의 균등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한·중·일·미 가운데 가장 단순한 관세율 구조이다.<sup>31)</sup>

31) 주문배 외,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해양수산부, 1999, p.160., <표 4-18> 참조.

<표 4-43>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기본관세율 구조(2002년도)

관세율 \ HS분류	01	02	03	05	12	13	15	16	21	23	계
2%											
3%							5				5
5%			1	1						2	4
8%	2			15		3	2		2		24
10%			99								99
20%			162		25			63			250
30%		3						3	1		7
50%					14						14
계	2	3	262	16	39	3	7	66	3	2	403

주 : 01:산 것, 02: 육류 03: 어류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2: 채유용 종자·인삼 13: 식물성 엑기스 15: 동식물성 유지 16: 육·어류 조제품 21: 조제 식료품 23: 사료 41: 원피·가죽 43: 모피, 모피제품.

자료 :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수산물, 2002.

수산가공식품류인 16류는 20% 63개 품목, 30% 3개 품목으로 상대적으로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공품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2단계의 단순구조를 가짐으로써 수입원자재용 수산물 가격의 급등에 대처하거나 국내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세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sup>32)</sup>

또한 수산식품의 기본 관세율은 가공상태에 따라 활어(10%), 신선냉장어류(20%), 냉동어류(10%),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20%)으로 균등관세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종별·품목별·수급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03류(어류)의 경우, 우리나라 3단계 기본관세 구조에 비하여, 중국 9단계(우대관세), 일본 8단계 및 9개 어류 IQ제도 실시, 미국 296개 품목은 무세, 종가세 6단계, 종량세 7단계임. 주문배, 상계서, 참조.

전체 65%를 차지하는 03류는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활어, 신선 또는 냉장어류, 냉동어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갑각류,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03류의 기본관세 평균은 17.6%로 전체 평균세율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0301(활어) 및 0303(냉동어류)은 10%, 0302(신선·냉장 어류) 및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은 20%, 0307(연체동물)은 5%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표 4-44> 참조).

<표 4-44> 수산식품 품목분류별(03류) 기본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HS분류 관세율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계
5%							1	1
10%	28		55	10			6	99
20%				6	38	21	59	124
30%		38						38
계	28	38	55	16	38	21	66	262

주 : 0301:활어, 0302:신선 또는 냉장어류, 0303:냉동어류, 0304: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자료 : <표 4-43>과 동일.

한편 수산식품의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3%~70%까지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기준상 고관세로 분류되고 있는 20% 이상이 280개로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표 4-45> 참조).



<표 4-45>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HS분류 관세율	01	02	03	05	12	13	15	16	21	23	계
3%							5				5
5%			1	1						2	4
8%	2			15		3	2		2		24
10%			90								90
20%			159		25			63			247
30%		3	2					3	1		9
35%			2								2
40%			4								4
50%					14						14
55%			1								1
60%			2								2
70%			1								1
계	2	3	262	16	39	3	7	66	3	2	403

주 : 조정관세율 4개의 증가중량선택세 품목은 증가세로 집계함.  
 자료 : <표 4-43>과 동일.

2000년도 실적관세를 기준으로 한 수산식품 관세율은 14단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399개 품목중 299개 품목이 수입되었다. 나머지 100개 품목은 수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02류 2개, 03류 45, 05류 12개, 12류 29개, 15류 2개, 16류 7개, 41류 1개, 43류 2개 등이었다(<표 4-46>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평균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처럼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lt;표 4-46&gt;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실적관세율 구조(2000년 기준)

HS분류 관세율	01	02	03	05	12	13	15	16	21	23	41	43	계
3%							4						4
5%			1	1						2			4
8%	2			3		3	1		2				11
10%			76		1								77
14%			2										2
20%			119		9			55					183
25%			1					1					2
30%			2					3	1				6
35%			2										2
40%			1										1
50%			2		0								2
60%			2										2
70%			2										2
80%			1										1
계	2	0	211	4	10	3	5	59	3	2	0	0	299

주 : 조정관세중에서 중가중량선택세 품목은 중가세로 집계함.

실적관세는 연간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 자료를 사용함.

자료 : <표 4-43>과 동일.

2002년도 기준으로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진 403개 품목의 수산물(어류, 조제품, 해조류등 식용, 비식용 불문)을 기본관세율 기준으로 볼 때, 평균관세율은 17.7%(1999년도 17.9%)로 우리나라 공산품의 중심세율인 8%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3> 참조).

그리고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한 수산식품 평균 관세율은 18.6%로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한 평균 관세율보다 0.9% 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또 실적관세를 기준으로 한 수산식품 평균 관세율은 17.9%로 기본관세 평균 관세율보다 0.2% 포인트 높으며, 실행관세 평균 관세율보다 0.7% 포인트 낮게 나타난다(<표 4-43>, <표 4-45>, <표 4-46> 참조).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제도는 종가세 중심의 관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극히 일부 물품에 한하여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종량세, 종가세와 더불어 종가종량선택세와 종가종량복합세(병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대비되는 관세체계이다.<sup>33)</sup>

우리나라에서 종량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식품의 경우 농산물의 곡류, 서류, 채소류, 특작류, 축산물의 천연꿀, 임산물의 산림부산물, 수산물(종가종량선택세) 등이며, 공산품의 경우는 영화용 필름과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전체 수입품의 0.2%에 지나지 않아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종가세 위주의 관세체계는 관세운영이 투명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가·저질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1993년 말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에 따라 저관세 품목의 수입급증, 저가·저질물품의 수입관리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종량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조정관세품목중 종가종량선택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저가의 중국산 수

---

33) 우리나라의 관세율 체계는 총 수입대상품목(HS 10단위 기준 10,417개 품목)의 99.8%가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미국, EC,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산물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종량세제도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sup>34)</sup>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가격이 높은 활어는 모두 증가세 형태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신선 또는 냉장어류(0302), 냉동어류(0303), 어류의 펠레트 및 기타어육(0304), 건조·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0305)는 증가세와 종량세제도가 혼용되고 있는데, 종량세 부과품목이 훨씬 더 많다(증가세19품목, 종량세234품목).<sup>35)</sup>

한편, 수산식품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총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1980년 1.9%에서 1996년 25.0%, 2000년 31.2%로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가공비율은 73.9%로(1997년 기준) 높은 가공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제 수산물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관세부담 또한 비례적으로 상승하여, 수산가공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은 물론 국내물가의 상승압력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수산물 수급동향과 국내소비성향 등을 기초로 하여 저가 수입품의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이 수입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관세할당제도의 도입·활용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관리 및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정관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표 4-47> 참조).

수산식품에 대한 조정관세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 3개 품목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6개 품목, 1994년에 11개 품목, 1995년에 14개 품목, 1996년 20개 품목, 1997년 27개 품목(14~100%)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7개 품목에

34) 조정관세품목의 최근 3년간(1998-2000)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하고 있음. 주문배·고종환 외, 전게서., <표 3-24> 참조.

35)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1999 참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증가종량선택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전년도 증가종량선택세 부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조미오징어를 제외시키고 6개 품목을 부과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4개 품목만을 부과하였다.

<표 4-47> 연도별 수산식품 조정관세 부과 현황

품 명	기본 관세	조 정 관 세(%)										
		1992 3개	1993 6개	1994 11개	1995 14개	1996 20개	1997 27개	1998 23개	1999 14개	2000 14개	2001 14개	2002 12개
활돔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	70% 또는 (5,122원/kg)	65% 또는 (4,756원/kg)	60% 또는 (4,390원/kg)
활농어	10	-	-	100	100	100	100	100	80	70	65	60
활미꾸 라지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0	60% 또는 (524원/kg)	50% 또는 (436원/kg)	-
활뱀 장어	10	-	-	-	-	-	-	50	30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활민어	10	-	-	-	-	-	-	-	-	-	-	40%
냉동 명태	10	-	-	-	-	30	30	30	30	30	30	30
냉동 꽁치(학꽁 치포함)	10	-	-	-	-	/30	-	50	50 (학꽁치 제외)	50	40	40
냉동 홍어	10	-	-	-	-	-	/50	70	70	60	50	40
냉동 민어	10	-	-	-	-	-	/100	100	90	80	70	70
냉동 명태필 렛	10	-	-	-	-	30	30	30	30	25% 또는 (383원/kg)	25% 또는 (383원/kg)	-
냉동 새우	20	-	-	-	35	35	40	40	40	35	35	35
새우젓	20	-	-	-	-	-	100	100	70	60% 또는 (396원/kg)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363원/kg)
냉동 오징어	10	-	-	-	-	-	/30	40	40	40	40	40
냉동 낙지	20	-	-	-	50	40	50	40	40	35% 또는 (622원/kg)	35% 또는 (622원/kg)	35% 또는 (622원/kg)
조미 오징어	20	-	-	-	-	/30	30	30	30	25% 또는 (395원/kg)	25%	

자료 : 관세율표(각연도).

새우젓의 경우에는 1988년 7월 20일 이후 8년 동안 산업피해구제제도에 의해 수입이 전면 제한되어 왔으나, 1996년 말 구제기간이 종료되어 1999년 조정관세 70%, 2000년 조정관세 60% 또는 396원/kg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2000년도 기준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냉동 명태, 명태 피레트(냉동), 냉동 오징어, 냉동 낙지 등 4개 품목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조정관세 부과 이후에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7개 종량종가선택세 품목중 전년 대비 2개(냉동명태피레트, 냉동낙지) 품목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5개 품목중 활동은 86.5%나 증가하였고, 그 이외의 품목도 최저 3.7%에서 28.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정관세품목을 포함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격차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할당관세와 비관세제도의 병행을 통해 수입관리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조정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생산 유지 혹은 확대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관세율 수준 혹은 조정관세와 기본세율의 중간 수준으로 기본세율화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는 수산식품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정관세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전술한 조정관세를 비롯하여 덤핑방지관세(제51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상계관세(제57조), 편익관세(제74조), 계절관세(제72조), 할당관세(제71조) 등 다양

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식품의 경우 1994년(1994.1.1~1994.6.30)에 냉동어류(HS 0303)와 갑오징어 및 오징어(HS 0307)의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126,500 톤과 80,500 톤을 넘는 수입에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한 예가 있으나, 대부분의 탄력관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로 조정관세에 의해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sup>36)</sup>

조정관세제도에 편중된 관세정책의 경우,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대응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절관세, 할당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편익관세 등 활용 가능한 탄력관세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sup>37)</sup>

2001년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196개 품목이다. 이들 수입 품목에 적용한 우리나라의 평균 실적관세율은 18.3%로 평균 기본관세율 17.7% 보다 높으며, 실행관세율 평균보다는 1.4% 포인트 낮다. 196개 수입품목 중에서 65.8%인 129개 품목에 2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하였다.

---

36) 조정관세가 국제법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대상이 되는 반면, 특별긴급관세는 그 대상이 농산물중 TE(Tariff Equivalent: 관세상당액) 양허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국제협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박상태, 특별긴급관세제도에 관해 설명함, 「관세」 제29권 제322호, 1997.7, p.82.

37)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999년 12월 7일 경제차관회의를 통해 현재 30개에 달하는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2000년에는 27개로 축소하고, 16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2~20%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함. 따라서, 농어, 냉동새우, 냉동민어, 홍어, 활돔, 미꾸라지, 낙지, 새우젓, 명태 필렛 등의 현행 조정관세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경제신문, 1999.12.7자 기사 참조.

&lt;표 4-48&gt; 일본의 대한국 수출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실적관세(2001년)

HS \ %	3	5	8	10	14	20	25	30	35	40	49.3	50	60	65	70	계
0301				13				1						2		16
0302						18										18
0303				29				1		1		1			1	33
0304				6			1									7
0305						11										11
0306					2	7			1				1			11
0307		1		3		31			1	1						37
0509			1													1
0511			3													3
1212						8					1					9
1302			2													2
1504	3															3
1521			1													1
1603								3								3
1604						24										24
1605						12	1									13
2104								1								1
2106			2													2
2301		1														1
계	3	2	9	51	2	111	2	6	2	2	1	1	1	2	1	196

주 : 선택세일 경우, 종가세 적용의 경우 관세율을 적용함.

자료 : 2001년도 한국 관세율표 기준.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주요 수산물(상위 20대 품목)의 기본관세율 평균은 13.2%이며 실행관세율(실적관세율) 평균은 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4-49> 참조).



<표 4-49> 일본의 대한국 상위 20대 수출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

(단위 : %)

순위	HS			품목	기본 관세	조정 관세	양허 관세	실행관세
1	0302	69	1000	명태(신선,냉장)	20			20
2	0302	69	3000	갈치(신선,냉장)	20			20
3	0301	99	4000	돔(활어)	10	65		65
4	0303	79	9099	기타어류(냉동)	10			10
5	0303	79	8000	꽁치(학꽁치포함(냉동))	10	40		40
6	0304	20	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10			10
7	0304	20	5000	참다랭이피레트(냉동)	10			10
8	0303	80	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10			10
9	1504	20	0000	어류의 유지,분획물(간유제외)	3		4	3
10	0301	99	7000	떡장어(활어)	10			10
11	0301	99	9050	농어(활어)	10	65		65
12	0303	79	1000	명태(냉동)	10	30		30
13	0307	91	1200	전복(산것,신선,냉장)	20			20
14	0303	49	2000	참다랭이(냉동)	10			10
15	0303	79	9060	임연수어(냉동)	10			10
16	0305	59	2000	멸치(건조)	20			20
17	0303	79	3000	갈치(냉동)	10			10
18	0302	69	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20			20
19	0307	59	1010	문어(냉동)	20			20
20	0306	24	1090	기타게(신선,냉장)	20			20

주 : 2001년도에 일본으로 수입한 수산물을 금액 기준으로 상위 20개 품목을 정리함.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및 2001년도 한국 관세율표 기준.

## 2.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 1) 일본의 관세체계

현재 일본의 관세제도는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의 소위 「관세3법」<sup>38)</sup>으로 규정되고 있다.

관세는 수입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서 부과되는 경우와 개수나 중량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가 증가세이며 후자가 종량세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품목에 증가세를 채용하고 있지만, 주류 등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도 있다. 또한 증가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CIF 가격(도매가격에 운반비, 보험료를 가산한 합계금액)이다.<sup>39)</sup>

그리고 증가세와 종량세를 조합한 혼합세를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혼합세에는 증가·종량선택세(선택세)와 증가·종량병용세(복합세)가 있다. 선택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증가세와 종량세의 양쪽을 정해 그중 세액이 높은 쪽(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쪽)을 부과하는 것이며, 과세가격이 높은 곳에는 증가세가 낮은 곳에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복합세는 증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의 증가세를 더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복합세가 단독으로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없으나 일부 면직물에 대해서 증가세와 복합세와의 선택세가 적용되고 있다.

관세율의 종류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특혜세율, 협정세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율의 적용순위는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sup>40)</sup>

38) 관세법은 관세의 확정과 납부, 적정한 세관수속을 도모하는 것이고, 관세정율법은 수입금지품목을 정하는 것 외에 세율과 감면세 등 관세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그리고 관세잠정조치법은 다른 두 법의 잠정적 특례를 정해두고 경제사정 등에 대응해 긴급하게 개정.

39) 日本 關稅法 第3條, 第4條, 同法 施行令 第59條2, 關稅定率法 第3條, 第4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기본세율은 관세 정율법에 정해진 세율로서 관세행정상 기본이 되는 세율이며, 잠정세율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관세잠정조치법에서 정한 세율이다. 또한 협정세율(GATT 양허세율)은 외국과의 조약을 기본으로 특정한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특혜세율(일반특혜세율과 최빈 38개국에 대한 특혜 특별세율)은 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한 특정 품목으로 일정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다.

이들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의 순서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혜세율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협정세율은 잠정세율이나 기본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만 적용된다.<sup>41)</sup>

관세율은 실행관세율표에서 개별 품목에 따라 명기하고 있다. 이 표에는 기본 관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잠정세율 등 4개의 관세율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관한 통일 시스템에 관련되는 국제조약(HS조약)」에 입각하여 모든 수입품을 부(部), 류(類), 항(項), 호(號)로 순차적으로 세분화하고 번호를 붙여(HS CODE) 분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국제표준인 6자리의 코드에 3자리 통계용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sup>42)</sup>

관세법에 의한 절차제도는 간이신고제도와 포괄사전심사제도로 구성된다. 첫째, 간이신고제도는 2000년 3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업자

---

40) 日本 關稅法, 關稅法施行令, 關稅正率法 참조.

41) 日本貿易振興會, 貿易投資ハンドブック2000-2001, JETRO 事業統括部(2000. 3)을 참조.

42) 藤本 進 編, 日本の關稅, 財經詳報社(1997), pp.14-16 및 관세청, 일본의 관세행정 (1998) 참조.

1961년 일본은 세율의 분류를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조약에 따르도록 하였고, 동시에 수입자유화에 대응하여 국내산업보호의 견지에서 관세율을 조정하였지만, 이즈음 종량세율의 채택, 관세할당제도, 선택관세 등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긴급관세가 창설되었음.

그 후 일본은 1988년 1월 1일부로 과거 CCCN에 근거한 관세분류를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로 전환하였다. 관세율표는 「HS조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HS 품목표의 필요사항에 의해 세분화되었고, 수입상품의 분류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여 항목, 번호 및 관세율 표상의 세분을 큰 분류에서 작은 분류로 체계적으로 나누었음.

(특례 수입자)가 지정을 받은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허가 후에 납세 신고가 가능한 제도이다.

둘째, 포괄사전심사제도는 일상적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목표로 한 제도로 1979년에 도입되었다. 2000년 간이신고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수출에 관해서도 포괄사전심사제도가 개정되어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수입품에는 관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업제품 등 면세의 품목도 많이 있다. 또 면세의 품목 이외에도 관세정률법 및 관세잠정조치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 관세의 감세, 면세, 환급 등을 인정하고 있다. 감면 대상이 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 관련품목 : 주요 식량(쌀, 보리)의 수입가격이 높을 때, 가격 변동이 큰 품목(돼지고기, 설탕)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이 모두 높을 때, 일시적으로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함.

② 제조용 원료품 :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에 관하여 감면함(옥수수, 설탕 등).

③ 특정용도품목 : 학술 연구용, 사회복지용의 기증품 등

④ 가공 재수입품목 : 가공·조립을 위해 일본에서 수출된 후 일년 이내에 수입되는 식물제품의 경우, 수출 원재료분에 대해 관세가 경감됨.

⑤ 수입 시와 동일 상태로 재수출되는 품목 : 수입화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 없이 1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 관세는 환급됨.

⑥ 기타, 일정한 상품건본의 무조건 면세 및 위약품의 관세환급 등

농수축산 식품의 수입관리를 위한 특별관세제도로서 관세할당제도, 간이세율제도, 특수관세제도가 있으며, 기타 종량세, 종가종량선택세, 슬라이드관세, 차액관세, 계절관세,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을 활용하고 있다.<sup>43)</sup>

① 관세할당제도

43) 日本貿易振興會, 앞의 책 참조.

관세할당제도란 특정 물품의 수입에서, 일정한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1차세율),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에 관해서는 높은 세율(2차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매년 할당수량이 결정된다. 현재 21개 품목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3개 품목은 광공업제품, 18개 품목은 농산품이다.

② 간이세율제도

간이세율제도란 소량의 화물에 의한 수입의 급증에 대응해 수입통관의 신속화, 과세사무의 생력화를 목적으로 대략적으로 품목마다 평균적 세율(20, 15, 10, 5, 3%의 5개 세율)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0만 엔 이하의 소액화물이며, 일본의 국내산업사정으로 간이세율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품목도 있다(가죽제품, 니트제품 등).

③ 특혜관세제도

특혜관세(GSP: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71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혜관세의 적용은 국가 또는 지역과 대상품목에 따라 다르다.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국가는 1999년도 180개국에서 2000년도 162개국으로 감소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등 19개국은 2000년도에 완전히 졸업하게 되었다.<sup>44)</sup>

대상품목은 농수산물(HS 1~24류 : 74개 품목,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광공업제품(HS 25~97류 : 석유, 합판, 건축물 등 27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네거티브 방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혜관세의 공여방식을 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여방식은 에스케이프·크로즈(escape-clause) 방식<sup>45)</sup>을 채택하고 있다.

농수산물은 품목에 따라 실행세율의 10%~100%를 인하하였으며, 광공업품은 무관세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산업 보호상 무관세화가 곤란한 66개 품목(SP : Selected Products)은 50% 이하로 인하하였다.

---

44) 상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 일본의 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2000) 조사보고서를 참조.

45) 하나의 품목에 대한 수입실적을 관리하는데, 그 해의 중도에라도 어느 한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일본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한다는 방식을 의미함.

④ 차액관세제도

일부품목에 대해서 타국에서는 볼 수 없는 복잡한 관세제도인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혼동 및 불이익을 주고 있다. 차액관세제도란 수입품의 과세가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일정액과의 차이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서 1971년 10월 돈육수입을 완전자유화하면서 일본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일본 국내의 가격안정제도와 연계시켜 수입돈육(지육 및 부분육) 등에 대해 도입한 제도이다.

돈육의 예를 들면 부분육의 경우 일본 국내 돼지고기 지육의 중심가격과 연동하여 분기점 가격을 설정한 후 돼지고기 부분육의 수입가격이 이 분기점보다 고가로 수입될 경우에는 정률관세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며 저가로 수입될 경우에는 수입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과세로 부과함으로써 기준 수입가격 이하의 수입을 봉쇄하고 있다.

⑤ 세이프가드 제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합의에 의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차액관세제도를 일본의 돼지고기 지육의 중심가격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수입분기점 가격 및 관세율을 연도별로 고정시킨 대신에 수입돈육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이 긴급조정조치(Safe Guard) 및 특별긴급조정조치(Special Safe Guard)이다.

2) 일본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

일본의 수산물 관세율은 UR 협상결과에 따라 1988년 무역량을 기준으로 한 평균 세율 6.1%(무역가중평균)에서 최종 년도인 1999년에 4.1%까지 인하하였다.<sup>46)</sup>

2002년도 일본의 수산물 HS 품목은 총 328개 품목(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46) [www.maff.go.jp/wto/iken/wto\\_suisan\\_genjo-1.html](http://www.maff.go.jp/wto/iken/wto_suisan_genjo-1.html)(2000)을 참조. 일본의 주요어종의 관세인하 상황을 보면(1988년→1999년), 새우(3.0→1.0%), 참치(5.0→3.5%), 연어·송어류(5.0→3.5%), 게(6.0→4.0%)로 나타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품목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8개 품목 중에서 03류가 238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49개, 12류 11개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4-50> 참조).

<표 4-50> 일본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2002년도 기본관세 기준)

HS 관세율(%)	01류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계
0.0	1	3	8	6	3		1			2	22
2.5			1	1							2
4.0			11				1				12
4.8								4			4
5.0			101		2						103
6.0			15					4			19
6.4								3			3
6.5								1			1
7.0		2									2
7.5			1								1
8.4									1		1
9.6								27			27
10.0			69	2			3				74
12.0			4					1			5
12.8								4			4
15.0			28		5		1	5			39
20.0				1							1
25.0									3		3
40.0					1						1
중량세					1	1	1				3
계 (중량세 제외)	1	5	238	10	11	0	6	49	4	2	326

주 : 02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2 해조류, 13류 식물성 액즙 및 엑스, 15류 동물성 유지 및 이들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16류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조제가공, 21류 조제식료품, 23류 웨이스트 조제사료.

자료 : www.apectariff.org, Table of Duty in Japan ,2002.

전체 328개 수산물 품목(HS 분류)의 기본관세는 0%에서 40%까지 19단계로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sup>47)</sup>에 비하여 매우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품목 제외), 전체 수산물의 72.3%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HS 03류, 238개 품목)는 9단계(0%~15%)의 관세율 구조로 가지고 있다. 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품목을 제외한 324개 품목의 2001년도 평균 기본관세율은 7.9%이다.

그리고 44개 품목이 국제기준으로 고관세로 분류되는 1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전체 328개 품목 중에서 45%에 해당되는 103개 품목이 5%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74개 품목이 10%, 39개 품목이 15%를 적용 받고 있다.

수산가공식품류인 16류는 총 49개 품목 중에서 9.6%에 27개 품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8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홍조류(1212-20-120)는 전체 327개 품목 중에서 최고 세율인 40%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톳 등 조제식료품(21류)은 25%의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어류 중 28개의 민감품목은 15%의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전체 72%를 차지하는 03류는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활어, 신선 또는 냉장어류, 냉동어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갑각류,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03류의 기본관세 평균은 7.6%로 전체 평균 관세율 7.9%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어(0301)는 대부분 무관세이며 신선·냉장어류(0302)와 냉동어류(0303), 어류 피레트(0304)는 대부분 5%와 1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와

47) 주문배, WTO 체제하의 수산식품 관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pp. 43-47.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0307(연체동물)은 대부분 1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0306 갑각류는 대부분이 4%와 6%를 적용하고 있다(<표 4-51> 참조).

<표 4-51> 일본의 수산물 03류 관세율 구조(2002년 기본관세 기준)

관세율(%) \ HS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계
0.0	6						2	8
4.0					1	10		11
5.0	5	31	38	24	1		2	101
6.0			1			14		15
7.5							1	1
10.0	1	10	12	8		2	36	69
12.0					4			4
15.0					16	2	10	28
계	13	41	51	32	22	28	51	101

주 : 0301:활어, 0302:신선냉장어류, 0303:냉동어류, 0304: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305:건조·염장·염수장·훈제 어류,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 1212:해조류, 1604:어류조제가공, 1605:연체동물갑각류조제가공.

자료 : www.apectariff.org, Table of Duty in Japan, 2002.

<표 4-52>은 일본이 수입한 수산물을 2000년도를 기준으로 어종별 수입 금액 순으로 38개 품목을 선정하여 실행관세율을 파악한 것이다. 38개 주요 수입어종의 실행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15%까지 매우 다양하게 과세되고 있다. 무세는 진주(우리나라는 수산물 분류가 아님), 어분, 방어 치어 등 3개 품목이며 15%의 관세는 기밀용기 이외 가리비 조제품 1개 품목이다. 38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약 5.7%(5.18%~5.7%, 1개 어종이 품목별 복수 관세이므로 다르게 나타남)이다.<sup>48)</sup>

48) 324개 전 품목(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품목 제외)의 실행관세 평균은 6.0%임. 3.5%를 적용하는 품목이 98개로 가정 많으며, 그 다음으로 10% 38개, 7%와 9.6%가 각각 25개이며, 10% 이상의 품목이 전체의 21%를 차지함.

&lt;표 4-52&gt; 일본의 어종별 수입현황과 관세율

(단위 : 천 US\$, %)

품 목	협정관세 (2001년기준)	1998년	1999년	2000년
총 계		13,337,105	15,332,289	16,086,987
새우(활,신선,냉장,냉동)	1	2,782,650	2,705,939	3,029,669
다랑어,새치류(신선,냉장,냉동)	3.5	1,562,562	2,036,681	2,071,687
연어,송어류(활,신선,냉장,냉동)	3.5	937,575	1,180,913	1,071,889
게(활,신선,냉장,냉동)	4	738,553	927,683	988,444
뱀장어조제품(기밀이외)	9.6	643,500	672,325	789,693
명란(신선,냉장/냉동/건,훈) IQ	10/4.2/7.5	282,447	486,890	586,320
몽고오징어/몽고이외(활,신선,냉장,냉동)	5/3.5	400,551	433,114	432,581
새우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4.8	304,942	310,644	371,777
문어(신선,냉장,냉동)	7	349,708	395,524	361,218
진주(진주또는진주제품)	무세	266,553	325,816	328,731
명태류(신선,냉장/냉동) IQ	10/6	274,875	377,104	322,319
성게(활,신선,냉장,냉동,건,훈)	7	236,714	256,943	265,912
넙치,가자미류(생,냉,동)	3.5	106,427	191,848	215,148
게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9.6	105,242	138,701	180,535
어분	무세	245,613	200,791	176,848
고등어(신선, 냉장/냉동)	10/7(잠정)	196,111	200,200	163,271
명란조제품(기밀용기 이외)	9	104,449	122,420	158,845
청어어란(신선,냉장/냉동/건,훈)	5.6/4/8.4	125,145	129,048	145,279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동)	3.5	116,578	144,437	136,960
은대구(동)	3.5	113,759	123,967	131,211
뱀장어(활)	3.5	167,222	159,892	109,573
메누케(동)	3.5	100,846	101,536	103,848
오징어조제품(기밀이외)	5/3.5	49,065	65,423	102,57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4-52> 계속

품 목	협정관세 (2001년기준)	1998년	1999년	2000년
모시조개(활,신선,냉장,냉동)	7	82,682	80,729	97,033
굴(활,신선,냉장,냉동)	7	49,473	74,655	94,028
이또요리(돔: 신선,냉장/냉동)	2	56,750	84,220	86,228
삼치(신선,냉장,냉동)	3.5	103,164	97,164	68,163
청어(신선,냉장/동), IQ	10/6	59,644	79,530	64,150
방어치어(양식용, 활)	무세	37,170	33,621	67,946
미역	10.5	65,436	79,497	66,793
열빙어(동)	2.8	52,330	59,619	56,280
연어,송어어란(훈,건)	3.5	52,256	66,404	63,645
전갱이(신선,냉장/냉동)	3.5/6	57,116	62,762	60,467
참치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9.6	64,718	60,528	59,651
가다랭이류(생,냉,동)	3.5	58,006	54,015	42,099
피조개(활)	7	41,567	39,610	38,923
멸치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9.6	57,487	45,739	33,559
가리비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15	34,177	42,772	27,734

주 : 2000년도 기준 어종별 수입 금액순으로 38개 품목을 선정한 것임.

자료 : 財務省, 貿易統計. 日本貿易振興會, アグロトレード ハンドブック2001, 2001.,  
日本水産物貿易協會, 水産物貿易統計年報, 2002.

그리고 <표 4-53>은 최근 3년 간(1999년~2001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수산물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관세와 협정관세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14개 주요 품목은 3.5%에서 10.5%사이의 관세를 적용 받고 있으

며 실행관세율 평균은 5.7%이다. 이에 비하여 14개 품목의 기본관세율 평균은 8.3%로 실행관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표 4-53>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 관세율

HS CODE	수출금액 순위	품명	관세율(%)	
			기본관세	협정관세
0303-49-020	1	눈다랑어(냉동)	5	3.5
1604-30-090	2	캐비아대용물	6.4	6.4
0303-42-000	3	황다랑어(냉동)	5	3.5
0307-10-100	4	굴(활,신냉)	10	7
0307-91-499	5	피조개(활,신냉)	10	7
0301-99-290	6	넙치(활어)	10	3.5
0304-10-199	7	붕장어피레트(신선·냉장)	5	3.5
0303-80	8	명란(냉동)	10	4.2
0304-20	9	기타어류피레트(냉동)	5	3.5
1212-23-010	10	툰(건조)	15	10.5
0307-10-100	11	굴(냉동)	10	7
1604-20	12	기타조제또는 저장처리어류	9.6	9.6
0301-99	13	붕장어(활어)	5	3.5
0307-91-1800	14	바지락(활,신냉)	10	7

주 : 최근 3년간(1999년, 2000년, 2001년) 대일 수출금액 순위별 품목을 선정한 것임.

### 3) 일본의 수산물 비관세 조치

일본은 관세조치 이외에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해 다양한 법령에 비관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4-54> 식품수입관리에 관한 주요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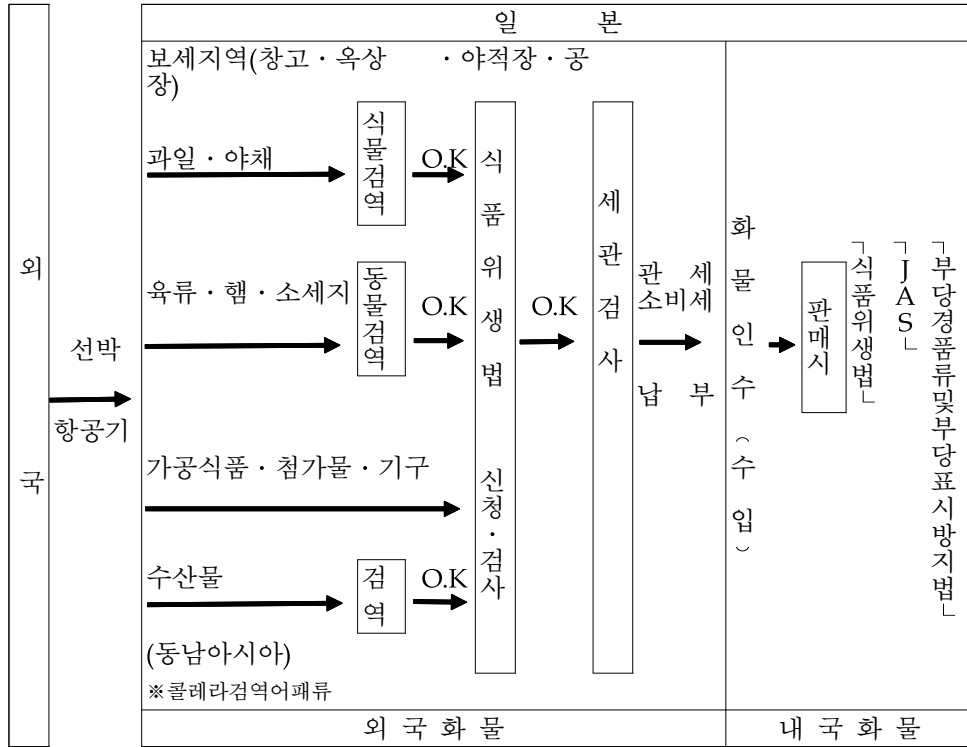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법 령
수출입에 관한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li> <li>- 구체적인 관리·절차 방법은 政省令 등(수출무역관리령, 수출무역관리규제, 수입무역관리령, 수입무역관리규칙, 수입공표(공시))에서 규정하고 있음.</li> <li>○ 수출입거래법</li> </ul>
통관에 관한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li> <li>○ 관세징율법</li> <li>○ 관세감정조치법</li> </ul>
기타 수출입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검역법</li> <li>○ 식물방역법</li> <li>○ 가축전염병예방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의 제법규</li> </ul>
국제조약·협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협정</li> <li>○ IMF협정 등 포괄적인 국제법령</li> <li>○ 워싱턴 조약등 특정품목에 관해 국제법령</li> </ul>

자료 : 日本貿易振興會, 貿易投資ハンドブック2000-2001, JETRO事業統括部, 2000. 3.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을 기입하고 「수입(납세)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입신고 외 구입서,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증), 보험료 명세표, 운송비 명세표, 포장 명세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화물 종류에 따라 타법령 허가·승인서(타법령 해당 화물의 경우), 특혜원산지증명서(특혜과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감면세 명세표(감면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식료품 중에서 농수산물에 관해서는 수입이 제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수입되는 어패류 등은 통관 전에 검역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검역 관련법에 의거하여 사전에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림 4-3> 일본의 식품수입 관리체계



자료 : JETRO, 貿易投資ハンドブック 2000-2001, 2000. 3

또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검사는 모든 식품수입에 필요한 절차로 「식품 등 수입신청서」를 후생성 검역소에 제출하여 식품위생검사에 합격한 상품만이 수입이 허용된다. 그리고 통관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국내 시판 시에는 「식품위생법」과 「JAS법」, 「계량법」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그림 4-3> 참조).

또 하나의 수입규제제도로 수입할당제도를 들 수 있다. 수입할당(Import Quarter)제도는 일본 정부가 자원관리 및 생산자 보호의 수단으로 중점을 두고 활용하는 제도이며, 특히 수산물의 경우 WTO 협상에 있어서도 수입할당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의 수입할당 품목은 14개 품목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건조 김(2002년도 180만 속)은 물량으로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꽁치, 가리비, 개아지살, 마른 멸치 등 9종의 어패류에 대해 한국산과 한국을 제외한 인도 등 101개국산으로 구분하여 수입 금액으로 할당량을 정하고 있다(<표 4-55> 참조).

<표 4-55>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 현황

품 목	현 황
9종 어패류 (대 한국)	-1966년부터 대구, 방어, 가리비, 꽁치 등 9종 어패류에 대해 한국산과 기타 101개국 산으로 구분하여 수입쿼터 운영 -한국산 쿼터는 19년간 4천만 달러로 동결하고 있는 반면 기타 국가에 대한 쿼터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김 (대 한국)	-우리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쿼터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2002년도의 경우 180만속으로 일본시장의 1.8%에 불과 -새로 변경된 할당방식에서 독점적 요소가 강한 수요자 할당이 아직 큰 비중을 차지
다시마 조제품 (대 한국)	-한국산에 대해서만 2001년도 현재 500 톤의 수입쿼터 운영
명태(대 전세계)	-2001년도 현재 102.7만 톤의 쿼터 운영
청어(대 전세계)	-2001년도 현재 13.1만 톤의 쿼터 운영
명란(대 전세계)	-2001년도 현재 8.3만 톤의 쿼터 운영
오징어(대 전세계)	-2001년도 현재 6.3만 톤의 쿼터 운영
다시마(대 전세계)	-2001년도 현재 2,260 톤의 쿼터 운영 -실제로는 한국, 중국, 대만을 겨냥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비관세장벽현황, 2002.

수입금액 쿼타할당에 있어서 인도 등의 101개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쿼타를 상향조정(1982년 43백만 달러→1997년 302백만 달러)했지만, 한국산에 대해서는 198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연간 4000만 달러로 동결, 쿼타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국에 비해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다(<표 4-56>, <표 4-57> 참조).

**<표 4-56> 일본의 대한국 어패류에 대한 수입할당 현황**

해 당 품 목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꽁치, 건멸치, 가리비, 패주 (산것·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지육 포함)
일본 HS번호	0301-99-210; 0302-50,61,64;; 0302-69-011,013,019 0303-60,71,74; 0303-79-021,022,023; 0304-10-110,210; 0304-20-010; 0304-90-014,019,020; 0305-10,51,62; 0305-30-020; 0305-49-010,090; 0305-59-020; 0305-69-090,0307-21,29; 0307-91-200; 0307-99-110,210
한국 HS번호	0301-99-2000 ; 0302-50,61,64 ; 0302-69-2000,7000,8000 ; 0303-60,71,74 ; 0303-79-7000,8000 ; 0304-20-3000 ; 0305-51,62 ; 0305-49-1000 ; 0305-59-2000 ; 0305-69-4000,5000,7000,8000 ;0307-21,29 ; 0307-91-1700 ; 0307-99-1140
수입 할당량	2001년도 : 4,000만 \$(대 한국)
규제근거·형태	잔존수입제한, 일방적 국별쿼터
일본 관련법규	수입무역관리령 9조
국내 관련단체	한국원양어업협회(589-1626), 수산물수출입조합(598-4781)



<표 4-57> 어패류에 대한 일본의 수입할당량

구 분		1982	1983	1997	1998	1999	2000	2001
한 국 산	금액할당(만 \$)	4,5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101개국산	(a)금액할당(만 \$)	4,250	6,250	30,200	17,300	18,000	2,400	4,900
	(b)수량할당(천 톤)	-	-	276	319	345	430	440
	(a+b)총할당(만 \$)*	4,250	6,250	60,000	56,000	57,000	59,000	60,000

주 : 1997년 이후 101개국산 총할당량은 평균수입가를 기준으로 환산·추정한 것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비관세장벽현황, 2002.

### 3. 미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 1) 미국의 관세체계

미국의 관세부과 및 징수권한은 1787년 합중국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관세법은 제1회 연방의회가 「수입화물의 부과에 관한 법률」(1789.7.4)과 「징수방법에 관한 법률」(1789.7.31)을 제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관세법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관세법과 법원의 관례법으로 구성된다. 1997년 3월부터 관세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에 의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사전 유권해석 제도가 있으므로 특정품목에 어떤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미국의 관세청에 문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율표(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Annotated : TSUSA)는 1962년 「관세분류법」(Tariff Classification of Act of 1962)에 의해 최혜국

대우세율(Column 1, General), 특혜세율(Column 1, Special) 및 일반세율(Column 2)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1989년부터 관세법으로부터 분리되어 국제무역위원회가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sup>49)</sup>에 근거하여 HS분류기준에 따른 주석과 세부적인 관세율을 내용으로 한 ‘미국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미국은 HTSUS에 의거하여 총 9,121개로 세목을 분류하고 각 세목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방대한 관세율표를 운용하고 있다. 특혜관세율은 특정국의 특정제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반세율에 대신하여 적용하는 관세율로 무세이거나 또는 일반세율 보다 낮다(HTSUS, 참조)

관세율표상 제1열(Column 1) 양허관세율은 제2열(Column 2)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WTO협정에 의해 양허한 세율과 자유무역협정 및 민간항공기무역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등에서 규정한 관세율을 말한다. 양허관세율은 다시 최혜국대우세율(General)과 특혜세율(Special)로 나뉘며, 특혜세율은 일반특혜관세(GS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기초한 캐나다산 상품(CA)과 멕시코산 상품(MX)에 대한 관세율, 카리브국 특혜관세(Caribbean Basin Initiative, CBI), 미·이스라엘자유무역협정(IL), 안데스지역특혜무역법(Andean Trade Preference Act)에 기초한 관세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0)</sup>

제2열 관세율, 즉 일반세율은 최혜국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것이

49) 1988년 종합통상경쟁법은 ① UR협상에 참여할 권한부여, ② 통관 및 관세, ③ 수출 촉진, ④ 금융통화정책, ⑤ 농산물무역, ⑥ 외국불공정행위의 시정, ⑦ 투자 및 기술, ⑧ 미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⑨ 미국상품구매(1988년 Buy American 법), 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⑪ 특허, ⑫ 해상 및 항공운송, ⑬ 통신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음. 특히, 1974년 통상법 제301조를 대폭 개정한 슈퍼 301 조, 스페셜 301조 조항을 신설하고, 통상보복조치 발동권한을 USTR에 이전시킴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감독기능을 강화하였음.

50)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1999), 11th ed., 1998. 11.

며, 예전에는 공산권 제국에 대한 세율이었지만 냉전 종결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베트남, 쿠바, 북한의 5개국만이 적용대상으로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1930년 관세법에 기초한 고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냉동 철갑상어알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세율인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개발도상국,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 국가, 이스라엘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의 특혜세율이 적용되며,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쿠바 등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인 30%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특혜세율이 최혜국대우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나, 특혜세율이 세율삭감의 중간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잠정세율로서 특혜세율이 우선 적용되게 되는데, 이는 여러 자유무역협정상 약정한 관세율의 감소추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특혜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세율이 적용된다.<sup>51)</sup>

## 2) 미국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

미국은 세계 2위의 수산물 수입국이지만, 수산물 수입품목은 단순하여 냉동참치, 참치통조림, 새우, 대구펄렛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수입정책은 “통조림은 업계보호, 여타 어종은 소비자 보호”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산물 수입정책은 수요에 따라서 소비가 많은 참치통조림, 철갑상어알, 정어리 통조림 등 일부 수산가공품 이외에는 모두 무세 내지 극히 낮은 세율로 규정되어 있다.<sup>52)</sup>

2002년도 미국의 수산물 HS 품목은 총 467개 품목(종량세 15개 품목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67개 품목 중에서 03류가 339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

51) General Note 3. Rate of Duty (c) Products Eligible for Special Tariff Treatment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1999), 11th ed., 1998. 11.

52) 1990년 미국 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노르웨이의 양식 연어가 미국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었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해 1991년 4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었음.

16류 106개로 2개 부류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4-58> 참조).

<표 4-58> 미국 수산물의 기본 관세율 구조(HS 2단위)

HS분류 세율(%)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계
0.0		311	3	1	1	3	58		2	379
0.5		1								1
2.3	1									1
2.5						1				1
3.0		3	1				1			5
3.1							1			1
3.2								1		1
4.0		2					4			6
4.7							1			1
4.9							1			1
5.0		5					13			18
6.0		3					8			11
6.4	2							1		3
7.5		3					2			5
8.5							1			1
9.0							1			1
10.0							8			8
12.5							2			2
15.0		2					2			4
20.0							1			1
35.0							1			1
중량세		9				5	1			15
계 (중량세제외)	3	330	4	1	1	4	105	2	2	452

전체 467개 수산물 품목(HS 분류)의 기본관세는 0%에서 35%까지 21단계로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sup>53)</sup>에 비하여 매우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중량세 15

53) 주문배, WTO 체제하의 수산식품 관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pp. 43-47.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개 품목 제외), 전체 수산물의 72.6%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HS 03류, 339개 품목)는 8단계(0%~15%)의 관세율 구조로 가지고 있다. 종량세 15개 품목을 제외한 452개 품목의 2002년도 평균 기본관세율은 1.1%이다.

그리고 6개 품목이 국제기준으로 고관세로 분류되는 15%이상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전체 467개 품목 중에서 81.2%에 해당되는 379개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8개 품목이 5%, 11개 품목이 6%를 적용 받고 있다.

수산가공식품류인 16류는 총 106개 품목 중에서 58개 품목에 무관세를, 13품목에 5%를 적용하고 있으며, 총 16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고관세라고 분류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철갑상어알(15%), 어류필렛(6.0%), 게살(7.5%), 연어 통조림(7.3%), 정어리 통조림(15%), 참치통조림(기름담금, 35%), 참치통조림(기름담금 이외, 12.5%)이 있다.

미국의 수산물 관세는 HS분류 03을 기준으로 볼 때,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339개 품목중 330개의 품목에 대해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9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다(<표 4-58>, <표 4-59> 참조).

03류는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활어, 신선 또는 냉장어류, 냉동어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갑각류,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03류의 기본관세 평균은 0.3%로 전체 평균 관세율 1.1%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종가세가 적용되는 330개 품목 중 94.2%에 해당하는 311개 품목이 무관세이다. 무관세 이외의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활어(0301)는 5품목 모두 무관세이고, 신선·냉장 어류(0302)에는 무관세 이외에 3% 및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냉동어류(0303)는 15%, 어류 피레트(0304)는 6%, 0306(갑각류)는 7.5%, 그리고 0307(연체동물)은 5%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는 0.5%에서 7.5%까지 6단계에 걸쳐 다양한 관세율 분포를 나타내었다(<표 4-59> 참조).

<표 4-59> 미국 HS 03류 수산물의 기본 관세율 구조

HS 세율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계
0.0	5	61	61	90	35	29	30	311
0.5					1			1
3.0		2			1			3
4.0					2			2
5.0					4		1	5
6.0				2	1			3
7.5					1	2		3
15.0		1	1					2
총량세		1	8					9
계 (총량세제외)	5	64	62	92	45	31	31	330

3) 수산물의 비관세 장벽

미국 정부는 크게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식품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불량(Adulterated) 식품 : 불량품, 비위생적인 식품, 불결하다고 판정되는 식품, 또는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인 식품들을 포함

② 부정표시(Misbranded)식품 :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영양분석표가 부착된 식품, 과장된 내용의 식품설명서나 포장에 된 식품들을 포함

또한 미국 정부는 위생검사에 연관된 문서들이 미흡한 식품이나 제조업체의 검사, 검역이 불가능한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물물의 경우, 미국 정부는 품목에 따라 특정국가를 상대로 수입 할당제(Quota)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를 실시하고 있고, 어떠한 품목들은 수입국에 상관없이 총 수입량에만 수입할당제를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수입할당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농림수산물의 대미 수출동향과 할당(Quota)량은 "U.S. Imports of Agricultural, Fish & Forestry Products from Korea, CY 1994-1998 and Year-to-date Comparisons" 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농수산물의 대미수출에 적용될 수 있는 비관세 조치는 크게 나누어 ① 잠정적 장애요소 ② 구조적 장애요소 ③ 문서 요건 ④ 영양분석표 ⑤ 식품위생기준 ⑥ 관세의 추가세 및 추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잠정적 장애요소

우리 농림수산물의 대미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요인으로는 미연방정부 통상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unilateralism(일방주의)"이며, 이 unilateralism 정책에 의해 책정된 조항으로 흔히 "수퍼 301조"로 일컬어지는 "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Amend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와 같은 조항들이 있다.

### ② 구조적 장애요소

미국은 철저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시정부과 같은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크다.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를 모두 포함하면 2,7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러한 각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에 들어오는 농림수산물을 검사, 규제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에서 통과시킨 농산물도 주정부에서 독자적인 이유로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농림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 후, 미국내의 어느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인지 목표시장을 확실히 결정하고, 그 지역을 관장하는 모든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문서나 법적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③ 문서요건 (documents requirement)

농림수산물일 경우, 요구되는 문서들이 특별히 많으며, 다른 품목보다도 농림수산물은 검사와 규제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혼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문서요건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식품위생 내용을 담은 문서라도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양식과 성격이 틀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서요건들이 모든 농림수산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은 물론 관세청 또는 각 지방 정부기관들이 각자 모두 특별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의 분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질 수 있으며, 이렇게 방대한 서류의 분량과 종류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농수산물 수출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 ④ 영양분석표(Labelling)

1990년부터 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에 의해 시작된 조치로서 미국내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류들에는 상세한 영양분석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 조치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에 두 가지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주 정부에 따라서는 연방식품의약국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영양분석표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별요구사항은 지방정부에 따라 또한 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특별한 조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지방정부는 FDA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세분된 영양 분석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식품제조과정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영양분석표가 미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 3자 검사기관(즉, 식품제조회사와는 관계없는 기관)에서 작성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요구하며, 이 증빙서가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미 정부에서는 문제의 식품을 다시 시험하고 새로운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얼마든지 반복 요구할 수 있다.

#### ⑤ 식품위생기준(Sanitary and Phytosanitary Requirements)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수입시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까다롭고 복잡하다. 특히 해충(Insect pest)에 관한 검사기준은 아래와 같이 불분명하고 광범위하다. “미국내 생존하지 않는 해충이나 또는 미국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은 해충”을 포함하는 농림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Code of Federal Regulations of 1996)

해충검사외에 다른 까다로운 위생검사기준의 예로는 유럽연방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복숭아 통조림 사례가 있다. 이 통조림들은 유럽연방(EU-European Union)위생, 안전 검사기준을 통과한 제품인데 미국 FDA에서는 통조림안에 작은 복숭아씨 조각들이 있다고 하여 수입을 금지시켰다(보통 시각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크기이지만 잘 못 삼킬 경우 사람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적용됨.).

### ⑥ 추가세 및 추가비용(Levies and Charges)

미국은 수입품목에 대해 여러 가지 사용자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 비용은 금액이 미소하므로 큰 장애는 아니나, 아래의 두 가지 사용자 비용은 금액이 다소 커질 수도 있다. 하나는 물품절차비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이 MPF를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항구 관리세(HMT-Harbor Maintenance Tax)로 선박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청은 항구 관리세(HMT)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FDA에서는 수산물을 특별 관리하기 위하여 Seafood HACCP규정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와 업체에 다 해당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과정이란 소비자가 구입하기 직전까지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므로 적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만약 어느 소매점에서 냉동된 해산품이나 통조림으로 된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할 경우 그 소매점은 Seafood HACCP에서 규정하는 생산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소매점에서 냉동된 수산물을 해동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 판

매할 경우에는 소매점도 생산업체에 해당되어 HACCP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냉동수산물이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회사에서 소매상으로 배달 판매할 경우는 모든 과정이 HACCP규정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도매회사 본사에 있는 냉동창고도 냉동운송차도 모두 HACCP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수산물일 경우 거의 모든 보관시설이 HACCP규정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패류가 물이 담긴 어항에서 판매될 경우 그 어항도 보관시설에 해당되어 HACCP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물의 염도, 온도, 청결도 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산물에 해당되는 위해요소들은 첨부된 도표에 품목별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FDA에서 일부 국가의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HACCP 플랜 대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패류에 대한 Molluscan shellfish MOU를 미국 FDA와 교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패류는 MOU규정을 잘 준수하면 따로 HACCP규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제5장 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본 장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FTA 추진방침에 부응하여 한·일, 한·미간 FTA 체결을 상정하여,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우선 한·미일의 수산업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 또 일본의 수산물 수입시장과 미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한·일·미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제2절에서는 우선 일본 및 미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산물의 위치를 살펴본 후, 일본 및 미국시장에서의 품목별 수입점유율 분석, 경쟁국간의 품목별 경쟁정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불변시장점유율(CMS)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제1절 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 1. 국제경쟁력 분석방법

한·일 FTA/한·미FTA의 체결이 한국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FTA 회원국들과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

국제경쟁력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이란 국제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가격 및 비가격측면에서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뜻하며 그 평가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비교 대상국가 수산업의 생산성이나 평균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국가간의 비교우위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시장점유율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국가의 수산부문에 투입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서 세계수출 점유율 또는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등을 이용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지수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와 무역특화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 : IITI)를 이용하여 한·일·미간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 1)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출성과에 기초를 둔 지수로 이미 실현된 무역을 통하여 나타난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발라사(Balassa, 1965)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되었으며, 경쟁적인 요인 및 비가격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만으로 비교우위를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식(1) 과 같이 계산된다.

$$RCA = \frac{\frac{X_i}{W_i}}{\frac{X}{W_x}} * 100 \quad (1)$$

여기에서  $X_i$  : 1국의  $i$ 상품(산업)의 총수출액

$X$  : 1국의 총수출액

$W_i$  : 세계의  $i$ 상품(산업)의 총수출액

$W_x$  : 세계의 총수출액

식(1)에 의해 계산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출성과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지수가 100 보다 크면, 1국의  $i$ 상품에 대한 세계시장점유율이 그 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한 세계시장점유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1국의  $i$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세계전체의 평균비교우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가 100보다 작은 경우는 반대로 1국의  $i$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세계전체의 평균비교우위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무역특화지수(IITI)

상품별 또는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경우, 산업 소분류내에서 동일한 상품이 수출되기도 하며 수입되기도 하는 산업간 무역(intra-trade)으로 인해 경쟁력 측정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러한 산업내 무역의 존재는 동일한 산업내에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동시에 나타내는 모순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 또는 수입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순수출(수출-수입)을 측정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동일한 산업내에서의 순수출은 동일한 산업내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수출이 비교열위를 가진 상품의 수입을 초과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순수출비율지수라고도 한다.

무역특화지수는 각 상품별 (또는 산업별) 수출입 차이를 수출과 수입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이 지수는 수출에 있어서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게 된다. 무역특화지수는 일정기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면 하나의 무

역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54)</sup>

무역특화지수는 식(2)과 같이 계산된다.

$$\text{무역특화지수} = \frac{(X_i - M_i)}{(X_i + M_i)} * 100 \quad (2)$$

여기에서  $X_i$  : i상품의 수출액

$M_i$  : i상품의 수입액이다.

무역특화지수는 -100과 +100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무역특화지수가 -100이면 수출은 전무하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완전수입특화를 나타내며, +100의 값을 가지게 되면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내게 되며, 그 값이 제로가 되면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 3) 분석대상 및 통계자료

본 단락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국, 일본,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이들 3개국의 산업별, 품목별 무역통계를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는 International Trade Center에서 발표하는 국제무역통계연보의 품목별 통계를 이용하였다. 즉, 수산물의 분류는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034(Fish:Live /Frsh/Chld/Froz), 035(Fish:Dried/Salted/Smoked), 036(Crustaceans/Molluscs etc) 그리고 037(Fish/Shellfish : Prep/ Pres)이다.

그러나 다른 산업부문과는 달리 수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류통계보다는 각국의 어종별 수출입량, 생산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나, 3개국의 분류방법이 동일한 수산관련 통계자료를 입수하

---

54) Salvatore, D., *International Economics*, 7th edition, 2001.

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SITC 분류기준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및 미국과 전세계의 무역액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기 전에 한국, 일본 및 미국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를 살펴본다.

## 2. 한·일·미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 1)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업의 수출규모는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1994년에 약 14억 달러에서 1995년 15억 5천만 달러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에는 14억 9천만 달러, 1997년에는 13억 6천만 달러, 1998년에는 12억 2,75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다시 13억 7,497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3억 6,842만 달러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1>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천 US\$,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 출	1,400,419 (1.5)	1,550,506 (1.2)	1,493,746 (1.2)	1,361,519 (1.0)	1,227,499 (0.9)	1,374,967 (1.0)	1,368,419 (0.8)
수 입	680,997 (0.7)	784,264 (0.6)	1,008,753 (0.7)	983,772 (0.7)	538,856 (0.6)	1,114,960 (0.9)	1,337,596 (0.8)
무역수지	719,422	766,242	484,993	377,747	688,843	260,007	30,823

주 : ( )안은 전체수출입 대비 수산부문의 수출입 비중.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



우리나라 전체수출액 대비 점유율도 1994년 1.5%에서 1997년에는 1.0%, 1998년에는 0.9%로 하락하다, 1999년에 다시 1%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 0.8%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에 수산물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에 약 6억 8천만 달러, 1996년에는 1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97년에 9억 8천만 달러, 1998년에 5억 4천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 11억 1천5백만 달러, 2000년에 13억 3천8백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전체수입액 대비 점유율은 1998년까지 0.6%~0.7% 수준에서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였으나 1999년 0.9%, 2000년 0.8%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수산물의 수출은 정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수산물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산부문에서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1994년에 약 7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우리나라의 IMF 사태로 인하여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 2억 6천만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3천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 2) 일본

일본은 세계 제일의 수산물 소비국으로 수산물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치중하고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화적 여건에 의하여 일본 수산업의 수출규모는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1994년에 약 7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7억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1999년에 6억 9천만 달러, 2000년에 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등락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수산물 수입은 1994년에 약 158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약 167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40억 달러정도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12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다소 수입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1999년에 144억 8천만 달러, 2000년에 약 153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체수출액 대비 수산물의 수출비중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0.2%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전체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비중은 1994년에 5.8%에서 2000년에 4.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수산물 수출입의 불균형에 의하여 수산부문에서의 상당한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94년에 151억 4천만 달러, 1995년 약 166억 달러, 1997년에는 15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에는 다소 개선된 11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에 137억 8천만 달러, 2000년에 약 145억 2천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5-2> 일본의 수산부문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천 US\$,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 출	717,931 (0.2)	690,594 (0.2)	689,113 (0.2)	864,922 (0.2)	709,547 (0.2)	690,457 (0.2)	785,907 (0.2)
수 입	15,866,724 (5.8)	17,378,114 (5.2)	16,666,416 (4.8)	15,187,918 (4.5)	12,578,177 (4.5)	14,478,831 (4.7)	15,302,911 (4.0)
무역수지	-15,148,793	-16,687,520	-15,977,303	-15,323,096	-11,868,630	-13,788,374	-14,517,004

주 : ( )안은 전체수출입 대비 수산부문의 수출입 비중.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

3) 미 국

미국의 경우 수산부문의 수출규모는 <표 5-3>이 보여주듯이 1994년에 약 30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21억 7천만 달러로 약 8억 3천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 27억 4천만 달러, 2000년에 약 28억 1천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체수출액 대비 수산물의 수출점유율은 1994년 0.6%에서 1998년에는 0.3%로 하락하였으나, 1999년과 2000년에는 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의 수입은 1994년에 약 69억 4천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약 10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수입액 대비 점유율은 0.8-0.9%대의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산물의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에 수산물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수산부문에서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1994년에 약 39억 달러의 적자에서 2000년에는 약 7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수산부문에서의 적자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3> 미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천 US\$,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 출	3,032,929 (0.6)	3,177,316 (0.6)	2,929,793 (0.5)	2,629,514 (0.4)	2,169,611 (0.3)	2,742,531 (0.4)	2,809,637 (0.4)
수 입	6,939,256 (1.0)	7,100,774 (0.9)	7,026,874 (0.9)	8,078,358 (0.9)	8,522,940 (0.9)	9,372,935 (0.9)	10,413,116 (0.8)
무역수지	-3,906,327	-3,923,458	-4,097,081	-5,448,844	-6,353,329	-6,630,404	-7,603,479

주 : ( )안은 전체수출입 대비 수산부문의 수출입 비중.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

### 3. 한·미·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 1)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및 미국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그 결과는 <표 5-4>와 같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다른 산업부문과는 달리 일본과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5-4> 한·미·일 수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국명	품 목	SITC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국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	034	206	182	165	143	156	148	127
	어류(건조/훈제/염장)	035	25	18	17	19	17	20	21
	갑각류/연체류	036	104	109	105	101	153	95	96
	계류 및 기타수산물	037	230	203	198	175	201	139	121
일본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	034	23	20	21	30	30	24	26
	어류(건조/훈제/염장)	035	6	11	10	11	9	7	13
	갑각류/연체류	036	7	7	11	14	19	10	12
	계류 및 기타수산물	037	44	10	39	45	55	37	35
미국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	034	107	114	99	80	72	76	79
	어류(건조/훈제/염장)	035	37	38	43	24	23	28	27
	갑각류/연체류	036	51	45	42	40	51	45	45
	계류 및 기타수산물	037	40	37	30	15	38	31	27

주: International Trade Center 및 World Trade Organization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였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일본 및 미국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류기준 034을 보면 1994년 206에서 점차적

으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127로 하락하였으며, 037부문의 경우 1994년에 230에서 2000년에 121로 계속 하락하였다. 특히, 035부문 즉 어류중 건조/훈제 및 염장부문의 국제경쟁력은 2000년에 21로 나타나 다른 부문보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국제경쟁력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국제경쟁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35부문 즉 어류중 건조, 훈제 및 염장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이들 2국이 서로 경쟁 또는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수산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SITC 세 자리 분류기준에 의한 RCA지수는 모든 분류에서 한국의 수산업 경쟁력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수산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다른 산업부문과는 달리 한국이 미국보다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35부문을 제외한 034, 036 및 037부문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SITC 분류기준 035 즉 어류중 건조, 훈제 및 염장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이 다소 우위를 보이거나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과 미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국제경쟁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 2) 무역특화지수(ITI)

수산업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표 5-5>에서 알 수 있듯이 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며 1994년에 52.9~13.6에서 1997년에는 0.95~

50.3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98년에 다시 20.8 ~ 75.4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 다시 -16.9 ~ 48.7로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034부문의 경우, 즉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의 경우, 1998년에 20.8이던 것이 1999년에 -7.5와 2000년에 -16.9를 기록하면서 1999년 이후 부분적 수출특화에서 부분적 수입특화상태로 전환되었다. 이는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035부문의 경우, 즉 어류(건조/훈제/염장)의 경우에도 1999년에 28이던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에 -26으로 변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부분적 수출특화상태가 부분적 수입특화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035부문(갑각류/연체류)의 경우 1998년에 53.6이던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에 17.4로 하락하였고, 036부문(계류 및 기타수산물)의 경우, 1998년에 75.4이던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에 48.7로 하락하였다. 이는 갑각류/연체류와 계류 및 기타수산물에서도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은 일반적으로 수산물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 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모든 1994년에 4가지 모든 부문에서 -90.9 ~ -74.5이던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에도 -95.7 ~ -81.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보다는 수산물 수입특화국으로 우리나라보다 수산부문의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034부문의 경우 1994년에 -10.9에서 2000년에 -33.4로, 035부문의 경우 1994년에 -10.3에서 2000년 -33.3으로, 036부문의 경우 1994년에 -63.3에서 2000년에 -74.7로, 037부문의 경우 1994년에 -50에서 2000년에 -72.9로 거의 지속적으로 무역특화지수가 악화되면서 수입특화가 강화되어 오고 있다.

<표 5-5> 한·일·미 수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국명	품 목	SITC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국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	034	23.5	19.1	6.1	0.95	20.8	-7.5	-16.9
	어류(건조/훈제/염장)	035	52.9	40.0	-2.2	8.3	21.2	28.0	-26.0
	갑각류/연체류	036	26.5	36.9	18.8	19.1	53.6	25.1	17.4
	계류 및 기타수산물	037	13.6	62.7	52.7	50.3	75.4	63.0	48.7
일본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	034	-90.9	-92.1	-92.3	-88.6	-88.1	-90.7	-89.3
	어류(건조/훈제/염장)	035	-89.8	-89.9	-91.7	-88.5	-88.2	-90.6	-83.9
	갑각류/연체류	036	-97.2	-97.4	-96.3	-95.1	-95.1	-96.1	-95.7
	계류 및 기타수산물	037	-74.5	-78.8	-80.5	-77.6	-78.5	-79.6	-81.7
미국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	034	-10.9	-9.3	-14.9	-25.2	-38.3	-32.7	-33.4
	어류(건조/훈제/염장)	035	-10.3	-14.7	-5.2	-34.2	-39.8	-31.5	-33.3
	갑각류/연체류	036	-63.3	-66.1	-66.4	-71.2	-76.4	-72.0	-74.7
	계류 및 기타수산물	037	-50.0	-50.8	-58.1	-66.0	-69.0	-68.7	-72.9

주: International Trade Center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였음.

이상에서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일본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일본 및 미국의 수산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 및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일본과 미국보다는 다소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분석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제2절 일본 및 미국시장에서 수산물 품목별 경합관계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으나 분류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3단위나 4단위 분류로써 만족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및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주요 국가와의 경쟁력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일본 및 미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본 후에, 첫째, 수산업 품목별 수입점유율 분석을 통해 일본 및 미국시장에서의 경쟁국간의 품목별 경쟁정도를 살펴보고, 둘째,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불변시장점유율(Contant Market Share : CMS)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 1.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치 및 경쟁력 분석

일본시장은 산업전체에 있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수출국이면서, 수산업에 있어서는 제1위의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대일수출은 1996년부터 3년 연속 감소 후 1999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하여 전년에 비해 11.1% 증가하였다.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중국은 1999년 현재 1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미국이 10.0%, 러시아가 7.7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7.29%, 태국은 6.81%, 인도네시아는 6.32%로 상위 6개국에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중 52.4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참조).



<표 5-6> 주요국의 일본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54.77	52.65	51.91	52.36	52.41	53.72	54.87
한 국	7.02	6.98	6.38	7.22	7.29	7.21	6.77
중 국	11.32	12.35	14.21	13.77	14.21	15.40	16.35
미 국	13.46	12.14	10.41	9.36	10.00	9.72	10.11
러 시 아	7.30	7.01	6.49	6.80	7.79	8.02	7.33
태 국	8.50	7.08	7.12	7.09	6.81	6.97	7.55
인도네시아	7.17	7.09	7.30	8.12	6.32	6.40	6.76

자료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1年 水産物貿易統計年報(輸入).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 각 국가별로 일본시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수출하는 품목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0303류(30.0%)를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1604류(37.5%), 미국은 0303류(48.9%), 러시아는 0306류(50.8%), 태국은 1605류(24.9%), 인도네시아는 0306류(58.9%)로 나타났다(<표 5-7>참조).

한편 HS 4단위 품목별로 주요 국가의 일본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0301류, 0302류, 0307류, 1604류, 1605류 등 수산물 주요 분류품목 중 5개 품목군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0303류, 0304류, 0305류는 미국에서, 0306류는 러시아에서, 1212류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7&gt; 국가별 HS 4단위 분류별 일본시장 점유율(1999년)

(단위 : 천 US\$, %)

구분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계	1,111,738(100)	2,166,580(100)	1,524,617(100)	1,188,479(100)	1,037,715(100)	946,299(100)
0301	93,120( 8.4)	100,861( 4.7)	3,969( 0.3)	2( 0.0)	1,098( 0.1)	4,921( 0.5)
0302	34,424( 3.1)	171,821( 7.9)	54,295( 3.6)	8,319( 0.7)	20,597( 2.0)	130,005(13.5)
0303	333,714(30.0)	97,996( 4.5)	745,872(48.9)	472,160(39.7)	3,964( 0.4)	31,387( 3.3)
0304	109,152( 9.8)	163,590( 7.6)	272,117(17.8)	38,369( 3.2)	201,112(19.4)	9,870( 1.0)
0305	5,877( 0.5)	44,523( 2.1)	55,194( 3.6)	2,595( 0.2)	1,384( 0.1)	2,409( 0.2)
0306	18,653( 1.7)	137,929( 6.4)	161,654(10.6)	603,283(50.8)	249,007(24.0)	268,406(58.9)
0307	232,570(20.9)	265,152(12.2)	120,277( 7.9)	38,047( 3.2)	202,081(19.5)	7,519( 0.8)
1212	84,733( 7.6)	68,620( 3.2)	621(0.04)	102( 0.0)	215( 0.0)	645( 0.0)
1604	119,434(10.7)	813,375(37.5)	69,299( 4.5)	8,643( 0.7)	97,332( 9.4)	75,338( 7.8)
1605	62,710( 5.6)	266,386(12.3)	4,422( 0.3)	9,560( 0.8)	258,573(24.9)	65,179( 6.8)
기타	118,212( 1.7)	36,327( 1.7)	36,897( 2.4)	7,399( 0.6)	2,352( 0.2)	68,620( 7.1)
계	7.3	14.2	10.0	7.8	6.8	6.2
0301	25.1	27.2	1.1	0.0	0.3	1.3
0302	3.2	16.2	5.1	0.8	1.9	12.3
0303	8.3	2.4	18.5	11.7	0.1	0.8
0304	8.2	12.3	20.4	2.9	15.1	0.7
0305	2.3	17.7	21.9	1.0	0.6	1.0
0306	0.5	3.8	4.5	16.6	6.9	15.7
0307	14.0	15.9	7.2	2.3	12.1	0.5
1212	47.8	38.7	0.4	0.1	0.1	0.4
1604	9.2	62.8	5.4	0.7	7.5	5.8
1605	7.8	33.3	0.6	1.2	32.3	8.1
기타	18.9	5.8	5.9	1.2	0.4	10.9

주 : 위표의 음영부분은 각 국가의 수출품목 중 일본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이며, 아래 표의 음영부분은 품목별 일본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를 나타내고 있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한국수산물의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 류별 추이를 살펴보면(<표 5-8>참조), 10개 4단위 분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98%를 차지하고 있다. 0301류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른 품목들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 한해를 기준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5~1999년 5개년을 비교해도 특이하게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품목 중 일본시장에서는 0303류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0307류로 나타났다.

<표 5-8> 일본에서의 한국수산물 수입점유율(HS 4단위분류별)

(단위 : %)

연도 류별	1995	1996	1997	1998	1999
0301	5.6	4.8	6.0	6.5	8.4
0302	3.5	1.9	2.1	2.4	3.1
0303	29.6	31.4	31.9	32.7	30.0
0304	8.8	8.8	10.7	9.3	9.8
0305	0.9	1.0	0.2	0.4	0.5
0306	1.5	1.3	1.4	1.6	1.7
0307	23.1	22.3	19.0	22.7	20.9
1212	8.9	7.6	8.2	8.7	7.6
1604	10.7	11.6	11.1	9.3	10.7
1605	5.7	7.5	7.5	4.2	5.6
기타	1.7	1.8	1.9	2.2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제5장 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수산물의 류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5-9>참조), 대부분 연도별 큰 변동은 없으나, 일본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큰 1212류(김, 미역, 톳 등)의 경우 199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0301류(넙치(활), 봉장어(활), 방어(활) 등)의 경우에는 1999년에 전년도에 비해 8.4%포인트 증가하여 중국 다음으로 경쟁력이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표 5-9>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전체에서 한국수산물이 차지하는 류별 점유율

(단위 : %)

연도 류별	1995	1996	1997	1998	1999
0301	16.0	14.3	14.8	16.7	25.1
0302	3.6	2.2	2.1	2.5	3.2
0303	9.4	9.0	8.9	10.1	8.3
0304	7.9	8.2	7.3	8.7	8.2
0305	2.7	2.9	0.8	1.8	2.3
0306	0.4	0.4	0.4	0.4	0.5
0307	14.5	13.4	11.7	15.0	14.0
1212	58.5	51.6	46.5	50.2	47.8
1604	9.1	8.9	7.2	7.3	9.2
1605	9.2	11.6	9.9	5.9	7.8

주 : Yen/US\$를 1995년 1\$에 94.06¥, 1996년 108.78¥, 1997년 120.99¥, 1998년 130.91¥로 환산(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2001. 3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수산물 현황을 바탕으로 수입점유율 및 불변시장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입점유율 분석

기존에 많이 활용하였던 수출경합도 지수는 비교대상 국가의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할수록 양국간 경쟁의 정도가 높다는 전제하에 특정시장에 있어서 비교대상 국가간의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한 정도를 수치화하여 경합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수출경합도 지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수출경합도} = \sum \text{Min} [X_i(AC), X_i(BC)]$$

단,  $X_i(AC)$  : A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의 비중

$X_i(BC)$  : B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의 비중

수출경합도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C국가 시장에서 i품목에 대하여 A국가와 B국가간의 경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특정국가간의 경쟁지수만을 제공할 뿐 여타 국가들과의 상대적 경쟁정도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요 수출시장을 일본으로 두고, 일본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의 품목별 수입점유율 분석을 통해 한국과 경쟁국가간의 경쟁정도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표 5-10> 참조).

주요 경쟁국은 일본시장 수입점유율이 높은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을 선정하였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 5개 국가가 일본 수입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대상 품목은 일본의 HS품목 기준에 따라 4단위 품목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고, 세부 HS 9단위 품목별 경쟁력 분석을 위해 우선 우리나라 대일 수출 상위 15개 품목을 선정한 후 그중 일본의 품목 기준에 맞추어 유사한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5-10> 수산물 수입점유율 분석방법

분석자료	일본 수산물수입통계(1995~2000년)
분석대상 국가	주요 수출시장 : 일본 주요 경쟁국 :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5개국)
분석대상 품목	4단위 :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1212, 1604, 1605류 9단위 : ①0301-99-290(0301-99-210이외의 기타어류 : 0301-99-5000) ②0303-42-000(황다랭이 냉동 : 0303-42-0000) ③0303-49-020(눈다랭이 냉동 : 0303-49-1000) ④0304-20-099(기타어류피레트 : 0304-20-9000) ⑤0307-10-100(산것,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굴 : 0307-10-1090) ⑥0307-91-460(바지락 : 0307-91-1800) ⑦0307-91-470(신선 대합 : 0307-91-1500) ⑧1212-20-131(툇 신선, 냉장, 냉동 및 건조 : 1212-20-3010) ⑨1604-20-020(잘게썰어져장처리한 어류 : 1604-20-9000) ⑩1604-30-090(캐비아와 캐비아대용물 : 1604-30-2000)

주 : 세부 HS 9단위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상위 15개 품목을 선정한 후, 그중 일본의 품목 기준에 맞추어 유사한 10개 품목을 선정함.

경쟁정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식과 같다.

$$C_I = \sum_J \sum_H \left( \frac{E_{IJ}^H}{M_J^H} \right) \times \left( \frac{E_{KI}^H}{E_K} \right)$$

$C_I$  = I국의 한국(K)과의 경쟁도(경쟁지수)

$E_{IJ}^H$  = I국의 J국에 대한 H품목의 수출

$M_J^H$  = J국의 H품목의 대경쟁국 총수입(한국제외)

$E_{KI}^H$  = 한국(K)의 I국에 대한 H품목 수출

$E_K$  = 한국(K)의 총수출

즉 특정시장 J국에서 경쟁국(I)간의 품목별(H) 수입시장 점유율을 한국수출로 가중평균함으로써 한국과 경쟁국간의 경쟁도(경쟁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일본시장에서의 품목별 국별 경쟁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5개 경쟁국가의 평균 경쟁도는 0.20으로 나타났다(<표 5-11> 참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5-11>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 품목별(4단위) 국별 경쟁도

2000년도												
국가	품목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1212	1604	1605	전체
중국		0.927	0.391	0.098	0.317	0.473	0.111	0.436	0.947	0.744	0.451	0.415
미국		0.026	0.162	0.545	0.332	0.458	0.061	0.182	0.034	0.106	0.006	0.275
러시아		0.000	0.027	0.331	0.025	0.030	0.355	0.068	0.005	0.008	0.020	0.133
태국		0.009	0.041	0.003	0.306	0.018	0.141	0.301	0.006	0.094	0.426	0.136
인도네시아		0.038	0.379	0.023	0.020	0.021	0.331	0.014	0.008	0.048	0.097	0.041
1999년도												
중국		0.929	0.421	0.072	0.240	0.416	0.079	0.421	0.946	0.767	0.439	0.414
미국		0.028	0.146	0.551	0.395	0.526	0.095	0.187	0.028	0.063	0.007	0.268
러시아		0.000	0.023	0.351	0.057	0.023	0.350	0.060	0.001	0.008	0.016	0.134
태국		0.008	0.055	0.003	0.294	0.013	0.144	0.320	0.013	0.091	0.430	0.139
인도네시아		0.035	0.356	0.023	0.014	0.022	0.332	0.012	0.012	0.071	0.109	0.046
1998년도												
중국		0.907	0.418	0.052	0.214	0.497	0.078	0.405	0.934	0.760	0.374	0.377
미국		0.035	0.134	0.572	0.409	0.421	0.086	0.191	0.030	0.051	0.007	0.291
러시아		0.000	0.028	0.329	0.056	0.042	0.272	0.058	0.000	0.009	0.010	0.135
태국		0.013	0.038	0.004	0.291	0.010	0.156	0.330	0.015	0.094	0.487	0.141
인도네시아		0.045	0.381	0.044	0.030	0.031	0.408	0.016	0.021	0.085	0.122	0.055
1997년도												
중국		0.876	0.451	0.062	0.180	0.411	0.078	0.391	0.902	0.799	0.390	0.377
미국		0.051	0.177	0.630	0.473	0.485	0.065	0.234	0.043	0.029	0.005	0.318
러시아		0.000	0.021	0.267	0.048	0.027	0.300	0.039	0.000	0.008	0.019	0.107
태국		0.020	0.041	0.004	0.258	0.027	0.179	0.318	0.021	0.092	0.465	0.143
인도네시아		0.052	0.310	0.038	0.041	0.050	0.379	0.018	0.033	0.071	0.121	0.056
1996년도												
중국		0.796	0.411	0.054	0.167	0.314	0.076	0.349	0.868	0.780	0.418	0.354
미국		0.085	0.196	0.673	0.445	0.592	0.082	0.286	0.062	0.042	0.009	0.345
러시아		0.000	0.019	0.240	0.056	0.034	0.303	0.034	0.001	0.009	0.024	0.097
태국		0.027	0.039	0.005	0.271	0.022	0.200	0.315	0.025	0.095	0.459	0.151
인도네시아		0.092	0.336	0.028	0.061	0.039	0.340	0.016	0.044	0.074	0.089	0.053
1995년도												
중국		0.790	0.395	0.133	0.112	0.208	0.080	0.339	0.833	0.758	0.404	0.462
미국		0.100	0.284	0.160	0.516	0.675	0.099	0.301	0.069	0.049	0.006	0.216
러시아		0.000	0.004	0.616	0.076	0.035	0.254	0.024	0.002	0.013	0.074	0.057
태국		0.030	0.011	0.012	0.249	0.059	0.258	0.321	0.041	0.117	0.424	0.200
인도네시아		0.081	0.306	0.079	0.048	0.022	0.310	0.015	0.055	0.063	0.093	0.066

주1 : 경쟁국가간의 경쟁지수의 합은 1.0임.

주2 : 경쟁국의 평균경쟁도가 0.20임을 감안할 때 경쟁도가 0.20이상일 경우 경쟁이 치열, 0.40 이상일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평가됨.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1995년도 0.462에 비해서는 다소 경쟁도가 약화되었으나, 1999년부터 다시 경쟁도가 높아져 2000년에는 0.415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과는 1996년 0.345를 기점으로 점점 약화되어 2000년에는 0.275로 다소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도 매년 경쟁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의 경쟁도는 매년 낮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 보면, 0301류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쟁도가 매년 매우 치열해지고 있으며, 0302류는 중국, 인도네시아와의 경쟁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0303류는 미국과 경쟁도가 가장 심하며, 러시아와도 경쟁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0304류는 현재 미국과 경쟁도가 가장 심한데, 태국과 중국과의 경쟁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0305류는 1995년도에는 미국과 가장 경쟁이 치열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의 경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306류는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경쟁도가 치열하며, 0307류는 중국, 미국, 태국이, 1212류와 1604류는 중국, 1605류는 중국, 태국과 경쟁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S 9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품목별 국가별 경쟁정도를 살펴보았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쟁정도를 살펴보면, 주요 10개 품목 중 ⑩ 1604-30-090(캐비아와 캐비아대용물 : 1604-30-2000)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① 0301-99-290 (0301-99-210이외의 기타어류 : 0301-99-5000), ⑥ 0307-91-460(바지락 : 0307-91-1800), ⑧ 1212-20-131(툰 신선, 냉장, 냉동 및 건조 : 1212-20-3010)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두 국가간의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0303-42-000(황다랭이 냉동 : 0303-42-0000), ③ 0303-49-020(눈다랭이 냉동 : 0303-49-1000)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경쟁정도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2> 참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5-12>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 주요 품목별(9단위) 국별 경쟁도

2000년도											
품목 국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중국	1.000	0.394	0.692	0.707	0.839	1.000	0.962	1.000	0.427	0.103	0.755
미국	0.000	0.000	-	0.031	0.161	-	-	-	0.235	0.234	0.028
러시아	-	-	-	0.003	-	-	0.038	-	0.002	0.663	0.001
태국	-	0.012	0.005	0.209	-	-	-	-	0.261	-	0.006
인도네시아	-	0.595	0.304	0.050	-	-	-	-	0.075	-	0.209
1999년도											
중국	0.998	0.164	0.443	0.717	0.825	1.000	0.926	1.000	0.457	0.249	0.641
미국	0.001	-	0.001	0.046	0.175	0.000	-	-	0.203	0.001	0.027
러시아	-	-	-	0.014	-	-	0.074	-	-	0.749	0.002
태국	-	0.069	0.000	0.179	-	-	-	-	0.236	-	0.012
인도네시아	0.001	0.767	0.556	0.045	-	-	-	-	0.104	-	0.319
1998년도											
중국	0.998	0.034	0.362	0.633	0.710	0.999	0.893	1.000	0.525	0.141	0.558
미국	0.001	0.140	0.000	0.080	0.290	0.001	-	-	0.224	-	0.054
러시아	-	-	-	0.016	-	-	0.107	-	-	0.859	0.002
태국	0.000	0.112	0.003	0.169	-	-	-	-	0.143	-	0.018
인도네시아	-	0.715	0.634	0.102	-	-	-	-	0.108	-	0.368
1997년도											
중국	0.999	0.077	0.386	0.634	0.817	0.997	0.899	1.000	0.531	0.179	0.538
미국	0.000	0.280	0.002	0.099	0.183	0.003	-	-	0.257	0.020	0.077
러시아	-	-	-	0.008	-	-	0.101	-	-	0.801	0.001
태국	0.001	0.093	0.011	0.161	-	-	-	-	0.128	-	0.024
인도네시아	-	0.549	0.600	0.098	-	-	-	-	0.085	-	0.360
1996년도											
중국	0.999	0.136	0.232	0.520	0.872	1.000	0.909	1.000	0.443	0.204	0.505
미국	0.001	0.132	0.001	0.162	0.128	-	-	-	0.314	0.016	0.040
러시아	-	-	-	-	-	-	0.091	-	-	0.780	0.000
태국	-	0.121	0.001	0.201	-	-	-	-	0.168	-	0.021
인도네시아	-	0.611	0.766	0.117	-	-	-	-	0.075	-	0.434
1995년도											
중국	1.000	0.032	0.187	0.564	0.768	1.000	0.908	1.000	0.513	0.132	0.495
미국	0.000	0.009	0.001	0.087	0.232	-	-	-	0.254	0.005	0.035
러시아	-	0.111	0.004	-	-	-	0.092	-	-	0.863	0.018
태국	-	0.043	0.000	0.137	-	-	-	-	0.215	-	0.008
인도네시아	-	0.806	0.809	0.212	-	-	-	-	0.017	-	0.443

주1, 주2 : <표 5-11>과 같음.

2)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 CMS)분석 모델이란 세부품목별 시장점유율의 변동을 경쟁력 변화의 결과로 보고 이를 세 부분으로 분해한 것이다. 즉 수출성과의 변화를 첫째, 수출국의 경쟁력(가격 및 비가격) 요인, 둘째, 상품구조요인, 셋째, 수입국의 수요요인으로 분해한 후 경쟁력 요인의 추이를 통해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5년부터 1999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분석대상 시장 및 경쟁국가, 품목은 앞서의 수입점유율 분석방법과 동일하다. CMS 모델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은 <표 5-13>와 같다.

<표 5-13> CMS 모델

구 분	분석방법
수출국의 경쟁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국에서의 시장점유율(HS 4단위 기준) 변화를 경쟁력 변화로 간주</li> <li>-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이 1997년 2%에서 1998년 1%로 줄었다면 점유율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경쟁력 약화로 야기된 수출감소액으로 봄</li> <li>- 수출증감액이 마이너스이면 동품목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li> </ul>
상품구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국의 품목별 수입비중의 변동에 따른 수출증감액</li> <li>- 특정품목의 경쟁력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당해품목의 수입비중이 상승하면 동품목의 수출증가</li> <li>- 이는 수입국의 수입상품구조별 수요증가율 격차와 수출국의 수출공급 구조와의 정합성(Matching)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동효과가 +이면 수입국에서의 수요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 주로 수출함을 의미하며, 수출상품구성이 타국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의미</li> </ul>
수입국의 수요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의 경쟁력 요인과 상품구조 요인을 제외한 잔여분으로 수입국의 총수입규모 변동에 따른 요인</li> </ul>



CMS 모델을 통해 1995년부터 1999년 기간 중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수출 변동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쟁력 요인 및 상품구조 요인은 대일수출에 플러스로, 수요요인은 마이너스로 작용하였다. 동기간 중 수출증감액은 164백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보면, 경쟁력요인은 339백만 달러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상품구조 요인은 12백만 달러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수요요인은 184백만 달러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수산물의 대일 수출증가는 대부분 경쟁력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14> 및 <그림 5-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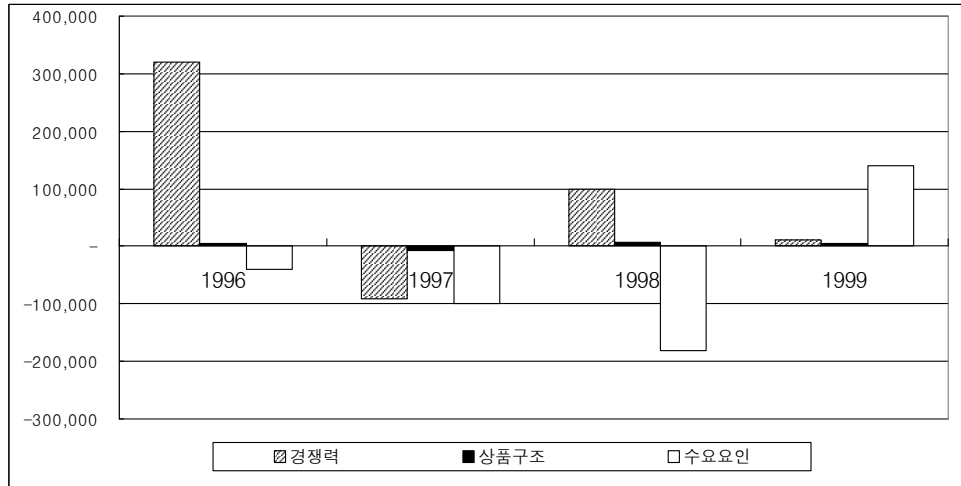
연도별 추이를 보면 경쟁력 요인은 1997년 수출감소요인으로 전환되었다가, 1998년 수출을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999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요요인은 1998년까지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999년에는 수출증가요인으로 전환하여 1999년의 수출증가요인은 일본의 총수입 규모변동에 의한 수요요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연도별 대일수출 증감요인 추이**

(단위 : 백만 US\$)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996~1999년
경쟁력	319	-91	99	12	339
상품구조	4	-7	8	4	12
수요	-41	-100	-182	139	-184
수출증감액	282	-198	-75	155	164

<그림 5-1> 연도별 대일수출 증감요인 추이



품목별 수출증감요인을 살펴보면(<표 5-15>참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경쟁력요인은 0303류의 수출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상품구조요인은 0301류와 0302류를 제외하고 수출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요요인에 있어서는 모든 품목이 수출감소요인으로 나타났다.

4단위 품목별로 요인분석해 보면, 0301류는 경쟁력요인에 의한 수출증가액이 32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0302류는 모든 요인이 수출감소요인으로 나타났고, 0303류는 경쟁력요인이 302백만 달러로 수출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0304류는 수요요인에 의해 수출이 감소하였고, 0305류와 0307류는 모든 요인들이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 0306류는 상품구조요인과 수요요인이, 1212류, 1604류 및 0605류는 수요요인이 수출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lt;표 5-15&gt; 품목별 수출증감요인 변동추이

(단위 : 천 US\$)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996~1999년
0301	경쟁력	-6,992	2,218	6,999	29,388	31,613
	상품구조	-3,327	6,092	4,373	-8,799	-1,661
	수요	-3,160	-4,841	-11,131	9,253	-9,880
	합계	-13,479	3,469	241	29,842	20,073
0302	경쟁력	-15,878	-1,030	3,973	7,857	-5,079
	상품구조	-3,830	448	1,676	-230	-1,936
	수요	-2,000	-1,975	-3,829	3,441	-4,363
	합계	-21,708	-2,558	1,821	11,067	-11,378
0303	경쟁력	346,264	-2,724	35,268	-76,738	302,071
	상품구조	3,795	-23,405	8,387	48,790	37,566
	수요	-1,682	-31,963	-58,957	46,546	-46,056
	합계	348,377	-58,092	-15,302	18,598	293,581
0304	경쟁력	3,900	-13,086	13,859	-6,487	-1,814
	상품구조	-5,346	24,687	-15,757	13,988	17,573
	수요	-5,013	-8,914	-19,830	13,192	-20,565
	합계	-6,459	2,687	-21,728	20,694	-4,806
0305	경쟁력	758	-6,469	2,294	1,189	-2,228
	상품구조	760	-2,734	-246	-65	-2,285
	수요	-518	-1,058	-455	614	-1,417
	합계	1,001	-10,261	1,592	1,738	-5,930
0306	경쟁력	-1,065	93	2,464	2,911	4,404
	상품구조	-1,646	-255	399	-1,903	-3,405
	수요	-878	-1,359	-2,676	2,244	-2,669
	합계	-3,589	-1,520	187	3,252	-1,670
0307	경쟁력	-24,247	-28,053	48,466	-18,340	-22,174
	상품구조	14,077	-28,931	8,958	-601	-6,497
	수요	-13,090	-22,744	-35,066	32,357	-38,543
	합계	-23,260	-79,728	22,358	13,416	-67,214
1212	경쟁력	-12,478	-9,228	6,036	-10,873	-26,542
	상품구조	-4,526	8,647	7,447	2,340	13,908
	수요	-5,050	-7,693	-15,215	12,341	-15,617
	합계	-22,054	-8,274	-1,731	3,809	-28,250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5-15> 계속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996~1999년
1604	경쟁력	-3,347	-27,317	2,062	23,647	-4,955
	상품구조	13,915	10,656	-6,980	-7,048	10,544
	수요	-6,093	-11,852	-20,611	13,274	-25,281
	합계	4,475	-28,513	-25,528	29,873	-19,693
1605	경쟁력	19,240	-12,627	-27,490	15,736	-5,142
	상품구조	3,377	4,618	4,423	998	13,416
	수요	-3,221	-7,672	-13,840	5,978	-18,755
	합계	19,396	-15,682	-36,906	22,711	-10,481

따라서 CMS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5년~1999년까지의 대일수출은 경쟁력요인에 의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년에는 수입수요의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로 향후 지속적인 대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품목별로는 0301류와 0303류만이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증가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경쟁력이 약한 0307류와 우리나라 대일 수출품목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진 1212류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도가 심화되는 등 경쟁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향후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치 및 경쟁력 분석

2001년 현재 미국시장은 전체산업에 대해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이면서 수입국으로서는 제2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제2위의 수출입 대상국이다. 수산물의 경우 미국수입시장 점유율이 1%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으나 1998년이래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4년 간(1998~2001) 평균 30%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수입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캐나다는 2001년 현재 1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태국이 12.19%, 중국이 6.73%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3.96%, 칠레는 2.70%, 에쿠아도르는 2.20%로 상위 6개국이 미국 수산물 수입시장 중 43.5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6> 참조).

**<표 5-16> 주요국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41.27	41.35	42.02	42.80	43.55
한국	0.65	0.42	0.45	0.44	0.44
캐나다	14.39	14.33	15.18	15.03	15.33
멕시코	4.78	4.54	4.15	4.09	3.96
칠레	2.31	2.53	2.30	2.71	2.70
에쿠아도르	4.98	4.53	3.30	1.99	2.20
태국	10.67	11.41	12.05	12.84	12.19
중국	3.48	3.59	4.59	5.71	6.73

4단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 각 국가별로 미국시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수출하는 품목의 점유율을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1605류(31.6%)를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0306류(54.4%), 칠레는 0304류(79.1%), 에쿠아도르는 0306류(54.1%), 태국은 0306류(36.0%)이며 캐나다 및 중국은 기타품목의 점유율이 각각 31.4% 및 46.4%로 가장 높았다.

한편 4단위 품목별로 주요 국가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0302류, 0303류, 0305류, 0307류 등 4개 주요 품목군 및 기타품목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0301류, 0306류, 1604류 및 1605류 등은 태국에서, 0304류는 칠레에서, 1212류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7> 참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5-17> 국가별 HS 4단위 분류별 미국시장 점유율(2001년)

(단위 : 천 US\$, %)

구분	한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에쿠아도르	태국	중국
계	82,223(100)	2,843,797(100)	734,490(100)	500,392( 100)	407,868(100)	2,260,514(100)	1,248,461(100)
0301	22(0.03)	4,186( 0.1)	85( 0.0)	0( 0.0)	10( 0.0)	9,920( 0.4)	499( 0.0)
0302	237( 0.3)	406,227(14.3)	33,421( 4.6)	38,508( 7.7)	22,625( 5.5)	627( 0.0)	932( 0.1)
0303	9,559(11.6)	28,735( 1.0)	3,573( 0.5)	16,550( 3.3)	2,816( 0.7)	2,827( 0.1)	22,040( 1.8)
0304	2,926( 3.6)	315,745(11.1)	8,129( 1.1)	395,736(79.1)	54,788(13.4)	29,564( 1.3)	241,776(19.4)
0305	4,249( 5.2)	67,410( 2.4)	350( 0.0)	5,745( 1.1)	76( 0.0)	341( 0.0)	12,990( 1.0)
0306	1,096( 1.3)	739,181(26.0)	399,828(54.4)	9,354( 1.9)	220,524(54.1)	814,769(36.0)	203,812(16.3)
0307	14,284(17.4)	116,043( 4.1)	11,319( 1.5)	3,416( 0.7)	83(0.02)	8,933( 0.4)	67,331( 5.4)
1212	6,043( 7.4)	4,314( 0.2)	796( 0.1)	3,679( 0.7)	0( 0.0)	17( 0.0)	12,186( 1.0)
1604	15,432(18.8)	77,889( 2.7)	4,483( 0.6)	6,178( 1.2)	79,399(19.5)	205,592( 9.1)	17,260( 1.4)
1605	25,958(31.6)	190,534( 6.7)	33,325( 4.5)	7,868( 1.6)	12,100( 3.0)	543,795(24.1)	90,203( 7.2)
기타	2,404( 2.9)	893,533(31.4)	239,181(32.6)	13,358( 2.7)	15,447( 3.8)	644,129(28.5)	579,432(46.4)
계	0.4	15.3	4.0	2.7	2.2	12.2	6.7
0301	0.0	9.0	0.2	0.0	0.0	21.2	1.1
0302	0.0	52.6	4.3	5.0	2.9	0.1	0.1
0303	2.3	7.0	0.9	4.0	0.7	0.7	5.4
0304	0.2	17.8	0.5	22.3	3.1	1.7	13.6
0305	2.9	45.6	0.2	3.9	0.1	0.2	8.8
0306	0.0	17.1	9.2	0.2	5.1	18.8	4.7
0307	3.7	29.8	2.9	0.9	0.0	2.3	17.3
1212	13.1	9.4	1.7	8.0	0.0	0.0	26.4
1604	2.3	11.4	0.7	0.9	11.7	30.2	2.5
1605	2.2	15.8	2.8	0.7	1.0	45.2	7.5
기타	0.0	10.2	2.7	0.2	0.2	7.4	6.6

주 : 위표의 음영부분은 각 국가의 수출품목 중 미국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이며, 아래 표의 음영부분은 품목별 미국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를 나타내고 있음.

미국시장에서의 연도별 류별 한국수산물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5-18>과 같다. 10개 4단위 분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98%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0305류(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및 1604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등)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고, 0306류(새우, 게 등 갑각류)는 크게 감소하였고, 1605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며 다른 품목들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개 품목 중 미국시장에서는 1605류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0307류(굴, 전복, 가리비, 홍합, 오징어 등 연체류) 또는 0305류의 점유율이 높았다.

<표 5-18> 미국에서의 한국수산물 수입점유율(HS 4단위분류별)

(단위 : %)

년도 4단위류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0301	0.0	0.0	0.0	0.0	0.0
0302	0.1	0.3	0.2	0.4	0.3
0303	11.3	6.2	7.9	9.7	11.6
0304	3.8	0.7	3.7	5.9	3.6
0305	3.1	3.6	5.5	4.8	5.2
0306	19.3	8.0	8.2	6.1	1.3
0307	15.9	19.1	15.8	18.0	17.4
1212	5.6	8.3	6.8	6.0	7.3
1604	8.5	10.2	11.6	12.2	18.8
1605	29.0	40.5	37.8	33.9	31.6
기 타	3.3	3.0	2.3	3.0	2.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수산물의 류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5-19> 참조), 대부분 연도별 큰 변동은 없으나, 미국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큰 1212류(해조류와 기타 조류)의 경우 1998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1년에 전년 대비 3.4%포인트 증가하여 중국, 일본에 이어 경쟁력이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표 5-19> 미국 수입시장 전체에서 한국수산물이 차지하는 류별 점유율

단위 : %

4단위류별 \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0301	0.0	0.0	0.1	0.0	0.0
0302	0.0	0.0	0.0	0.0	0.0
0303	2.4	0.9	1.3	1.8	2.3
0304	0.3	0.0	0.2	0.3	0.2
0305	2.3	1.8	2.9	2.8	2.9
0306	0.5	0.2	0.2	0.1	0.0
0307	3.2	2.9	2.7	3.1	3.7
1212	11.3	13.0	10.4	9.7	13.1
1604	1.4	1.1	1.3	1.7	2.3
1605	4.3	3.5	3.1	2.4	2.2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수산물 현황을 바탕으로 수입점유율 및 불변시장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입점유율 분석

수입점유율 분석을 위한 수출경합도 분석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주요 수출시장을 미국으로 하여 주요경쟁국의 품목별 수입점유율 분석을 통해 한국과 경쟁국가간의 경쟁정도를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주요 경쟁국으로는 미국시장 수입점유율이 높은 캐나다, 멕시코, 칠레, 에쿠아도르, 태국, 중국 등 6개국을 선정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 6개 국가가

미국 수입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대상 품목은 미국의 HS품목 기준에 따라 4단위 품목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고, 세부 HS 10단위 품목별 경쟁력 분석을 위해 우선 우리나라 대미 수출 상위 15개 품목을 선정한 후 이 중 미국의 품목 기준에 맞추어 유사한 8개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표 5-20> 참조).

<표 5-20> 수산물 수입점유율 분석방법

분석자료	미국 수산물수입통계(1997~2002년)
분석대상 국가	주요 수출시장 : 미국 주요 경쟁국 : 캐나다, 멕시코, 칠레, 에쿠아도르, 태국, 중국 (6개국)
분석대상 품목	4단위 :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1212, 1604, 1605류 9단위 : ①0305-59-4000 (상어지느러미 이외의 건조어류 : 0305-59-2000~9000) ②0307-10-0000(굴 산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염장) : 0307-10-1010~4000) ③0307-49-0050(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 0307-49-1020, 2000, 3000) ④0307-49-0060(갑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 0307-49-1010, 2000, 3000) ⑤1212-20-0000(해조류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건조 : 1212-20-1010~9099) ⑥1605-10-4010(기타 게살 조제 또는 냉동 : 1605-10-1090) ⑦1605-90-5000(굴 조제 및 저장 : 1605-90-1010) ⑧1605-90-6060(기타 조제 및 저장처리한 연체 및 수생무척추동물 : 1605-90-9090)

주 : 세부 HS 10단위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상위 15개 품목을 선정한 후, 그중 미국의 품목 기준에 맞추어 유사한 8개 품목을 선정함.

경쟁정도의 계산방법은 일본의 예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과 경쟁국 간의 경쟁도(경쟁지수)를 측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1997년부터 2002년(1월~10월)까지의 미국시장에서의 4단위 품목별 국별 경쟁도지수를 분석한 결과, 5개 경쟁국가의 평균 경쟁도는 0.14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캐나다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1997년부터 경쟁도가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는 0.220에 달하였다. 다음은 태국으로 1997년 0.154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경쟁지수가 0.130을 보였으나 타 비교대상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역시 매년 경쟁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멕시코와 에쿠아도르와의 경쟁도는 매년 낮게 나타나는 추세이며, 칠레는 거의 일정한 경쟁 수준을 나타내었다(<표 5-21> 참조).

<표 5-21> 미국시장에서의 연도별 품목별(4단위) 국별 경쟁도

		1997년도									
국가 \ 품목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1212	1604	1605	전체
멕시코	0.001	0.051	0.010	0.004	0.007	0.120	0.027	0.026	0.019	0.036	0.064
에쿠아도르	0.004	0.070	0.011	0.014	0.001	0.176	0.000	-	0.097	0.003	0.094
중국	0.018	0.000	0.016	0.101	0.015	0.022	0.173	0.223	0.023	0.023	0.043
칠레	-	0.131	0.027	0.130	0.012	0.003	0.027	0.133	0.021	0.008	0.042
캐나다	0.071	0.473	0.048	0.168	0.596	0.099	0.286	0.110	0.096	0.207	0.172
태국	0.180	0.000	0.007	0.015	0.004	0.183	0.021	0.004	0.334	0.545	0.154
기타국가	0.727	0.274	0.881	0.569	0.364	0.397	0.466	0.503	0.409	0.178	0.431
		1998년도									
멕시코	0.042	0.050	0.008	0.004	0.006	0.115	0.022	0.011	0.012	0.025	0.060
에쿠아도르	0.002	0.074	0.009	0.007	0.000	0.166	0.000	-	0.084	0.005	0.086
중국	0.015	0.000	0.014	0.109	0.019	0.014	0.182	0.255	0.013	0.026	0.041
칠레	-	0.090	0.035	0.168	0.013	0.003	0.028	0.156	0.016	0.009	0.046
캐나다	0.055	0.483	0.057	0.169	0.622	0.107	0.284	0.086	0.100	0.190	0.174
태국	0.161	0.000	0.007	0.016	0.005	0.210	0.027	0.001	0.359	0.566	0.174
기타국가	0.724	0.302	0.870	0.528	0.337	0.384	0.457	0.491	0.416	0.179	0.418

&lt;표 5-21&gt; 계속

1999년도												
국가	품목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1212	1604	1605	전체
멕시코		0.001	0.051	0.008	0.004	0.004	0.109	0.034	0.022	0.011	0.031	0.060
에쿠아도르		0.000	0.046	0.007	0.008	0.000	0.110	0.000	-	0.127	0.002	0.086
중국		0.012	0.000	0.048	0.113	0.060	0.017	0.165	0.313	0.023	0.065	0.041
칠레		-	0.066	0.035	0.155	0.016	0.004	0.018	0.084	0.015	0.005	0.046
캐나다		0.052	0.492	0.070	0.169	0.581	0.152	0.275	0.106	0.106	0.188	0.174
태국		0.188	0.001	0.006	0.015	0.003	0.211	0.024	0.000	0.371	0.526	0.174
기타국가		0.747	0.343	0.825	0.537	0.335	0.397	0.483	0.475	0.348	0.183	0.418
2000년도												
멕시코		0.007	0.060	0.011	0.003	0.004	0.097	0.041	0.014	0.008	0.027	0.055
에쿠아도르		0.000	0.039	0.022	0.022	0.000	0.044	0.000	-	0.136	0.005	0.037
중국		0.010	0.001	0.059	0.137	0.060	0.035	0.164	0.278	0.032	0.036	0.060
칠레		-	0.067	0.042	0.203	0.038	0.005	0.012	0.062	0.015	0.009	0.051
캐나다		0.048	0.486	0.063	0.161	0.530	0.154	0.321	0.115	0.145	0.187	0.194
태국		0.208	0.001	0.006	0.018	0.002	0.220	0.024	0.000	0.283	0.539	0.182
기타국가		0.727	0.346	0.798	0.455	0.366	0.444	0.437	0.531	0.382	0.196	0.422
2001년도												
멕시코		0.002	0.043	0.009	0.005	0.002	0.092	0.030	0.020	0.007	0.028	0.051
에쿠아도르		0.000	0.029	0.007	0.031	0.001	0.051	0.000	-	0.119	0.010	0.040
중국		0.011	0.001	0.055	0.136	0.091	0.047	0.180	0.304	0.026	0.077	0.069
칠레		-	0.050	0.041	0.223	0.040	0.002	0.009	0.092	0.009	0.007	0.050
캐나다		0.090	0.526	0.072	0.178	0.470	0.171	0.310	0.108	0.117	0.162	0.201
태국		0.212	0.001	0.007	0.017	0.002	0.188	0.024	0.000	0.309	0.462	0.166
기타국가		0.685	0.349	0.809	0.410	0.394	0.448	0.447	0.476	0.412	0.254	0.423
2002년도(1~10)												
멕시코		0.002	0.038	0.008	0.005	0.001	0.052	0.035	0.023	0.011	0.026	0.032
에쿠아도르		0.000	0.037	0.009	0.031	0.000	0.051	0.001	-	0.201	0.010	0.047
중국		0.012	0.003	0.097	0.161	0.132	0.044	0.154	0.312	0.030	0.116	0.081
칠레		-	0.040	0.033	0.214	0.078	0.002	0.012	0.067	0.014	0.004	0.052
캐나다		0.082	0.526	0.088	0.174	0.428	0.213	0.297	0.127	0.097	0.160	0.220
태국		0.194	0.002	0.011	0.017	0.004	0.126	0.031	0.001	0.293	0.394	0.130
기타국가		0.710	0.354	0.755	0.397	0.358	0.511	0.471	0.470	0.355	0.289	0.439

주1 : 경쟁국간의 경쟁지수의 합은 1.0임.

주2 : 경쟁국의 평균경쟁도가 0.14임을 감안할 때 경쟁도가 0.14이상일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0.28이상일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평가됨.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품목별로 보면, 0301류의 경우에는 태국과의 경쟁도가 매년 매우 치열해지고 있으며, 0302류는 캐나다와의 경쟁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0303류 및 0304류는 중국, 칠레, 캐나다와 경쟁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997년도에는 캐나다와 가장 경쟁이 치열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의 경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305류는 캐나다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중국과의 경쟁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0306류는 1997년도에는 태국, 에쿠아도르, 멕시코, 캐나다 순으로 경쟁도가 치열하였으나 최근에는 태국, 에쿠아도르, 멕시코의 경쟁도는 점차 감소하면서 캐나다와의 경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0307류와 1212류는 중국과 캐나다와, 1604류는 태국, 에쿠아도르 및 캐나다와 경쟁도가 높았으며, 1605류는 태국, 캐나다와 경쟁도가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쟁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품목별 국가별 경쟁정도를 살펴보았다. 조사된 모든 연도(1997~2002)에 대하여 경쟁정도를 살펴보면, 주요 10개 품목 중 ①0305-59-4000 (상어지느러미 이외의 건조어류 : 0305-59-2000~9000), ②0307-10-0000(굴 산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염장) : 0307-10-1010~4000) 및 ⑥1605-10-4010(기타 게살 조제 또는 냉동 : 1605-10-1090)은 캐나다와 한국의 양국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0307-49-0050(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 0307-49-1020, 2000, 3000)은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④0307-49-0060(갑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 0307-49-1010, 2000, 3000)은 중국, 태국, 한국간 경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⑤1212-20-0000(해조류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건조 : 1212-20-1010~9099)은 중국, 캐나다, 칠레, 한국 등 4개국의 경쟁이 높게 나타났으며 ⑦1605-90-5000(굴 조제 및 저장 : 1605-90-1010)은 중국과 한국 두 국가간의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⑧1605-90-6060(기타 조제 및 저장처리한 연체 및 수생무척추동물 : 1605-90-9090)은 태국과의 경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lt;표 5-22&gt; 미국시장에서의 연도별 주요 품목별(10단위) 국별 경쟁도

1997년도									
품목 국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멕시코	0.005	0.016	0.003	0.049	0.024	0.001	-	0.040	0.018
에쿠아도르	0.001	-	0.001	-	-	-	-	-	0.000
중국	0.054	0.007	0.370	0.021	0.219	-	0.856	0.031	0.200
칠레	-	0.013	0.001	-	0.156	-	-	0.017	0.042
캐나다	0.354	0.448	0.011	0.002	0.052	0.998	-	0.008	0.098
태국	0.017	-	0.050	0.324	0.003	-	-	0.141	0.066
기타국가	0.568	0.517	0.564	0.605	0.547	0.001	0.144	0.763	0.576
1998년도									
멕시코	0.004	0.024	0.003	0.006	0.006	-	-	0.043	0.012
에쿠아도르	-	-	-	-	-	-	-	-	0.000
중국	0.067	0.040	0.405	0.057	0.214	-	0.564	0.052	0.212
칠레	-	0.010	-	-	0.181	-	-	0.012	0.046
캐나다	0.327	0.521	0.009	0.017	0.091	0.946	-	0.066	0.110
태국	0.038	-	0.075	0.289	-	-	0.018	0.142	0.075
기타국가	0.564	0.404	0.508	0.631	0.508	0.054	0.418	0.686	0.544
1999년도									
멕시코	0.004	0.003	0.000	0.023	0.023	-	-	0.031	0.014
에쿠아도르	-	-	0.000	-	-	-	-	-	0.000
중국	0.119	0.038	0.290	0.051	0.293	-	0.923	0.027	0.200
칠레	0.000	-	-	-	0.095	-	-	0.026	0.029
캐나다	0.376	0.702	0.001	0.004	0.122	0.908	-	0.089	0.127
태국	0.019	-	0.067	0.271	-	-	-	0.178	0.075
기타국가	0.482	0.257	0.642	0.651	0.467	0.092	0.077	0.650	0.555
2000년도									
멕시코	0.005	0.016	0.003	0.049	0.024	0.001	-	0.040	0.012
에쿠아도르	0.001	-	0.001	-	-	-	-	-	0.000
중국	0.054	0.007	0.370	0.021	0.219	-	0.856	0.031	0.186
칠레	-	0.013	0.001	-	0.156	-	-	0.017	0.029
캐나다	0.354	0.448	0.011	0.002	0.052	0.998	-	0.008	0.156
태국	0.017	-	0.050	0.324	0.003	-	-	0.141	0.095
기타국가	0.568	0.517	0.564	0.605	0.547	0.001	0.144	0.763	0.52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 5-22> 계속

2001년도									
국가 \ 품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멕시코	0.004	0.024	0.003	0.006	0.006	-	-	0.043	0.015
에쿠아도르	-	-	-	-	-	-	-	-	0.000
중국	0.067	0.040	0.405	0.057	0.214	-	0.564	0.052	0.193
칠레	-	0.010	-	-	0.181	-	-	0.012	0.031
캐나다	0.327	0.521	0.009	0.017	0.091	0.946	-	0.066	0.182
태국	0.038	-	0.075	0.289	-	-	0.018	0.142	0.091
기타국가	0.564	0.404	0.508	0.631	0.508	0.054	0.418	0.686	0.488
2002년도(1~10)									
멕시코	0.004	0.003	0.000	0.023	0.023	-	-	0.031	0.012
에쿠아도르	-	-	0.000	-	-	-	-	-	0.000
중국	0.119	0.038	0.290	0.051	0.293	-	0.923	0.027	0.208
칠레	0.000	-	-	-	0.095	-	-	0.026	0.020
캐나다	0.376	0.702	0.001	0.004	0.122	0.908	-	0.089	0.147
태국	0.019	-	0.067	0.271	-	-	-	0.178	0.099
기타국가	0.482	0.257	0.642	0.651	0.467	0.092	0.077	0.650	0.515

2)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검토된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7년부터 2001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분석대상 시장 및 경쟁국가, 품목, CMS 모델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분석절차 및 분석모델 등은 상기 일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방식과 동일하다.

분석을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한국의 1998년 대미 수출증감액} \\ = & \text{한국의 1998년 대미수출액} - \text{한국의 1997년 대미수출액} \end{aligned}$$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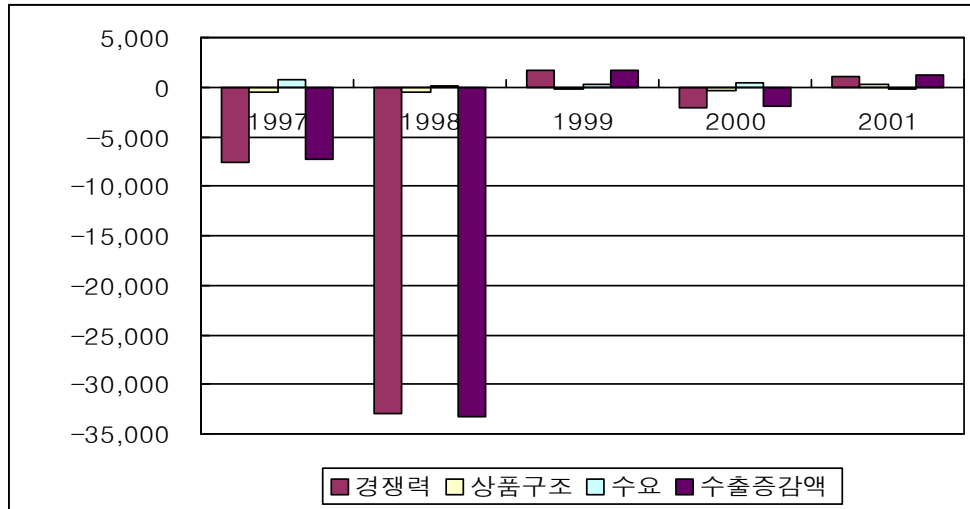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미미한 반면, 감소요인으로서의 작용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미국 총수입규모 변동에 따른 수요요인은 꾸준하게 수출증가요인으로서 작용하였으나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1999년 및 2001년의 수출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의 수출증감은 경쟁력 요인에 의해 주도되어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연도별 대미수출 증감요인 추이

(단위 : 천 US\$)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997 ~2001
경쟁력	-7,553	-32,898	1,647	-2,065	1,084	-39,785
상품구조	-529	-493	-184	-313	271	-1,248
수요	816	141	265	391	-128	1,485
수출증감액	-7,266	-33,249	1,728	-1,987	1,227	-39,547

<그림 5-2> 연도별 대미수출 증감요인 추이



품목별 수출증감요인을 살펴보면(<표 5-24> 참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경쟁력요인은 0304, 0306, 1212 및 1605류에서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상품구조요인은 0301류와 1604류를 제외하고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요요인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증가요인으로 나타났다.

4단위 품목별로 요인분석해 보면, 0301류 및 0302류는 수출증감이 미미하였으며, 0303류는 경쟁력 및 수요요인이 405천 달러로 수출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0304류는 경쟁력요인에 의해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0305류와 0307류는 경쟁력 및 수요요인이, 1212류는 수요요인이 수출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0306류와 1605류는 경쟁력 및 상품구조요인에 의해 수출감소를 나타내었고, 1604류는 모든 요인들이 수출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5-24> 품목별 수출증감요인 변동추이

(단위 : 천 US\$)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997~2001년	
0301	경쟁력	-7.0	1.5	13.3	-8.0	0.9	0.7
	상품구조	0.0	0.0	0.0	0.0	0.0	0.0
	수요	0.0	0.0	0.0	0.0	0.0	0.0
	합계	-7.0	1.5	13.3	-8.0	0.9	0.7
0302	경쟁력	-112.5	80.7	-99.3	211.1	-82.2	-2.0
	상품구조	0.0	0.0	0.0	0.0	0.0	-0.1
	수요	0.0	0.0	0.0	0.0	0.0	0.0
	합계	-112.5	80.8	-99.3	211.2	-82.2	-2.1
0303	경쟁력	866.9	-6,585.7	1,731.6	2,229.1	2,092.5	334.4
	상품구조	15.5	-172.7	13.3	11.4	36.8	-95.8
	수요	46.8	13.0	4.7	14.8	-9.0	70.4
	합계	929.2	-6,745.4	1,749.6	2,255.4	2,120.3	309.0

<표 5-24> 계속

제5장 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997~2001년	
0304	경쟁력	-4,484.7	-3,586.2	2,316.2	1,812.4	-1,750.7	-5,693.2
	상품구조	-26.8	-9.1	0.7	2.6	-4.4	-37.0
	수요	10.3	0.5	0.0	0.9	-0.8	10.9
	합계	-4,501.3	-3,594.8	2,316.9	1,815.8	-1,755.9	-5,719.3
0305	경쟁력	287.6	-711.7	1,670.2	-265.8	181.4	1,161.8
	상품구조	0.1	-15.7	27.0	-28.9	13.3	-4.1
	수요	12.7	3.4	5.1	23.1	-6.8	37.6
	합계	300.4	-724.0	1,702.4	-271.6	188.0	1,195.2
0306	경쟁력	10,012.8	-13,557.6	607.7	-2,340.4	-3,908.9	-9,186.4
	상품구조	26.5	-76.1	0.6	-4.0	-4.2	-57.4
	수요	3.9	5.0	1.0	2.0	-0.4	11.5
	합계	10,043.2	-13,628.7	609.2	-2,342.5	-3,913.5	-9,232.2
0307	경쟁력	-1,764.2	-1,310.7	-633.4	1,700.7	2,357.8	350.2
	상품구조	-34.2	-100.2	-62.2	16.5	8.8	-171.3
	수요	118.9	23.9	44.0	61.4	-28.2	220.1
	합계	-1,679.5	-1,387.0	-651.6	1,778.7	2,338.4	399.0
1212	경쟁력	-774.5	691.8	-1,288.1	-339.5	1,558.9	-151.3
	상품구조	-28.3	-10.0	-128.1	-120.0	130.7	-155.8
	수요	151.1	30.3	86.6	101.0	-30.0	339.1
	합계	-651.7	712.1	-1,329.6	-358.5	1,659.7	32.1
1604	경쟁력	-367.2	-2,201.9	1,322.4	2,460.7	3,951.9	5,165.9
	상품구조	-3.5	-24.5	13.5	-5.0	100.4	80.8
	수요	26.2	5.8	8.9	21.1	-10.5	51.6
	합계	-344.5	-2,220.6	1,344.8	2,476.8	4,041.8	5,298.3
1605	경쟁력	-11,210.4	-5,718.0	-3,993.2	-7,525.2	-3,318.0	-31,764.8
	상품구조	-478.2	-84.2	-49.0	-185.1	-10.5	-807.0
	수요	446.4	58.8	114.6	166.3	-42.2	743.9
	합계	-11,242.2	-5,743.4	-3,927.6	-7,544.0	-3,370.7	-31,827.9

상기 CMS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7년~2001년까지의 대미수출은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주로 경쟁력요인에 의해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대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 등 품목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품목별로는 0303류, 0305류, 0307류 및 1604류가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증가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한편으로는 0303류, 0305류 및 0307류의 상품구조 요인이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추후 미국측의 수요증가를 크게 유발할 수 있도록 미국 상품구조에 대응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구조에 새로운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쟁력이 약한 0304류, 0306 및 1605류는 물론,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목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진 1604류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도가 심화되는 등 경쟁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향후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제6장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 시장확보와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추진방침에 부응하여 한·일, 한·미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1절에서 다국가·다산업 CGE 모형(A multi-country, multi-sector CGE model)을 이용하여 한·일 FTA체결이 우리나라 수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게 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2절에서 GTAP모형과 GTAP database를 이용하여 한·미 FTA체결의 효과를 분석한다. 한·일 FTA체결의 파급효과와 한·미 FTA체결의 영향을 절을 달리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구비정도 및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제1절과 제2절의 다국가·다산업 CGE 모형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sup>55)</sup> 세분된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분석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

55) 다국가·다산업 CGE 모형에 필요한 database는 모형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나라의 산업연관표와 개별 국가간에 이루어진 교역으로 구성된 SAM(사회계정행렬)인데, 이를 작성하는 일은 실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함. 그러나 다행히도 Purdue대학교의 GTAP연구소에서 전세계의 수많은 CGE모형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GTAP Database를 만들어 database 작업에 필요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음. 이 GTAP DB가 구축되기 전에는 하나의 연구를 위해 database 구축에 3~4년의 시간과 이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였음. 그러나 본 연구에

위해 제3절에서 1국가 CGE 모형(A one-country CGE model)을 이용하여 한·일 FTA 및 한·미 FTA 체결이 한·일 및 한·미간 20대 주요 교역 수산물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자본수요 및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한다.

## 제1절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 1. 다국가·다산업 CGE모형의 구조

먼저 본 연구에서 한·일 FTA체결이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모형은 다국가·다산업 CGE 모형(Multi-country, multi-secto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이다. 본 CGE모형은 일반 균형모형이므로 한·일 FTA체결이 수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가능하다. 이는 수산업이 수산업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되는 다국가·다산업 CGE 모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GTAP DB를 이용하는데 매우 커다란 한계가 있는데 즉,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수산물이 세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산업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임.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GTAP DB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 즉 수산업 분야를 연구목적에 맞게 세분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 물론 이를 위해 2~3년의 database 구축작업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5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을 투자해야 함. 그러나 본 연구에 지불된 비용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의 한계가 무엇인지 명약관화하며, 이러한 한계극복을 위한 노력을 사후에라도 경주해야 할 것임. 이는 2002년 10월 칠레와 FTA체결 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멕시코, 뉴질랜드, 타일랜드, 일본, 미국, 중국, ASEAN 등 많은 국가와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FTA를 체결하는 모든 대상 국가에 대해 개별 FTA체결이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임.

1) 생산함수, 집계함수 및 공급함수

본 모형의 생산함수는 다층생산함수(nested production functions)로 구성된다. 즉, 상부구조에 Leontief생산함수가 있으며, 이 Leontief생산함수는 식(1)과 같이 중간복합재( $X_{ji}^r$ )와 부가가치의 복합재( $VA_i^r$ )로 구성된다.

따라서 r국 i산업의 Leontief생산함수는 식(1)과 같다:

$$(1) \quad X_i^r = \frac{X_{ji}^r}{a_{ji}^r} = \frac{VA_i^r}{a_i^r} \quad i=1, \dots, 11 : r=1, \dots, 3$$

여기서

r = 한국, 일본 및 기타국가<sup>56)</sup>

i = 11개 산업<sup>57)</sup>

$X_i^r$  = r국 i산업의 생산

$X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j중간복합재

$VA_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가가치의 복합재

두 번째 단계의 생산함수는 본원적 생산요소의 복합재( $F_{fi}^r$ )를 설명하는 함

---

56) 본 CGE 모형은 한·일 FTA체결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모형은 한국, 일본 및 기타국가로 구성되며, 후술하는 한·미 FTA의 효과분석에 사용된 GTAP모형은 한국, 미국 및 기타국가로 구성됨. 전자 모형에서 우리나라 402개 산업을 11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일본의 403개 산업도 11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GTAP DB 5를 이용하였으며, 이 경우 산업분류체계가 달라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함.

57) 11개 산업분류는 <표 5-6>을 참조할 것.

수와 중간복합재( $X_{ji}^r$ )를 설명하는 함수로 구성된다. 먼저,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가가치의 복합재( $VA_i^r$ )는 식(2)와 같이 본원적 생산요소( $F_{fi}^r$ )로 구성되는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생산함수<sup>58)</sup>이다.

$$(2) \quad VA_i^r = \Psi \frac{V_i^r}{i} \left( \sum_f \delta \frac{V_i^r}{i} F_{fi}^r \right)^{-\frac{1}{\rho \frac{V_i^r}{i}}}$$

$$i=1, \dots, 11 : f = \text{노동과 자본} : r=1, \dots, 3$$

$$\sigma \frac{V_i^r}{i} = \frac{1}{1 + \rho \frac{V_i^r}{i}} ; \rho \frac{V_i^r}{i} > -1 ; \sigma \frac{V_i^r}{i} > 0$$

여기서

$f$  = 본원적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

$F_{f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  $f$

$\sigma \frac{V_i^r}{i}$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간의 대체탄력도

(elasticity of substitution)

$\rho \frac{V_i^r}{i}$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간의 대체모수

(substitution parameter)

$\delta \frac{V_i^r}{i}$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가가치의 복합재함수의 분배모수

(distribution parameter)

$\Psi \frac{V_i^r}{i}$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가가치 복합재함수의 shift parameter

58) 여기서 생산함수는 aggregation function을 의미함.

또한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복합재( $X_{ji}^r$ )는 식(3)과 같이 수입중간재( $XM_{ji}^r$ )와 국산중간재( $D_{ji}^r$ )로 구성되는 CES생산함수로 설명된다.

$$(3) \quad X_{ji}^r = \Psi_{ji}^r \left[ \delta_{ji}^r XM_{ji}^{r-\rho_{ji}^r} + (1-\delta_{ji}^r) XD_{ji}^{r-\rho_{ji}^r} \right]^{-\frac{1}{\rho_{ji}^r}}$$

$$i, j = 1, \dots, 11 : r = 1, \dots, 3$$

$$\sigma_{ji}^r = \frac{1}{1 + P_{ji}^r}; P_{ji}^r > 1; \sigma_{ji}^r > 0$$

여기서

$XM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j

$XD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국산중간재j

$\delta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와 국산중간재j간의 분배모수

$\sigma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와 국산중간재j간의 대체탄력도

$\rho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와 국산중간재j간의 대체모수

$\Psi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복합중간재j함수의 shift parameter

세 번째 단계의 생산함수는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복합재( $X_{ji}^r$ )를 설명하는 생산함수로서 식(4)과 같다. 즉,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복합

재j( $X_{ji}^r$ )는 식(4)와 같이 다른 국가s에서 수입되는 중간재( $XM_{ji}^s$ )로 구성되는 CES생산함수로 설명된다.

$$(4) \quad X_{ji}^r = \Psi_{ji}^s \left( \sum_s \delta_{ji}^s X_{ji}^s \right)^{-\frac{1}{\rho_{ji}^s}}$$

$$i, j=1, \dots, 11; r=1, \dots, 3$$

$$\sigma_{ji}^s = \frac{1}{1 + \rho_{ji}^s}; \rho_{ji}^s > -1; \sigma_{ji}^s > 0$$

여기서

$XM_{ji}^s$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s국에서 수입된 중간재j

$\delta_{ji}^s$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s국에서 수입된 중간재j간의 분배모수

$\sigma_{ji}^s$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s국에서 수입된 중간재j간의 대체탄력도

$\rho_{ji}^s$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s국에서 수입된 중간재j간의 대체모수

$\Psi_{ji}^s$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s국에서 수입된 중간재j함수의 shift

parameter

개별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은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으로 나누어져 판매되며, 이러한 구별은 식(5)와 같은 CET(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변환함수를 통해 설명된다.

$$(5) \quad X_i^r = \Psi_i^{tr} \left[ \delta_i^{tr} D_i^{r, \rho_i^{tr}} + (1 - \delta_i^{tr}) E_i^{r, \rho_i^{tr}} \right]^{\frac{1}{\rho_i^{tr}}}$$

$$i = 1, \dots, 11; r = 1, \dots, 3$$

$$\sigma_i^{tr} = \frac{1}{\rho_i^{tr} - 1}; \rho_i^{tr} < 1; \sigma_i^{tr} < 0$$

여기서

$$X_i^r = r\text{국 } i\text{산업의 생산}$$

$$D_i^r = r\text{국 } i\text{산업의 생산물 중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량}$$

$$E_i^r = r\text{국 } i\text{산업의 생산물 중 수출시장에 판매되는 량}$$

$$\delta_i^{tr} = \text{CET변환함수의 분배모수}$$

$\sigma_i^{tr}$  = r국 i산업의 생산물 중 국제시장과 수출시장에 판매되는 상품간의 대체탄력도

$$\rho_i^{tr} = \text{CET변환함수의 대체모수}$$

$$\Psi_i^{tr} = \text{CET변환함수의 shift parameter}$$

개별국가의 생산물  $i$  중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량은 식(6)에 따라 결정되며, 수출시장에 판매되는 량은 식(7)에 따라 결정된다. 식(6)과 식(7)은 모두 식(5)의 최적화조건에서 도출된다. 즉, r국의  $i$ 상품의 국내시장 공급함수는 식(6)과 같고, 수출시장 공급함수는 식(7)과 같다.

$$(6) \quad D_i^r = \delta_i^{tr} \left( \frac{PX_i^r}{PD_i^r} \right)^{-\sigma_i^{tr}} X_i^r \quad i = 1, \dots, 11 : r = 1, \dots, 3$$

여기서

$PX_i^r = r$ 국  $i$ 상품의 생산가격

$PD_i^r = r$ 국  $i$ 상품의 국내시장가격

$$(7) E_i^r = \delta_i^{tr} \left( \frac{PX_i^r}{PE_i^r} \right)^{-\sigma_i^{tr}} X_i^r \quad i = 1, \dots, 11 : r = 1, \dots, 3$$

여기서

$PE_i^r = r$ 국  $i$ 상품의 수출시장가격

## 2) 생산요소의 수요함수

생산함수가 다층구조(nested production functions)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산요소의 수요함수도 또한 다층구조를 가지게 된다.

먼저,  $r$ 국  $i$ 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복합중간재( $X_{ji}^r$ )의 수요함수는 다음 식과 같으나, 이 식은 식(1)과 같으므로 생략된다.

$$X_{ji}^r = a_{ji}^r X_i^r$$

이와 마찬가지로  $r$ 국의  $i$ 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가가치의 복합재( $VA_i^r$ )의 수요함수는 다음 식과 같으나, 이 식은 식(1)과 같으므로 생략된다.

$$VA_i^r = a_i^r X_i^r$$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 $X_{fi}^r$ )의 수요함수는 식(8)과 같으며, 이 식은 식(2)의 최적화조건에서 도출된다.

$$(8) \quad X_{fi}^r = \delta_{fi}^{r \sigma_i} \left[ \frac{PV_i^r}{PF_f^r (1 + t_{fi}^r)} \right]^{\sigma_i} VA_i^r$$

$$i = 1, \dots, 11 : f = \text{노동, 자본} : r = 1, \dots, 3$$

여기서

$X_{fi}^r$  = r국의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f의 수요량

$PV_i^r$  = r국의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가가치 복합재의 가격

$PF_f^r$  = r국의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의 가격

$t_{fi}^r$  = r국의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f의 수요에 부과되는

세율

r국의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국산중간재( $XD_{ji}^r$ )의 수요함수는 식(9)과 같다.

$$(9) \quad XD_{ji}^r = (1 - \delta_{ji}^r)^{\sigma_{ji}} \left[ \frac{PX_i^r}{PD_{ji}^r (1 + t_{ji}^r)} \right]^{\sigma_{ji}} X_{ji}^r$$

$$i, j = 1, \dots, 11 : r = 1, \dots, 3$$

여기서

$XD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국산중간재j

$PX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복합중간재j의 가격

$PD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국산중간재j의 가격

$t_{ji}^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국산중간재j에 부과되는 세율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j 중 s국에서 수입되는 수입재 ( $M_{ji}^{sr}$ )의 수요함수는 식(10)과 같다.

$$(10) \quad M_{ji}^{sr} = (1 - \delta_{ji}^{sr})^{\sigma_{ji}^{sr}} \left[ \frac{PM_i^{sr}}{PD_{ji}^r (1 + t_{ji}^{sr})} \right]^{\sigma_{ji}^{sr}} X_{ji}^r$$

$$i, j = 1, \dots, 11 : r = 1, \dots, 3$$

여기서

$M_{ji}^{s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j 중 s국에서 수입되는 수입재의 수요

$PM_{ji}^{s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s국에서 수입된 수입중간재j의 가격

$t_{ji}^{s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s국에서 수입된 수입중간재j에 부과되는 세율

### 3) 민간소비

민간소비함수의 도출을 위해 개별국가에 민간가계가 하나 (a representative

household) 있다고 가정하고, 이 민간가계가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과 자본시장을 통해 노동과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고 소득을 얻게되며, 주어진 소득으로 상품을 소비하고 효용(utility)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민간가계의 효용은 식(11)과 같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Cobb-Douglas utility function)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11) \quad U^r = \prod_i C_i^{r_i \alpha_i}$$

여기서

$U^r$  = r국 민간가계의 소비에서 얻게되는 효용수준

$C_i^r$  = r국 민간가계의 i상품의 소비량

$\alpha_i$  = r국 민간가계의 i상품의 소비량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

민간가계가 소비하는 소비재는 국산재와 수입재로 구성된 혼합재이며, 이 혼합재는 식(12)와 같이 CES집계함수에 의해 설명된다.

$$(12) \quad C_i^r = \left[ \delta_i^{\frac{\sigma_i}{\rho_i}} CD_i^{r_i \frac{-\rho_i}{\sigma_i}} + (1 - \delta_i^{\frac{\sigma_i}{\rho_i}}) CM_i^{r_i \frac{-\rho_i}{\sigma_i}} \right]^{-\frac{\rho_i}{\sigma_i}}$$

$$i = 1, \dots, 11 : r = 1, \dots, 3$$

$$\sigma_i^{\frac{\sigma_i}{\rho_i}} = \frac{1}{1 + \rho_i^{\frac{\sigma_i}{\rho_i}}} ; \rho_i^{\frac{\sigma_i}{\rho_i}} > 1 ; \sigma_i^{\frac{\sigma_i}{\rho_i}} > 0$$

여기서

$C_i^r$  = r국 민간가계의 i상품의 소비량

$CD_i^r$  = r국 민간가계가 소비하는 국산소비재

$CM_i^r$  = r국 민간가계가 소비하는 수입소비재i

$\rho_i^{cr}$  = r국 민간가계의 i상품 소비함수의 대체모수

$\sigma_i^{cr}$  = r국 민간가계의 i상품 소비함수의 대체탄력도

$\delta_i^{cr}$  = r국 민간가계의 i상품 소비함수의 분배모수

r국의 민간가계 소비함수는 식(13)과 같다.

$$(13) \quad C_i^r = \frac{\alpha_i^{cr} \text{EXP}^r}{PC_i^r (1 + t_i^{cr})} \quad i = 1, \dots, 11 : r = 1, \dots, 3$$

여기서

$\text{EXP}^r$  = r국 민간가계의 총지출

$PC_i^r$  = r국 민간가계의 복합소비재i의 가격

$t_i^{cr}$  = r국 민간가계의 복합소비재i에 부과되는 세율

라. 정부지출

개별국가 정부는 각종 조세를 수입원으로 하고, 정부지출 행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부의 효용은 식(14)과 같이 콕-더글라스 효용함수(Cobb-Douglas utility function)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14) \quad UG^r = \prod_i G_i^{r_i \alpha_i^{gr}}$$

여기서

$UG^r$  = r국의 정부가 지출을 통해 얻게되는 효용수준

$G_i^r$  = r국 정부의 i상품에 대한 정부지출

$\alpha_i^{gr}$  = r국 정부의 i상품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

정부가 소비하는 소비재는 국산재와 수입재로 구성된 혼합재이며, 이 혼합재는 식(15)와 같이 CES집계함수에 의해 설명된다.

$$(15) \quad G_i^r = \left[ \delta_i^{gr} GD_i^{r-\rho_i^{gr}} + (1-\delta_i^{gr}) GM_i^{r-\rho_i^{gr}} \right]^{-\frac{1}{\rho_i^{gr}}}$$

$i = 1, \dots, 11 : r = 1, \dots, 3$

$$\sigma_i^{gr} = \frac{1}{1+\rho_i^{gr}} ; \rho_i^{gr} > 1 ; \sigma_i^{gr} > 0$$

여기서

$G_i^r$  = r국 정부의 i혼합재에 대한 정부지출

$GD_i^r$  = r국 정부의 i국산재에 대한 정부지출

$GM_i^r$  = r국 정부의 i수입재에 대한 정부지출

$\sigma_i^{gr}$  = r국 정부의 i혼합재에 대한 정부지출함수의 대체탄력도

$\rho_i^{gr}$  = r국 정부의 i혼합재에 대한 정부지출함수의 대체모수

$\delta_i^{gr}$  = r국 정부의 i혼합재에 대한 정부지출함수의 분배모수

4) 교역

r국의 i재 수입은 중간재로 생산에 직접 투입되기도 하며, 민간가계의 소비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r국이 모든 교역 대상국s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재화는 식(16)과 같이 CES집계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6) \sum_j XM_{ij}^r + GM_i^r + CM_i^r = \left( \sum_s \delta_i^{ms} M_i^{sr} \right)^{-\frac{1}{\rho_i}} M_i^r$$

$$i = 1, \dots, 11 : r, s = 1, \dots, 3$$

여기서

$XM_{ij}^r$  = r국 j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i

$GM_i^r$  = r국 정부의 수입재i에 대한 정부지출

$CM_i^r$  = r국 민간가계가 소비하는 수입소비재i

$M_i^{sr}$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s국에서 수입되는 수입재i

$\delta_i^{ms}$  =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s국에서 수입되는 수입재i의 분배모수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이루어지는 교역에는 국제운송서비스가 존재하며, 국제운송서비스는 식(17)에 의해 설명된다. 즉, r국에서 s국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운송서비스는 Cobb-Douglas집계함수에 의해 설명된다고 가정한다.

$$(17) \sum_{i,r,s} T_i^{rs} = \Psi^t \prod_{i,r} TD_i^{r_i} \quad i=1, \dots, 11 : r,s=1, \dots, 3$$

여기서

$T_i^{rs}$  = r국에서 s국으로 이루어지는 i상품 수출에 대한 국제운송서비스

$TD_i^r$  = r국의 i상품 수출에 대한 국제운송서비스

$\Psi^t$  = 국제운송서비스 Cobb-Douglas집계함수의 shift parameter

r국에서 s국으로 이루어지는 i상품의 수출함수는 식(18)과 같다. 이 수출함수는 또한 수입국의 수입함수가 된다.

$$(18) E_i^{rs} = \delta_i^{ms} \left[ \frac{PM_i^s (1+t_i^{mr}) (1+P_i^t)}{PE_i^{rs} (1+t_i^{er})} \right]^{ms} M_i^s$$

$$i=1, \dots, 11 : r,s=1, \dots, 3$$

여기서

$E_i^{rs}$  = r국에서 s국으로 이루어지는 i상품의 수출

$M_i^s$  = s국의 i상품의 수입

$PM_i^s$  = s국의 i상품의 수입가격

$PE_i^{rs}$  = r국에서 s국으로 이루어지는 i상품의 수출가격

$t_i^{mr}$  = r국의 i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율

$P_i^t$  = i상품 수출에 대한 국제운송서비스 가격

$t_i^{er}$  = r국의 i상품 수출에 대한 수출세율 또는 보조금율

5) 민간가계의 수입(income) 및 지출(expenditure)

본 모형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후생효과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표적인 민간가계가 모든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수입(income)을 갖게되며 이러한 수입을 재화의 소비를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민간가계의 소비지출은 식(19)와 같이 본원적 생산요소의 수입, 간접세, 중간재에 대한 조세수입,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에 부과되는 조세수입, 민간소비세, 정부지출소비세, 수출세(또는 수출보조금) 및 관세수입의 합계에서 투자수요와 정부지출을 공제한 것과 같게 된다.

$$\begin{aligned}
 (19) \text{EXP}^r &= \sum_f PF_f^r F_f^r && \text{(본원적 생산요소 수입)} \\
 &+ \sum_i t_i^{xr} \left( PD_i^r D_i^r + PE_i^r E_i^r \right) && \text{(간접세)} \\
 &+ \sum_{j,i} t_{ij}^r PX_i^r \alpha_{ji}^r X_j^r && \text{(중간재에 부과되는 세금)} \\
 &+ \sum_{f,i} t_{fi}^{fr} PF_f^r F_{fi}^r && \text{(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세금)} \\
 &+ \sum_i t_i^{cr} PC_i^r C_i^r && \text{(민간소비세)} \\
 &+ \sum_i t_i^{gr} PG_i^r G_i^r && \text{(정부지출세)} \\
 &+ \sum_{i,s} t_i^{ers} PE_i^r M_i^{rs} && \text{(수출세 또는 수출보조금)} \\
 &+ \sum_{i,s} t_{i,s}^{msr} \left[ PM_i^s M_i^{sr} (1 + t_i^{esr}) + PT_i^{sr} \right] && \text{(수입관세)}
 \end{aligned}$$



$$-\sum_i PD_i^r I_i^r \quad (\text{투자수요})$$

$$-\sum_i PG_i^r (1+t_i^{gr}) G_i^r \quad (\text{정부지출수요})$$

여기서

$t_j^{msr}$  = s국에서 r국으로 수입되는 j재화에 대한 수입관세율

$t_i^{tr}$  = r국의 i재화에 대한 운송마진율

#### 6) 가격함수

본 모형에서 결정되는 가격함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r국 i산업의 부가가치 혼합재가격은 식(20)과 같이 CES집계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20) \quad PV_i^r = \frac{1}{\Psi_i^{vr}} \left\{ \sum_f \delta_{fi}^{r \cdot \sigma_{fi}^{vr}} [PF_f^r (1+t_{fi}^r)]^{1-\sigma_{fi}^{vr}} \right\}^{\frac{1}{1-\sigma_i^{vr}}}$$

$$i=1, \dots, 11 ; f=1, 2 ; r=1, \dots, 3$$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j혼합중간재가격은 식(21)과 같이 CES집계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21) \quad PX_{ji}^r = \frac{1}{\Psi_{ji}^r} \left\{ \delta_{ji}^{r \cdot \sigma_{ji}^r} [PM_{ji}^r (1+t_{ji}^r)]^{1-\sigma_{ji}^r} + (1-\delta_{ji}^r)^{\sigma_{ji}^r} [PD_{ji}^r (1+t_{ji}^r)]^{1-\sigma_{ji}^r} \right\}^{\frac{1}{1-\sigma_{ji}^r}}$$

$$i, j = 1, \dots, 11 : r = 1, \dots, 3$$

r국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j수입중간재가격은 식(22)과 같이 CES집계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22) \quad PM_{ji}^r = \frac{1}{\Psi_{jr}} \left\{ \sum_s \delta_{ji}^{\frac{\sigma_{jr}}{1-\sigma_{jr}}} [PM_{ji}^{sr} (1+t_j^{msr})^{1-\sigma_{jr}}] \right\}^{\frac{1}{1-\sigma_{jr}}}$$

$$i, j = 1, \dots, 11 : r, s = 1, \dots, 3$$

r국 i산업의 생산가격은 식(23)과 같이 CES집계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23) \quad PX_i^r = \frac{1}{\Psi_i} \left[ \delta_i^{\frac{tr_i}{1+\sigma_i}} PD_i^{r, 1+\sigma_i} + (1-\delta_i^{\frac{tr_i}{1+\sigma_i}}) PE_i^{r, 1+\sigma_i} \right]^{\frac{1}{1+\sigma_i}}$$

$$i = 1, \dots, 11 : r = 1, \dots, 3$$

r국의 민간가계가 소비하는 i상품의 가격은 식(24)과 같이 CES집계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24) \quad PC_i^r = \left[ \delta_i^{\frac{cr_i}{1-\sigma_i}} PCM_i^{r, 1-\sigma_i} + (1-\delta_i^{\frac{cr_i}{1-\sigma_i}}) PCD_i^{r, 1-\sigma_i} \right]^{\frac{1}{1-\sigma_i}}$$

$$i = 1, \dots, 11 ; r = 1, \dots, 3$$

r국의 정부가 소비하는 i상품의 가격은 식(25)과 같이 CES집계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25) \quad PG_i^r = [ \delta_i^{gr} PGM_r^{1-\sigma_i^{gr}} + (1 - \delta_i^{gr}) PGD_i^{r, 1-\sigma_i^{gr}} ]^{\frac{1}{1-\sigma_i^{gr}}}$$

$$i = 1, \dots, 11 : r = 1, \dots, 3$$

s국의 i혼합재 수입가격은 식(26)과 같이 CES집계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26) \quad PM_i^s = \frac{ \left\{ \sum_r \delta_i^{ms} [PE_i^{rs} (1 + t_{i,ers})]^{1-\sigma_i^{ms}} \right\}^{\frac{1}{1-\sigma_i^{ms}}} }{ (1 + t_{i,mr}) (1 + t_{i,tr}) }$$

$$i = 1, \dots, 11 : r, s = 1, \dots, 3$$

#### 7) 시장균형조건

본 모형에는 4개의 시장균형조건이 있다. 먼저, 국내생산품의 균형조건은 식(27)과 같다.

$$(27) \quad D_i^r = \sum_j XD_{ij}^r + CD_i^r + GD_i^r + I_i^r$$

$$i = 1, \dots, 11 ; r = 1, \dots, 3$$

여기서

$$D_i^r = r\text{국의 } i\text{상품의 국내판매}$$

$$XD_{ij}^r = r\text{국의 } i\text{상품 중 } j\text{산업에 중간재로 판매된 것}$$

$$CD_i^r = r\text{국의 } i\text{상품의 국내소비판매}$$

$$GD_i^r = r\text{국의 } i\text{상품의 국내정부소비지출}$$

$I_i^r$  = r국의 i상품의 투자수요

교역의 균형조건 중 수출의 균형조건은 식(28)과 같으며, 수입의 균형조건은 식(29)와 같다.

$$(28) \quad E_i^r = \sum_s M_i^{rs} + TD_i^r \quad i=1, \dots, 11 : r=1, \dots, 3$$

$$(29) \quad M_i^r = \sum_j XM_{ij}^r + CM_i^r + GM_i^r \quad i=1, \dots, 11 : r=1, \dots, 3$$

마지막으로 본원적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균형조건은 식(30)과 같다.

$$(30) \quad FS_f^r = \sum_i F_{fi}^r \quad f=\text{노동, 자본} ; r=1, \dots, 3$$

여기서

$FS_f^r$  = r국의 본원적 생산요소 f(노동, 자본)의 공급

$F_{fi}^r$  = r국의 i산업의 본원적 생산요소 f(노동, 자본)의 수요

## 2. 한국·일본 경제의 산업분류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산업을 각각 11개로 재분류하였다. 수산업을 가능한 한 세분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2001년에 발표한 199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통상산업조사회가 1999년 발표한 199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산업연관표는 기본부문이 402개이며, 이중 9개의 수산관련 산업이 있으며 특히 내수면어획과 내수면 양식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산업연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표의 경우, 내수면어획과 내수면 양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어 한국과 통일하기 위해 8개 산업으로 세분하였다.

즉 <표 6-1>에서와 같이 수산부문 중 수산어획부문을 해면어획, 해면양식, 내수면어획·양식으로 세분하고, 수산가공부문을 어육 및 어묵, 수산통조림, 수산냉동품, 수산저장품, 기타수산식품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수산부문을 더 이상 세분할 수 없었던 것은 산업연관표상 수산부문이 더 이상 세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산업연관표의 기준년도를 한국 산업연관표의 기준년도와 맞추기 위해 RAS방법을 통해 조정하였다.

**<표 6-1> 한·일 산업분류표**

11개 산업분류	한국 402개 부문	일본	
		519개 행	403개 열
1. 농축임산물(Agriculture, livestock & forestry)	1-26	1-43	1-26
2. 해면어획(Sea fishing)	27	44-45	27-29
3. 해면양식(Fish farming & marine products)	29	46	30
4. 내수면어획·양식(Fresh water fishing & culture)	28, 30	47	31-32
5. 어육 및 어묵(Fish fillets & fish cake products)	52	72-73	48-49
6. 수산통조림(Canned seafoods)	53	71	47
7. 수산냉동품(Frozen fish & seafoods)	54	69	45
8. 수산저장품(Salted, dried & smoked seafoods)	55	70	46
9. 기타수산식품(Misc. processed seafoods)	56	74	50
10. 기타 제조업(Misc. manufacturing)	31-51, 57-305	48-68, 75-385	33-44, 51-281
11. 서비스업(Services)	306-402	386-519	282-403

자료: 한국, 1998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0.

일본, 平成7年 (1995년) 산업연관표, (재)통상산업조사회, 1999.

### 3. 한·일 FTA체결의 수산부문 경제효과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국내생산, 부가가치, 수입, 수출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표 6-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sup>59)</sup> 수산부문의 생산은 1.56%(수산통조림)에서 6.21%(내수면어획·양식)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부문 전체 수입에서 약 65.3%를 차지하고 있는 해면어획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행세율이 일본의 실행세율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해면어획의 수입은 33.58% 증가하여 수출의 증가율인 12.45%를 거의 3배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3.67%가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2.53% 증가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표 6-2> 한·일 FTA 체결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

구 분	국내생산	부가가치
1. 농축임산물	0.58	0.16
2. 해면어획	3.67	2.53
3. 해면양식	2.38	1.89
4. 내수면어획,양식	6.21	4.25
5. 어육 및 어묵	4.54	3.46
6. 수산통조림	1.56	0.98
7. 수산냉동품	3.38	2.23
8. 수산저장품	5.12	3.11
9. 기타수산식품	3.97	2.43
10. 기타제조업	-0.13	-0.12
11. 서비스업	-0.09	-0.18

59) 이러한 결과는 최세균(2002)에서도 확인됨.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두 번째로 수산부문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15.1%)이 높은 어육 및 어묵의 경우 수입은 11.95% 증가하고 수출은 6.34% 증가하며, 생산은 4.54%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3.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저장품(수입비중 약 6.6% 차지)의 경우 수입은 28.71% 증가하고, 수출은 16.65% 증가하며, 생산은 5.12% 증가하여 부가가치가 3.1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저장품의 경우 무역수지는 4백만 달러의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부문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5.7%)이 비슷한 기타수산식품의 경우 수입은 25.32%, 수출은 13.32%, 생산은 3.97%, 부가가치는 2.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한·일 FTA 체결의 수출입 효과(%)

구 분	수입	수출
1. 농축임산물	24.54	7.67
2. 해면어획	33.58	12.45
3. 해면양식	5.17	3.23
4. 내수면어획,양식	74.70	41.79
5. 어육 및 어묵	11.95	6.34
6. 수산통조림	4.53	4.42
7. 수산냉동품	24.17	11.77
8. 수산저장품	28.71	16.65
9. 기타수산식품	25.32	13.32
10. 기타제조업	14.77	2.76
11. 서비스업	0.66	-0.70

그러나 국내생산(6.21%)과 부가가치(4.25%)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수면어획·양식의 경우, 수입과 수출이 각각 74.7%, 41.79%로 매우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냉동품은 전체 수산부문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불과하지만 생산은 3.38%, 부가가치는 2.23%로 비교적 적게 증가한 반면, 수입이 24.17%, 수출이 11.7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면양식과 수산통조림은 수입과 수출의 변화가 5% 미만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준년도의 실행관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무역수지 효과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일본보다 높아 한·일 FTA체결의 경우 수입의 증가가 수출의 증가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일 FTA의 체결은 수산부문과는 대조적으로 수산가공을 제외한 기타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과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부문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확인할 수 있다.<sup>60)</sup>

그러나 지금까지 기술한 한·일 FTA 체결의 정태효과(static effects) 이외에 FTA체결의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증가되고 생산규모가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및 경쟁(competition)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한 동태효과(dynamic effects)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FTA체결의 동태효과가 정태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sup>61)</sup>

그러나 한·일 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미치는 동태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가장 흔히 그리고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는

---

60) 최세균(2002) 참조.

61) 고종환(2000, 2001), 정인교(2000, 2002) 참조.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있으나 수산업의 경우 한·일 FTA 체결이 <표 6-1>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산업별 총요소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sup>62)</sup>

---

62) 동태효과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Recursively dynamic CGE모형 또는 Intertemporal dynamic CGE모형이 필요함.

## 제2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한·미 FTA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산업분류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미국의 산업연관표와 CGE모형 구축에 필요한 다른 많은 자료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GTAP모형과 GTAP database version 5를 이용하였다.<sup>63)</sup> 이 GTAP database는 미국 Purdue대학교에 있는 GTAP Center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CGE모형전문가들의 협력하에 구축된 자료이며, 전세계 65개국의 57개 부문으로 구성된 산업연관표와 개별국가간의 수출입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GTAP database에는 수산관련분야가 수산어획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수산가공분야는 기타식품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한·미FTA의 파급효과를 세분하여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58개 산업을 농축임업, 수산어획, 기타식품,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등 5개 산업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산관련부문은 수산어획과 수산가공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식품뿐이다. 이 자료는 수산업에 관련된 정책효과분석에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자료이지만 한·미 FTA 체결의 파급효과분석에 이 보다 더 나은 자료가 없어 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하는데 기존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63) GTAP모형은 World Bank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도 통상정책 등의 경제정책 효과분석에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GTAP모형의 구조에 관해서는 Hertel (1997) 참조하고, GTAP DB version 5에 대해서는 Dimaranan and McDougall(2002) 참조할 것.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또한 한·미 FTA체결이 체결되는 경우,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와는 달리 정태효과 이외에 동태효과도 아울러 분석하였다.<sup>64)</sup> 동태분석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동태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정태모형에 총생산요소생산성(TFP)이 1%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동태효과를 분석하였다.<sup>65)</sup>

<표 6-4>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체결이 체결되는 경우, 한국은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어획과 수산가공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식품의 경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내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제조업에서만 미국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수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더 세분하면 산업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표 6-4>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국내생산(정태효과)		국내생산(동태효과)	
	한국	미국	한국	미국
1. 농축임산물	-0.05	0.08	0.44	0.30
2. 수산어획	-0.05	0.08	0.68	0.80
3. 기타식품	-0.47	0.83	0.36	1.60
4. 기타제조업	0.04	-0.11	0.46	0.41
5. 서비스업	-0.01	0.00	1.31	1.44

자료 : GTAP모형과 GTAP DB version 5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64) 한·일 FTA의 정태효과와 한·미 FTA의 정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형구조의 차이, 사용된 자료 및 산업분류 등의 차이에 기인함.

65) 물론 이 가정도 자의적인 것이며, FTA체결 결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가, 투자증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동태효과 분석을 위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함.

한국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총생산성증가를 통한 동태효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의 모든 산업의 국내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미 FTA체결이 체결되는 경우, 양국의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표 6-5>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산어획과 수산가공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식품의 경우 정태효과와 동태효과에 있어 한국의 수입이 미국의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5>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수입(정태효과)		수입(동태효과)	
	한국	미국	한국	미국
1. 농축임산물	0.68	0.77	0.50	0.28
2. 수산어획	2.17	1.74	2.65	1.91
3. 기타식품	6.79	1.29	7.43	1.41
4. 기타제조업	0.26	0.42	0.80	1.35
5. 서비스업	0.26	0.16	3.39	3.02

자료 : GTAP모형과 GTAP DB version 5를 이용하여 계산.

수출의 경우, 정태효과를 보면 <표 6-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의 수산어획과 수산가공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식품의 수출이 한국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효과와 동태효과에 있어 한국 수산어획의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 수산어획의 수출보다는 더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수산가공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식품의 수출은 미국보다 훨씬 적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6>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수출(정태효과)		수출(동태효과)	
	한국	미국	한국	미국
1. 농축임산물	0.30	1.41	0.86	1.97
2. 수산어획	1.00	1.65	-2.01	-2.11
3. 기타식품	0.60	12.22	1.36	12.19
4. 기타제조업	0.29	0.04	-0.09	-0.37
5. 서비스업	-0.37	0.34	-3.49	-4.47

자료 : GTAP모형과 GTAP DB version 5를 이용하여 계산.

<표 6-7>을 통해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태효과와 동태효과 모두 한국은 수산어획에서 25만 달러의 적자가 기대되며, 미국은 1백만 24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한국과 미국간에 발생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제3국(the rest of the world)과의 교역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표 6-7>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백만 US\$)

구 분	무역수지(정태효과)		무역수지(동태효과)	
	한국	미국	한국	미국
1. 농축임산물	-37.29	28.48	-24.35	63.81
2. 수산어획	-0.25	-1.24	-8.05	-1.55
3. 기타식품	-118.67	194.97	-121.38	193.51
4. 기타제조업	165.73	-306.47	-929.06	-1448.52
5. 서비스업	-130.36	-46.81	-1462.94	-718.14

자료 : GTAP모형과 GTAP DB version 5를 이용하여 계산.

한편 수산가공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식품의 경우 한국은 약 1억 1천 9백만 달러의 적자가 전망되나, 미국의 경우 약 1억 9천 5백만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중 수산가공분야의 무역수지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또한 동태효과의 경우 우리나라 수산어획과 기타식품분야의 무역수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3절 한·일 FTA 및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

#### 1. 분석방법(1국가 CGE 모형의 구조)

##### 1) 생산함수

일국가 CGE모형에서는 불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의 법칙을 가정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며, 식(31)과 같다. 생산요소로는 노동과 자본 뿐만 아니라 중간재도 포함된다. 중간재를 생산요소로 포함시킴으로써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 노동의 질과 자본의 종류는 구분하지 않는다.

$$(31) \quad X_i = a_i^x \prod_j X_{ji}^{\alpha_{ji}} L_i^{\alpha_{li}} K_i^{\alpha_{ki}} \quad \forall i$$

$$\text{with } \sum_j \alpha_{ji} + \alpha_{li} + \alpha_{ki} = 1$$

여기서  $X_{ji}$  : i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 j

$K_i$  : i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자본

$L_i$  : i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

$X_i$  : i상품의 생산량

$a_i^x$  : i산업의 shift parameter

$\alpha_{ji}, \alpha_{li}, \alpha_{ki}$  : 중간재, 노동 및 자본의 생산탄력도

2) 생산요소의 수요함수

방정식(32)~(34)는 중간재,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수요함수이다. 생산량에 각각의 투입계수를 곱하면 생산요소의 수요가 결정된다.

$$(32) \quad X_{ji} = A_{ji} X_i \quad \forall i, j$$

$$(33) \quad L_i = A_{li} X_i \quad \forall i$$

$$(34) \quad K_i = A_{ki} X_i \quad \forall i$$

여기서  $A_{ji}$  :  $i$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j$ 의 투입계수

$A_{ki}$  :  $i$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본의 투입계수

$A_{li}$  :  $i$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투입계수

여기서 투입계수는 Leontief의 고정투입계수가 아니고, 생산요소가격(factor prices)과 산출물가격(output prices)에 따라 변하는 가변투입계수(variable input coefficients)이다. 즉 생산요소의 수요는 산출량과 요소가격 및 산출물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3) 가변투입계수

가변투입계수는 단위비용함수(unit cost function)를 생산요소가격으로 편미분함으로써 얻어진다. 생산함수 (31)에 대한 단위생산함수는 식(35)와 같다.

$$(35) \quad P_i^x = b_i^x \prod_j P_{ji}^{x_j \alpha_j} P_i^{l \alpha_l} P_i^{k \alpha_k} \quad \forall i$$

$$\text{with } b_i^x = a_i^{x-1} \prod_j a_{ji}^{-\alpha_j} a_{li}^{-\alpha_l} a_{ki}^{-\alpha_k}$$



여기서  $P_{ix}$  : i상품의 단위비용

$P_{il}$  : i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가격(임금)

$P_{jix}$  : i상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j의 가격

$P_{ik}$  : i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본가격

산업연관표에 간접세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함수(31)에 간접세와 보조금이 생산요소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단위비용함수(35)에 이러한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접세와 보조금을 고려한 단위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36) \quad P_i^y = [1 - (t_i^x - t_i^s)] P_i^x$$

여기서  $t_{ix}$  : 간접세율

$t_{is}$  : 보조금율

단위비용함수(36)을 요소가격으로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가변투입계수가 도출된다.

$$(37) \quad A_{ji} = \frac{\partial P_i^y}{\partial P_j^x} = \alpha_{ji} \frac{P_i^y}{P_j^x} \quad \forall i$$

$$(38) \quad A_{li} = \frac{\partial P_i^y}{\partial P_l^l} = \alpha_{li} \frac{P_i^y}{P_l^l} = \alpha_{li} \frac{P_i^y}{p_{ldist_i} P^l} \quad \forall i$$

$$(39) \quad A_{ki} = \frac{\partial P_i^y}{\partial P_i^k} = \alpha_{ki} \frac{P_i^y}{P_i^k} = \alpha_{ki} \frac{P_i^y}{p_{kdist_i} P^k} \quad \forall i$$

여기서  $PI$  : 산업전체의 평균임금

$pldisti$  :  $i$ 산업의 임금 비교계수

$Pk$  : 산업전체의 평균자본가격

$pkdisti$  :  $i$ 산업의 자본가격 비교계수

개별 생산요소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산요소라도 산업별 보수가 다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별산업에 있어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와 산업전체 평균요소 보수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생산요소의 비교계수( $pldisti$ ,  $pkdisti$ )를 사용한다. 이 생산요소의 비교계수는 앞에서 언급한 미시적 구조주의(micro structuralist)를 반영한다. 생산요소의 비교계수는 생산요소시장에 있어서 개별산업간에 생산요소의 유동성에 제약이 있거나 생산요소에 부과되는 세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낸다<sup>66)</sup>. 모형안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산업전체의 평균요소보수이며, 산업별 요소보수는 생산요소의 비교계수에 의해 산업전체의 평균 요소보수로부터 구해진다.

#### 4) 소득 및 저축

방정식(40)~(52)는 요소소득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어떻게 기업, 정부를 거쳐 궁극적으로 가계로 배분되는가를 보여준다. 이 방정식들은 SAM (사회계정행렬)에 나타나 있는 제도적 경제주체들간의 소득배분에 관한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방정식 (40)과 (41)에서는 생산요소의 소득이 계산되며, 이 요소소득이 다시 방정식(42)와 (43)에서 제도적 소득(institutional income)으로 배분된다. 즉, 노동

66) 이에 대해서는 Devarajan, Lewis and Robinson(1991)과 Ko, Brockmeier and Schmitz(1993, 1994a, 1994b) 참조.

가계의 소득( $Y^l$ )은 노동의 요소소득( $Y^l_f$ )에서 사회보장세( $TAX^l$ )를 공제하여 계산되고 (식(42)), 자본가계의 소득( $Y^k$ )은 자본의 요소소득( $Y^k_f$ )에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trans^u$ )과 국내통화로 표시된 기업의 순요소소득( $y^{uf} * er$ )에서 기업의 사내유보( $SAV^u$ )와 감가상각( $DEP$ ) 및 법인세 ( $TAX^u$ )를 공제하여 계산된다(식(44)). 여기서 말하는 노동가계와 자본가계는 노동과 자본의 요소소득을 민간가계의 소득으로 배분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 필요한 것이다. 방정식(44)는 민간가계의 소득( $Y^h$ )이 노동가계의 소득과 자본가계의 소득에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trans^h$ )과 국내통화로 표시된 순해외송금( $remit * er$ )의 합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방정식(45)에서는 정부의 수입( $Y^g$ )이 정의되는데, 정부의 수입은 관세( $TARIF$ ), 간접세( $TAX^{nd}$ ), 사회보장세( $TAX^l$ ), 민간소비세( $TAX^h$ ), 법인세( $TAX^u$ )와 국내통화로 표시된 정부의 순해외이전지출( $trans^f * er$ )의 합계에서 간접세( $SUB^{nd}$ )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방정식 (46)~(52)에서 결정된다. 방정식 (54)와 (55)는 각각 기업의 저축( $SAV^u$ )과 가계저축( $SAV^h$ )을 결정하며, 정부의 저축( $SAV^g$ )은 방정식(56)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저축에 감가상각( $DEP$ )과 국내통화로 표시된 순해외저축( $sav^f * er$ )이 더해지면 국민총저축( $SAVINGS$ )이 된다(식 (58)).

$$(40) \quad Y^l_f = \sum_i p^l dist_i P^l L_i$$

$$(41) \quad Y^k_f = \sum_i p^k dist_i P^k K_i$$

$$(42) \quad Y^l = Y^l_f - TAX^l$$

$$( \quad \quad \quad 4 \quad \quad \quad 3 \quad \quad \quad )$$

$$Y^k = Y^k_f + trans^u + y^{uf} * er - SAV^u - DEP - TAX^u$$

$$(44) Y^h = Y^l + Y^k + trans^h + remit * er$$

$$(45) Y^g = TARIF + TAX^{nd} - SUB^{nd} + TAX^l + TAX^u + TAX^h + trans^f * er$$

$$(46) TARIF = \sum_i t_i^m pw_i^m M_i er$$

$$(47) TAX^{nd} = \sum_i t_i^x P_i^x X_i$$

$$(48) SUB^{nd} = \sum_i t_i^s P_i^s X_i$$

$$(49) TAX^l = \sum_i t_i^l P_i^l L_i$$

$$(50) TAX^u = (Y_f^k - DEP)$$

$$(51) TAX^h = t^h Y^h$$

$$(52) DEP = \sum_i depr_i P_i^k K_i$$

$$(53) SUB^e = \sum_i t_i^e pw_i^e E_i er$$

$$(54) SAV^u = sav^u (Y_f^k - DEP - TAX^u)$$

$$(55) SAV^h = mps Y^h (1 - t^h)$$

$$(56) SAV^g = Y^g - \sum_i P_i^g G_i - SUB^e - trans^h - trans^u$$

$$( SAVINGS = SAV^h + SAV^g + SAV^u + DEP + sav^f * er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u>내생변수</u>		<u>외생변수</u>	
여기서 $Y_f^l$	: 노동의 요소소득	$er$	: 환율
$Y_f^k$	: 자본의 요소소득	$remit$	: 해외송금
$Y^l$	: 노동가계의 소득	$trans^u$	: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
$Y^k$	: 자본가계의 소득	$trans^h$	: 가계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
$Y^h$	: 민간가계의 소득	$trans^f$	: 정부의 순해외이전지출
$Y^g$	: 정부의 수입	$t_i^m$	: i재화의 관세율
$TAX^l$	: 사회보장세	$t_i^x$	: i재화의 간접세율
$TAX^{nd}$	: 간접세	$t_i^s$	: i재화의 간접보조금율
$TAX^h$	: 민간소비세	$t_i^l$	: i산업의 사회보장세율
$TAX^u$	: 법인세	$t^h$	: 가계의 민간소비세율
$TARIF$	: 관세	$pw_i^m$	: i수입품의 세계시장가격
$SUB^{nd}$	: 간접보조금	$pw_i^e$	: i수출품의 세계시장가격
$SUB^e$	: 수출보조금	$depr_i$	: i산업의 감가상각율
$SAV^h$	: 가계저축	$sav^u$	: 기업의 저축율
$SAV^u$	: 기업의 저축	$mps$	: 한계저축성향
$SAV^g$	: 정부의 저축	$sav^f$	: 순해외저축
$DEP$	: 감가상각		
$SAVINGS$	: 국민총저축		

## 5) 최종수요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는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 수출 및 수입<sup>67)</sup>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모형에서는 최종수요를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과 정부를 합한 고정자본형성, 재고, 수출 및 수입으로 나눈다.

먼저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재고를 설명하고, 수출과 수입은 다음 항에서 설명한다.

방정식 (58)~(65)는 최종수요를 결정한다. 방정식 (58)은 Cobb-Douglas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민간소비지출방정식이며, 이는 상품가격과 소득의 1차 함수이다.<sup>68)</sup>

상품별 정부소비지출( $G_i$ )을 결정하는 방정식 (59)는 실질총정부소비지출( $gtot$ )에 대해 일정한 비중 ( $\beta_{ig}$ )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상품가격은 정부소비지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방정식 (60)과 (61)에서 총재고( $IV$ )는 총생산과 일정한 관계( $ivr$ )를 갖고 있으며, 산업별 재고( $IV_i$ )는 총재고중 일정한 비중( $\beta_{iiv}$ )를 차지한다.

총명목고정자본형성( $ID$ )은 총명목투자( $INVEST$ )에서 총명목재고를 뺀 것과 같다 (식 (62)).

방정식 (63)은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산업별 실질투자액(real investment by sector of destination :  $DK_i$ )를 결정한다. 방정식 (64)에서는 총실질순투자가 집계된다. 방정식 (65)는 자본구성행렬(capital composition matrix:  $b_{ij}$ )<sup>69)</sup>을 이용하여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산업별투자( $DK_i$ )를 최종수요를 구성하는 산업별 고정자본형성( $ID_i$ )으로 변환시킨다. 본 CGE모형은 정태모형이므로 자본구성행렬

67) 수입은 공제되는 부문임.

68) 이 민간소비방정식은 최소생활수준이 0인 경우의 선형지출체계(linear expenditure system)에 해당함. Stone(1954)을 참조.

69) 자본구성행렬에 대해서는 Ballard, Fullerton, Shoven and Whalley(1985) 참조.

은 산업별 자본구성에 관한 정보만 제공해 줄뿐이다.

또한  $\sum_i kish_i = 1$  ;  $\sum_j b_{ij} = 1 \quad \forall_j$ 이므로  $ID = \sum_i P_i^k DK_i = \sum_i P_i^q ID_i$ 이다.

식 (66)에서는 개별산업에 투자된 자본의 가격( $P_i^k$ )이 계산된다.

$P_i^k$ 는 산업별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산업별 투자자본이 이질적 (heterogeneous)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sum_{j=1} b_{ji} = 1 \quad \forall_i$ 이므로  $P_i^k$ 는 ~ i산업에 투자된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드는 평균가격이 된다.

본 CGE모형은 정태모형이므로 산업전체의 자본스톡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본 모형에서 저축과 투자수요가 내생적으로 결정되지만, 투자가 당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고정자본형성은 단지 최종수요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8) \quad C_i = \frac{\beta_i^h (1 - mps) Y^h (1 - t^h)}{P_i^q} \quad \forall i$$

$$(59) \quad G_i = \beta_i^g gtot \quad \forall i$$

$$(60) \quad IV = ivr \sum_i X_i$$

$$(61) \quad IV_i = \beta_i^{iv} IV \quad \forall i$$

$$(62) \quad ID = INVEST - \sum_i P_i^q IV_i$$

$$(63) \quad DK_i = \frac{kish_i ID}{P_i^k} \quad \text{with } \sum_i kish_i = 1$$

$$(64) \quad INVTOT = \sum_i DK_i$$

$$(65) ID_i = \sum_j b_{ij} DK_j$$

$$(66) P_i^k = \sum_j P_j^q b_{ji}$$

내생변수		외생변수	
$C_i$	: i상품의 민간소비지출	$\beta_i^h$	: i상품의 민간소비가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G_i$	: i상품의 정부소비지출	$\beta_i^g$	: i상품의 정부소비가 총정부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IV$	: 총재고	$ivr$	: 총재고가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IV_i$	: i산업의 재고	$\beta_i^{iv}$	: i산업의 재고가 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ID$	: 총명목 고정자본형성	$kish_i$	: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산업별 명목투자가 총명목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ID_i$	: i산업의 명목 고정자본형성	$b_{ij}$	: 자본구성행렬
$DK_i$	: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산업별투자		
$INVTOT$	: $DK_i$ 의 합계		
$P_i^q$	: 복합재화( $Q_i$ )의 가격		
$P_i^k$	: i산업에 있어서 자본가격		

#### 6) 대외무역

우리나라는 개방소국가(a small open country)라는 가정이 대외무역에 적용된다. 소비자는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의 극대화를, 생산자는 기술조건하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은 소비자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산재와 수입재를 혼합해서 소비하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출물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수출)에 나누어 공급한다는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산자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산출물( $X_i$ )을 국내시장( $D_i$ )과 해외시장( $E_i$ )에 어떠한 배합으로 공급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CET변환(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함수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67) \quad X_i = a_i^t [\gamma_i \cdot E_i^{\rho_i^t} + (1 - \gamma_i) D_i^{\rho_i^t}]^{\frac{1}{\rho_i^t}} \quad \forall i$$

$$\text{with } \rho_i^t = \frac{1}{\sigma_i^t} + 1, \quad \rho_i^t > 1, \quad \sigma_i^t > 0$$

여기서

$E$	$i$ 상품의 수출	$\hat{a}$	$i$ 상품의 shift parameter
$D$	$i$ 산업의 국산재에 대한 국내수요 <sup>70)</sup>	$\hat{b}$	$i$ 산업의 대체모수 (substitution parameter)
$\gamma$	$i$ 산업의 분배모수 (distribution parameter)	$\hat{c}$	$i$ 산업의 대체탄력도

이 CET변환함수<sup>71)</sup>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자가 산출물을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 공급하는데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대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방정식 (68)은 제1차 최적화조건<sup>72)</sup>에서 도출된다.

$$(68) \quad E_i = \left[ \left( \frac{P_i^e}{P_i^d} \right) \left( \frac{1 - \gamma_i^t}{\gamma_i^t} \right) \right]^{\frac{1}{\rho_i^t - 1}} D_i \quad \forall i$$

여기서  $P_i^e$ 는  $i$  상품의 수출가격이며  $P_i^d$ 는 국산재( $D_i$ )의 내수가격이다. 따라서 수출은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의 상대가격, 수출과 내수간의 대체탄력성, 분배

70) 국산재에 대한 국내수요 ( $D_i$ ) 는 국내생산물중 중간수요,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및 재고로 구성된다.

71) 이 CET함수는 생산가능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산출량을 수출과 내수용으로 공급하는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임.

72) 제1차 최적화조건은  $\frac{P_i^e}{P_i^d} = \frac{MP_i^e}{MP_i^d}$  이다. 여기서  $MP_i^e$ 는 수출의 한계생산물이며  $MP_i^d$ 는 국산재의 한계생산물임.

모수 및 국산재의 내수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시장에서의 수출가격( $P_i^e$ )은 세계시장에서의 수출가격, 수출보조금을 및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69) \quad P_i^e = p w_i^e (1 + t_i^e) er \quad \forall i$$

여기서

$P_i^e$  : 국내시장에서의  $i$ 상품 수출가격

$p w_i^e$  : 세계시장에서의  $i$ 상품가격

$t_i^e$  : 수출 상품  $i$ 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er$  : 환율

수출의 경우처럼 수입재( $M_i$ )와 국산재( $D_i$ )를 소비할 때 CES효용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소비자의 후생수준은 수입재와 국산재로 구성된 혼합재 (composite commodity( $Q_i$ ))를 소비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가 수입재와 국산재를 소비할 때 수입품과 국산재의 대체관계는 다음과 같은 CES집적함수(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aggregation function)로 표시한다:

$$(70) \quad Q_i = a_i^c [\delta_i M_i^{-\rho_i^c} + (1 - \delta_i) D_i^{-\rho_i^c}]^{-\frac{1}{\rho_i^c}} \quad \forall i$$

$$with \quad \rho_i^c = \frac{1}{\sigma_i^c} - 1, \quad \rho_i^c > -1, \quad \sigma_i^c > 0$$

내생변수

외생변수

여기서  $Q_i$  :  $i$ 산업의 혼합재화

$a_i^c$  : CES함수의 shift parameter

$M_i$  :  $i$ 재화의 수입

$\rho_i^c$  :  $i$ 산업의 대체모수

$\delta_i^c$  :  $i$ 산업의 분배모수

oic : i산업의 대체탄력도

이 CES집적함수는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있어서 수입재와 국산재의 대체관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산업의 혼합재(Qi), 국산재(Di) 및 수입재(Mi)는 각각 서로 다른 가격, Piq, Pid, Pim으로 평가된다.

수입함수도 수출함수의 경우처럼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있어서 제1차 최적화 조건<sup>73)</sup>에 의해 결정되며 식 (71)과 같다.

$$(71) \quad M_i = \left[ \left( \frac{P_i^d}{P_i^m} \right) \left( \frac{\delta_i}{1-\delta_i} \right) \right]^{\frac{1}{1+\rho_i}} D_i \quad \forall i$$

여기서 Pim는 i 상품의 수입가격이다. 따라서 수입은 수입가격과 내수가격의 상대가격, 수입과 내수간의 대체탄력성, 분배모수 및 국산재의 내수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시장에서의 수입가격(Pim)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72) \quad P_i^m = pw_i^m (1 + t_i^m) \cdot er$$

여기서

$P_i^m$  : 국내시장에서의 i상품 수입가격

$pw_i^m$  : 세계시장에서의 i상품가격

$t_i^m$  : 수입품 i에 대한 관세율

방정식 (73)은 수입재와 국산재로 구성된 혼합재(Qi)의 가격을 나타낸다.

73) 이 최적화조건은

$$\frac{P_i^m}{P_i^d} = \frac{MP_i^m}{MP_i^d} \text{ 임. 여기서 } MP_i^m = \frac{\delta Q_i}{\delta M_i} \text{ 이고, } MP_i^d = \frac{\delta Q_i}{\delta D_i} \text{ 임.}$$

$$(73) P_i^q = \frac{P_i^m M_i + P_i^d D_i}{Q_i}$$

이 식은 식(71)의 동질성(homogeneity)을 반영하고 있다. 본 모형에서와 같이 수출재와 국산재간의 관계가 불완전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역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화간의 대체관계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대체관계를 통해 국내가격체계가 세계시장가격의 영향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계시장가격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7) 시장균형조건

방정식(74)~(79)은 모형이 충족시켜야 하는 모형체계의 균형조건이다. 본 모형은 모든 내생변수가 함께 결정되는 일반균형체계이다. 식 (74)는 산업별 재화시장(74)의 균형조건이다. 즉, 재화의 총공급과 총수요가 같아야 한다. 식 (75)는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이며, 식(76)은 자본시장의 균형조건이다. 노동과 자본의 공급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조건은 산업별 생산요소수요의 합계가 일정하게 주어진 생산요소공급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요소시장의 균형변수는 생산요소의 평균가격 ( $P_i^l, P_i^k$ ), 즉 임금과 자본가격이다. 산업간 자본스톡이 조정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장기균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산업의 평균 임금과 자본가격은 각각 동일하게 된다.<sup>75)</sup>

74) 국산재( $D_i$ )와 수입재( $M_i$ )가 혼합된 재화시장(product market)을 말함.

75) 이와는 반대로 자본스톡이 조정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단기균형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균형조건은 필요치 않음. Robinson, Kilkenny and Hanson(1990) 참조.

$$(74) \quad Q_i = \sum_j X_{ij} + C_i + G_i + ID_i + IV_i$$

$$(75) \quad \sum_i L_i = I^s$$

$$(76) \quad \sum_i K_i = k^s$$

$$(77) \quad Y^g = \sum_{j=1}^J P_j^q + G_i + SAV^g + SUB^e + trans^h + trans^u$$

$$(78) \quad \sum_i pw^m M_i = \sum_i pw_i^e E_i + y^{uf} + remit + trans^f + sav^f$$

$$(79) \quad SAVINGS = INVEST$$

소득방정식과 지출방정식에는 주요한 3가지 거시적 균형조건 즉, 저축-투자균형식(식(79)), 정부수입-지출균형식(식(77)) 및 국제수지균형식(식(78))이 포함된다. 본 모형이 Walras법칙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 3가지 거시적 균형조건으로 인해 민간저축 + 정부저축 + 순해외저축 = 총투자가 된다. 식(79)는 총저축은 총투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축이 투자로 바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는 모형에서는 총투자는 총저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설명은 '신고전학파의 마무리(neoclassical closure)'라고 한다.<sup>76)</sup> 본 모형에서는 Walras법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의 균형조건인 식(79)를 모형에서 제외시킨다.

76) 이러한 신고전학파의 마무리 외에도,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면서 모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Sen(1963), Rattso(1982), Detwatiriposto and Michel(1987), Robinson(1989) 참조.

## 2. 한·일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

앞에서 설명한 一국가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표 6-8>에서와 같이 2001년도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금액 기준으로 상위 20개 품목에 한정하였다.

&lt;표 6-8&gt; 대 일본 20대 주요 수입수산물 및 한국의 관세율(%)

순위	HS			품목	실행관세
1	0302	69	1000	명태(신선,냉장)	20
2	0302	69	3000	갈치(신선,냉장)	20
3	0301	99	4000	돔(활어)	65
4	0303	79	9099	기타어류(냉동)	10
5	0303	79	8000	꽂치(학꽂치포함(냉동))	40
6	0304	20	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10
7	0304	20	5000	참다랭이피레트(냉동)	10
8	0303	80	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10
9	1504	20	0000	어류의유지,분획물(간유제외)	3
10	0301	99	7000	떡장어(활어)	10
11	0301	99	9050	농어(활어)	65
12	0303	79	1000	명태(냉동)	30
13	0307	91	1200	전복(산것,신선,냉장)	20
14	0303	49	2000	참다랭이(냉동)	10
15	0303	79	9060	임연수어(냉동)	10
16	0305	59	2000	멸치(건조)	20
17	0303	79	3000	갈치(냉동)	10
18	0302	69	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20
19	0307	59	1010	문어(냉동)	20
20	0306	24	1090	기타게(신선,냉장)	20

주 : 2001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금액 기준으로 상위 20개 품목을 정리한 것임.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및 2001년도 한국 관세율표 기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이는 모든 수산물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위 20개 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수입의 약 90%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 다루는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는 <표 6-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20대 수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태효과를 의미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9>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순위	HS			품목	생산	부가 가치	수입	수출
1	0302	69	1000	명태(신선,냉장)	-5.1	-6.4	17.4	0.0
2	0302	69	3000	갈치(신선,냉장)	-5.3	-9.2	16.9	1.3
3	0301	99	4000	돔(활어)	-32.1	-39.2	90.9	1.5
4	0303	79	9099	기타어류(냉동)	-2.0	-3.1	13.0	10.6
5	0303	79	8000	꽂치(학꽂치포함(냉동))	-29.7	-29.0	73.5	4.6
6	0304	20	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2.9	-3.1	4.8	0.9
7	0304	20	5000	참다랭이피레트(냉동)	-2.9	-2.9	4.8	0.9
8	0303	80	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3.5	-2.6	8.1	1.1
9	1504	20	0000	어류의유지,분획물(간유제외)	-1.1	-0.9	2.6	0.4
10	0301	99	7000	떡장어(활어)	-1.8	-2.2	12.3	3.1
11	0301	99	9050	농어(활어)	-37.6	-37.6	88.4	5.3
12	0303	79	1000	명태(냉동)	-19.6	-18.0	64.2	5.5
13	0307	91	1200	전복(산것,신선,냉장)	-5.3	-5.3	21.1	11.4
14	0303	49	2000	참다랭이(냉동)	-2.4	-2.2	7.5	2.6
15	0303	79	9060	임연수어(냉동)	-1.3	-1.5	8.6	3.5
16	0305	59	2000	멸치(건조)	-5.7	-6.2	14.3	6.6
17	0303	79	3000	갈치(냉동)	-2.4	-2.4	8.6	2.9
18	0302	69	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3.5	-4.2	15.4	7.5
19	0307	59	1010	문어(냉동)	-4.8	-5.5	15.8	5.9
20	0306	24	1090	기타게(신선,냉장)	-4.4	-4.4	21.3	5.3

<표 6-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일 FTA가 체결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모든 수산물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농어(활어)의 생산이 37.6%로 가장 많이 감소하며, 돔(활어)은 32.1%, 꽁치(학꽁치포함(냉동))는 29.7%, 명태(냉동)는 19.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품목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이들의 관세가 65%, 40%, 30%로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수산물 생산은 1.3% ~ 5.7%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거의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품목은 돔(활어)으로 39.2%가 감소하고, 농어(활어)가 37.6% 감소하여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꽁치(학꽁치포함(냉동))가 29%, 명태(냉동)가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의 품목은 0.9% ~ 9.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생산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일 FTA 체결로 인해 관세세가 제거되므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데,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품목은 돔(활어)으로 무려 90.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활어)가 88.4% 증가하여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꽁치(학꽁치포함(냉동))가 73.5%, 명태(냉동)가 64.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의 품목 중에서 20% 이상 증가하는 품목으로는 기타계(신선,냉장) (21.3%)와 전복(산것,신선,냉장) (21.1%)이 있으며, 10% 이상 증가하는 품목과 10% 이하 증가하는 품목은 각각 7개이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복(산것,신선,냉장)과 기타어류(냉동)가 각각 11.4%,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의 품목은 모두 10% 이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한·일 FTA 체결이 우리나라 20대 주요 수산물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 중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2001년의 경우 72.6%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6-9>에 요약되어 있는 영향은 한·일 FTA 체결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실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보다 과소 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한·일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과 일본은 상호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경우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1절과 제2절에서 분석한 효과는 한·일 FTA와 한·미 FTA 체결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본 절에서 다루고 있는 영향은 모두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의 효과에 해당하므로 실제 영향보다 상당히 과소 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밖에 다룰 수 없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동일한 수산품목에 해당하는 일본과 미국의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미국의 20대 수산물의 생산구조, 생산요소(노동, 자본)의 투입구조 등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고, 일본의 경우, 수산분야를 <표 6-1>의 산업분류표에 나타나 있는 8개 산업 이상 세분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소 평가되는 영향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본 절의 장점은 한·일 FTA와 한·미 FTA의 파급효과를 주요 20대 수산물의 생산, 부가가치,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한계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한·일 FTA와 한·미 FTA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분야에 특화된 산업연관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에는 수산분야를 <표 6-1>의 산업분류표에 나타나 있는 8개 분야만 포함되어 있어 한·일 FTA와 한·미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산분야에 특화된 산업연관표를 만든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들며, 수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정

리, 체계적인 분석, 산업연관표 작성 등 수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작업을 하지 않고 한·일 FTA와 한·미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본 절의 연구의 결과는 최선의 연구결과 아니라 차선의 분석결과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 3.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일 FTA의 경우처럼 우리나라가 1999년~2001년간 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20대 주요 수산물을 선정하였다.

<표 6-10>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20대 주요 수산물의 수입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상기 기간동안 수입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7%에 해당한다.

한·미 FTA 체결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표 6-11>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20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생산의 경우 명태(냉동)와 홍어(냉동)가 각각 1.73%, 1.09%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 밖의 모든 수산물의 생산은 1% 이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가가치의 경우에도 생산의 경우처럼 명태(냉동)와 홍어(냉동)가 각각 1.59%, 1.03% 감소하고, 그 밖의 모든 수산물의 부가가치는 1% 이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명태(냉동)와 홍어(냉동)의 생산과 부가가치가 1% 이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은 명태(냉동)와 홍어(냉동)에 대한 관세가 각각 30%, 40%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표 6-10> 대 미국 20대 주요 수입수산물 및 한국의 관세율(%)

순위	HS			품목명	평균수입액 (USD)	실행관세 (2001)
1	0304	90	1010	명태연육(냉동)	42,508,558.0	10
2	0303	79	9091	아귀(냉동)	30,527,908.0	10
3	0304	90	1090	기타연육(냉동)	11,517,165.7	10
4	0303	80	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8,364,480.7	10
5	0303	39	0000	기타넙치류(냉동)	4,374,075.3	10
6	0303	79	9060	임연수어(냉동)	4,347,672.0	10
7	0303	79	9092	떡장어(대서양,태평양(냉동))	4,200,261.0	10
8	0302	69	9040	아귀(신선,냉장)	3,653,445.7	20
9	0303	60	0000	대구(냉동)	3,600,521.7	10
10	0306	22	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제외))	3,021,426.3	20
11	0511	91	101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2,653,107.3	8
12	0303	79	1000	명태(냉동)	2,561,009.0	30
13	2301	20	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2,467,166.0	5
14	0303	79	9070	볼낙(적어포함(냉동))	2,334,192.0	10
15	0303	79	9093	홍어(냉동)	1,918,019.7	40
16	0303	80	2090	어란(명란냉동이외기타/피레트,어육제외)	1,878,639.0	10
17	0302	50	0000	대구(신선,냉장)	1,169,811.3	20
18	0511	91	2000	어류의웨이스트	1,081,609.3	5
19	1605	90	9020	해삼(기타조제)	941,991.7	20
20	0306	11	0000	닭새우류(냉동)	886,381.7	20
상위 20개 품목의 금액 평균(A)					134,007,441.4	
최근 3년간 전 수입품목에 대한 금액 평균(B)					144,560,015.7	
A/B(%)					92.7%	

주: 한국의 대미 수산물 수입액 순위 20개 품목(1999년~2001년 평균)

&lt;표 6-11&gt;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

순위	HS			품목명	생산	부가 가치	수입	수출
1	0304	90	1010	명태연육(냉동)	-0.33	-0.25	0.80	0.14
2	0303	79	9091	아귀(냉동)	-0.27	-0.17	0.70	0.10
3	0304	90	1090	기타연육(냉동)	-0.31	-0.29	0.78	0.14
4	0303	80	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0.31	-0.23	0.72	0.12
5	0303	39	0000	기타넙치류(냉동)	-0.29	-0.27	0.74	0.16
6	0303	79	9060	임연수어(냉동)	-0.12	-0.14	0.76	0.31
7	0303	79	9092	떡장어(대서양,태평양(냉동))	-0.16	-0.19	1.09	0.27
8	0302	69	9040	아귀(신선,냉장)	-0.47	-0.45	1.57	0.35
9	0303	60	0000	대구(냉동)	-0.35	-0.33	0.87	0.17
10	0306	22	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제외))	-0.39	-0.37	1.55	0.45
11	0511	91	101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0.21	-0.19	0.60	0.08
12	0303	79	1000	명태(냉동)	-1.73	-1.59	5.66	0.48
13	2301	20	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0.16	-0.14	0.48	0.06
14	0303	79	9070	불낙(적어포함(냉동))	-0.12	-0.10	0.64	0.08
15	0303	79	9093	홍어(냉동)	-1.09	-1.03	3.37	0.58
16	0303	80	2090	어란(명란냉동이외기타/피레트,어육제외)	-0.29	-0.25	0.85	0.21
17	0302	50	0000	대구(신선,냉장)	-0.37	-0.35	1.49	0.43
18	0511	91	2000	어류의웨이스트	-0.14	-0.12	0.35	0.06
19	1605	90	9020	해삼(기타조제)	-0.45	-0.43	1.45	0.41
20	0306	11	0000	닭새우류(냉동)	-0.43	-0.41	1.61	0.31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수입의 경우 명태(냉동)의 수입은 5.66% 증가하고 홍어(냉동)의 수입은 3.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의 품목 중 1% 이상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은 닭새우류(냉동) (1.61%), 아귀(신선,냉장) (1.57%),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제외)) (1.55%) 등 6개이며, 나머지는 1% 미만으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미 FTA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해 1% 이상 수출증가를 가져오는 품목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비중은 2001년의 경우 6.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결과도 한·일 FTA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의 수입수산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한 결과이므로 과소 평가되어 있으며, 실제 한·미 FTA 체결의 파급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제7장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제1절 FTA 추진에 있어서 수산부문 기본입장

향후 우리나라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류에 맞추어 세계 각국과 FTA 협상을 벌여 나가야 하는데, 국가 전체적 입장에 있어서 FTA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국내 취약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은 존재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FTA 추진시 농수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적절한 보호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는 협상 대상국이 수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협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일 FTA 및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일반적으로 수산업 입장에서 FTA 협상을 고려할 때 협상 대상국을 수산업 경쟁력이 강한 국가와 수산업 경쟁력이 약한 국가 등으로 구분하여 수산부문이 취해야 할 기본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수산업 경쟁력이 강한 국가와의 FTA 협상

경쟁력의 원천은 가격경쟁력의 우위나 품질경쟁력의 우위, 희소성을 가진 수산물의 생산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가격경쟁력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될 것은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가진 수산물이 국내에 대량으로 반입된다면, 국내 어가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선 국내 수산업부문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협상대상국에서 생산하는 주품목들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하

여, 상충부분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개방을 실시하는 반면, 국내 수산업과 상충부분이 많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EU와 칠레간의 FTA 체결에서 보았듯이 관세할당을 통한 점증적인 개방 확대와 적절한 조정관세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산업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의 우위는 어자원의 풍족도와 저렴한 인건비, 생산효율의 극대화(기업형 어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에서 어자원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선원들의 안전관리 부분도 함께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어자원의 보호와 환경문제, 향후 WTO에서 논의될 Blue Round와 연계하여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 2) 품질경쟁력의 우위를 가진 국가와 FTA 협상

해당 국가의 품질경쟁 우위 요소를 분석한 후, 이에 합당한 협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가공수산업이 발달한 국가와의 FTA 협상에 있어서는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을 협상의제로 채택하여 대상국의 국내 진출과 우리나라 수산기업의 현지진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상기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대상국내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이므로, 투자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와 대상국 기업진출시 장애요인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3) 수산부문의 경쟁력은 강하지만 이 국가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대상국일 경우

대상국가의 수산물 생산현황을 고려하여 대상국가 내에서 당해 품목이 생산력이 낮을 경우에는 타국에 대한 해당 품목의 수입관세가 전반적으로 낮거나 무관세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 조치의 완화 내지는 투명성 확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보, 위생조치의 상호인정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타 국가보다 대상국 내 유통에 보다 더 유리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품목의 생산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 조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4) 수산업 경쟁력이 약한 국가와의 FTA 협상

협상대상국가가 수산업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내 수산업의 주요 생산 품목이 상이하여 상충부분이 미미한 상황이라면, 수산부문의 개방에 의해서 국내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 대상국가와 FTA 체결시 수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버린다면, 타 국가와의 협상시에도 이와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고, 협정 대상국의 우회수출에 대해 국내 수산업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개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전반적으로 수산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이 우리나라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맞는 대응체제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수산부문에 대해서는 협정체결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거나, 경쟁력이 강한 국가와의 협정과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 협정 대상국 선정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적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를 택하고, 산업전반에 걸쳐 이익을 점할 수 있으나 수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관세정책과 비관세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주요논의사항과 연계한 협상의 진행으로 최대한 국내 수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FTA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한·일 및 한·미간의 FTA 체결은 수산부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상이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앞의 조사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수산부문을 둘러싼 두 국가의 배경의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당해국가의 식문화의 차이, 수산업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 수산업의 형태·규모의 차이, 이로 인한 수산업에 대한 보호정도의 차이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두 국가와 FTA 체결 시에는 각기 다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 한·일 FTA 체결 대비 수산업 부문 추진방향과 협상전략

#### 1) 분석결과 및 시사점

일본은 우리의 2대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일본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

한·일 수산물 교역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일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 일본 모두 수산물 적자국으로 수산물 수입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한국이 흑자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 생산은 한국이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일본은 정체 또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으며, 모든 품목에서 한국의 수산업 경쟁력이 일본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고

있었고, 일본은 전반적으로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품목별 경합 관계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국과 가장 경쟁이 치열하였고, 다음으로 미국과 경쟁도가 높았으며,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의 경쟁도는 낮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경쟁도가 높은 국가를 살펴보면, 0301류는 중국, 0302류는 중국, 인도네시아, 0303류는 미국, 러시아, 0304류는 중국, 미국, 태국, 0305류는 미국, 중국, 0306류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0307류는 중국, 미국, 태국, 1212류와 1604류는 중국, 1605류는 중국, 태국으로 나타났다.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결과,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수산부문 생산, 부가가치, 수입, 수출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 증가(평균 26%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수출 증가(평균 14%)에 미치는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수산부문의 무역수지관리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었다(비관세조치 유지를 전제). 그런데 이 분석결과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수산물을 월등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무역수지면에서 단기적으로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의 증가 및 가격상승은 그 만큼 대일 수출유인(輸出誘引)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 역으로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 국내산은 물론 일본과 중국, 칠레 등 제3국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조치 철폐효과는 양자간 폐쇄경제하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이 중국 등 다른 경쟁국과 FTA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활돔, 활농어, 냉동꽂치, 냉동명태를 생산하는 업종은 저비용 구조, 부가가치 증대 등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합리적 구조개선을 위한 사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 2) 추진방향

한·일 양국의 FTA 협상에 있어서 수산부문의 쟁점은 결국 일본의 비관세장벽의 철폐문제와 우리나라의 관세장벽의 철폐문제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본은 FTA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자국 수산업이 입을 피해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관세율 정책으로 수산물 수입을 관리하고 영세 수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FTA로 인한 여타 산업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부문이 수산업이며 이를 위해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가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협상시 동등성 원칙에 입각하여 양자간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연안의 수산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일본을 설득하는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일본이 WTO를 비롯한 각종 수산부문 국제협상에서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고,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비관세 조치의 근거도 바로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보호와 자원회복을 통한 고품질, 고가격 정책은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근본 대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대일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활돔, 명란, 활농어, 갈치, 꽁치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신어업협정의 영향에 따라 앞으로 명태, 오징어, 꽁치 등 활선어가 수입증가로 전환될 것이므로 지금까지 수입실적이 비록 미미한 어종이라 하더라도,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어종에 대해서도 과거 수입실적이 많은 품목과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반면 일본이 취하고 있는 김, 참치 등 9개 IQ 품목의 경우에는 자원보호라는 명목하에 철폐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대일 협상수단 중 하나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협상전략

한·일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역내 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아시아적 표준을 형성하여 국제적 표준에 관한 협상에서 지역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FTA가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첫 걸음으로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블록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이러한 한·일 FTA 체결에 있어서 수산업 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단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규모면에서 축소과정에 있는 산업이며 수출에 있어서는 대일 의존형이므로, 예상되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및 어업경영의 체질개선을 고려하여 FTA 체결 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한·일 양국은 동해 및 동중국해라는 동일어장에서 조업을 하는 인접 국가이며, 세계의 많은 어장에서도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이므로 FTA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업종별 분업과 경합관계를 고려한 협상이어야 한다.

둘째, 일본은 우리나라가 비교열위에 있는 공산품 분야와 연계시켜 민감품목인 농수산물물 자유화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려는 협상전략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IQ제도의 철폐에 대한 반대를 협상과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IQ 수량제한을 관세화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급증 품목과 조정관세제도를 적절하게 연계시켜 관세협상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고 느긋이 기다리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장기침체에서 헤어날 수 없고 있는 자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FTA 체결이 긴요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가와의 FTA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협상상대인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향후 소비패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입수요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에 지나친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관세인하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비 증대 및 어류 생산 위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우리의 대일 수출 증가는 일본과의 경쟁보다 역외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따른 무역이전 효과가 더 크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수입선이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일 FTA 체결은 두 개의 수산물 수입국가의 경제통합이므로 장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수출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공급 부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3국산 수산물 수입 증가는 필연적일 것이며, 그 결과 자원량 및 적정수요에 따른 수산업의 적정규모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기조, 생산자 보호라는 수입억제중심의 정책기조에서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수급안정)이라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협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한·일 FTA는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수산물 조제·가공 기술의 도입과 관련기업의 유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시장을 노린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수산물 조제·가공업체의 우리나라 진출을 유인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일 FTA에 투자 자유화와 수산물의 조제·가공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주요 어항의 배후지에 수산물 제조·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외국인의 수산 관련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또한 향후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우리는 일본의 전략과 방법 등을 면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 등과 같은 다자간 수산부문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특히 향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은 한·일 협상에서의 일본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한·일 FTA에서 수산물 관세장벽 철폐도 중국과의 FTA 체결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만약 한·일 FTA에서 수산물 관세장벽을 전면 철폐한 이후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의 방패막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한·일간 FTA 체결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업생산 분야(동일어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 수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동해 및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어장에서도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이므로, 양국의 합리적인 자원조성을 바탕으로 한 품목별 업종별 분업과 경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수산업 협력을 통한 단기적인 경제효과 보다는 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의 공유 및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호혜적 협력모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세계 최대의 수산물 시장인 일본은 수입수량제한조치(수입할당 : IQ),



수산물 위생조치(SPS)를 비롯한 비관세 조치를 수입관리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을 고려할 때, 일본의 수입관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관세가 약 3배나 높게 나타나므로 관세철폐 또는 인하만의 효과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입할당(IQ), 유통 서비스, 검사검역 기준(SPS, TBT), Safeguard 문제, 원산지 표시, 분쟁해결 제도, 수산인력 진입문제, 수산기술 이전문제 등 비관세 조치를 동등성 원칙에 입각하여 양자간 기준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양국간 정치·사회적 문제가 FTA 체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역사 교과서 문제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양국간 경제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어, 이들 정치·사회적인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데 양국 정부는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협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갈등이 양국의 FTA 체결을 부추기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한·일 양국은 통상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2. 한·미 FTA 체결 대비 수산업 부문 추진방향과 협상전략

### 1) 분석결과 및 시사점

미국은 우리나라 교역의 18.4%를 차지하며, 우리는 미국의 10대 교역국이다. 2001년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비중은 일본에 이어 제 2위(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6.5%), 수입비중은 중국에 이어 제 2위(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한·미 양국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으며, 수산물 품목 중 035류는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고, 034, 036, 037류는 한국이 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수산물은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고 있고, 미국은 전반적으로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품목별 경합관계는 전체적으로 캐나다 및 태국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비교국가와의 경쟁도는 낮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경쟁도가 높은 국가는 0301류는 태국, 0302류는 캐나다, 0303류는 중국, 캐나다, 0304류는 중국, 칠레, 캐나다, 0305류는 캐나다, 중국, 0306류는 캐나다, 태국, 0307류와 1212류는 중국, 캐나다, 1604류는 태국, 에쿠아도르, 캐나다, 1605류는 캐나다, 태국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건조어류, 굴, 기타 게살은 캐나다와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징어류는 중국, 태국과 경쟁이 치열하였다. 또 해조류는 중국, 캐나다, 칠레와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결과,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한국측 해면어획과 기타식품 분야의 국내생산은 미미하게 감소하고, 미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태효과). 또한 수입효과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무역수지효과는 한국에게 불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 조치의 경우, 양국 모두 수산물 자유무역을 크게 방해하는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미국이 제도화한 항만안전장치 및 바이오테러 대응장치는 통관시간과 수출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안전성 확보관련 일련의 조치가 비관세 장벽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2) 추진방향과 협상전략

미국의 FTA정책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은 남미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주요대상지역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칠레, 싱가포르보다 시장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을 인식하여, 아직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가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나 역으로 미국의 수산업이 얻을 수 있는 편익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수산업은 양국 모두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적자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양국 모두에게 수산정책의 주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협상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국의 수산업 및 수출입 구조,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 역시 매우 상이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활용한 협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분업과 경합의 논리에 따라 양국의 수산업이 가지는 각각의 특수성을 인정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산품목과 우리나라 소비자의 선호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 및 수입품목은 주로 가공품 및 냉동품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선호도에 맞는 새로운 수산제품의 개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FTA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 수산업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업은 미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산물 생산량, 자급률 및 어업인의 자생력을 고려하여 과거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입 가능성 즉 대체성 및 소비형태의 변화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개방 협상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실명제 및 HACCP 등 품질관리방안 및 제품의 다양화·차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전근대적인 유통시스템 및 유통시설의 획기적인 개선과 병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제도화하고 있는 항만안전장치 및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테러 대응장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제도적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협상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3절 FTA 체결에 따른 관세양허기준과 Safeguard 활용방안

#### 1. FTA 협상 대비 수산물 품목별 관세양허기준

전술한 한·일 FTA 및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분석과 기존 FTA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2002년 HS 품목(403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협상에 대비하여 관세양허기준을 한·칠레 FTA 양허안을 원용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즉시 무세화 품목, 5년 및 10년 기간을 거쳐 무세화하는 품목 등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대 일본 FTA 체결의 경우와 대 미국 FTA 체결의 경우로 구분하여 3단계로 양허할 경우를 살펴보았다.

첫째, 발효 즉시 무세화하는 품목으로는 최근 3년간(1999~2001) 대 세계 및 대 협상국(일·미)으로부터 평균 수입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이거나 또는 우리나라 실행관세가 10% 미만인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일본은 252개 품목, 미국은 265개 품목이었다. 둘째, 5년 후 무세화 품목의 경우, 협정 후 수입급증이 예상되거나 또는 최근 3년간(1999~2001) 대 세계 평균 수입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대 협상국(일·미) 평균 수입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일본은 94개 품목, 미국은 85개 품목이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 무세화 품목은 최근 3년간(1999~2001) 대 세계 및 대 협상국(일·미) 평균 수입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또는 협상 후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 등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수산업 민감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일본은 57개 품목, 미국은 53개 품목으로 분류되었다<sup>77)</sup>.

---

77)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 2. 수산부문 Safeguard 활용검토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의하여 수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내 수산업의 어느 업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입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 1) Safeguard의 개요

Safeguard(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국내의 경쟁업체들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동 제도는 GATT(1947)협정 제19조에 기반을 두고있는 제도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수입국 내의 산업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및 기간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원칙적으로 가맹국이 무역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에 의해 특별로 인정받고 있다.

WTO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에 적절한 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개방정책으로 인하

여 국내산업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각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자유무역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세이프가드를 통보 받은 나라는 자국 상품이 수출국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국의 입장을 듣고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며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

첫째, 이해당사국인 수출국, 수입국간의 사전협의를 필요하며, 둘째, 발동기준 등이 투명하여야 하고, 셋째, 무차별의 원칙, 즉 규제대상 WTO회원국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넷째, 적용기간을 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다섯째, 제한조치의 체감 즉, 기간경과에 따라 규제강도를 줄여 나가야 하고, 여섯째, 규제대상국은 세이프가드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2) Safeguard 적용 사례연구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각국의 세이프가드 운용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UR 협상의 결과 엄격한 법 규정으로 인해 각국이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수단으로서 세이프가드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비교적 적용이 용이한 반덤핑제도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미국, EU, 캐나다, 호주등 선진국들은 세이프가드 조치 대신에 반덤핑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로 그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WTO 출범이후 한국산 냉동쇠고기 및 수입돼지고기, 냉동마늘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 형태의 긴급관세를 부과하여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킨 사례가 있으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농수산물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하겠다.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들의 세이프가드 활용추세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남용하는 대표적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위협이라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예외적으로 엄격한 조건하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과도하게 발동하는 것은 수입증가와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규명 등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 요구하는 조사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sup>78)</sup>.

① WTO Safeguard

적용요건은 우선 절대적, 상대적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점유율, 가동율, 고용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인상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며 발동기간은 최대 4년(연장가능 : 8년까지)이고, 피해 및 피해 우려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200일간 잠정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이프가드 발동되고 수출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진다(절대적 수입증가인 경우 3년간 보복금지).

② 한-칠레 FTA 농산물 Safeguard

적용요건은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피해 우려로 시장교란(market disturbance)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며 그러나 피해 및 피해우려를 판

---

78) WTO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협정이 발효된 1995년부터 2002년 5월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27건의 제소가 이루어짐. 그 중에서 7건의 분쟁에 대해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이 채택됨. 2002년 5월 3일 회람된 Chile Price Band 사건의 경우, 최초로 개발도상국간 세이프가드조치 문제에 대해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받은 사건임. WTO체제하에서의 세이프가드조치 운영에 관한 주목할만한 부분은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 의한 조치 사용이 GATT체제와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단할 객관적 요소에 관한 규정은 없다. 관련조치로는 관세인하를 중단하거나 최혜국(MFN) 관세 또는 FTA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동기간에 제한은 없고, 세이프가드 발동 전에 120일간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수출국 요청시 보상협의를 이루어지는데, 30일 이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고 동등한 수준의 양허 중단 및 관세인상 등 수출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③ EU-칠레 FTA의 Safeguard

EU와 칠레간 FTA의 내용 중 세이프가드에 관한 내용은 제73조(농산품 및 가공농산품에 대한 긴급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요건은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피해 우려로 시장교란(market disturbance)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며 그러나 피해 및 피해우려를 판단할 객관적 요소에 관한 규정은 없다. 관련조치로는 관세인하를 중단하거나 최혜국(MFN) 관세 또는 FTA 기본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동기간에 제한은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발동 전에 당사국과 사전협의 없이 120일간의 잠정조치가 가능하며, 이때 타 당사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당사국간 보상협의를 개최하는 경우, 30일 이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출국은 동등한 수준의 양허 중단 등 보복조치가 가능하다.

④ 한국의 중국산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up>79)</sup>

1993년 UR 협상 종결시 신선·냉장마늘,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대해서는 기본관세(50%)로,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95년 396%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4%p씩 감소)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허하였다. 그러나 1995년까지 수입이 미미하던 냉동마늘, 초산조제 마늘의 수입이 상대적 저율관세를 이용하여 1996년 2,900톤, 1997년 5,400톤, 1998년 9,900톤, 1999년 22,200톤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마늘가격이 하락하고 관련 농가의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는 1999년 9월 30일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재경부가 이를 받아들여 1999년 11월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하고(2000년 6월 4일까지 냉동마늘과 초산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15%로 조정) 이를 중국에 통보하였다. 그 후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5월 다음과 같은 긴급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하였다.

- 기간 : 2000년 6월 1일 ~ 2003년 5월 31일(3년)
- 품목 및 관세율
  - 간마늘 : 376%의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60%(또는 300원/kg) 긴급관세부과  
-> 실행세율 : 총 436% 또는 2,180원/kg
  -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 30%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285%(또는 1,707원/kg) 긴급관세부과  
-> 실행세율 : 총 315% 또는 1,887원/kg

이 과정에서 중국측의 요청에 따라 2000년 4월과 5월에 한·중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은 우리의 긴급관세조치로 인해 중국내 마늘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제안을 수용치 않음으로써 양자간 협의는 결렬되었고, 중국은 2000년 6월 우리 수출상품(폴리에틸렌, 휴대전화기)에 대한

79) ①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수입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키로 최종결정', 2000. 6. 및 ②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2000. 6. 참조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잠정수입중단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양자협의를 재개하였고 우리측은 동 조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중국측에 설명하면서, 양측에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킨 결과, 우리측은 200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틀을 유지하면서 추후 3년간 관세할당(Tariff Quota) 방식으로 매년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기로 하고(<표 7-1> 참조), 중국은 폴리에틸렌 및 휴대전화기 등 우리제품에 대한 잠정수입중단 조치를 2000년 8월 2일자로 철회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번 합의로 30%의 저율관세 하에서 자유롭게 수입되던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의 수입물량은 1999년도 수입물량 수준 이하로 사실상 동결되었다.

**<표 7-1> 금년부터 3년내 중국산마늘 도입규모**

(단위 : 톤)

	대상마늘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최소시장접근(MMA)물량	신선·냉장마늘	11,895	12,538	13,181
관세할당(T/Q)물량	냉동·초산마늘	20,105	21,190	22,267
총 물 량		32,000	33,728	35,448

\* 상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의 고율관세를 적용

### 3) Safeguard 도입 활용 검토

세이프가드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일종으로 상품교역분야와 서비스교역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상품교역분야의 세이프가드는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한다든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한 교역행위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인 반면,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교역행위에 대한 수입제한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따라서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에는 수출 당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세이프가드의 신청자격은 대외무역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 외국인에 의한 무역·유통서비스의 공급증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당해 물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도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첫째, 당해 물품의 국내생산량의 100분의 20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국내 생산업자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생산자, 둘째, 당해 서비스의 국내공급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 공급업자수의 비중이 100분의 20이상인 공급자, 셋째, 당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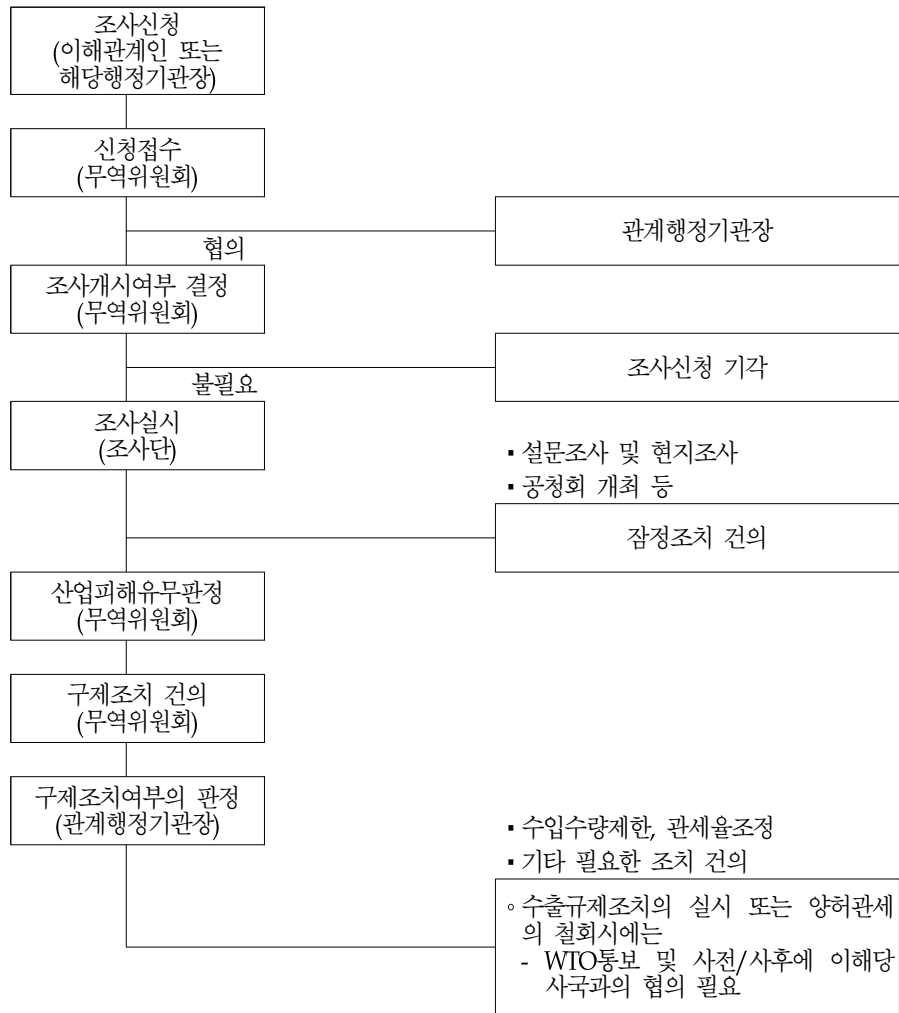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무역위원회는 업계의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개시여부결정, 산업피해조사, 산업피해유무판정, 구제조치건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조치를 취하며, 신청접수에서 구제조치 시행까지는 덤핑방지 관세와 마찬가지로 통상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먼저 신청이 접수되면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과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타당성은 물론 조사개시결정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질문서, 공청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당해 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한다.

<그림 7-1>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절차



※ 복잡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한하여 조사기간 연장 가능.

다만 조사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회·조합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구제조치의 건의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제통상관계는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 피해를 구제한다(<그림 7-1> 참조).

이러한 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구제조치의 유형)에는 첫째,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이다. 이는 교역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수량위주의 수입제한조치로서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쿼타설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관세율의 조정이다. 이는 국내시장에 접근하는 공급자의 영업행위에 금전적 과세를 함으로써 수입을 감소시키는 가격위주의 수입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이 있다. 이는 국제무역을 위축시키는 수입제한조치보다 산업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지원으로는 조사대상인 산업에 대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업·농림수산업·광업·중소기업 및 기술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다(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 물론 협상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조치는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이프가드제도는 WTO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노력을 회원국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완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협정은 144개 WTO 회원국들의 참여로 꾸준히 확립되어 가는 국제통상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회색지대조치들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에 의한 향후 세이프가드조치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까지 세이프가드조치의 운용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은 새로이 마련된 세이프가드협정의 사용과 관련한 유용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으며, 기타 인과관계 또는 조치의 허용수준 등에 대해서도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판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물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8장 결 론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라 일국의 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축소경향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대상으로 그 영향분석과 대응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수산정책적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포괄적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업 자체가 취약산업이면서, 산업 세력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산업이므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면서 수산업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FTA 상대국을 선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수산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국가와의 FTA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적정규모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선어업 및 양식업에 대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수산물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측면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차별화 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일, 한·미 FTA 체결에 의한 소비자 잉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이와 같은 후생증가는 수산분야의 후생감소를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수산부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책적 전환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일본 및 미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 한·미간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신어업협정의 발효와 이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에 의하여 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고용, 국제수지측면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관세에 비해 일본 및 미국의 수산물에 대한 평균관세가 매우 낮아 FTA를 체결하더라도 수출증가라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 협정 대상국 선정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적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를 택하고, 산업전반에 걸쳐 이익을 점할 수 있으나 수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관세정책과 비관세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주요 논의사항과 연계한 협상의 진행으로 최대한 국내 수산업의 대응방안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업종별 사전 영향 분석을 통하여, 상대국에 비해 협상 테이블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많은 협상카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수산물 수입의 급증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상정하여 도입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아쉬운 점과 향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한다.

사실상 본 연구는 자료의 부족 등 시공간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미완의 연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구결과 밖에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국가 다산업 CGE 모형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산업에 관한 세분화된 자료가 없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비록 한·일 FTA 체결의 효과가 산업분류 상 생산, 부가가치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업종을 보다 세분하여 영향을 분석한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시적 차원의 업종별·어종별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주요한 수입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입할당(import quota) 등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한·일 FTA 체결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수입할당(import quota) 등 비관세장벽 제거의 효과 및 업종별 파급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산업종별 또는 품목별 산업연관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가 수산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우복. 1998.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서울: 두남.
- 고종환(1996), "WTO體制下에서의 演算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通商政策의 效果 分析". 『경제학논집』 제5권 제1호. 263-288.
- 관세청. 1999. 『관세율표』. 서울: 관세홍보사.
- 국립수산물검사소. 1999. 「중국의 식품수출입제도」. 『수산물시장동향』 1998년 하반기(48호): 249~259면. 고양: 국립수산물검사소.
- 국립수산물검사소. 각년도. 『수산물검사연보』. 고양: 국립수산물검사소.
- 김광석. 1988. 『수입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조정정책』. 연구보고 88-07.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도형, 유관영 외(1999),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KIET 정책자료 제151호.
- 김상겸. 1996.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정책자료 96-0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정봉·고재모·류호영. 1996. 『중국 수산업의 조사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남상열. 1998.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의 추진내용과 대응』. KIET 정책자료 제69호. 서울: 산업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조사처.1998.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 작업 현황 - '98.7월 현재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국제경제 현안리포트 98-9.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9. 『'99 세계의 무역장벽, -전망과 대책-』, 시장조사 현안리포트 99-1.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박상태. 1997.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정책보고서 97-03.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박중수. 1998. 『관세론 -이론과 법제-』. 서울: 법문사.
- 박태호·문우식·백진현. 199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

- 구』. 정책분석 98-8.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손정식·한홍렬. 1998.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98-09.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웅탁, 정인교(1998a) "동아시아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경제적 효과". 『국제경제연구』, 제3권 제3호. 65-89.
- 유재원·이홍구. 1998.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조사분석 98-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외(1999),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연구 <총괄편>』,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본관세협회. 1999. 『실행관세율표』. 동경:일본관세협회.
- 정순원·오성중·김연희·손영기·윤창호·황현리. 1991. 『미·멕시코무역자유화추진의 의미와 과제』. 특별보고.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정인교. 1996.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96-09.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1998.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정책연구 98-16.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외(1999),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연구: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1999),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부문별 추진전략』 정책 세미나 자료, 대외정책연구원.
- 정인교(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 정인교(2001), 한·미 FTA의 주요 이슈와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 1998. 『세계 통상질서와 한국의 통상정책』. 정책연구자료 98-62호. 서울: 산업연구원.
- 최세균(2002), "한·일 자유무역협정: 농업부문의 영향과 전략", 『한·일 FTA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의 모색』 세미나 자료, 대외정책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연도. 『식품수급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수산회. 각연도, 『수산연감』. 서울: 한국수산회.
- 한국무역협회. 1999. 『'98 중국관세율 및 수입요령』 서울: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행. 「품목별 수출입 행태분석 및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1996년 11월호. 서울: 한국은행.
- 한재윤·이윤·최휴중·홍진기. 1989. 『국제경쟁력 측정방법』. 서울: 산업연구원.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산동성해양경제연구중심. 1998. 『중국의 수산업 현황』. 서울: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 한홍렬. 1995.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정책연구 95-08.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해양수산부. 각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서울: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각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검사소. 1998. 『OECD 주요회원국의 수산물검사제도』. 서울: 해양수산부.
- 홍성걸, 주문배, 백기창, 조보현. 1998. 『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 해양수산부.
- 홍성걸, 주문배, 백기창. 1998. 『수입수산물 유통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해양수산부.
- Cheong, Inkyo (2002), "An Analysis of Japan-Korea FTA",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Annual Conference on Global Economic Analysis, June 5-7, Taiwan.
- Dimaranan, Betina V. and Robert A. McDougall (2002), Global Trade, Assistance, and Production: The GTAP 5 Data Base, 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 Purdue University.
- Hertel, T.W. (ed.) (1997),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EP and IDE (2000), Toward a Korea-Japan FTA: Assessments and Prospects. KIEP.
- Ko, J.-H. (2000),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a Free Trade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4, No. 2, pp. 177-209.
- Ko, J.-H. (2001), "Why Not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Asia and Europe at the ASEM Level?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 Studies, Vol. 13, pp. 134-161.
- Ko, J.-H. and J.-D. Lim (2001), "A Korea-Singapore Free Trade Area and Analysis of its Economic Impact using a CGE Model",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Global Economy: European and East Asian Experiences, University of Le Havre, Le Havre, France, 26-27 Sep. 2001.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999.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Internet website(<http://www.USIC.gov>).
- 水産年鑑編輯委員會. 1998. 『水産年鑑1998』. 東京: 水産社.
- 輸入食品事典研究會. 1996. 『總說 輸入食品事典』. 東京: 輸入食品事典研究會.
-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7. 『ポケット 水産統計 平成8年度版』. 東京: 農林統計協會.
-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平成9年漁業・養殖業生産統計年報』. 東京: 農林統計協會.
- 農林統計協會. 各年度. 『圖說 漁業白書』. 東京: 農林統計協會.
- 中國統計局. 各年度. 『中國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부 록

### 수산물 품목별 관세양허기준표<sup>80)</sup>

#### I. 대일본 관세양허기준

##### 1. 협정발효즉시 무세화 품목(252개 품목)

- 1) 대세계 또는 대일본 수입이 없는 품목 및 실행관세가 10% 미만인 품목  
(155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2-61-0000	정어리(신선,냉장)
10	0303-79-9097	까나리(냉동)
8	0106-00-6020	지렁이(실지렁이)
10	0301-91-2000	송어(양코링쿠스 아파케등(활어))
10	0301-99-9030	틸라피아(활어)
10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10	0301-99-9080	메기(활어)
10	0301-99-9092	붕어(활어)
10	0301-99-9094	초어(활어)
20	0302-11-1000	송어(살모트루타등(신선,냉장))

80) 생산량 및 생산금액(무역협회 KOTIS 참조)은 1999년~2001년 3개년 평균값 기준이며, 관세율(해양수산부 관세분류표 참조)은 2002년 기준임.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2-31-0000	날개,긴지느러미다랭이(신선,냉장)
20	0302-39-2000	참다랭이(신선,냉장)
20	0302-39-9000	기타다랭이(신선,냉장)
20	0302-63-0000	검정대구(신선,냉장)
20	0302-69-6000	갯장어(신선,냉장)
10	0303-31-0000	넙치(냉동)
10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냉동)
10	0303-41-0000	날개,긴지느러미다랭이(냉동)
10	0303-73-0000	검정대구(냉동)
10	0303-76-0000	뱀장어앵귤라종(냉동)
10	0303-77-0000	농어(냉동)
10	0303-78-0000	민대구(냉동)
10	0303-79-2000	은대구(냉동)
10	0303-79-9030	보리멸(냉동)
10	0303-79-9050	달고기(냉동)
10	0303-79-9080	새꼬리민태(냉동)
10	0303-80-1000	어류간장(냉동/피레트,어육제외)
20	0304-10-2000	연육(신선,냉장)
20	0304-10-9000	기타어육(신선,냉장)
20	0305-20-1000	어류간장(건조,훈제,염장,염수장)
20	0305-20-2000	어란(건조)
20	0305-20-4090	어란(명태,조기,청어 이외 기타/염장,염수장)
20	0305-51-0000	대구(건조)
20	0305-59-1000	상어지느러미(건조)
20	0305-59-4000	조기(굴비)
20	0305-62-0000	대구(염장,염수장)
20	0305-69-3000	갈치(염장,염수장)
20	0305-69-6000	조기(염장,염수장)
20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20	0306-12-0000	바다가재(냉동)
20	0306-14-1000	게살(냉동)
20	0306-19-0000	기타갑각류(냉동)
20	0306-21-0000	닭새우류(냉동제외)
20	0306-24-3000	게(염장,염수장)
20	0306-29-2000	기타갑각류(건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7-31-0000	홍합(산것/신선,냉장)
20	0307-39-1000	홍합(냉동)
20	0307-39-2000	홍합(건조)
20	0307-39-9000	홍합(산것/신선,냉장,냉동,건조 이외 기타)
20	0307-59-2000	문어(건조)
20	0307-60-0000	달팽이
20	0307-91-1300	소라(산것,신선,냉장)
20	0307-91-1600	새조개(산것/신선,냉장)
20	0307-99-1160	소라(냉동)
20	0307-99-2110	개량조개(건조)
20	0307-99-2130	바지락(건조)
20	0307-99-2190	기타연체동물(건조)
20	0307-99-3110	개량조개(염장,염수장)
20	0307-99-3120	바지락(염장,염수장)
20	0307-99-3130	소라(염장,염수장)
20	0307-99-3190	기타(염장,염수장)
20	0307-99-3990	기타수생동물(해삼,우렁챙이 이외 기타/염장,염수장)
20	1212-20-4010	파래(신선한것)
20	1212-20-5020	다시마(냉장)
20	1212-20-8039	말(냉동 이외 기타)
3	1504-30-9000	기타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20	1604-14-1011	다랭이(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30-1000	캐비아
20	1605-20-9010	새우와보리새우(훈제)
20	1605-30-1000	바다가재(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30-9000	바다가재(통조림외)
20	1605-40-9000	기타갑각류(통조림외)
20	1605-90-1030	바지락(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2020	골뱅이(훈제)
20	1605-90-9030	골뱅이(기타조제)
20	1605-90-9040	홍합(자숙)
3	1504-10-1000	어류의간유,분획물(상어의간유)

기본세율(%)	HSK	품목명
3	1504-10-9000	어류의간유,분획물(상어의간유 이외 기타)
3	1504-20-0000	어류의유지,분획물(간유 제외)
5	0511-91-2000	어류의웨이스트
5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5	2301-20-9000	어류외기타 분.조분 및 펠리트
8	0106-00-6010	지렁이(갯지렁이)
8	0509-00-0000	동물성의해면
8	0511-91-101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8	0511-91-109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 알 이외 기타)
8	0511-91-900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동물의 생산품(기타)
8	1302-31-9000	한천(실한천,분한천 이외 기타)
8	1521-90-1000	경납
8	2106-90-4090	조제한식용해조류(김 이외 기타)
30	0208-40-2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포유동물)및바다소(바다소목의포유동물)
30	0208-90-9010	해양동물고기,설육(신선,냉장/냉동)
30	0210-9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포유동물)및바다소(바다소목의포유동물)
10	0301-99-6000	갯장어(활어)
10	0301-99-9095	민어(활어)
20	0302-11-2000	송어(양코링쿠스 아파케등(신선,냉장))
20	0302-33-0000	가다랭이또는줄무늬버니토우(신선,냉장)
20	0302-36-0000	남방참다랭이(신선,냉장)
20	0302-62-0000	해덕(신선,냉장)
10	0303-46-0000	남방참다랭이(냉동)
10	0303-72-0000	해덕(냉동)
10	0303-79-9040	홍살치(냉동)
10	0303-79-9098	이빨고기(냉동)
20	0304-10-1020	가자미피레트(신선,냉장)
20	0304-10-1030	참다랭이피레트(신선,냉장)
10	0304-20-6000	이빨고기피레트(냉동)
20	0305-20-3000	어란(훈제)
20	0305-20-4020	어란(조기/염장,염수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5-30-2000	어류의피레트(염장,염수장)
20	0305-42-0000	청어(훈제)
20	0305-59-6000	갯장어(건조)
20	0305-63-1000	멸치젓(염장,염수장)
20	0305-69-4000	정어리(염장,염수장)
20	0305-69-8000	꽁치(염장,염수장)
20	0306-29-3000	기타갑각류(염장,염수장)
20	0307-29-3000	가리비과의조개(염장,염수장)
20	0307-91-1110	백합치패(산것,신선,냉장)
20	0307-99-1120	개량조개(냉동)
20	0307-99-2930	우렁쉥이(건조)
20	0307-99-2990	기타수생동물(해삼,우렁쉥이 이외 기타/건조)
20	0507-90-2020	고래수염과그털
8	0508-00-1000	산호(coral)
8	0508-00-2010	진주패각
8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0508-00-2050	트로커스패각
8	0508-00-2060	아고야패각
8	0508-00-2070	민물패각
8	0508-00-2090	패각(진주,청,야광패각등 산호,패각 이외 기타)
8	0508-00-9000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등(산호,패각 이외 기타)
20	1212-20-1020	김(냉장한것)
20	1212-20-2090	미역(건조,염장,냉장,냉동한것 이외 기타)
50	1212-20-3030	툇(냉동)
20	1212-20-3090	툇(건조,냉장,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4020	파래(냉장)
50	1212-20-4030	파래(냉동)
50	1212-20-5030	다시마(냉동)
50	1212-20-6010	우뭇가사리(냉동)
50	1212-20-7011	돌가사리(냉동)
50	1212-20-7021	뜯세모가사리(냉동)
20	1212-20-7029	뜯세모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

기본세율(%)	HSK	품목명
50	1212-20-7031	불등가사리(냉동)
50	1212-20-8011	도박(냉동)
20	1212-20-8019	도박(냉동 이외 기타)
50	1212-20-8021	진두발(냉동)
20	1212-20-8029	진두발(냉동 이외 기타)
50	1212-20-8031	말(냉동)
50	1212-20-9011	코토니밋스피노잠(냉동)
50	1212-20-9091	기타해조류(냉동)
3	1504-30-1000	경유와 그분획물
8	1516-10-2000	동물성유지,분획물(경유)
20	1604-14-1031	버니토우(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10-1020	계살(훈제)
20	1605-90-2030	새조개(훈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2) 대세계와 대일본 100만 \$ 이하 수입품목(97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2-40-0000	청어(신선,냉장)
20	0302-69-7000	전갱이(신선,냉장)
10	0301-10-1000	금잉어(관상용/활어)
10	0301-10-9000	활어(금잉어,열대어이외 기타/관상용/활어)
10	0301-91-1000	송어(살모트루타등,활어)
10	0301-99-5000	붕장어(활어)
10	0301-99-8000	넙치(활어)
10	0301-99-9010	능성어(활어)
10	0301-99-9020	복어(활어)
10	0301-99-9040	블락(적어포함(활어))
10	0301-99-9060	송어(활어)
20	0302-21-0000	넙치(신선,냉장)
20	0302-22-0000	가자미(신선,냉장)
20	0302-23-0000	서대솔레아종(신선,냉장)
20	0302-29-0000	기타넙치류(신선,냉장)
20	0302-65-0000	곱상어와기타상어(신선,냉장)
20	0302-66-0000	뱀장어앵굴라종(신선,냉장)
20	0302-69-5000	붕장어(신선,냉장)
20	0302-69-9010	삼치(신선,냉장)
20	0302-69-9030	병어(신선,냉장)
20	0302-70-1000	어류간장(신선,냉장/피레트,어류제외)
20	0302-70-2000	어란(신선,냉장/피레트,어육제외)
10	0303-21-0000	송어(냉동)
10	0303-49-9000	기타다랭이(냉동)
10	0303-79-5000	붕장어(냉동)
10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20	0304-10-1010	붕장어피레트(신선,냉장)
20	0304-10-1090	기타어류피레트(신선,냉장)
10	0304-20-4000	가자미피레트(냉동)
20	0305-10-0000	어류의분.조분 펠리트(식용)
20	0305-20-4010	어란(명태/염장,염수장)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5-20-4030	어란(청어/염장,염수장)
20	0305-30-1000	어류의피레트(건조)
20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20	0305-59-5000	복어(건조)
20	0305-59-7000	까나리(건조)
20	0305-59-8000	실치(건조)
20	0305-61-0000	청어(염장,염수장)
20	0305-69-2000	송어(염장,염수장)
20	0305-69-9000	기타어류(염장,염수장)
20	0306-24-1000	게(산것/신선,냉장)
20	0306-24-1010	꽃게(신선,냉장)
20	0306-24-2000	게(건조)
20	0306-29-1000	기타갑각류(산것/신선,냉장)
10	0307-41-1000	갑오징어(산것/신선,냉장)
20	0307-59-9000	문어(산것,신선,냉장,냉동,건조 이외 기타)
20	0307-91-1190	기타백합(산것,신선,냉장)
20	0307-91-1400	진주조개(산것/신선,냉장)
20	0307-91-1700	개아지살(산것/신선,냉장)
20	0307-91-1800	바지락(산것/신선,냉장)
20	0307-91-1990	기타연체동물(신선,냉장)
20	0307-91-9010	성게(산것,신선,냉장)
20	0307-91-9020	해삼(산것,신선,냉장)
20	0307-91-9030	우렁챙이(산것,신선,냉장)
20	0307-91-9090	기타수생동물(성게,해삼,우렁챙이 이외 기타/산것/신선,냉장)
20	0307-99-1110	새조개(냉동)
20	0307-99-1130	바지락(냉동)
20	0307-99-1910	해삼(냉동)
20	0307-99-1920	우렁챙이(냉동)
20	0307-99-1990	기타수생동물(해삼,우렁챙이 이외 기타/냉동)
20	0307-99-2120	개아지살(건조)
20	0307-99-2920	해삼(건조)
20	0307-99-3910	성게(염장,염수장)
20	0307-99-3920	해삼(염장,염수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1212-20-7019	돌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7039	불등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9099	기타해조류(냉동 이외 기타)
20	1302-31-1000	실한천
20	1302-31-2000	분한천
30	1603-00-3000	어류의엑스
30	1603-00-4000	어류의즙
30	1603-00-9000	갑각류,연체동물,수생동물의 엑스,즙(어류 이외 기타)
20	1604-12-1000	청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2-9000	청어(통조림외조제품)
20	1604-14-1012	다랭이(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4-1019	다랭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4-1032	버니투우(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4-1039	버니투우(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9-1090	기타어류(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20-1000	생선페이스트
20	1604-20-2000	생선마리네이드
20	1604-20-3000	생선소시지
20	1604-20-4010	생선묵(게맛)
20	1604-20-4090	생선묵(기타)
20	1605-10-1010	게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10-1090	기타게살(통조림,훈제외)
20	1605-10-9000	기타게(통조림외 조제품)
20	1605-20-1000	새우와보리새우(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20-9020	새우와보리새우(브랜드)
20	1605-40-1000	기타갑각류(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1020	홍합(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1040	새조개(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1070	골뱅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1091	전복(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2090	기타연체동물(훈제)
30	2104-10-2000	어류의수우프,브로드와 제조용 조제품

## 2. 협정발효후 5년내 무세화(94개 품목)

### 1) 방어 등 수입급증 예상품목(23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10	0301-99-2000	방어(활어)
20	0302-69-2000	방어(신선,냉장)
10	0301-99-9093	연어(활어)
20	0305-69-1000	연어(염장,염수장)
20	1604-11-1000	연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1-9000	연어(통조림외 조제품)
20	0302-12-0000	태평양연어(신선,냉장)
20	0302-19-0000	기타연어류(신선,냉장)
10	0303-10-0000	태평양연어(냉동)
10	0303-22-0000	대서양연어(냉동)
10	0303-29-0000	기타연어류(냉동)
20	0305-41-0000	태평양연어(훈제)
20	0307-29-1000	가리비과의조개(냉동)
20	0307-21-0000	가리비과의조개(산것/신선,냉장)
20	0307-29-2000	가리비과의조개(건조)
20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3-9000	정어리(통조림외조제품)
20	0302-32-0000	황다랭이(신선,냉장)
20	0302-39-1000	눈다랭이(신선,냉장)
20	0302-69-8000	꽁치(학꽁치포함(신선,냉장))
20	1604-19-1010	꽁치(밀폐용기에넣은것)
20	0305-69-7000	전갱이(염장,염수장)
20	1604-19-1020	전갱이(밀폐용기에넣은것)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2) 전세계 수입실적 100만 \$ 이상이고 대일본 수입실적 100만 \$ 이하 수입품목  
(71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7-91-1910	재첩(산것/신선,냉장)
10	0303-79-7000	전갱이(냉동)
10	0303-50-0000	청어(냉동)
10	0303-71-0000	정어리(냉동)
10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30% 또는 1,908원/kg 중 고액(율)	0301-92-1000	실장어(앵귤라종,활어)
30% 또는 1,908원/kg 중 고액(율)	0301-92-9000	뱀장어기타(앵귤라종(활어))
10	0301-93-0000	잉어(활어)
10	0301-99-9091	노래미(활어)
10	0301-99-9099	기타어류(활어)
20	0302-69-4000	돔(신선,냉장)
20	0302-69-9020	복어(신선,냉장)
20	0302-69-9040	아귀(신선,냉장)
10	0303-32-0000	가자미(냉동)
10	0303-39-0000	기타넙치류(냉동)
10	0303-42-0000	황다랭이(냉동)
10	0303-49-1000	눈다랭이(냉동)
10	0303-60-0000	대구(냉동)
10	0303-75-0000	곱상어와기타상어(냉동)
10	0303-79-4010	옥돔(냉동)
10	0303-79-4090	기타돔(냉동)
10	0303-79-6000	조기(냉동)
10	0303-79-9010	삼치(냉동)
10	0303-79-9020	복어(냉동)
10	0303-79-9060	임연수어(냉동)

기본세율(%)	HSK	품목명
10	0303-79-9070	불낙(적어포함(냉동))
10	0303-79-9091	아귀(냉동)
10	0303-79-9092	떡장어(대서양,태평양(냉동))
40	0303-79-9093	홍어(냉동)
70	0303-79-9095	민어(냉동)
10	0303-79-9096	가오리(냉동)
10	0303-80-2090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피레트,어육제외))
10	0304-20-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10	0304-20-3000	대구피레트(냉동)
10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10	0304-90-9000	기타어육(냉동)
20	0305-59-9000	기타어류(건조)
20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35	0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20	0306-14-2000	왕게(냉동)
20	0306-14-3000	꽃게(냉동)
20	0306-14-9000	기타게(냉동)
20	0306-22-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제외))
20	0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산것/신선,냉장)
20	0306-23-2000	새우와보리새우(건조)
55% 또는 363원 /kg 중 고액(율)	0306-23-3000	새우와보리새우(염장,염수장)
20	0306-24-1090	기타게(신선,냉장)
10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20	0307-51-0000	문어(산것/신선,냉장)
35% 또는 622원 /kg중 고액(율)	0307-59-1020	낙지(냉동)
20	0307-59-1030	쭈꾸미(냉동)
20	0307-91-1500	피조개(산것/신선,냉장)
20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20	0307-99-1150	피조개(냉동)
20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20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1212-20-6090	우뭇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9019	코토니밋스피노잠(냉동 이외 기타)
20	1604-19-1030	뱀장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9-9010	취치포(통조림외 조제품)
20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20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어류
20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20	1605-20-9090	새우와보리새우(기타)
20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20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
20	1212-20-3010	투스(건조)
20	1212-20-3020	투스(냉장)
20	1212-20-4090	파래(신선한것,냉장,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5010	다시마(염장)
20	1212-20-5090	다시마(염장,냉장,냉동 이외 기타)

### 3. 협정발효후 10년내 무세화(대 일본 수입실적 많거나, 국내 수산업 민감품목 등 57개 품목)

#### 1) 전세계 및 대일본 수입실적 100만\$ 이상 수입품목(15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60% 또는 4,390원 /kg 중 고액(율)	0301-99-4000	돔(활어)
10	0301-99-7000	떡장어(활어)
60	0301-99-9050	농어(활어)
20	0302-50-0000	대구(신선,냉장)
20	0302-69-3000	갈치(신선,냉장)
20	0302-69-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10	0303-49-2000	참다랭이(냉동)
10	0303-79-3000	갈치(냉동)
40(학꽂치제외)	0303-79-8000	꽂치(학꽂치포함(냉동))
10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10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10	0304-20-5000	참다랭이피레트(냉동)
10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20	0307-59-1010	문어(냉동)
20	0307-91-1200	전복(산것,신선,냉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2) 국내 생산어민 및 수산업 민감품목(굴, 김, 미역,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가다랭이, 명태, 오징어류)(42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1605-90-9010	조미오징어
4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0	0307-49-3000	오징어(건조)
20	1605-90-2010	오징어(훈제)
20	1605-90-1080	오징어(밀폐용기에넣은것)
10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냉장)
10	0307-49-2000	오징어(염장,염수장)
20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5-9000	고등어(통조림외 조제품)
20	0305-69-5000	고등어(염장,염수장)
20	0302-64-0000	고등어(신선,냉장)
10	0303-74-0000	고등어(냉동)
20	0305-59-2000	멸치(건조)
20	0305-63-9000	멸치기타(염장,염수장)
20	0305-49-1000	멸치(훈제)
20	1604-16-1000	멸치(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6-9000	멸치(통조림외 조제품)
20	0305-49-2000	명태(훈제)
20	0305-59-3000	명태(복어(건조))
10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10	0304-90-1010	명태연육(냉동)
20	0302-69-1000	명태(신선,냉장)
30	0303-79-1000	명태(냉동)
20	1604-14-1021	가다랭이(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10	0303-43-0000	가다랭이,줄무늬버니토우(냉동)
20	1604-14-1022	가다랭이(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4-1029	가다랭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4-9000	다랭이,가다랭이,대서양버니토우(기타조제)
20	0307-10-4000	굴(염장,염수장)
5	0307-10-1010	굴치패(산것,신선,냉장)

---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7-10-1090	굴(굴치패이외기타/산것,신선,냉장)
20	0307-10-2000	굴(냉동)
20	0307-10-3000	굴(건조)
20	1605-90-1010	굴(밀폐용기에넣은것)
8	2106-90-4010	김(조제한식용해초류)
20	1212-20-1010	김(마른것)
10	1212-20-1030	김(냉동한것)
20	1212-20-1090	김(마른것,냉장,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2010	미역(건조)
20	1212-20-2020	미역(염장)
50	1212-20-2040	미역(냉동)
20	1212-20-2030	미역(냉장)



## II. 대미국 관세양허기준

### 1. 협정발효즉시 무세화 품목(265개 품목)

- 1) 대세계 또는 대미국 수입이 없는 품목 및 실행관세가 10% 미만인 품목  
(217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10	0303-79-9097	까나리(냉동)
20	0302-69-7000	전갱이(신선,냉장)
20	0302-40-0000	청어(신선,냉장)
20	0302-61-0000	정어리(신선,냉장)
10	0303-41-0000	날개,긴지느러미다랭이(냉동)
10	0303-49-2000	참다랭이(냉동)
10	0303-76-0000	뱀장어앵귤라종(냉동)
10	0303-77-0000	농어(냉동)
10	0303-79-3000	갈치(냉동)
10	0303-79-4090	기타돔(냉동)
10	0303-79-5000	붕장어(냉동)
10	0303-79-9010	삼치(냉동)
10	0303-79-9020	복어(냉동)
10	0303-79-9030	보리멸(냉동)
10	0303-79-9050	달고기(냉동)
20	0304-10-2000	연육(신선,냉장)
10	0304-20-5000	참다랭이피레트(냉동)
20	0305-10-0000	어류의분.조분 펠리트(식용)
20	0305-20-1000	어류간장(건조,훈제,염장,염수장)
20	0305-20-2000	어란(건조)
20	0305-20-4010	어란(명태/염장,염수장)
20	0305-20-4030	어란(청어/염장,염수장)
20	0305-30-1000	어류의피레트(건조)
20	0307-29-2000	가리비과의조개(건조)
20	0307-31-0000	홍합(산것/신선,냉장)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7-39-1000	홍합(냉동)
20	0307-39-2000	홍합(건조)
20	0307-39-9000	홍합(산것/신선,냉장,냉동,건조 이외 기타)
10	0307-41-1000	갑오징어(산것/신선,냉장)
10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35% 또는 22원/kg 중 고액(율)	0307-59-1020	낙지(냉동)
20	0307-59-1030	쭈꾸미(냉동)
20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3-9000	정어리(통조림외조제품)
20	1604-14-1011	다랭이(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4-1012	다랭이(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20-1000	새우와보리새우(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20-9010	새우와보리새우(혼제)
20	1605-20-9020	새우와보리새우(브랜드)
20	1605-30-1000	바다가재(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30-9000	바다가재(통조림외)
20	1605-40-1000	기타갑각류(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1020	홍합(밀폐용기에넣은것)
10	0301-91-2000	송어(앙코링쿠스 아파케등(활어))
10	0301-93-0000	잉어(활어)
10	0301-99-2000	방어(활어)
60% 또는 390원/kg 중 고액(율)	0301-99-4000	돔(활어)
10	0301-99-5000	붕장어(활어)
10	0301-99-7000	떡장어(활어)
10	0301-99-8000	넙치(활어)
10	0301-99-9010	능성어(활어)
10	0301-99-9020	복어(활어)
10	0301-99-9030	틸라피아(활어)
10	0301-99-9040	불락(적어포함(활어))
10	0301-99-9060	숭어(활어)
10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10	0301-99-9080	메기(활어)
10	0301-99-9091	노래미(활어)
10	0301-99-9092	붕어(활어)
10	0301-99-9094	초어(활어)
20	0302-29-0000	기타넙치류(신선,냉장)
20	0302-65-0000	곱상어와기타상어(신선,냉장)
20	0302-66-0000	뱀장어앵굴라종(신선,냉장)
20	0302-69-2000	방어(신선,냉장)
20	0302-69-3000	갈치(신선,냉장)
20	0302-69-5000	붕장어(신선,냉장)
20	0302-69-6000	갯장어(신선,냉장)
20	0302-69-8000	꽂치(학꽂치포함(신선,냉장))
20	0302-69-9010	삼치(신선,냉장)
20	0302-69-9030	병어(신선,냉장)
20	0302-70-2000	어란(신선,냉장/피레트,어육제외)
10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20	0305-59-5000	복어(건조)
20	0305-59-7000	까나리(건조)
20	0305-59-8000	실치(건조)
20	0305-69-2000	송어(염장,염수장)
20	0305-69-3000	갈치(염장,염수장)
20	0305-69-7000	전갱이(염장,염수장)
20	0306-19-0000	기타갑각류(냉동)
20	0306-21-0000	닭새우류(냉동제외)
20	0306-23-2000	새우와보리새우(건조)
55% 또는 363원 /kg 중 고액(율)	0306-23-3000	새우와보리새우(염장,염수장)
20	0306-29-1000	기타갑각류(산것/신선,냉장)
20	0306-29-2000	기타갑각류(건조)
20	0307-59-2000	문어(건조)
20	0307-59-9000	문어(산것,신선,냉장,냉동,건조 이외 기타)
20	0307-60-0000	달팽이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7-91-1300	소라(산것,신선,냉장)
20	0307-91-1400	진주조개(산것/신선,냉장)
20	0307-91-1600	새조개(산것/신선,냉장)
20	0307-91-1910	재첩(산것/신선,냉장)
20	0307-91-9020	해삼(산것,신선,냉장)
20	0307-91-9030	우렁쉥이(산것,신선,냉장)
20	0307-91-9090	기타수생동물(성게,해삼,우렁쉥이 이외 기타/산것/신선,냉장)
20	0307-99-1110	새조개(냉동)
20	0307-99-1130	바지락(냉동)
20	0307-99-1150	피조개(냉동)
20	0307-99-1160	소라(냉동)
20	0307-99-1920	우렁쉥이(냉동)
20	0307-99-1990	기타수생동물(해삼,우렁쉥이 이외 기타/냉동)
20	0307-99-2110	개량조개(건조)
20	0307-99-2130	바지락(건조)
20	0307-99-2190	기타연체동물(건조)
20	0307-99-3110	개량조개(염장,염수장)
20	0307-99-3120	바지락(염장,염수장)
20	0307-99-3130	소라(염장,염수장)
20	0307-99-3190	기타(염장,염수장)
20	0307-99-3910	성게(염장,염수장)
20	0307-99-3920	해삼(염장,염수장)
20	0307-99-3990	기타수생동물(해삼,우렁쉥이 이외 기타/염장,염수장)
8	0509-00-0000	동물성의해면
20	1212-20-3010	툇(건조)
20	1212-20-3020	툇(냉장)
20	1212-20-4010	파래(신선한것)
20	1212-20-4090	파래(신선한것,냉장,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5010	다시마(염장)
20	1212-20-5020	다시마(냉장)
20	1212-20-5090	다시마(염장,냉장,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6090	우뭇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1212-20-7019	돌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7039	불등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9019	코토니밋스피노잠(냉동 이외 기타)
30	1603-00-3000	어류의엑스
20	1604-14-1032	버니토우(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4-1039	버니토우(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9-1020	전갱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9-1030	뱀장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9-1090	기타어류(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20-2000	생선마리네이드
20	1604-20-3000	생선소시지
20	1605-90-1040	새조개(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1070	골뱅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2020	골뱅이(훈제)
20	1605-90-2090	기타연체동물(훈제)
20	1605-90-9030	골뱅이(기타조제)
20	1605-90-9040	홍합(자숙)
20	0305-59-4000	조기(굴비)
3	1504-10-1000	어류의간유,분획물(상어의간유)
3	1504-10-9000	어류의간유,분획물(상어의간유 이외 기타)
3	1504-20-0000	어류의유지,분획물(간유 제외)
3	1504-30-9000	기타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5	0511-91-2000	어류의웨이스트
5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5	2301-20-9000	어류외기타 분.조분 및 펠리트
8	0106-00-6010	지렁이(갯지렁이)
8	0106-00-6020	지렁이(실지렁이)
8	0511-91-101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8	0511-91-109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 알 이외 기타)
8	0511-91-900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동물의 생산품(기타)
8	1302-31-9000	한천(실한천,분한천 이외 기타)
8	1521-90-1000	경남

기본세율(%)	HSK	품목명
8	2106-90-4090	조제한식용해조류(김 이외 기타)
30	0208-40-200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포유동물)및바다소(바다소목의포유동물)
30	0208-90-9010	해양동물고기, 설육(신선, 냉장/냉동)
30	0210-92-000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포유동물)및바다소(바다소목의포유동물)
10	0301-99-6000	갯장어(활어)
10	0301-99-9095	민어(활어)
20	0302-11-2000	송어(양코링쿠스 아파케등(신선, 냉장))
20	0302-33-0000	가다랑어또는줄무늬버니토우(신선, 냉장)
20	0302-36-0000	남방참다랑어(신선, 냉장)
20	0302-62-0000	해덕(신선, 냉장)
10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냉동)
10	0303-72-0000	해덕(냉동)
10	0303-79-9040	홍살치(냉동)
10	0303-79-9098	이빨고기(냉동)
20	0304-10-1020	가자미피레트(신선, 냉장)
20	0304-10-1030	참다랑어피레트(신선, 냉장)
10	0304-20-6000	이빨고기피레트(냉동)
20	0305-20-3000	어란(훈제)
20	0305-20-4020	어란(조기/염장, 염수장)
20	0305-30-2000	어류의피레트(염장, 염수장)
20	0305-42-0000	청어(훈제)
20	0305-59-6000	갯장어(건조)
20	0305-63-1000	멸치젓(염장, 염수장)
20	0305-69-4000	정어리(염장, 염수장)
20	0305-69-8000	꽁치(염장, 염수장)
20	0306-29-3000	기타갑각류(염장, 염수장)
20	0307-29-3000	가리비과의조개(염장, 염수장)
20	0307-91-1110	백합치패(산것, 신선, 냉장)
20	0307-99-1120	개량조개(냉동)
20	0307-99-2930	우렁쉥이(건조)
20	0307-99-2990	기타수생동물(해삼, 우렁쉥이 이외 기타/건조)
8	0507-90-2020	고래수염과그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8	0508-00-1000	산호(coral)
8	0508-00-2010	진주패각
8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0508-00-2050	트로커스패각
8	0508-00-2060	아고야패각
8	0508-00-2070	민물패각
8	0508-00-2090	패각(진주,청,야광패각등 산호,패각 이외 기타)
8	0508-00-9000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등(산호,패각 이외 기타)
20	1212-20-1020	김(냉장한것)
20	1212-20-2090	미역(건조,염장,냉장,냉동한것 이외 기타)
50	1212-20-3030	툰(냉동)
20	1212-20-3090	툰(건조,냉장,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4020	파래(냉장)
50	1212-20-4030	파래(냉동)
50	1212-20-5030	다시마(냉동)
50	1212-20-6010	우뭇가사리(냉동)
50	1212-20-7011	돌가사리(냉동)
50	1212-20-7021	뜬세모가사리(냉동)
20	1212-20-7029	뜬세모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50	1212-20-7031	불등가사리(냉동)
50	1212-20-8011	도박(냉동)
20	1212-20-8019	도박(냉동 이외 기타)
50	1212-20-8021	진두발(냉동)
20	1212-20-8029	진두발(냉동 이외 기타)
50	1212-20-8031	말(냉동)
50	1212-20-9011	코토니밋스피노잠(냉동)
50	1212-20-9091	기타해조류(냉동)
3	1504-30-1000	경유와 그분획물
3	1516-10-2000	동물성유지,분획물(경유)
20	1604-14-1031	버니토우(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10-1020	계살(훈제)
20	1605-90-2030	새조개(훈제)

## 2) 대세계와 대미국 100만 \$ 이하 수입품목(48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10	0301-10-1000	금잉어(관상용/활어)
10	0301-10-9000	활어(금잉어, 열대어이외 기타/관상용/활어)
10	0301-91-1000	송어(살모트루타등, 활어)
20	0302-11-1000	송어(살모트루타등(신선,냉장))
20	0302-21-0000	넙치(신선,냉장)
20	0302-31-0000	날개, 긴지느러미다랭이(신선,냉장)
20	0302-32-0000	황다랭이(신선,냉장)
20	0302-39-1000	눈다랭이(신선,냉장)
20	0302-39-2000	참다랭이(신선,냉장)
20	0302-39-9000	기타다랭이(신선,냉장)
20	0302-70-1000	어류간장(신선,냉장/피레트,어류제외)
10	0303-21-0000	송어(냉동)
10	0303-31-0000	넙치(냉동)
10	0303-49-9000	기타다랭이(냉동)
20	0304-10-1010	붕장어피레트(신선,냉장)
20	0304-10-1090	기타어류피레트(신선,냉장)
20	0304-10-9000	기타어육(신선,냉장)
20	0305-20-4090	어란(명태,조기,청어 이외 기타/염장,염수장)
20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20	0307-21-0000	가리비과의조개(산것/신선,냉장)
20	1302-31-1000	실한천
20	1302-31-2000	분한천
30	1603-00-4000	어류의즙
30	1603-00-9000	갑각류,연체동물,수생동물의 엑스,즙(어류 이외 기타)
20	1604-14-1019	다랭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40-9000	기타갑각류(통조림외)
30	2104-10-2000	어류의수우프,브로드와 제조용 조제품
10	0303-80-1000	어류간장(냉동/피레트,어육제외))
20	0305-59-1000	상어지느러미(건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5-69-6000	조기(염장,염수장)
20	0305-69-9000	기타어류(염장,염수장)
20	0307-91-1190	기타백합(산것,신선,냉장)
20	0307-91-1700	개아지살(산것/신선,냉장)
20	0307-91-1800	바지락(산것/신선,냉장)
20	0307-91-1990	기타연체동물(신선,냉장)
20	0307-91-9010	성게(산것,신선,냉장)
20	0307-99-1910	해삼(냉동)
20	0307-99-2120	개아지살(건조)
20	0307-99-2920	해삼(건조)
20	1212-20-8039	말(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9099	기타해조류(냉동 이외 기타)
20	1604-19-1010	꽂치(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20-1000	생선페이스트
20	1604-20-4090	생선묵(기타)
20	1604-30-1000	캐비아
20	1605-90-1030	바지락(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1091	전복(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

## 2. 협정발효후 5년내 무세화(85개 품목)

### 1) 연어 등 수입급증 예상품목(40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1604-11-9000	연어(통조림외 조제품)
20	0305-69-1000	연어(염장,염수장)
10	0301-99-9093	연어(활어)
20	0302-19-0000	기타연어류(신선,냉장)
20	1604-11-1000	연어(밀폐용기에넣은것)
20	0302-12-0000	태평양연어(신선,냉장)
10	0303-10-0000	태평양연어(냉동)
10	0303-22-0000	대서양연어(냉동)
10	0303-29-0000	기타연어류(냉동)
20	0305-41-0000	태평양연어(훈제)
20	0302-22-0000	가자미(신선,냉장)
10	0304-20-4000	가자미피레트(냉동)
10	0303-32-0000	가자미(냉동)
10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냉동)
20	0302-23-0000	서대솔레아종(신선,냉장)
20	0305-51-0000	대구(건조)
20	0302-63-0000	검정대구(신선,냉장)
20	0305-62-0000	대구(염장,염수장)
10	0303-73-0000	검정대구(냉동)
10	0303-78-0000	민대구(냉동)
10	0303-79-2000	은대구(냉동)
10	0304-20-3000	대구피레트(냉동)
20	0302-50-0000	대구(신선,냉장)
10	0303-60-0000	대구(냉동)
20	1604-12-1000	청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2-9000	청어(통조림외조제품)
20	0305-61-0000	청어(염장,염수장)
20	0306-14-1000	계살(냉동)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1605-10-1010	계살(밀폐 용기에넣은것)
20	0306-14-2000	왕게(냉동)
20	0306-14-3000	꽃게(냉동)
20	0306-14-9000	기타게(냉동)
20	0306-24-1090	기타게(신선,냉장)
20	0306-24-1010	꽃게(신선,냉장)
20	0306-24-2000	게(건조)
20	0306-24-3000	게(염장,염수장)
20	1604-20-4010	생선묵(게맛)
20	0306-24-1000	게(산것/신선,냉장)
20	1605-10-1090	기타계살(통조림,훈제외)
20	1605-10-9000	기타게(통조림외 조제품)

2) 전세계 수입실적 100만 \$ 이상이고 대미국 수입실적 100만 \$ 이하 수입품목  
(45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10	0303-79-7000	전갱이(냉동)
10	0303-71-0000	정어리(냉동)
10	0303-50-0000	청어(냉동)
10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30% 또는 1,908원/kg 중 고액(율)	0301-92-1000	실장어(앵귤라종,활어)
30% 또는 1,908원/kg 중 고액(율)	0301-92-9000	뱀장어기타(앵귤라종(활어)
60	0301-99-9050	농어(활어)
10	0301-99-9099	기타어류(활어)
20	0302-69-4000	돔(신선,냉장)
20	0302-69-9020	복어(신선,냉장)
20	0302-69-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10	0303-42-0000	황다랭이(냉동)
10	0303-49-1000	눈다랭이(냉동)
10	0303-75-0000	곱상어와기타상어(냉동)
10	0303-79-4010	옥돔(냉동)
10	0303-79-6000	조기(냉동)
40(학꽂치제외)	0303-79-8000	꽂치(학꽂치포함(냉동))
10	0304-20-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10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20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20	0306-12-0000	바다가재(냉동)
20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35	0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20	0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산것/신선,냉장)
20	0307-29-1000	가리비과의조개(냉동)
20	0307-51-0000	문어(산것/신선,냉장)
20	0307-59-1010	문어(냉동)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1605-20-9090	새우와보리새우(기타)
10	0303-79-9080	새꼬리민태(냉동)
70	0303-79-9095	민어(냉동)
10	0303-79-9096	가오리(냉동)
10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10	0304-90-9000	기타어육(냉동)
20	0305-59-9000	기타어류(건조)
20	0307-91-1200	전복(산것,신선,냉장)
20	0307-91-1500	피조개(산것/신선,냉장)
20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20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20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20	1604-19-9010	취치포(통조림외 조제품)
20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20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어류
20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20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20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외)

### 3. 협정발효후 10년내 무세화(대미국 수입실적 많거나, 국내 수산업 민감품목 등 53개 품목)

#### 1) 전세계 및 대미국 수입실적 100만\$ 이상 수입품목(11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0302-69-9040	아귀(신선,냉장)
10	0303-39-0000	기타넙치류(냉동)
20	0306-22-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제외))
10	0303-79-9060	임연수어(냉동)
10	0303-79-9070	불낙(적어포함(냉동))
10	0303-79-9091	아귀(냉동)
10	0303-79-9092	떡장어(대서양,태평양(냉동))
40	0303-79-9093	홍어(냉동)
10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10	0303-80-2090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피레트,어육제외))
10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2) 국내 생산어민 및 수산업 민감품목(굴, 김, 미역,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가다랑어, 명태, 오징어류)(42개 품목)

기본세율(%)	HSK	품목명
10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냉장)
10	0307-49-2000	오징어(염장,염수장)
20	1605-90-9010	조미오징어
20	1605-90-1080	오징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5-90-2010	오징어(훈제)
4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0	0307-49-3000	오징어(건조)
20	0302-64-0000	고등어(신선,냉장)
20	0305-69-5000	고등어(염장,염수장)
20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5-9000	고등어(통조림외 조제품)
10	0303-74-0000	고등어(냉동)
20	0305-49-1000	멸치(훈제)
20	0305-63-9000	멸치기타(염장,염수장)
20	1604-16-9000	멸치(통조림외 조제품)
20	1604-16-1000	멸치(밀폐용기에넣은것)
20	0305-59-2000	멸치(건조)
20	0305-49-2000	명태(훈제)
20	0302-69-1000	명태(신선,냉장)
10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20	0305-59-3000	명태(복어(건조))
30	0303-79-1000	명태(냉동)
10	0304-90-1010	명태연육(냉동)
10	0303-43-0000	가다랭이,줄무늬버니토우(냉동)
20	1604-14-1021	가다랭이(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기본세율(%)	HSK	품목명
20	1604-14-1022	가다랭이(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4-1029	가다랭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20	1604-14-9000	다랭이,가다랭이,대서양버니토우(기타조제)
20	0307-10-3000	굴(건조)
20	0307-10-4000	굴(염장,염수장)
5	0307-10-1010	굴치패(산것,신선,냉장)
20	0307-10-1090	굴(굴치패이외기타/산것,신선,냉장)
20	0307-10-2000	굴(냉동)
20	1605-90-1010	굴(밀폐용기에넣은것)
10	1212-20-1030	김(냉동한것)
8	2106-90-4010	김(조제한식용해초류)
20	1212-20-1010	김(마른것)
20	1212-20-1090	김(마른것,냉장,냉동 이외 기타)
20	1212-20-2030	미역(냉장)
50	1212-20-2040	미역(냉동)
20	1212-20-2010	미역(건조)
20	1212-20-2020	미역(염장)